

제1편

한국의 유교

제1장 고양시 연혁

1. 고양시의 위치 및 연혁
2. 인구 및 세대수

1. 고양시의 위치 및 연혁

1) 위치

고양시는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남동으로 서울과 접하고 북동으로 양주시, 북서로 파주시 남서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하였다.

구 분	지 역	극 점	연 장 거 리
동 단	덕양구 효자동	동경 126° 56'	동서간 27km
서 단	일산서구 구산동	동경 126° 45'	
남 단	덕양구 현천동	북위 37° 34'	남북간 18km
북 단	덕양구 벽제동	북위 37° 41'	

2) 지형과 지질

산지수려한 북한산과 면면히 흐르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고양시는 경동지형의 일부로 북동부가 높고 남서부가 완경사인 인근 해안까지 평탄하고 기름진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북동부 지역은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의 철령에서 갈라져 나온 광주산맥의 한 여맥이 고양시 북동부 근교지역에서 도봉산(717m), 북한산(836.5m) 등의 준봉을 이루고 있고 중앙지역은 구릉성 양산지대로서 산림이 울창하며 북한산에서 발원하는 곡릉천(30.3km), 창릉천(22.5km)이 흐르고 있다.

토질은 오랜 침식작용과 한강에 의한 토사운반 작용으로 덕은동에서 구산동 일대에 걸쳐 범람원성 충적지를 이뤄 토지가 매우 비옥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구릉지대는 오랜 침식작용으로 토질이 비옥하여 과수 재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 높은 관상수, 화훼류, 고등채소 재배에 적합하여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농업이 발전해 왔다. 이는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서울시의 각 시장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3) 기후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성을 나타내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건조하여 삼한사온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름에는 아열대 해안 기압권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다.

강수량은 대체로 연간 1,100mm 안팎이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간혹 열대성저기압(태풍)의 일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해에 따라 계절풍의 시기와 세력차이로 인해 초여름 모내기 시기에 온대성 저기압이 약하거나 늦을 때면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을 초래하기도 한다. 9월이 되어 대륙 기압권이 발달되면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나타낸다.

4) 교통

통일의 염원을 담은 국도 1호선 통일로가 왕복 4차선으로 남북으로 뻗어있고, 부천~행주외동~고양동~의정부로 통하는 국도 39호선이 왕복 4~6차선으로 동서로, 성산대교~행주내외동~일산신도시~문산~임진각으로 통하는 10차선의 자유로가 남서~북서로 뻗어 있으며, 서울 수색에서 시작하여 승전로, 대곡로를 거쳐 일산 중앙로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버스중앙차로제) 구축과 지하철 3호선이 대화동까지 연결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2009년 6월 30일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양시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5) 연혁

연대(年代)	연 혁
선사시대	지영리(芝英里)·가자동(加紫洞)·오부자동(五富子洞) 산포지(散布地)에서 선사유물(先史遺物) 발견
132 (백제 개루왕 5)	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삼국사기』 전 23, 백제본기)“築北漢山城”.

연대(年代)	연 혁
555 (신라 진흥왕 16) 고구려	10월에 임금이 북한산(北漢山)에 순행하여 강역을 확정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4)에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달을성현(達乙省縣);(고봉(高峰)), 개백현(皆白縣);(행주(幸州), 덕양(德陽))
757(신라 경덕왕 16)	고봉현(高峰縣)[교하군(交河郡) 영현(領縣)], 우왕현(遇王縣)[한양군(漢陽郡) 영현(領縣), 일명(一名) 왕봉현(王逢縣)]
1018(고려 현종 9)	고봉(高峰)[양주속현(楊州屬縣)], 행주(幸州)[양주속현(楊州屬縣) 일명(一名) 덕양(德陽)], ▪ 부원현(富原縣)[원(原), 과천군(果川郡) 용산처(龍山處) 충렬왕(忠烈王) 때 편입], ▪ 황조향(荒調鄉)[원(原) 부평부(富平府) 소속]
1394(태조 3)	고봉감무(高峰監務) 설치, 고봉(高峰)과 행주통합(幸州統合) 부원현(富原縣)은 한성부(漢城府) 소속
1413(태종 13)	고양현(高陽縣) 설치, 6품관직(品官職)
1471. 10. 13	현내(縣內)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이 있으므로 현(縣)을 고양군으로 승격
1504(연산 10)	연산군(燕山君)의 유수(遊狩)로 고양군(高陽郡) 황폐화
1506(중종 1)	고양군(高陽郡) 복구(완전복구는 많은 시간 필요)
1593(선조 26)	행주대첩·벽제관싸움 등 임진왜란 때 주요 싸움터
1895. 5. 26	칙령(勅令) 제98호로 23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한성부(漢城府) 고양군이 됨
1906. 9. 24	칙령(칙령) 제 49호로 양주군(楊州郡) 신혈면(神穴面)이 고양군에 편입됨. 경기도 고시(京畿道告示) 제 6호로 군내 리동 합병개칭(合併改稱)
1910. 8. 23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고양군은 9개면 50개리 관할. 사리대면(沙里大面), 신혈면(神穴面), 원당면(元堂面), 하도면(下道面), 구지도면(求知道面), 중면(中面), 구이면(九耳面), 사포면(巴浦面), 송산면(松山面)
1911. 4. 1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고양군은 12면 155개리 관할. 용강면(龍江面), 연희면(延禧面), 은평면(恩平面), 송인면(崇仁面), 뚝도면(蠶島面), 한지면(漢芝面), 벽제면(碧蹄面), 신도면(神道面), 원당면(元堂面), 지도면(知道面), 송포면(松浦面), 중면(中面)
1936. 2. 14	부령(府令) 제 8호 (1935. 2. 24 공포)로 용강(龍江), 연희(延禧), 한지(漢芝)의 3개면이 경성부(京城府)로 편입
1936. 4. 1	부령 제8호(1936. 2. 14 공포)로 용강 연희 한지의 3개면이 경성부로 편입
1949. 8. 13	법률 제159호 (1949. 8. 13 공포)와 법률 제160호 (1949. 8. 13 공포)로 은평(恩平), 송인(崇仁), 뚝도(蠶島)의 3개면(個面)이 서울특별시로 편입 (6면)

연대(年代)	연혁
1961. 8. 7	각령(閣令) 제87호 (1961. 8. 7 공포)로 군청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원당면 사무소로 이전
1963. 3.	주교리 600번지에 군청사 신축 이전
1967. 3. 28	군조별(郡條別) 제126호 (1967. 3. 28 공포)로 신도면 화전출장소 설치
1973. 7. 1	법률 제2596호 (1973. 3. 12 공포)로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6543호 (1973. 3. 12 공포)로 신도면을 읍으로 승격(1읍 5면)
1979. 5. 1	대통령령 제9409호 (1979. 4. 7 공포)로 원당면을 읍으로 승격(2읍 4면)
1980. 12. 1	대통령령 제1005호 (1980. 10. 21 공포)로 중면이 일산읍으로, 벽제면이 벽제읍으로 승격(4읍 2면)
1985. 10. 1	대통령령 제11772호 (1985. 9. 27 공포)로 지도읍이 지도면으로, 화전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6읍 1면)
1986. 11. 1	군조례 제1036호 (1986. 11. 1 공포)로 일산읍 백마출장소 설치
1987. 1. 1	대통령령 제12007호 (1986. 12. 23 공포)로 송포면 덕이리 일부를 일산읍에 편입, 탄현리 설치 및 원당읍 원당리 일부를 벽제읍에, 도내리 일부를 화전읍에, 일산읍 산황리일부를 원당읍에 각각 편입
1989. 6. 13	군조례 제1204호 (1989. 6. 13 공포)로 일산 지구 개발지원사무소 설치
1992. 2. 1	법률 제4417호에 의거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26개동)
1992. 6. 13	시조례 제135호 (1992. 6. 13 공포)로 화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2. 9. 9	시조례 제140호 (1992. 9. 9 공포)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 백석동 일부 → 마두동, 마두동 일부 → 백석동
1992. 12. 31	시조례 제153호 (1992. 12. 31 공포)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 주교동 일부 → 성사동, 주교동 일부 → 화정동
1993. 3. 9	시조례 제157호 (1993. 3. 9 공포)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 주엽동 일부 → 일산동, 마두동 일부 → 일산동 일산동 일부 → 주엽동, 장항동 일부 → 주엽동 대화동 일부 → 장항동, 주엽동 일부 → 장항동(지구외) 마두동 일부 → 장항동, 일산동 일부 → 마두동 장항동 일부 → 마두동, 마두동 일부 → 풍동(지구외) 일산동 일부 → 대화동, 주엽동 일부 → 대화동
1993. 5. 18	시조례 제171호에 의거 주엽동 신설 (27개동)
1993. 6. 1	시조례 제164호에 의거 중동을 일산2동, 일산동을 일산1동, 청천동을 백석동, 백마동을 마두1동, 낙민동을 마두2동으로 명칭 변경

연대(年代)	연혁
1993. 7. 10	시조례 제174호 (1993. 7. 10 공포)로 풍산동, 행주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4. 7. 1	시조례 제206호에 의거 성사동을 성사1,2동, 주업동을 주업1,2동으로 분동 (29개동)
1995. 1. 7	시조례 제230호에 의거 원산동·창릉동·일산1동·고양동·대덕동사무소 주소지 변경
1995. 3. 1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지축동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편입
1995. 3. 8	시조례 제238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 탄현동 일부 → 일산동
1995. 3. 13	시조례 제237호에 의거 일산3동 신설 (30개동)
1995. 5. 13	시조례 제264호에 의거 효자동·행신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5. 6. 28	시조례 제265호에 의거 화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5. 9. 1	시조례 제275호에 의거 성사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5. 10. 21	시조례 제280호에 의거 송산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5. 12. 22	시조례 제288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 토당동·대장동 일부 → 화정동
1996. 1. 3	시조례 제292호에 의거 행신2동, 일산4동, 대화동, 장항2동을 신설(34개동)
1996. 3. 1	시조례 제303호에 의거 덕양구(17개동), 일산구(17개동) 설치
1996. 6. 10	시조례 제331호에 의거 식사동, 장항2동, 고봉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6. 10. 21	시조례 제357호에 의거 화정동을 화정1동과 화정2동으로 행정동 분동(35개동)
1996. 11. 25	시조례 제366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대자동 일부 → 신원동 토당동 일부 → 화정동 화정동 일부 → 행신동
1996. 12. 19	시조례 제375호에 의거 흥도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8. 2. 9	시조례 제433호에 의거 주교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1998. 8. 21	시조례 제447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대자동 일부 → 신원동 효자동 일부 → 오금동
1999. 4. 21	시조례 제490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원당동 일부 → 사리현동 사리현동 일부 → 원당동

연대(年代)	연 혁
2000. 3. 7	내곡동 일부 → 백석동 백석동 일부 → 내곡동 대화동 일부 → 장항동 장항동 일부 → 대화동 법곶동 일부 → 대화동 시조례 제556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내유동 일부 → 지영동 토당동 일부 → 행신동 탄현동 일부 → 일산동
2000. 10. 18	시조례 제603호에 의거 덕양구청, 장항1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조례 제604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 일산동 일부 → 탄현동
2001. 7. 24	시조례 제665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 행주의동 일부 → 행주내동
2001. 11. 22	시조례 제690호에 의거 일산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2. 10. 7	시조례 제723호에 의거 행정동간 경계 조정 : 행주동 일부 → 능곡동
2003. 2. 3	시조례 제746호에 의거 행신1,2동을 행신1,2,3동, 일산1동을 일산1동, 탄현동으로 분동 (37개동) 시조례 제746호에 의거 행정동간 경계 조정 : 행신1동 일부 → 행주2동
2003. 10. 18	시조례 제794호에 의거 행정동간 경계 조정 : 식사동 일부 → 풍산동 시조례 제795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 식사동 일부 → 풍동
2005. 5. 16	시조례 제892호에 의거 일산구를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분구 (3개구) 시조례 제893호에 의거 중산동·정발산동(법정동) 신설 (53개동) 시조례 제894호에 의거 일산2동을 일산2동과 중산동으로 분동,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명칭변경 (38개동)
2005. 7. 29	시조례 제922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장항동 일부 → 대화동 주엽동 일부 → 대화동 시조례 제923호에 의거 행정동간 경계 조정 장항1동 일부 → 대화동 주엽2동 일부 → 대화동 송포동 일부 → 대화동
2005. 10. 14	시조례 제933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 조정 풍동 일부 → 중산동 시조례 제932호에 의거 행정동간 경계 조정 풍산동 일부 → 중산동

연대(年代)	연혁
2006. 4. 4	시조례 제950, 951호에 의거 법정동·행정동간 경계 조정 홍도동 일부 → 행신3동 송산동 일부 → 송포동 도내동 일부 → 행신동
2006. 10. 23	시조례 제984호에 의거 백석동을 백석1,2동으로 분동 (39개동)

2. 인구 및 세대수

1963년 82,264명이었던 고양의 인구는 일산신시가지, 화정, 중산, 탄현, 화정, 행신 등 택지개발에 따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1년 2월에는 8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2006년말 현재 고양시의 인구는 463,991세대 919,365명에 이른다.

<고양시 인구 변천 추이>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면적 (km ²)	인구밀도 (1km ² 당)
	계	남	여				
1755	13,878	6,802	7,076	3,508	39	—	—
1904	19,324	10,523	8,801	4,699	—	—	—
1912	32,392	16,690	15,702	6,131	—	—	—
1953	65,104	30,909	34,195	11,170	—	—	—
1954	58,866	28,508	30,358	10,315	—	—	—
1957	62,787	30,549	32,238	11,051	—	—	—
1958	64,884	31,784	33,100	11,169	—	—	—
1963	82,264	41,123	41,141	13,824	—	—	—
1964	83,377	41,732	41,645	13,884	6.0	254.61	327.50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면적 (<i>km²</i>)	인구밀도 (<i>1km²</i> 당)
	계	남	여				
1970	133,313	67,445	65,868	25,913	5.1	254.61	523.36
1975	143,122	72,543	70,579	25,913	5.1	240.61	523.36
1980	155,611	78,856	76,755	33,957	4.6	266.47	583.78
1985	183,129	93,063	90,066	25,913	5.1	254.61	523.36
1990	244,755	123,937	120,818	65,035	3.8	266.46	919.17
1995	564,111	283,577	280,534	185,184	3.0	267.25	2,108.13
2000	800,297	398,454	401,843	261,972	3.0	267.32	2,983.68
2005	910,602	451,282	459,320	328,375	2.7	267.33	3,407.00
2006	919,365	455,374	463,991	337,745	2.6	267.33	3,439.00

제2장 유교의 교리(敎理)와 변천(變遷)

1. 유교의 교리(敎理)
2. 중국의 유교사상(儒敎思想) 변천사(變遷史)
3. 유가(儒家)의 사상(思想)

여 백

1. 유교의 교리(敎理)

유교는 공자의 도의사상(道義思想)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윤리 사상이다. 『대학』에서 강조한 3가지 덕목인 명덕(明德)·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의 삼강령(三綱領)은 유교의 기본 이상(理想)이다. 또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팔조목(八條目)은 인간의 내적 수양(修養)을 거쳐서 외적 덕화(德化)의 과정을 명시(明示)한 것으로서 그 이상을 향한 단계적 기본 행위를 밝힌 것이다.

하늘에는 원(元)·형(亨)·리(利)·정(貞)의 천도(天道)가 있어서 이 천도가 지시한 대로 사람에게서는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인성(人性)이 있다고 한다. 인성이 한결같고 정순(精純)하여 지천명(知天命)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인성은 천도와 합일(合一)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그 인성의 개발을 가장 중시하였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는데 주력(注力)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공자 이후로 유교는 여러 학파로 나뉘어졌지만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를 거쳐서 맹자에게 전해지는 학파를 정통으로 삼는다. 자사는 천명설(天命說)을 주장하였고,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그 뒤 송(宋)나라 때 주자(周子)·장횡거(張橫渠)·정자(程子)를 거쳐 주자(朱子)에 이르러서 유교는 성리학설(性理學說)로 기울어져 인심도심(人心道心)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철학적 경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 학설은 고려 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조선왕조의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기론(理氣論)·주리론(主理論)·주기론(主氣論) 등으로 퇴계(退溪) 율곡(栗谷) 등 수 많은 학자를 배출하여 유교철학이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여기에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사서(四書)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오경(五經)과 함께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받아들여진다.

유교라 함은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대표적 사상이로서, 공교(孔敎) 또는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유교는 통상 유가사상(儒家思想)이나 유학(儒學)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통용된다.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것을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논리학(論理學) 또는 정치학(政治學)이라 할 수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의 이상을 지배하여 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에 중국 당나라의 국학(國學)이란 학교 제도를 받아들인 때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즉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삼는다. 백제는 국학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으나 고이왕 52년(285)에 이미 왕인(王仁)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千字文)』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유학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도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있었던 것 같으나 국학의 건립은 훨씬 늦어 신문왕 2년(682)에야 실시되었다. 그 후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학문을 장려하여 최치원(崔致遠) 같은 이는 당(唐)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고, 설총(薛聰)은 이두(吏讀)를 창시(創始)하여 구경(九經)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는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부차적으로는 지도계층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에 통달하게 하는 한편 훌륭한 문장가를 양성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의 숭불정책(崇佛政策)으로 유교가 한때 부진한 상태에 놓였다가, 성종 11년(992)에 비로소 국자감(國子監)을 세웠고, 문종 때에는 최충(崔冲)이 구재(九齋)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무관(武官)이 정권을 잡고 국내가 혼란스런 시기를 겪는 240년 간은 다시 침체 상태에 빠졌다가, 제25대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임금을 따라 중국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다녀오면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가지고 온 뒤 정부에 건의하여 국학(國學)을 세우고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하여 공자를 숭배하는 등 유교 부흥에 크게 힘썼다. 그는 또한 우리 나라에 주자학(朱子學)을 처음 수입하였으므로 주자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그의 제자에는 백이정(白頤正)·우탁(禹倬)·권

부(權溥) 등이 있는데 그들 모두 주자학을 부흥시키는 데에 힘썼으며 그 학문의 계통은 고려 말의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이숭인(李崇仁)·정몽주(鄭夢周) 등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그중에서 정몽주는 성리학에 정통하고 도덕과 경론(經論)도 일가(一家)를 이루어 동방리학(東方理學)의 시조라고 불리운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태조의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으로 유교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학자는 정도전(鄭道傳)이다. 그는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의 논설을 통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시대의 유학자 권근(權近)도 많은 저술로 이에 동조(同調)하였다. 한편 고려의 학자인 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종직(金宗直)은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우두머리이며 그의 제자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은 무오사화(戊午士禍)로 희생되었다. 유학계(儒學界)의 큰인물로서 이황(李滉)과 이이(李珥)가 있는데 그들 각각 퇴계(退溪) 학설의 주리파(主理派)와 율곡(栗谷) 학설의 주기파(主氣派)라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을 만들었다. 조선시대 말의 유학자들은 국제정보에 어둡고 유교의 정신을 망각하면서 정당(政黨)과 합세하여 보수주의와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민영환(閔泳煥)·안중근(安重根) 같은 유가들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대의(大義)를 이루었다. 한말(韓末)에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치밀어오는 일이 날로 심각하여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처음에 서양을 배척하는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쓰다가 후에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기세를 보이자 전국의 유자(儒者)들은 대부분이 척사위정(斥邪衛正) 운동을 일으켜 외세를 배격하자는 운동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그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일합병(韓日合併)과 동시에 소위 일본의 문화정책(文化政策)에 따른 일부의 유학자는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부설로 설치하여 공죄상반(功罪相半)의 기형적(畸形的)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3.1 운동 때에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진정서(儒林團陳情書)를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보내는 등 항일(抗日)에 가담하다가 8·15 광복을 맞고서는 전국 유

림의 의견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을 다시 성균관(成均館)으로 환원(還元)시키고, 1955년 전국 유림결합체(儒林結合體)인 유도회(儒道會)를 새로 결성하는 한편 성균관대학을 창설하고 유학 정신에 의한 새로운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중국의 유교사상(儒敎思想) 변천사(變遷史)

인간이 집단사회를 형성하려면 자연히 공통된 사상이 생기게 된다. 민족의 사상은 따라서 민족의 역사가 탄생되면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우 은(殷)나라 시대로부터 역사시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민족의 사상도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인간의 사색(思索)을 기록한 문헌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귀갑(龜甲; 거북이 껍질)이나 수골(獸骨; 짐승의 뼈)에 새겨진 문자 즉 점(占)의 기록을 통하여 제사(祭祀)나 조상숭배 사상의 일단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고대 기록은 오로지 유가(儒家) 등에 의해서 전해오는 경서(經書)를 통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주(周) 나라에 관한 역사는 믿을만한 기록이 있다. 곧, 이 시대에는 일찍이 하늘을 숭상하는 경천(敬天) 사상, 음양(陰陽) 사상, 오행(五行) 사상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천 사상은 주(周) 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뛰어난 인격과 개성을 바탕으로 하며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사상을 확립한 최초의 사상가는 B·C 5세기의 공자이다. 그 공자의 가르침을 전개한 사상가를 유가(儒家)라고 하여 최근까지 중국사회의 중심적 존재로 이어져 왔다. 공자보다 약간 뒤져서 B·C 3세기 경까지의 중국에 묵가(墨家)·명가(名家)·도가(道家)·법가(法家)·농가(農家)·종횡가(縱橫家)·음양가(陰陽家) 등의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 여러 사상가들이 제각기 사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제자백가(諸子百家)라 하며 사회변동에 따라 갖가지 사고력의 가능성을 보여 왔으나, 유가에 맹자와 순자(荀子)가 나타나면서 점차 그 영향을 받아 사라져 갔으며, 진(秦) 나라를 지탱

하였던 사상은 법가(法家)였다.

진 나라에서 한(漢) 나라 초기는 제자백가의 정리통합(整理統合) 시대로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와 같은 잡가(雜家)가 나타났으나,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에 동중서(董仲舒)의 건의에 따라 유학을 국학(國學)이라 하여 왕조(王朝) 정치의 이념으로 발전하여 유학이 이후의 체제(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사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체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유자적을 얻고자 한 것이 도가(道家)의 사상이었다.

후한(後漢) 시대에는 그 시대의 합리주의에 따라 새로운 주장을 펴려고 한 왕충(王充)과 같은 특이한 사상가도 나타났으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유가의 경서(經書)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정현(鄭玄) 등 소위 고문학과(古文學派)였다. 한편 이 시대에는 노장사상(老莊思想) 그리고 여기에 중국 재래의 민간신앙이 혼합하여 도교(道敎)가 일어났다.

위(魏)와 진(晉)의 왕조 권력이 교차하는 암흑기에는 체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귀족적 지식인들 사이에 노장사상이 유행하여 청담(淸談)이라 칭하는 노장적 추상의론(抽象議論)이 크게 성행하였다.

당대(唐代)에의 유학은 한대유학(漢代儒學)의 정리통합시기로서 『오경정의(五經正義)』와 같은 대저술(大著述)이 칙명(勅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한편 이 시대는 중국불교의 형성기이기도 하였다.

중국인이 관념적(觀念的) 사유(思惟)에 바탕을 둔 철학을 탄생시키고 대성(大成)시킨 시대는 송대(宋代)이다.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頤)에 의해서 형성되고 주희(朱熹)에 의해 대성(大成)한 이른바 송(宋)의 이학(理學) 또는 도학(道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사상에 유교적 관념론(觀念論)의 발상을 가미한 새로운 철학이었다.

우주 지배의 원리를 통하여 국가통치의 규율에서 개인의 도덕에 이르기까지를 일관하여 설파한 주자학은 드디어 국가권력의 중추를 이루고 정치철학으로서도 부동(不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는 객관

적 유심론(唯心論)에 대항한 것은 심즉리(心卽理)를 내세운 주관적(主觀的) 유심론(唯心論)의 입장에 선 육상산(陸象山)이었다. 이 육상산의 주장은 다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행동주의(行動主義)를 내세운 왕양명(王陽明)에게 계승되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송·원(宋元)의 사상은 주자학(朱子學)으로 대표되고 명(明)의 사상은 양명학(陽明學)으로 대표된다.

명말(明末)에 양명학이 공소(空疎)한 관념론적 경향을 강하게 내세우자 이에 비판하고 나선 황종의(黃宗義), 고염무(顧炎武) 등의 소위 명(明) 나라 원로들에 의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 명말(明末)로부터 청초(淸初)에 걸쳐서 새로이 대두하였다. 이는 과거 역사의 광범한 지식과 이해에 근원한 객관적 실증적인 학문으로 동림학과(東林學派)의 경세(經世)의 주장이나 기독교 선교사가 갖고 들어온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반만민족의식(反滿民族意識)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신학풍(新學風)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더욱 강희(康熙)·옹정(雍正)·건륭(乾隆)의 삼대(三代)에 걸쳐서 문자의 옥(獄), 금서(禁書) 등의 심한 사상탄압이 일어나자 점차 경세치용의 정신이나 만주족에 대한 감정도 사라지고 다만 실증적인 경향만이 발전하여 오직 고전(古典) 연구에만 집중케 되었다.

이리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결론을 끌어내는 일]를 바탕으로 한 훈고(訓古)와 주석(註釋)을 중시하는 고증학(考證學)이 청나라 중기에 크게 일어나 염약거(閻若據)·혜동(惠棟)·대진(戴震) 등 몇몇 학자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청조 고증학의 역사적 특징은 그 비정치적(非政治的) 성격에 있었으므로 청 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국내의 농민투쟁과 국외로부터의 서구 자본주의의 침입이라고 하는 내외의 위기가 고조되자, 이에 대응치 못하고 오히려 공자진(龔自珍)·위원(魏源) 등의 공양학과(公羊學派)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의 위기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강조하고 청조의 전제정치(專制政治)에 대한 모순을 비판하고 혁신을 제창하였다. 국내의 농민투쟁을 결집한 태평

천국(太平天國)의 혁명운동은 기독교의 대동(大同)적인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청조를 타도(打倒)하고, 농민들의 토지소유 실현을 기도하였으나 성공치 못했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이홍장(李鴻章) 등은 청조의 재건을 도모하고 서양의 근대적 기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추진하였다. 이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양무론자(洋務論者)는 서양학문과 중국의 전통적 정교(政敎)와의 조화를 위해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 ‘부회설(附會說)’을 주장하고 서양의 기계, 기술의 도입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1894~1895년]은 양무운동의 실패를 입증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선 서구 열강 및 일본에 의한 중국 분할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민족적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변법 유신운동(變法維新運動)이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공약학파의 강유위(康有爲)·양계초(梁啓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의회정치(議會政治)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의 실현을 목표로 무술변법(戊戌變法)을 단행하였으나 서태후(西太后) 등 보수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개혁운동의 실패는 손문(孫文) 등의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의해 청조의 전제(專制) 지배가 타도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중화민국 혁명의 지도이념은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로 그 추진세력은 중국 국민당(國民黨)이었다. 그러나 원세개(袁世凱)에 의해 시작된 군벌정권(軍閥政權)은 제국주의 여러나라와 결탁하여 혁명의 발전을 저지하였으므로 중국은 쉽게 반식민지 반봉건적(半植民地 半封建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혁명의 과제는 손문의 후계자로 등장한 장개석(蔣介石)의 국민정부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는 동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군벌정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5·4운동이 학생,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 10월혁명의 영향으로 중국공산당이 결성되고 이들은 항일전쟁의 과정에서 모택동(毛澤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이후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는 탄압되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다시 공자 숭배 사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3. 유가(儒家)의 사상(思想)

유가란 본래 춘추시대(春秋時代; B·C 770~403) 말부터 전국시대(戰國時代; B·C 403~221)에 걸쳐서 배출한 제자백가 중의 한 학파로서 공자를 그 조사(祖師)로 하고 있다. 유가의 이론은 한(漢) 왕조의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그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중요시되고, 중국의 정치사상 중에 정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조정치 체제가 존속되었던 2천년 동안 국가질서를 지탱하는 교학(敎學)[儒學]으로서 정경사상(正經思想)의 중심 자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 오랜 기간 유가는 시대의 정치상황이나 다른 사상과의 관계에 대응하여 그 내용을 변화·전개시키고 있다.

유(儒)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하여는 ‘유(柔)’를 뜻한다고도 하고 ‘수(須)[수(鬚)=턱밑수염]와도 통하여 ‘노인(老人)’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일정하지 않으나 묵가(墨家)나 법가(法家)와 같은 타학파(他學派)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름인 듯하다.

유가사상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으로 ‘자기 자신의 수양’에 전념하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며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수기(修己; 제 몸을 닦음, 수양함)란 개개인에 있어서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신장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은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에 있어서는 자기의 도덕성을 완성하려는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하여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小人)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다.

‘덕(德)’을 기르기 위하여 유가는 배우고(學) 알려고(知) 하는 것을 중시한다. 무엇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대상은 궁정(宮廷)에 보존되고 있는 옛 예악(禮樂)의 관습이나 고사(故事)를 전하고 있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의 고전이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전통을 배움으로써 그 형식에 따른 고인의 정

신을 익히려고 한다. 따라서 유가는 전통에 대하여 급격한 파괴를 원치 않는다. 전통적 형식을 지키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점은 ‘하늘(天)’이나 ‘귀신(鬼神; 死後의 靈魂)’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인간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늘의 위력(威力)이나 귀신의 재앙은 무시하고 있지만 유가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들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있다. ‘하늘’은 결국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며 귀신은 공경은 하지만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의 이상(理想)은 이와같은 제 몸을 닦는(修己)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大學)』에 있는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닦는(修身)’것으로 시작하여 ‘집안을 다스리고(齊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고르게(平天下)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배움의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은 어디까지나 다스리는 자 곧 치자(治者)를 위한 학문이다. 다스리는 자란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료를 포함한다. 그러한 치자의 자격을 갖는 계층에 대하여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이 다스려지는가를 설명하는 학문이 유학이다. 이에 중시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민을 심하게 통치하는 것보다, 교화에 의하여 치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화의 측면에서 갖추어진 학설을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보다 유교(儒敎)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교화의 학’으로서의 유교는 결코 개인의 정신적 구제(救濟)를 목적으로 한 종교와는 다른 것이다.

유가는 ‘사람을 다스린다(治人)’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그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자(治者) 계급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가 유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화하려는 선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무도(無道)한 정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비판을 가하는 일도 있으며, 왕조(王朝)의 교체를 혁명이론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역할도 한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갖는 유가사상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전국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타 학파의 심한 비판에 부딪혔다. 예를 들면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예악(禮樂) 등의 의례(儀禮)를 존중하는 학설은 겸애(兼愛), 상현(尙賢), 비락(非樂), 절장(節葬)을 주장하는 묵가(墨家)에 의해 비판되고, 인간의 도덕성에 신뢰의 기초를 둔 학설은 군주권력의 일원적(一元的) 강화를 바라는 법가에 의해 배격되었다. 또한 치자의 일원이 되어 이상적 정치실현에 매달리는 태도는 인위적(人爲的)인 노력의 한계를 헛되이 보려는 도가(道家)에 의해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비판이나 조소 가운데에 전통과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유가라고 하겠다.

유가사상은 또한 다른 학파의 비판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타학파 학설의 장점을 섭취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전국(戰國) 시대 말의 순자(荀子)는 법가나 도가의 이론을 교묘하게 유가의 체계에 받아들이고, 한대(漢代)의 동중서(董仲舒)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나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대의 요청에 따르는 이론을 만들어 냈다. 정치정세의 불안정이 계속되었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유가사상은 불교나 노장(老莊) 사상의 공격에 부딪혔으나 드디어는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한 유가 도통(道統)의 자각이 당대(唐代) 중기에 일어났다.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불교·노장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신유학(新儒學) 즉 성리학(性理學)이 성립되었다. 청말(清末)에 중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서양의 입헌군주제 등을 공양학(公羊學)의 체계에 끼워 넣어서 설명한 강유위(康有爲)의 학설이 출현한 것도 이상과 같은 유학사상의 자기운동(自己運動)의 한 전개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제3장 유교의 전래(傳來)와 그 성립(成立)

1. 유교의 전래(傳來)
2.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유교와 교육(敎育)
3. 통일신라(統一新羅) 시대의 유교와 국학(國學)

여 백

1. 유교의 전래(傳來)

유교는 분명히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에 들어온 외래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받아 들여져서 어떠한 변천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유교 발달사를 살피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언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종래에 이에 대한 몇몇 분의 견해가 있었으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지연(張志淵)은 그가 지은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에서 ‘기자(箕子)는 유자(儒者)의 종조(宗祖)이며, 그가 직접 조선에 와서 교화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유교 종조의 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는 기자의 동래설(東來說)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견해는 종래의 유학자들이 흔히 주장해 오던 바와도 같다.

이에 대하여 이병도(李丙燾)는 그의 『자료한국유학사초고(資料韓國儒學史草稿)』에서 기자의 동래설을 부정하고 ‘한(漢) 나라가 동방에 군현(郡縣)을 설치한 이래 낙랑(樂浪)이 중추가 되었고, 한인(漢人)의 관리와 장사꾼 기타 이민자들이 이에 왕래한 자가 매우 많아 본토인이 자연히 와서 이와 접촉하여 한(漢)의 문물이 또한 따라서 전파하여 유교사상과 문화도 반드시 대세에 따라 들어와 응당 지식계층이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삼국시대에 기원하였다는 설이다. 현상윤(玄相允)은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조선유학의 기원이란 절(節)에서 ‘조선에 유교가 전래한지 그 연대가 심히 오렐 것이다. 그러나 문헌이 없어서 오늘날 이것을 알아볼 길이 없고 오직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며 우리나라에 국자학을 건설한 것이 조선유학의 기원이 된 것 뿐’이라 하고 이어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어 놓았다.

이와 같이 보면 대체로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유교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심지어는 공자 이전의 기자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유교의 형성에 은(殷)·주(周)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립된 사상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 이전에 유교가 수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유교의 기원은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는 고구려에서 태학을 설립했던 소수림왕 2년(372)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유교가 전래했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교가 유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 무렵이라고 하는데서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뿐이다. 유교의 기원은 한자(漢字)의 전래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준 삼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유교와 교육(教育)

우리나라 유교의 기원을 고구려 시대 태학의 설립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유학에 관한 기록은 유교 교육기관과 크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교학(敎學)과의 관련에서 유교가 변천하여 왔다고 할 정도이다.

우선 태학의 설립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372) 6월에 ‘태학을 세우고 자제(子弟)를 교육하였다(『삼국사기』 권18)’고 한데서 비롯된다. 태학은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세운 오늘의 국립대학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곳에 박사를 두고 가르치게 하였다는데, 영양왕(嬰陽王) 11년(600) 정월에 태학박사 이문진(李文眞)이 왕명(王命)에 의하여 고사(古史)를 간추려서 『신집(新集)』 5권을 만들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박사는 교수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초기에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를 100권으로 기술(記述)하여 『유기(留記)』라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그것을 수정했다고 하였다.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고구려 초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바로 우리나라에 한문이 들어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를 알리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역사책인 『유기』 100권을 저술하고 이것을 간추려서 『신집』 5권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곧 『유기』는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이며, 이 무렵부터 유교도 전하여졌을 것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서울에 세운 태학 이외에 지방에 편당(扁堂)이라는 교육기관을 두었다. 『구당서(舊唐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그 나라 풍습은 책 읽기를 사랑하여 누추한 집과 땀나무나 하는 집에 이르기까지 각기 길거리에 큰집을 지어 이를 편당(扁堂)이라 하고 자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밤낮으로 여기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고 하였다. 또 『신당서(新唐書)』 「고구려전」에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길거리의 시원찮은 집에 이르도록 역시 서로 권장하여 길거리 구석구석에 모두 집을 짓고 편당(扁堂)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혼인하지 않은 자제가 모이는 장소로서 경(經)을 외우고 활 쏘기를 익혔다’고 하였다. 이 두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혼 자제들이 책을 읽고 활을 쏘았다는 데는 같다. 또한 경(經)을 외웠다고 하는 데 아마도 유교경전을 가르쳤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아 태학은 중앙의 귀족자제들의 교육기관이었음에 반해 편당은 지방의 평민자제들의 교육기관이며 국립이 아닌 공립 또는 사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편당에서는 활을 쏘았다고 하는데서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무술을 익혔던 특수 교육기관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고구려는 이와 같이 태학과 편당을 통하여 불교와 함께 말기까지 융성하게 발전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에 교학기관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박사의 칭호를 가진 인물이 기록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도 태학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近肖古王) 30년(375)조에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로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박사 고흥(高興)을 얻어서 비로소 『서기(書記)』를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박사 고흥은 고구려의 이문진과 같은 태학의 교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에서는 중국에서 박사를 초청해 온 일도 있다. 『양서(梁書)』 「백제전(百濟傳)」

에는 『모시(毛詩)』 박사를 초청하였다고 하였으며 『진서(陳書)』 「장애전(張崖傳)」에는 ‘양나라 때에 백제국이 표(表)를 올려 강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태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백제는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 때 아직기(阿直岐)를 사신으로 일본에 보내어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이어 박사 왕인(王仁)이 건너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고 경사(經史)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백제의 무령왕(武寧王)은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陽爾)와 고안무(高安茂)를 일본에 보냈으며 성왕(聖王)도 오경박사·역박사(易博士)·역박사(曆博士)·의박사(醫博士) 등을 일본에 보내어 유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술,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불교도 일본에 전하여 소위 일본 비조문화(飛鳥文化) 형성의 바탕을 이룩하였으니 백제 유교의 성장은 매우 활발하였다고 하겠다.

신라에는 삼국시대 통일 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학교가 없었다. 신라에 국학이 선 것은 통일 뒤인 신문왕(神文王) 2년(682)이었다. 그러나 신라에는 당시 화랑도가 있었다. 이것이 유교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기능을 지니고는 있었다. 즉 고구려의 편당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화랑도 교육 이념의 한 모습을 보이는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는 분명히 충·효·신(信)이 포함되어 유교적인 바탕사상이 들어있음에 주목된다. 또한 화랑도는 편당과 같이 미성년자들의 집회라는 데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성년들이 지녀야 할 자격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으며, 그 기능 중 도의(道義)가 중요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군사적인 훈련도 그 일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교육의 기능은 당시 사회의 규범이 중시된 것이라기보다 유교적인 도덕이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인 교육이 그 중심을 이루고 이는 청년단체와 유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곧 세속오계(世俗五戒)에서 말하는 덕목과 같다. 이러한 덕목은 또한 당시의 사회적 국가적인 목표이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교육된 자들에 의한 삼국통일의 기틀이 조성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유교는 아직 그 자신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고유한 전통적인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발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유교는 분명히 외래사상이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수용 그 자체가 사회적·국가적인 어떠한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전반적인 올바른 이해를 위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통일신라(統一新羅) 시대의 유교와 국학(國學)

삼국시대에는 유교가 사상계에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신라에 의한 통일국가 시기에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즉 이 시기 유교는 일정한 사상 체계를 갖추고 성장하여 고려시대로 계승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는 한국유교의 성립기라고 할 것이다.

신라는 통일시대에 들어오면서 뚜렷한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그 최초의 인물이 강수(强首)이다. 『삼국사기』 「강수전(强首傳)」에 의하면 강수는 그의 아버지 석체(昔諦)가 ‘불교를 배우겠는가, 유교를 배우겠는가’고 질문한데 대하여 ‘제가 듣기로는 불교는 세외(世外)의 교(敎)라 합니다. 저는 세간 사람이오니 어찌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유교의 도를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분명히 유학자로서의 길을 목표로 정하고 학문의 길을 정진한 뚜렷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의 유명한 설총(薛聰)이 스스로 유학자로 자처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을 읽어 가르쳤다고 하니 분명한 유학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현종(顯宗)은 그의 사후 홍유후(弘儒侯)라고 시호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유가로서 최치원(崔致遠)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敎)에 모두 넘나든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자기 스스로 ‘유문(儒門) 말학(末學)’(『삼국사기』 46 「최치원전」)이라고 하여 유학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위의 세 사람은 유학

자로서 고려 시대에도 이들을 모두 유학자로 다루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 3인 중 강수는 중원경(中原京) 사량인(沙梁人)으로 『삼국사기』의 「강수전」에 기록하고 있다. 즉 오늘의 충주(忠州)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임나가야인(任那加良人)이었다고 하며 무열왕(武烈王)도 그를 임생(任生)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임나가야인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나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뒤 그 귀족들은 이주정책에 의해 중원 소경(中原小京; 忠州)으로 이동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바로 충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평가 되어도 좋을 듯하다.

이 밖에도 유학의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문무왕(文武王)의 아우인 김인문(金仁問)이 있다. 또 「강수전」의 말미에 『신라고기(新羅古記)』에 이르기를 문장은 강수(強首)·제문(帝文)·수진(守眞)·양도(良圖)·풍훈(風訓)·골번(骨番)이라고 하였으나, ‘제문 이하는 그들의 사실(事實)이 없어졌으므로 전(傳)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강수와 더불어 문장가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다. 모두가 유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교는 어떤 근거에서 성장하여 갔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는 ‘국학조(國學條)’가 있어 주목된다. 국학은 신라 유교의 아성(牙城)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국학조를 옮겨 본다.

국학은 예부(禮部)에 속한다. 신문왕(神文王) 2년에 설치하였는데 경덕왕(景德王)이 태학감(大學監)으로 고쳤으나 혜공왕(惠恭王)이 다시 그전대로 하였다. 경(卿)은 1인(一人)이다. 경덕왕(景德王)이 사업(司業)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다시 경(卿)으로 일컬었다. 관등(官等)은 다른 경(卿)과 같다.

박사(博士)와 조교(助教; 若干人으로 數는 정하지 않았다)가 있다.

대사(大舍)는 2인(二人)이다. 진덕왕(眞德王) 5년에 두었는데 진덕왕이 주부(主簿)로 고쳤으며 경덕왕이 다시 대사(大舍)로 일컬었다. 관등은 사지(舍知)에서 내마(柰麻)까지로 하였다.

사(史)는 2인(二人)이다. 혜공왕은 원년(元年)에 2인을 더하였다.

교수(敎授)하는 법은 『주역』 『상서(尙書)』 『모시(毛詩)』 『예기(禮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선(文選)』으로 나누어 학업을 닦게 하였는데 박사나 조교 1인(一人)이 『예기』 『주역』 『논어』 『효경』을 가르치고 혹은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을 혹은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가르쳤다.

여러 학생의 독서에는 3품 출신(三品出身)의 법이 있다. 곧 『춘추좌씨전』이나 『예기』나 『문선』을 읽어 그 뜻을 잘 통하고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하고, 『곡례(曲禮)』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하고, 『전례(典禮)』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되, 만일 오경(五經)·삼사(三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을 능히 통달한 자가 있으면 발탁해서 등용한다. 혹은 산수박사(算數博士)나 조교(助教) 1인(一人)을 명하여 철경(綴經)·삼개(三開)·구장(九章)·육장(六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모든 학생은 대사(大舍) 이하에서 무위(無位)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정하며,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 모두 학업에 종사케 한다. 9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만일 재질이 둔하여 실력이 향상되지 못한 자는 퇴학시킨다. 재주와 능력은 있으나 미숙(未熟)한 자는 9년을 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게 하며, 등위(等位)는 대내마(大柰麻)나 내마(柰麻)에 이르면 다음 내어 보낸다.”

이상에서 보건대 국학에는 경(卿; 學長級)·박사·조교·대사(大舍)의 관직이 있었으며, 대사는 진덕왕 5년(651)에 처음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해에는 신라의 관리제도가 정비되는 집사부(執事部; 국가의 기밀과 백성을 맡아보는 최고의 행정기관)가 설치되는 해로 김춘추(金春秋)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이에 앞서 진덕왕 2년(648)에 당 나라에 들어가 당의 국학에 가서 석전(釋典)과 강론(講論)을 참관하고 돌아왔으므로 국학 설치의 준비작업도 아마 그의 건의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학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은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의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 무렵에 생존하고 있던 강수(強首)와 설총(薛聰)은 국학 설치에 크게 공헌했으리란 추측이 간다. 특히

설총은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을 읽어 후생(後生)을 가르쳤다.’고 하였는데 그 후생이 바로 국학의 학생들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이다. 이는 국학의 학생을 상대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목에 대한 시험제도라고 하겠다. 일종의 과거제도 또는 관리 등용 시험제도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이 시험을 거쳐야 일정한 지위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서 일정한 관직이 수여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의 유교는 도덕지상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당시의 유교 교육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강수는 스승으로부터 『효경』·『곡례』 『이아(爾雅)』 『문선』 등을 배웠다고 하였다. 『효경』이란 인륜(人倫)의 근본이 효(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다. 『곡례(曲禮)』는 『예기(禮記)』의 머리편으로 길(吉)·흉(凶)·빈(賓)·군(軍)·가(嘉)의 오례(五禮)에 관한 것을 간곡(懇曲)히 설명한 것이다. 『이아』는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며, 『문선』은 유명한 문학선집(文學選集) 혹은 문학독본(文學讀本)으로 당(唐)나라 이래로 과거공부의 교과서와 같이 존중되어 오던 책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유교적인 실천도덕과 문학의 두 분야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강수가 받은 유교교육의 중심은 도덕에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학의 교수 과목과 독서삼품과의 시험 과목에도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다.

국학의 교수 과목은

예기·주역·논어·효경

춘추좌씨전·모시·논어·효경

상서(尙書)·논어·효경·문선

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학에서 『논어』와 『효경』은 필수과목이며, 거기에 오경(五經)과 문선이 더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학(經學)이 주가 되고 거기에 문학이 부수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학의 교수 과목과 비슷하면서도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이다.

하품(下品) : 곡례(曲禮) · 효경

중품(中品) : 곡례(曲禮) · 논어 · 효경

상품(上品) : 춘추좌씨전 · 예기 · 논어 · 문선

특품(特品) : 오경(五經) · 삼사(三史) · 제자백가(諸子百家)

이 독서삼품과의 특징은 하품에서 특품으로 이르는 순서가 기본적인 과목에서 점차 광범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곡례(曲禮)』와 『효경』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는 강수가 배운 도덕관계 서적과 일치하고 있으며, 중품(中品)에서 『논어』가,上品(上品)에서 비로소 충(忠)의 대의(大義)를 강조하는 『춘추(春秋)』와, 문학서인 『문선』이 추가되고 있으며, 특품에서는 더욱 광범한 지식의 소유가 그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지식에 큰 관심이 쏠리고 이에 문학이 첨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유교의 사상은 한자(漢字)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한자가 곧 유학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겠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오기까지는 대개 유자(儒者)와 문사(文士) 사이에는 크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였다. 유자(儒者)라면 문학에도 통하고 문사(文士)이면 유교사상에도 젓개꿈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성덕왕 16년(717) 9월에는 건당대감(遣唐大監) 김수충(金守忠; 王子)이 당(唐)에서 유학의 종조(宗祖)인 문선왕(文宣王; 孔子)을 비롯하여 십철(十哲) 곧 ‘공자의 제자 중 안연(顏淵) · 민자건(閔子騫) · 염백우(冉伯牛) · 중궁(仲弓) · 재아(宰我) · 자공(子貢) · 염유(冉有) · 자로(子路) · 자유(子游) · 자하(子夏)’와 칠십이제자(七十二弟子; 공자의 제자 중 육예(六藝)에 통한 자) 등의 도상(圖像)을 가져와서 왕에게 바치니 왕은 이것을 태학(大學) 곧 국학에 안치하게 하였다. 국학이야말로 유교 교육의 본당(本堂)임을 말한다고 하겠으며, 국학에 공자상(孔子像)을 모신 시초이기도 하며,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문선왕묘(文宣王廟) 즉 문묘(文廟)의 시초이기도 하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제도와 문물이 거의 정비되어 갔다. 경덕왕 6년(747)에 국학에 제업박사(諸業博士)와 조교를 두었다. 제업박사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 후 천문(天文)박사·누각(漏刻)박사·율령(律令)박사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술자 등도 국학에서 양성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경덕왕 때에 국학을 태학감(太學監)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연도는 확실치 않다. 다음의 혜공왕 때에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혜공왕 원년(765)에 태학에 행차하여 박사에게 『상서(尙書)』를 강의하게 하고 12년(776)에는 국학에 나아가 청강(聽講)하였다. 이는 왕이 국학에 나아간 선례(先例)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문왕(景文王) 3년(863)과 헌강왕(憲康王) 5년(879)에도 기록이 보인다. 얼마나 신라에서 유학을 존중하였는가를 알게 하는 사례라 하겠다.

신라 말기에 이르면서 당나라 유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익히고 돌아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崔致遠)이었다. 이들은 국학에서 익히기보다는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는 방향으로 학문의 길을 새로이 내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들이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진성여왕(眞聖女王)」 3년조에 보면, ‘장경(長慶) (821-824) 초(初)에 김운경(金雲卿)이 처음으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는데, 빈공과란 것은 매년 별도로 시험을 보아 과거 합격자 명단 끝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김운경 이후 당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합격한 자가 58명이고, 오대(五代)의 양(梁)·당(唐) 때에도 32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지게 이름이 알려진 자는 최이정(崔利貞)·김숙정(金叔貞)·박계업(朴季業)·김운부(金允夫)·김립지(金立之)·박량지(朴亮之)·이동(李同)·최영(崔甕)·김무생(金茂生)·양영(楊穎)·최환(崔渙)·최광유(崔匡裕)·최치원(崔致遠)·최신지(崔愼之)·김소유(金紹游)·박인범(朴仁範)·김악(金渥)·최승우(崔承祐)·김문울(金文蔚) 등인데 모두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박인범은 시(詩)로 이름이 났고 김악은 예(禮)로 이름이 났는데, 최치원·최신지·최승우가 가장 뛰어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유학자가 거의 동시에 배출된 것은 우리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당나라의 국학에서 유교를 토대로 하여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모두 유학자들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최치원·최신지·최승우는 신라(新羅)의 삼최(三崔)라고 하여 유명하다. 충주(忠州)에는 최신지가 찬(撰)한 법경대사 자등탑비(法鏡大師慈燈塔碑)가 중원군(中原郡) 동양면(東洋面) 하천리(荷川里)에 있어 관심이 간다. 이는 18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급제하고 벼슬하다가 42세에 귀국하여 고려태조 태자사부(高麗太祖 太子師傅)가 되고 문한(文翰), 한림원령(翰林院令), 평장사(平章事)를 지냈다.

여 백

제4장 고려시대의 유교와 교학(敎學)

1. 태조(太祖)의 치국이념(治國理念)
2. 과거제도(科擧制度)
3. 국자감(國子監) — 성균관(成均館)
4. 유학의 융성(隆盛)과 사학(私學)
5. 향교(鄕校)와 장학(獎學)
6. 동서학당(東西學堂)과 5부학당(五部學堂)
7. 문묘(文廟)의 설치
8. 성리학(性理學)의 전래

여 백

1. 태조(太祖)의 치국이념(治國理念)

우리나라의 유교는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한층 성장 발전하게 된다. 통일신라기가 유교가 성립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고려시대는 유교의 체계가 형성되는 성장 발전기라고 할 것이다.

고려는 초기부터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재의 등용을 위한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신라시대의 유풍(遺風)에 따라 유가(儒家)와 문사(文士)의 구별이 뚜렷하지는 못하였다. 13세기 초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유자(儒者)와 일반 문사(文士)의 구별이 점차 분명하게 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면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사의 기습(氣習)이 정화(淨華)함에 대하여 유자의 기풍은 도의(道義)에 치중하여 착실(着實)·돈후(敦厚)하여 갔음에서 알게 한다.

원(元)나라의 세조(世祖)도 고려의 유자와 중국의 유자를 비교하여 ‘고려는 작은 나라지만 기술이나 바둑도 모두 한인(漢人)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유인(儒人) 같은 경우에는 경서(經書)를 통달하고 공자 맹자를 배우는데 한인은 오직 부(賦)만 짓고 시(詩)나 읊조리니 장차 무엇에 쓰겠느냐’고 한테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유자들이 대개 읊풍농월(吟風弄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려인은 경서(經書)를 통달하고 공자 맹자를 배워 도의를 숭상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였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보아 흥미있다.

고려 태조는 자주적인 의지로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호국불교의 사상에 입각하여 불교를 크게 믿었으나 나라를 다스리거나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으로는 유교에 그 바탕을 두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는 즉위하던 해에 재빨리 평양을 주요 도시로 생각하였다. 그것은 북진정책의 일환이었다. 황주·봉성·해주·배천·연안 등 주변 고을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고, 대도호부(大都護府)를 두어 그의 도제(徒弟)인 왕식렴(王式廉)

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뒤이어 이름을 서경(西京)이라 하여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관부(官府)와 성곽(城郭)을 만들었다. 특히 서경에 학교를 세우고 수재(秀才) 연악(延鶚)을 서학박사(書學博士)로 삼고 육부(六部)의 생도(生徒)를 가르치게 하였다. 또 의학(醫學)과 점복(占卜) 두 과(科)를 두었다. 그리고 곡식(穀食) 100석(百石)을 주어 학보(學寶)를 만들어 학교운영의 기금으로 삼게 하였다. 보(寶)는 우리말(方言)인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식(利息)으로 영구히 운영하게 하는 기초 재단(財團)과 같은 것이다. 바로 태조는 유교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였던 큰 뜻이 그 건국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경(開京)에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나 서경에만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개경에도 같은 목적의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태조는 본래 무인(武人) 출신이므로 그의 창업초기에는 주로 무신을 등용하여 정치를 하였으나 통일의 업적을 이룬 뒤에는 국가의 문물제도를 세우는 데는 유신(儒臣)과 문사(文士)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응(崔凝)·박유(朴儒; 임금에게 성을 받아 왕유라고 불렸다) 같은 궁예(弓裔)의 옛 문신(文臣)들과 최언휘(崔彦擣; 초명은 최신지) 같은 신라계통의 유신들을 등용하여 정치에 참여케 하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최언휘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신라 말기 3최(三崔) 중 1인으로 충주에 그의 유적이 남아있다.

태조는 죽음에 앞서 그의 자손에게 ‘훈요십조(訓要十條)’란 유언을 남겼다. 이 내용은 불교의 숭상과 풍수지리설에 바탕을 둔 사상이라고 하겠다. 이 중 7조와 10조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통치이념과 방법을 말한 것이다. 즉,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에 정치의 근본을 두고 어진 정치를 베풀 것이며, 아무 일이 없을 때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경전(經典)과 역사책을 보아 거울 삼으라 한데서 알 수 있다.

2. 과거제도(科擧制度)

관리의 등용시험에는 이미 신라의 원성왕(元聖王) 때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라 하여 과거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정식 과거제(科擧制)는 고려 광종(光宗) 때에 이르러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광종은 후주(後周)에서 귀화(歸化)하여 온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그 9년(958)에 처음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고려 전시대와 조선 시대 말기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선거지(選舉志)」가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 과거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방법은 매년 지방관(地方官)이 과거 시험 지망자를 문선왕묘(文宣王廟)에서 시험을 보아 1인 내지는 3인 정도를 선발하여 공사(貢士)라고 하여 이들을 중앙(中央)에 보낸다. 이들을 진사(進士)라고 하였다. 그 수는 약 4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중앙의 국자감(國子監)에서는 다시 이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이를 감시(監試)라고 한다. 감시에 급제한 합격자는 정해진 수가 없이 급제자는 갑을병(甲乙丙)으로 삼등분(三等分)하였다.

진사 시험은 제술(製述; 시문(詩文)을 주로 한다), 명경(明經)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밖에 제업(製業)이라 하여 의(醫)·복(卜)·지리(地理)·율(律)·서(書)·산(算) 등의 시험도 시행하였다.

선종은 원년(1084)에 다시 조서를 내리어 진사과 제업 시험을 3년에 1회로 하라고 명하였으며, 현종(1095)부터는 제술·명경 등 모든 과의 감시를 2년에 한 번 뽑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년 시행한 것 같다.

의종 때 무인(武人)들이 정치의 실권을 잡았지만 과거는 빠짐없이 시행하였으나 그 법은 매우 문란하였다. 특히 이상한 것은 무과(武科)이다. 무과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가 고려 말기인 공민왕 원년(1353) 4월에 진사 이색(李穡)이 상서(上

書)하여 무과 과목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양왕 2년(1391)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무과 시험을 건의하여 왕의 윤험을 받았으나 시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고려에서는 문과를 중요시하였다. 그는 곧 유학에 근본을 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를 관장하는 관직은 지공거(知貢舉)라 하여 쌍기가 처음에 이 임무를 맡았다. 이후 문관(文官) 1인을 이 직책에 임명하고 차관급(次官級)을 동지공거(同知貢舉)라 하였다. 기타 시험관은 통틀어 학사(學士)라고 불렀다.

과거에 급제한 자는 홍패(紅牌; 붉은 종이에 쓴 증서)를 주고 일정한 논밭을 지급하고, 또한 국왕이 친히 이들을 만나보고 술이나 밥, 옷가지 등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특히 형제 3자(兄弟三子)까지 과거에 급제한 경우 부(父)에게도 직위를 주고, 그 모(母)에게는 매년 30석을 관청에서 보내주어 표창하는 특전도 있었다.

『삼국사기』를 엮은 김부식(金富軾) 형제는 4명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그 모친(母親)에게는 정해진 규정보다 쌀 10석을 더하여 40석을 하사(下賜)한 예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급제는 실로 남자로서는 제일의 명예로 알았던 것이다.

이 밖에 경종(景宗) 원년(976)에는 김행성(金行城)이 송나라에 갔다. 그는 국자감(國子監; 국학)에 입학한지 2년 만에 송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로부터 송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합격한 자도 적지 않았다. 원(元)나라 때에도 그 곳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관리에 등용된 사람도 있었다.

3. 국자감(國子監) — 성균관(成均館)

고려시대의 교학제도는 태조 때에 서경 곧 평양과 개경 곧 개성에 학교를 설치한 이후 역대 왕들은 교육과 학문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제대로 정비되기는 성종(成宗) 때의 일이다. 즉 중앙에는 국자감(國子監; 太學)과 동서(東西)

학당(學堂)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교육기관의 바탕으로 삼았다.

『고려사』에 의하면 성종 11년(992) 12월에 국자감 설치를 위한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다음과 같다.

“임금이 천하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는 학교가 우선이다. 요순(堯舜)의 풍습을 계승하고 주공(周公)의 도(道)를 닦으며, 나라의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예절을 판별해야 하는데 어진 사람이 아니면 어찌 이런 법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늘을 헤아리고 땅을 개척하며 나라를 보전하고 공로를 세우는 일을 장려해야 할 것이지 잠시라도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창업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문(文)을 잘 지켜 흥성하였다. 과인이 임금 자리에 오른 뒤 구류(九流; 유가·도가·법가(法家)·명가(名家)·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잡가(雜家) 등 학술 유파(學術流派)의 학설을 밝히고, 사술(四術; 시(詩)·서(書)·예(禮)·악(樂)의 대학의 학과 과정)의 문호(門戶)를 넓게 열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을 일깨워 학교에 들어가게 하라. 학교에는 경서를 가지고 오는 선비가 저자거리처럼 많게 하여 과거 시험을 치루어 재주를 비교하고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많으나 급제자는 아직 적다. 이는 배울만한 학교가 없고 학업이 미숙한 탓이다. 이에 담당 부서에 시켜 좋은 곳을 골라 학교를 세우고 논밭을 주어서 이들에게 쇠붙이를 단련하여 참되게 하고 옥(玉)을 갈아서 멋진 그릇을 만들 듯 할 것이니 모든 유신(儒臣)들은 나의 뜻을 잘 알아 달라.”

하고 국자감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실이다. 그러면 국자감은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자.

당(唐)나라의 국자감은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대학교육을 비롯하여 귀족교육 및 전문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당서(舊唐書)』 「직관지(職官志)」에는 ‘국자감에는 육학(六學)이 있다. 1에 국자학, 2에 태학(太學), 3에 사문학(四門學), 4에 율학(律學), 5에 서학(書學), 6에 산학(算學)’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인종(仁宗)(1123~1146)

때에 식목도감(式目都監)이 상정(詳定)한 학교 규정에 의해 알 수 있다.

“국자학의 학생은 문무관(文武官) 3품 이상의 자손 및 훈관(勳官) 2품대현공(二品帶縣公) 이상과 경관(京官) 4품대(四品帶) 3품(三品) 이상 훈봉자(勳封者)의 아들로 한다.”

“태학생(太學生)은 문무 5품(五品) 이상의 자손 또는 정종3품(正從三品)의 증손(曾孫) 및 훈관(勳官) 3품(三品) 이상 유봉자(有封者)의 아들로 한다.”

“4문학생(四門學生)은 훈관(勳官) 3품(三品) 이상, 무봉(無封) 4품(四品), 유봉(有封) 및 문무관(文武官) 7품(七品) 이상의 아들로 한다.”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및 주현(州縣) 학생은 모두 8품(八品) 이상의 아들 및 서인(庶人)으로 한다. 7품 이상의 아들로써 청원(請願)하는 자는 받아들인다”

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국자감은 6학(六學)으로 되었으므로 경사육학(京師六學)이라 한다. 또한 문무관(文武官)의 자제를 대략 신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자학으로부터 태학(太學), 사문(四門), 율(律)·서(書)·산(算)의 기능적 전문학부의 순서이다.

학생들의 정원은 인종(仁宗) 때의 규정에 의하면 국자학·태학·4문학에 각각 300명으로 하며 연령순으로 재학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잡로(雜路) 및 공(工)·상(商)·악(樂) 등 천(賤)한 일을 하는 자와, 대소(大小) 공친(功親)간에 혼인한 자와, 가도부정(家道不正)한 자, 악역(惡逆)을 범하여 귀향(歸鄉)한 자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자감·태학·4문학에는 다 박사와 조교를 두었으며, 이들은 반드시 경서(經書)의 지식이 풍부하고 덕행(德行)이 높아 능히 스승이 될 만한 자들을 택하였다. 그들은 경서를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데 한 경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강(講)을 받는다. 강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없다. 연말에는 강의한 분량을 계산하여 박사와 조교의 성적을 정한다고 하였다.

올학·서학·산학에는 각각 박사만을 두고 올학 박사는 올령(律令)만을, 서학(書學) 박사는 팔서(八書)를, 산학(算學) 박사는 산술(算術)을 가르쳤다.

경서는 『주역』 『상서』 『주례(周禮)』 『예기』 『모시(毛詩)』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각각 일경(一經)으로 하고,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를 반드시 겸해서 통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연한은 『효경』 『논어』는 합 1년으로 하면서 다른 경전보다 먼저 배워야 했다. 『상서』 『공양전』 『곡량전』은 각 2년 반, 『주역』 『모시』 『주례』 『의례(儀禮)』는 각 2년, 『예기』 『좌전』은 각 2년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공부하면서 시무책(時務策)을 학습하여야 했으며, 여가가 있으면 매일 글씨를 한 장씩 쓰고 또 『국어(國語)』 『설문(說文)』 『자림(字林)』 『삼창(三倉)』 『이아(爾雅)』를 읽어야 했다.

성종(成宗)은 때로 여러 주현(州縣)에 영(令)을 내려 자제를 뽑아 서울에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였다. 성종 6년(987)에는 12목(牧)에 경학박사·의사박사 각 1명씩을 보내어 지방의 학생(국자감 학생)과 자제를 가르치게 하였다. 성종은 또한 한(漢)나라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지방관(地方官)에게 명령을 내려 그 지방에서 ‘뜻을 가다듬고 경학에 밝아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올려 보내도록 하고, 이것을 항상 시행하도록 정했다. 성종 9년에는 서경(西京)에 수서원(修書院)을 두고 제생(諸生)에게 서적(書籍)을 베끼게 하는 등 지방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예종(睿宗) 4년(1109)에 국학에 7재(七齋)를 두고 문무 학생 78명(儒學生 70명·武學生 8명)을 시험 보아 선발하여 나누어 배치하였다. 칠재는 육경(六經)이나 무학(武學)과는 별도로 된 것으로서 『주역』의 여택(麗澤), 『상서』의 대빙(待聘), 『모시』의 경덕(經德), 『주례(周禮)』의 구인(求仁), 『대례(戴禮)』의 복옹(服膺), 『춘추』의 양정(養正) 등 6재(六齋)와 무학(武學)에 강의재(講義齋)를 말한다. 예종 14년 국학에 양현고(養賢庫)를 두고, 다시 학사(學舍)를 넓혀 학자양성에 힘썼다. 또한 예종은 일찍이 영을 내려 삼경(三京)·팔목(八牧)의 통판(通判) 이상과 지주사(知主事), 현령(縣令)으로서 문과출신인 자는 학사(學事)를 겸해서 관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학문을 중요시여기는 풍조가 크게 떨쳤으며

로 이를 지방학교의 제도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의 지방학교는, 이미 언급한 대로 태조가 서경에 학교를 세웠으며, 성종 때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보내 지방 학생을 가르친 일 등으로 보아, 인종(仁宗) 때에 이르러서 주군(州郡)의 학교가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종(仁宗) 11년(1133)에 무학(武學)과 무학재(武學齋)를 잠시 폐지한 것으로 보아 학문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으며 그것은 유학을 크게 장려하는 한 가지 예(例)라 하겠다.

국자감은 성종 때에 창립되어 약 190년간 유지되다가 충렬왕(忠烈王) 때에 국학이라고 바꾸어 불렀다. 이로부터 약 20년을 지나서 충선왕(忠宣王) 때에 성균관이라 바꾸었다. 다시 약 60여년이 지난 공민왕(恭愍王) 때에 국자감이라 불렀으나 얼마 뒤에 다시 성균관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고려 말까지 성균관이라 불렀으며,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균(成均)이란 주례에 ‘대사악(大司樂)은 성균(成均)의 법(法)을 장악하고 건국(建國)의 학정(學政)을 다스리며, 나라의 자제(子弟)를 합(合)함’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유학의 융성(隆盛)과 사학(私學)

고려시대 전기라고 할 현종(顯宗)때까지는 거란(契丹)의 침략 등 외환(外患)으로 시달렸던 시대였다. 그러나 현종 중기 이후 왜구의 침략이 그치고 평화가 계속됨에 따라 문풍(文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문종(文宗) 때에 이르러서는 크게 문풍과 유학이 융성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문종은 본래 학문을 좋아하여 유신(儒臣)을 임용하고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둘째로는 최충(崔冲)이 사학(私學)의 바람을 크게 일으켜 후진을 교육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최충은 일찍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데 학도(學徒)가 거리에 넘쳤다고 한다. 최충은 악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名)·경업(敬業)·조도(造道)·솔성(率性)·진덕(進德)·대화(大和)·대빙(待聘) 등 구재(九齋)에 그들을 나누어 가르치니, 세상에서는 이를 최충의 구재(九齋)라 하고 시중(侍中) 최공도(崔公徒)라고 불렀다.

하여튼 과거에 응하려는 자는 먼저 무리 가운데에 예속(隸屬)하려 메웠으며, 매년 여름에는 귀법사(歸法寺)의 승방(僧房)을 빌어 여름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서 학문이 우수하며 급제하고도 벼슬길로 나가지 아니한 자를 뽑아 교도(敎導)를 삼아 구경(九經)·삼사(三史)를 가르치게 하였다. 최충이 죽은 뒤에도 과거를 보려는 자는 대개 이름을 구재(九齋)에 두었는데, 이들을 문헌공도(文憲公徒)라 일컬었다. 문헌은 최충의 시호(諡號)이기 때문이다.

최충(984~1068)은 자를 호연(浩然), 호는 성재(惺齋)·월포(月圃)·방회재(放晦齋)라 하고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목종(穆宗) 8년(1005) 갑과(甲科)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올라 정종(靖宗) 때에는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고, 문종(文宗) 초에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도병마사(都兵馬使)가 되었다. 큰 흉년(凶年)이 들었을 때 서북지방 백성 등이 부역에 시달리자 이를 금지케 했으며, 동여진(東女眞)의 변경침입에 대해 강경책을 쓰도록 주장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문종 7년(1053)에 중서령(中書令)으로 퇴관(退官)한 후로는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며 구재(九齋)를 설치해 우수한 제자를 많이 배출하였던 것이다. 시호를 문헌(文憲)이라 하고 정종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였다가 후에 성종 묘정에 함께 모셨다. 그는 교육을 크게 진흥시켜 당시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대학자였다.

이 밖에 당시 유신(儒臣)들 가운데에는 최충의 구재를 본받아 문도제자를 모아 가르치던 자가 11분이 있었다. 곧 시중(侍中) 정배계(鄭倍禊)의 홍문공도(弘門公徒; 웅천도(熊川徒)라고도 함), 참정(參政) 노단(魯旦)의 광헌공도(匡憲公徒), 최주

(祭酒) 김상민(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복야(僕射)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시랑(侍郎) 은정(殷鼎)의 문충공도(文忠公徒), 평장(平章) 김의진(金義珍), 낭중(郎中) 박명보(朴明保)라고도 한다)의 양신공도(良愼公徒), 평장(平章) 황형(黃瑩)의 정경공도(貞敬公徒), 유감(柳監)의 충평공도(忠平公徒), 시중(侍中) 문정(文正)의 정헌공도(正憲公徒),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郎徒), 씨명(氏名) 미상의 귀산도(龜山徒)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최종의 문헌공도와 아울러 십이도(十二徒)라 하였다. 이 중에서도 최종의 도가 가장 융성하고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도(徒)란 문도(門徒), 학도(學徒), 도중(徒衆), 도당(徒黨)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신라(新羅)의 화랑도(花郎道)·풍월도(風月徒) 등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최충의 구제를 비롯하여 12사숙(私塾)은 대개 과거에 응하려는 사류(士類)의 자제를 가르치던 것으로서 학과(學課)는 경사(經史)와 문학이 주요 과목이었다. 고려 시대에 문학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과거제도가 큰 추진역할을 하였으며, 사학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학이 떨치게 된 것은 최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고려사』 「최충전(崔冲傳)」에는 ‘동방학교(私學을 뜻함)가 일어난 것은 최종에게서 시작하였으므로 그를 해동공자라 일컬었다’고 하였다.

사학(私學)이 이와 같이 크게 발전하자 관학(官學)인 국자감은 매우 부진(不振)하게 되었다. 이에 문종(文宗)은 17년(1003) 8월에 ‘국자감의 학생으로서 공부를 안하는 자가 많은데, 그 책임은 학관(學官)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부터 학업을 힘쓰게 하여 연말에 그 성적을 헤아려 내보내거나 머무르게 할 것(去留)을 정하는데 유생으로 국자감에 재학한 지 9년이 되는 자, 또는 율생(律生; 법률(法律)을 닦은 학생)으로 6년이 되는 자로서 거칠고 모자라서 학업을 이루지 못한 자는 모두 쫓아버릴 것을 명하였다. 문종은 또한 그 30년(1067) 12월에 과거를 장려하여 궐방(闕榜; 급제자가 나지 않은 것)이 30년 혹은 40~50년에 이른 주(州)·현(縣)에서 제술(製述)·명경과(明經科)에 오른 자가 있으면 그에게 논발 47결(結)을 상(賞)으로 주고, 백년에 이르러 합격자를 낸 자가 있으면 발 20결과 노비 각 한사람씩 주며, 잡과(雜科)에 오른 자에도 논발을 주어 지방의 문풍을 일으

키기에 힘썼다.

문종(文宗) 10년(1056) 8월에 서경유수(西京留守)가 정부에 대하여 ‘진사(進士)·명경(明經) 등 제업(諸業)을 공부하는데 쓰이는 서적이 대개 붓으로 베껴 쓴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많으니 비각(秘閣)에 보관되어 있는 구경(九經)·한(漢)·진(晉)·당서(唐書) 및 논어(論語)·효경(孝經)·자사(子史)·제가문집(諸家文集)·의(醫)·복(卜)·지리(地理)·율(律)·산(算)의 제서(諸書)를 여러 학원(學院)에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종은 담당부서에게 명하여 그 서적을 각각 한 벌씩 인쇄하여 보내주기도 하였다.

문종은 유학·문학과 아울러 역학(曆學) 기타 술법(其他術法)에도 유의(留意)하였다. 이와 같이 문운(文運)이 떨침에 따라 이 무렵에 서적의 인쇄도 크게 유행하였다. 문종 12년에 충주에서는 비록 의서(醫書)이기는 하지만 새로 새긴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川玉集)』 『상한논(傷寒論)』 『본초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 『소아약증병원일십팔론(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장중경오장논구십구판(張中卿五臟論九十九板)』 등 의서(醫書)를 인쇄하여 바치자 이를 비각(碑閣)에 보관한 일이 있었다. 충주에는 인쇄술이 또한 준비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십이도는 고려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으나 마지막 공양왕 3년(1391)에 이르러서 없어졌다. 왕조 변혁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5. 향교(鄕校)와 장학(獎學)

향교란 지방의 학교를 말한다. 고려시대 향교가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사』 「선거지(選舉志)」 학교조(學校條)에 의하면 인종(仁宗) 5년(1127) 3월에 ‘왕명(王命)에 의하여 여러 고을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의 길을 넓힌다’고 한 사실에서 이 때부터 향교가 각 지방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주(州)에는 군현(郡縣)이 있었으므로 군현에 학교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에 앞서 태조 13년(930) 서경(西京)에 학교를 설치한 것이 지방학교의 효시라고도 생각되나 이는 사실상 서경을 중요시한 데에서 온 특별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성종 6년(987) 8월에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 1명씩 12목(牧)에 보내어 행실을 가르치고 여러 주군현의 백성의 자제를 교육하라고 한 사실에 주목된다. 이 때에 학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근학관(勤學官)을 각주(各州)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 지방에 학교를 설치한 것은 인종 때에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성종 때의 근학관제도(勤學官制度)는 훨씬 후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의종(毅宗) 22년(1168) 3월에 ‘조종(祖宗)으로부터 외관(外官)에 문사 1원(文師一員)을 보내고 또한 유신(儒臣)이 고을 원님으로 있으면서 학사(學事)를 겸하여 근학(勤學)하라.’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향교에는 국자감과 함께 공자 사당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강학(講學)을 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설치되어 있다. 고려 중기의 학자 이곡(李穀)은 ‘본국(本國) 향교의 제도는 사당, 궁(宮)을 같이 하고 있다.’(『동문선(東文選)』 영해부신작 소학기(寧海府新作 小學記)고 말하고 있다. 즉 오늘에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향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교사(教師)는 조교(助教)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향교는 인종(仁宗) 초기에 창시되어 점차 국내에 보급되었으며, 예종(睿宗) 때에 학제(學制)가 정비(整備)된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 세워진 신라의 국학은 고려 이후에는 향교로 변하였으니 그런 기록이 『동서잡기(東西雜記)』에 보인다. 그러나 이들 향교가 의종(毅宗) 이후 크게 시들고 고려가 원(元)나라의 간섭에 의해 거의 없어지는 상태였다. 충숙왕(忠肅王) 때에 원나라에 가서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그곳에서 이름을 떨쳤던 이곡(李穀)은 원나라 순제(順帝)의 흥학(興學)의 명령을 받들고 귀국하여 10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본 결과 ‘묘학(廟學)은 쇠퇴(衰廢)하고 생도(生徒)는 수학(修學)을 게을리 하고 있다.’(『동문선』 김해부향교 수현기)고 하였으며, ‘왕궁 국도(王宮國都)와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대개 교기(教基)는 없어져가고 있다.’(『동문선』 영

해부신작 소학기)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중앙과 지방의 학교가 얼마나 폐퇴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곡의 흥학(興學)을 위한 운동은 점차 향교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듯하다.

조선시대의 학자 권문해(權文海)(1534~1591)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서 ‘우리 나라에는 본시 향교가 없다. 고려 충렬왕 때 강릉(江陵) 안렴사(安廉使) 김승인(金承印)이 문묘(文廟)를 화부산(花浮山) 연적암(硯滴岩) 밑에 창립하였으며, 이어서 모든 고을에 계속하여 이어졌다.’고 한 것을 보면, 이는 김승인이 처음 세웠다는 문묘는 당시 향교의 부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동서학당(東西學堂)과 5부학당(五部學堂)

인종(仁宗) 5년에 향교가 세워진 이후 약 130여 년이 지난 원종(元宗)은 2년(1261) 3월에 동서학당(東西學堂)을 세우고 각각 별감(別監)을 보내어 교학(敎學), 교도(敎導)를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의 이 기사(記事)는 매우 간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밖에는 향교, 안에는 학당’이라고 한 이색(李穡)의 상소문(上疏文)은 지방의 향교와 서울의 동서학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사』 「선거지」 학교조) 또한 당시에 국공사립학교(國公私立學校)를 총칭하여 ‘성균(成均)·십이도(十二徒)·동서학당(東西學堂)·제주군향교(諸州郡鄉校)’라고 한 것을 보면 동서학당은 서울인 개경(開京)에 설치되어 지방의 향교와 대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서학당에는 문선왕 사당(文宣王廟)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고려사』 「선거지」에는 ‘국자감과 여러 주현(諸州縣)에 문선왕 사당(文宣王廟)이 있다’고 기록되었음에 반하여 동서학당에는 문묘(文廟)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국자감에 문묘가 있는 이상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에 서울에 둔 5부학당(五部學堂; 뒤에 4학(學))에도 문묘를 설

치하지 않았으니 고려의 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 공양왕때에 이르러서 정몽주(鄭夢周)는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겸하고 학교 진흥에 크게 힘을 기울였다. 곧 ‘사서인(士庶人)에게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떠 가묘(家廟)를 세우고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도성(都城)에는 5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하여 유학(儒學)을 진흥시켰다.’(『고려사』 「정몽주전(鄭夢周傳)고 하였다. 이 때에 와서 동서학당을 늘려서 오부학당이 된 것과, 또한 향교도 부흥시키게 되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7. 문묘(文廟)의 설치

문묘는 공자를 받드는 사당으로 문선왕묘(文宣王廟) 또는 공자묘(孔子廟)라고도 한다. 신라 성덕왕(聖德王) 16년(717) 9월에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문선왕 공자를 비롯하여 십철(十哲)·72제자(弟子)의 도상(圖像)을 모시고 와 왕명에 의해 국학에 안치한 것이 우리나라 문묘 제도의 시초라고 하겠다. 문선왕이란 당나라 개원(開元) 원년(713) 간에 공자에게 내린 시호(諡號)이다.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문선왕묘를 국가감에 처음으로 세웠다.’(『고려사』 「선거지(選舉志)」 학교조(學校條)고 하였다. 성종(成宗) 11년(992)에 국가감이 창립되었으므로 이 때에 처음으로 문묘의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묘의 제도는, 공자를 모시는 본전(本殿)을 대성전(大成殿)이라 하고, 그 전면(前面)에 동서로 설치한 전우(殿宇)를 무(廡)라 하고, 이곳에 공자의 제자(弟子)와 기타 유학 진흥(儒學振興)에 공로가 있는 유현(儒賢)을 모시고 있다. 이를 종사(從祀)라 한다. 개중에는 특히 대성전 내에 종사(從祀)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따로 강학(講學)하는 곳을 세워서 이를 명륜당(明倫堂)이라 하고, 그 부근에 학생들의 기숙사를 마련하여 이를 재(齋)라고 하였다.

고려 국가감의 문묘도 이를 기준으로 설치되었다. 대성전·명륜당의 이름이 『고

려사』에 보이고 있으며, 양무(兩廡) 및 제사(齋舍)가 있었다는 기록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국자감이 세워진 뒤 28년이 지난 현종(顯宗) 11년(1020) 8월에 신라 말의 학자 최치원에게 내사령(內史令)을 추증(追贈)하고, 동왕(同王) 13년 5월에는 설총(薛聰)에게 홍유후(弘儒侯)를 추증하고 각각 문묘에 종사(從祀)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유학자 중 문묘에 종사한 효시(嚆矢)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모두 양무(兩廡)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최치원·설총의 두 사람은 대성전 내(內)에 종사하였었다. 이는 유학의 풍도를 일으키고 선유(先儒)를 높이 받들려는 현종의 큰 뜻이라 하겠다.

8. 성리학(性理學)의 전래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학이 크게 일어나고 이것을 정리하여 새로운 유학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었는데 곧 주자(朱子)에 의해서였다. 주자는 이름을 주희(朱熹; 1130~1200)라 했으며, 자는 원회(元晦) 또는 충회(冲晦)라 하고, 호는 자양(紫陽)·회암(晦庵)·회옹(晦翁)·노정(老亭) 등이라 하였으며 시호(諡號)는 휘국공(徽國公)이다. 평생 학문에 정진(精進)하여 『제자문집(諸子文集)』 100권, 『속집(續集)』 10권, 『어류(語類)』 80권을 남겼다. 이러한 저술은 유학의 새로운 입장에서 집대성(集大成)한 것으로 이 학문을 주자학(朱子學)이라고 한다.

송대의 학문은 춘추학(春秋學)을 중심으로 정통론(正統論), 명분론(名分論), 정치론(政治論)을 정립(鼎立)하고 또한 종래의 훈고적 주석학(訓古的 註釋學)을 벗어나 직접 고전(古典)에 몰입(沒入)하여 비판적으로 해석전개(解釋展開)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현론(現論)의 전개와 이에 따른 도덕론(道德論)의 구성을 이룩하였다. 옛 성인(聖人)의 유교(遺教)를 현실(現實)의 송대(宋代)에 직접 되살려서 새로운 해석과 사색(思索)을 하고자 하는 정통적 유학의 발전으로 자각하려고 하였으니 바로 도통(道統)의 학문인 것이다.

즉, 요(堯)—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공자(孔子)—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주자(周子)—장자(張子)—정자(程子)—주자(朱子)라고 하는 일련의 학계(學系)를 의도적(意圖的)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또한 주(周)·장(張)·정(程)·주(朱)의 학인 정주학(程朱學), 주자학(朱子學), 이학(理學), 이기학(理氣學), 성리학(性理學), 성명학(性命學) 등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송대의 대표적 학자와 사상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내용을 크게 들어보면 태극론(太極論)·이기론(理氣論)·심성론(心性論)·계경론(誠敬論)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천지자연의 현상 즉 일반(一般)의 생성변화 등 존재법칙을 다루는 천도(天道)의 문제로 순철학(純哲學)의 영역이며, 뒤의 두 가지는 인간세계에 벌어지는 사건의 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로 윤리도덕(倫理道德)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즉 만물의 근원을 이(理)라 하였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을 기(氣)라 하여, 이(理)는 만물의 성(性)을 주며 기는 만물의 형(形)을 준다는 이론(理論)이다.

이와 같은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고려 후기의 안향(安珦; 1243~1306)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안향은 충렬왕 15년(1289) 4월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좌우사랑중(左右司郎中)이 되고 또 고려국 유학제거(高麗國 儒學提舉)가 되었으며, 11월에 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갔다. 그는 연경(燕京)에서 처음으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보고 그것이 공자 문하의 정통 계보라 하여 손수 베끼고 또 공자·주자의 상(像)을 그려가지고 돌아와 주자서(朱子書)를 강구(講究)하였다 한다.(『회현선생연보(晦軒先生年譜)』) 안향은 그 뒤에도 충선왕(忠宣王)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 와서는 유학진흥(儒學振興)을 자신의 의무로 알고 학교가 쇠퇴하여 감을 우려하던 나머지 재상(宰相)들에게 권하여 장학기금(獎學基金)으로 6품 이상은 은(銀) 1근(一斤)씩, 7품 이하는 포(布)를 내게 하였다. 이를 섬학전(贍學錢)이라 하고 기금(基金)을 맡은 양현고(養賢庫)에 귀속시켜 그 이식(利息)으로 학교를 운영케 하였다. 또 남은 것으로 박사 김문정(金文鼎) 등을 중국에 보내 공자와 칠십자(七十子; 공자의 제자)의 상(像)을 그리게 하고, 제기(祭器)·악기(樂

器)와 육경(六經)·주자서·사(史) 등 서책을 구해오게 하였다. 그리고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치사(致仕)한 이산(李愴)과 전법판서(典法判書) 이진(李璘)을 천거하여 경사교수 도감사(經史教授 都監使)를 삼았다. 이에 금내학관(禁內學館) 및 여러 기관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과 칠관(七管)·십이도(十二徒; 국학의 칠재(七齋)와 문헌공도(文憲公徒)를 비롯한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로 관사(官·私學)의 학도를 개칭한 듯)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자가 수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안향은 주자서(朱子書)를 얻어 왔으며, 그 만년에는 항상 회암(晦庵; 주자)의 상(像)을 걸어놓고 경모(敬慕)의 뜻을 붙여 마침내 자호(自號)도 회헌(晦軒)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그는 주자의 서(書)에 심취(心醉)하였던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도(朱子學徒)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리학(性理學)의 전모(全貌)를 섭렵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그의 후배인 백이정(白頤正; 이재(彝齋))으로부터 시작된다. 백이정은 충선왕(忠宣王)을 따라 연경에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의 서(書)를 구하여 연구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이제현(李齊賢)·박충좌(朴忠佐)에게 가르쳤다(『고려사』 「백이정전(白頤正傳)」). 이 기록을 바탕으로 우탁(禹倬; 역동(易東))은 독학(獨學)으로 성리학을 터득하였다. 『고려사』 「우탁전」에는 정자의 『역전(易傳)』이 처음으로 전래되어 알아볼 자가 없었는데 우탁이 문을 닫고 몇 달 동안 연구한 끝에 해독하여 생도에게 가르친 결과 이학(理學)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이학(理學)이 우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독학(獨學)으로 해독했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에 이르러서 이제현(李齊賢; 익재(益齋))의 문하생인 이색(李穡; 목은(牧隱))과 이색의 후배인 정몽주(鄭夢周; 포은(圃隱))·이숭인(李崇仁; 도은(陶隱))·정도전(鄭道傳; 삼봉(三峰))과 정몽주의 후배인 권근(權近; 양촌(陽村))·길재(吉再; 야은(冶隱)) 등 훌륭한 학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이색은 실로 이학(理學)과 문학(文學)에 있어 일대 종장(一大宗匠)이었다. 공민왕은 일찍이 성균관을 개창(改創)하여 당시 최고의 경술지사(經

術之士)인 김구용(金九容)·정몽주·박상충(朴尙衷)·박의중(朴宜中)·이승인(李崇仁) 등을 모두 타관(他官)으로서 학관(學官)을 겸직하게 하고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으로 학관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에 사방의 학도가 모여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관들은 경전(經典)을 각기 나누어 가르치고 매일 강학이 끝나면 서로 의심나는 부분을 따지고 끝까지 진리를 밝히는 일에 이색은 의연히 그 가운데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절충(折衷)하여 밤이 늦어도 게으름을 잊었다 한다. 이에 우리나라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 유학의 풍도와 학술이 환하게 새롭게 되었다.

정몽주는 성리학을 순수하게 연구하여 창의(創意)를 발휘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성리학의 비조(鼻祖)처럼 받들여졌다. 그는 상제(喪祭)의 습관을 유교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전의 상제는 오로지 불교법에 의하였는데 정몽주가 비로소 사대부(士大夫)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자가례(諸子家禮)』를 본떠 시행하게 하였으며 가묘(家廟)를 세워 조상 제사를 받들게 하였던 것이다.

정도전은 고려 말 학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식과 정치적 수완(手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고려 말부터 불교배척론의 우두머리로 활약하면서 유교를 추켜세워 신왕조(新王朝)의 국교(國教)로 삼게 하여 조선시대 문교(文教)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정몽주와 어깨를 겨룰 정도였으며 불후(不朽)의 대저(大著)를 남기었다. 『삼봉집(三峰集)』 가운데 「심기리편(心氣理篇)」과 「불씨잡변(佛氏雜辨)」은 실로 성리학과 그에 입각한 불교배척론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경국전(經國典)』과 『경제문감(經濟文鑑)』을 지어 국가의 전장(典章)·제도(制度)와 치도(治道)를 밝혔으며 특히 『경국전』 상, 하편은 새 왕조(王朝) 정치제도에 근거(根據)를 주었다.

권근은 자문사탁(咨文私拆)의 혐의로 탄핵(彈劾)되어 유배되어 충주에 물러나 살다가, 태조 2년(1394) 새 왕조에 들어와 벼슬을 하면서 유교를 선양(宣揚)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참여하여 길창군(吉昌君)의 봉작을 받았고,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며 성리학에 조예(造詣)가

깊었다. 그는 『사서오경구결(四書五經口訣)』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정도전의 『심기리편』에 주(註)를 붙여 공자의 학문을 분명히 밝혔다.

길재는 이색·정몽주·권근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성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 사정이 어지러워지자 노모를 봉양한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면서 도학(道學) 즉 성리학을 밝히면서 김숙자(金叔滋; 강호(江湖)) 등 많은 후배를 지도하였다. 그는 성리학을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정몽주 등에게서 받아 김숙자에게 전했으며, 김숙자는 그의 아들 김종직(金宗直; 접필재(佔畢齋))에게, 김종직은 그것을 다시 김굉필(金宏弼; 한훤당(寒暄堂))에게, 김굉필은 조광조(趙光祖; 정암(靜菴))에게 전수하여 점점 당대에 떨치게 하였다. 그리고 길재는 고풍(高風)·청절(淸節)을 지켜 일세의 사표(師表)가 되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그를 사모하여, 목은·포은과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이라 일컬었다.

여 백

제5장 조선시대의 유교와 교학(敎學)

1. 송유억불론(崇儒抑佛論)
2. 송유책(崇儒策)
3. 조선의 교육제도와 문묘(文廟)
4. 과거제도(科擧制度)
5. 조선 전기(前期)의 유학
6. 조선 후기(後期)의 유학
7.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
8. 양명학(陽明學)과 실학
9. 서학(西學)의 전래와 문호(門戶) 개방
10. 조선 말기(末期)의 성리학(性理學)

여 백

1. 승유억불론(崇儒抑佛論)

고려시대는 유학을 장려하기는 하였으나 그 속은 승불정책이 근본이었으므로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오면서 승려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많은 폐단을 가정과 사회에 끼쳤던 것이다. 사원(寺院)은 광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여 국가 재정을 좀 먹었으며, 승려들은 술을 빚어 돈을 버는 것을 업으로 하기도 하였고, 여염집에 출입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여자를 탐내고 싸움을 하는 등 속인들에게 못지 아니할 못된 행실을 범하여 풍기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었다.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종 불사(佛事)에 지나치게 많은 사찰을 짓는다거나 하는 등 물질적으로도 재정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때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유자(儒者) 출신 가운데에 정도전·윤소종(尹紹宗)·조인옥(趙仁沃)을 비롯한 불교배척을 주장하는 자가 많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성균관(成均館)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바야흐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불교 배척에 새로운 기세를 올리게 되었다. 공양왕 3년(1391)에 이르러 정당문학(政黨文學) 정도전은 불교배척에 관한 상소(上疏)를 올렸다. 뒤이어 대사성(大司成) 김자수(金子粹)·성균박사(成均博士) 김초(金紹)·낭사(郎舍) 허응(許應)·이조판서(吏曹判書) 정충(鄭攄)·성균생원(成均生員) 박초(朴礎) 등이 연이어 척불에 관한 소(疏)를 올릴 정도였다. 이들은 불교가 민폐(民弊)의 최대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김초는 “중외사사(中外寺社)를 모두 소재 관사(所在 官舍)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노비와 재산도 또한 그곳에 소속시키되 금령(禁令)을 엄격하게 세워 삭발자(削髮者)는 죽이고 남기지 말라”고까지 극언(極言)하여 마침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죄를 받게 되었는데, 정몽주 등의 상소로 용서를 얻게 된 일도 있었다.

박초는 수천 마디의 기나긴 상소(上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가장 잘 정비되고 격렬한 유자의 척불의식(斥佛意識)을 표명하였으며 왕에게 미움을 사 고립된 처지에 있었던 정도전의 태도를 매우 칭송하였다. 정도전은 척불의 실제적 근거

를 정치상·경제상으로 굳게 파악한 이 운동의 제1인자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은 척불운동은 국가재정의 개혁을 진전시켜 신진 유학파의 정치행동을 격화(激化)시키고 드디어 왕조 교체(王朝交替)의 대업(大業)에까지 이끌어가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왕조가 개국하게 되자 이들의 송유억불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니 그 입지(立地)를 짐작케 한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정치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이 유교적 원리는 일반 백성의 생활에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으며, 또 경제적으로는 농본(農本) 정책에 입각하여 대대로 계승되어 가게 된 것이다.

2. 송유책(崇儒策)

태조 이성계는 독실한 유교 신자였다. 고려말 조선 초기의 대세가 송유정책으로 기율자 이를 국시(國是)로 정하는 용단을 내렸으며 국가의 정치적 지도이념으로 유자(儒者)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왕들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송유정책을 잘 실천하여 유교 왕국을 건설케 한 것이다.

태종도 유교주의를 견지하여 11년(1411)에는 송나라 제도를 따라 서울의 중앙·동·서·남·북의 5학교(세종 때에 북학은 폐지)를 설립하여 생도를 가르쳤다. 14년에는 문신 친시제(文臣親試制)를 두는 등 유교 진흥에 노력하는 한편, 사원(寺院)의 정리(整理) 등 불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을 강행하였다.

세종도 전통적인 유교주의에 입각한 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친을 교육시키고(9년), 원자(元子; 문종(文宗))·원손(元孫; 단종(端宗))의 입학식(入學式)을 성균관에서 거행하여 독서(讀書)를 받게 하는 등 유학의 장려만이 아니라, 『효행록(孝行錄)』·『삼강행보(三綱行寶)』 등을 간행 보급하여 민간 교화(教化)에 유교윤리를 고취하고, 민간 의례(儀禮)에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르도록 자주 단속하였다.

세조도 문교(文教)에 힘을 다 기울였다. 단종복위 운동자(端宗復位運動者)가 많이 나온 집현전(集賢殿)은 폐지하였으나 11년(1466)에는 발영(拔英)·등후시(登後試)를 두고 왕이 친히 책문(策問)하여 숨은 선비를 발탁해 등용하였다. 또, 『사서구결(四書口訣)』을 편찬하여 발간하게 하고 친히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저술하여 유학자들에게 보충해서 해설을 짓게 하였다. 한편,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통감(東國通鑑)』과 같은 거대한 역사책도 이때에 편찬이 시도되었다.

성종은 세조 이래의 숙제였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거듭 교정(校訂)하여 5년(1474) 정월에 반포(頒布)하니 조선왕조 500년의 모든 제도가 정착을 보게 되었다. 또한 유교를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도로 삼아 유교 진흥에 주력하였다. 왕 자신도 독서를 좋아하여 경사백가에 통하고 성리학에도 밝았으며, 활쏘기와 같은 재능과 글씨와 그림도 잘 하였다. 즉위 초에 홍문관(弘文館)의 기구를 확장하여 학사(學士)를 모아 하루 걸러 경전과 역사를 강의하게 하고, 용산(龍山)·두모포(豆毛浦)에 독서당(讀書堂)을 새로 건축하여 충기가 있는 젊은 학자들에게 장기간의 휴가를 주어 독서(讀書)와 문장 공부에 전심(專心)을 다하도록 하였다. 6년에는 성균관 안에 존경각(尊經閣)을 세워 그곳에 서적을 하사하고,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유생을 먹이고 가르쳤다. 15년과 20년에는 각도(各道) 향학(鄉學)에도 논밭과 경사(經史), 시문(詩文)의 서적(書籍)을 하사(下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적 편찬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오례의(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등도 편찬하여 내놓게 하였다.

3. 조선의 교육제도와 문묘(文廟)

1) 서언(序言)

조선왕조 문화정책의 기본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배불(崇儒

排佛)과 문(文)을 높이고 무(武)를 천하게 여기는 숭문천무(崇文賤武)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유학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관리로 등용되는 길이 과거시험을 통해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이 과거시험을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었음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과거시험이 시문(詩文) 등의 창작과 경서(經書)의 암송(暗誦)·이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치우치게 마련이었다.

조선시대 교육은 갑오(1894) 개혁에 이르기까지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그 밑에 4학(四學; 처음에는 5부 학당)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있었다. 성균관과 4학은 중앙정부의 예조(禮曹)에 직접 소속되고, 향교는 각 지방기구인 주부(州府) 군현(郡縣)이 경영하는 관학(官學)으로 오늘날의 공립학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각지에는 수 많은 사설 서당(書堂)이 있었으며, 서당 이외에 서원(書院)도 있었다.

교육은 양인(良人) 이하의 자제(子弟)라고해서 길이 막혀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양반자제에게 한정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사대부의 자제는 대개 7·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한문(漢文)의 초보와 글씨를 익히고, 15·6세가 되면 4학(四學)이나 향교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수년간 배운 뒤 소과(小科)에 응시하여 합격되면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칭호를 받고, 다시 성균관에 진학(進學)하게 된다. 성균관에 들어간 유생(儒生)은 대과(大科; 문과(文科))에 응시하여 여기에 급제하면 비로소 높은 관직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생원·진사가 반드시 4학(四學)이나 향교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성균관 유생이라야 문과(文科)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생원·진사나 문과 과거에 응하는 자격은 학교 교육 이외의 실력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다.

2) 성균관(成均館)

태조 임금은 그 3년(1394)에 개성에서 서울로 도읍을 옮겼다. 그리고 6년에 태학(太學)의 자리를 동북 모퉁이의 숭교방(崇校坊)에 정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다음해 7년에 준공하였다. 고려시대의 이름을 이어받아 성균관이라고 칭하였으니 조선시대 최고 학문 기관으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다.

공자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을 문묘(文廟)라 하고, 공부하는 곳을 명륜당(明倫堂)이라 하였으며, 유생(儒生)들의 숙소를 재(齋; 동재·서재)라고 한 것도 고려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규모는 성종 때에 완성되었으니 이때에 제관(祭官)의 공소(供所)인 향관청(享官廳) 및 도서관(圖書庫)인 존경각(尊經閣)을 증설(增設)하고, 현종 때에 성균관의 서쪽에 과거장(科擧場)인 비천당(丕闡堂)을 세우고, 숙종 때에 성균관의 서북에 계성사(啓聖祠)를 세워서 여기에 부속(附屬)시켰다. 계성사란 공자와 4성(四聖;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부친(父親)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 또한 성균관의 동쪽에는 영조 때에 세운 4현사(四賢祠; 도의(道義)를 위해 죽은 중국인(中國人))가 있었다.

성균관의 우두머리를 지관사(知館事)라 하고 홍문(弘文) 또는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大提學)이 이를 겸직하게 하고, 다음을 동지관사(同知館事)라 하여 이도 겸직하도록 하였다. 전임관(專任官)으로는 대사성(大司成; 1명)을 수석(首席)으로 하고, 그 밑에 채주(祭酒) 2명(다른 관직이 겸직함), 사성(司成) 1명, 사예(司藝) 2명, 사업(司業) 2명, 직강(直講) 4명, 전적(典籍) 13명, 박사 3명, 학정(學正) 3명, 학록(學錄) 3명, 학론(學論) 3명이 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해진 인원 외에 겸직이 있다. 제사 등을 관장하는 봉사시(奉常寺)의 관리 및 4학(四學)의 훈도(訓導)가 겸하였다. 이들 직원은 문묘의 제사(祭祀) 및 유생 교육을 관장하였다.

태종은 성균관 육성발전책의 한 방법으로 토지 10,000여 무(畝)와 노비(奴婢) 300구(口)를 내려주었다. 이후 역대 왕도 또한 토지를 주는 예가 적지 않았다. 또

한 전라도 바닷가 여러 섬의 어장(漁場), 기타 경기도 여러 섬도 성균관에 부속시켰다. 여기에서 수입되는 재원(財源)이 제사(祭祀)와 학자 양성의 자금으로 쓰였으며, 유생들의 음식물 공급을 관장하기 위해 성균관 옆에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유생(儒生)들의 생활

성균관에서 숙식할 수 있는 유생의 정원은 200명이며,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4학(四學)의 학생들로 보충하였다. 이들 유생은 동·서 양재(兩齋)에 기숙하였다. 영조 때는 유생이 126명이었다. 이는 경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감원한 것이다. 고종 때는 백 명으로 줄기도 하였다. 이중 20명은 특히 생원, 진사 이외의 학생도 수용되었다.

유생들은 매일 아침 저녁 건복(巾服)을 갖추고 식당에 줄 지어 앉아 함께 회식(會食)하였다. 여기에서는 도기(到記)라 하는 출석부에 원점(圓點; 동그란 점)을 찍는 제도가 있었다. 이 도기의 기록에 따라 300일 이상 성균관에 머무른 근거가 있어야만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등 규정이 있어서 식당은 매우 중시되었다. 또한 생도는 자치생활을 하였다. 재생 중에서 장의(掌議)·색장(色掌) 등을 뽑아 장의 주재(主宰) 아래에 재회(齋會)를 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데, 때로는 동료 재생을 제재(制裁)하기도 하였으며, 심하면 출재(黜齋; 퇴학(退學))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사문유사(斯文有事)나 토역(討逆) 등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상소로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권당(捲堂)이라 하여 일제히 성균관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권당의 경우 조정(朝廷)에서는 문론사(問論使)를 보내 다시 성균관으로 들어오라는 권고를 하는 등 하였으니 재생의 기개(氣概)가 매우 높았다고 하겠다.

3) 문묘(文廟)

문묘(文廟)의 제(祭)가 고려시대부터 있어왔음은 앞에서 말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공자(孔子; 신라시대부터 국학에 종사(從祀)하였다)를 한 가운데 정위(正位)로 하고, 중국과 고려의 선현(先賢)을 향사(享祀)하여 왔다. 태조 때에는 종사(從祀)를 모두 중국의 제도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그 뒤 점차로 자리가 정돈되었다.

문묘의 제례(祭禮)는 봄과 가을 두 계절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이를 석전(釋奠)이라고 한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친히 성균관에 나아가 옛 성인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또한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성균관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이후로부터 국왕이 성균관에 나아가 공부하고 공자를 찾아뵈는 행사와 세자의 입학은 당연한 일로 되었다. 이는 유학진흥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성균관 문묘에 향사(享祀)되는 사람은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고 여기에 4성(四聖;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을 배향(配享)하고, 십철(十哲; 민손(閔損)·염경(冉耕)·염옹(冉雍)·제여(宰予)·단목사(端木賜)·염구(冉求)·중유(仲由)·언언(言偃)·복상(卜商)·전손사(顓孫師))과 송(宋)나라의 6현(六賢;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을 전내(殿內)에 종향(從享)하였다. 여기서의 4성(자사(子思)는 태종 7년에 종향)과 10철은 고려시대부터 향사하였으며, 6현은 조선 초에 종향하고 숙종 14년에 전상(殿上)에 승배(陞配)하였다. 이상의 21명은 문묘의 정전(正殿)인 대성전 안에 배향하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 사람 중 같은 공적이 있는 유학자 18명을 종향하였는데, 이를 동국 십팔현(十八賢)이라고 한다.

4) 사학(四學)

조선이 건국과 더불어 도읍지를 서울(漢城)로 천도하여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성안을 동 서 남 북 중앙의 5부(五部)로 나누고 그곳에 각각 학교를 세워서 5부 학

당(五部學堂)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 말 개성(開城)에 설치했던 명칭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시작한 연도는 자세하지 않으나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정종(定宗) 2년(1400) 이전일 것이다. 처음에는 학사(學舍)를 세우지 못하고 대부분은 성내의 사원(寺院)을 이용하였으나 점차 학당(學堂)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부학당 중 북부 학당(北部學堂)은 얼마 안 되어 폐지되었다 하는데 확실치 않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27년(1445) 9월까지의 5부학당이라고 하였으나 세종 28년 3월 이후에는 4부 학당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마도 세종 27~28년 사이에 폐지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근세(近世)까지 동·서·중·남의 사부학당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보통 4학(四學)이라고 한다.

4학(四學)에는 명륜당과 동재 서재를 갖추고 있으나 문묘(文廟)는 설치하지 않았다. 이 또한 고려의 제도와 같다. 역대 제왕은 누누이 학전(學田)과 노비(奴婢)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연해 여러 섬의 어장(漁場)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세(稅)를 받아 학자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4학(四學)에는 각기 교수 2명, 훈도 2명을 두었는데 모두 성균관 직원을 겸직하게 하였으나 뒤에는 각 1명을 줄여서 겸직을 폐지하였다. 학생의 정원은 매 학부마다 100명이었으며, 임진왜란으로 병화(兵火)를 입은 뒤에는 복구를 하기는 했으나 부진상태였다. 각 학부의 정원도 1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인조 때에는 2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5명을 늘리는 등 근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4학(四學)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5) 향교(鄕校)

향교는 고려 인종 때에 처음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초기부터 향교의 운영이 있었다. 곧 태조는 즉위 원년(1392)에 조선 8도의 안찰사(按察使)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폐를 기준으로 삼아 수령(守令) 즉 지방관의 평가 고과(考課) 기준으로 삼는 등 향교 진흥책(振興策)을 썼다. 이로부터 고려 중기 이후 미약했

던 향교가 비로소 부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조 7년(1398)에 부(府)·목(牧)·군(郡)·현(縣)에는 각각 한 개의 향교씩 306개 향교를 세우게 되었으며, 그 시설이 전국에 미치게 되었다.

향교에는 각각 문묘, 명륜당 및 양재(兩齋) 양무(兩廡)를 갖추었는데 그 제도는 성균관과 같으나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었다. 유생의 수는 부(府)·목(牧)과 같이 큰 곳은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은 30명이 정원이었다. 직원은 교수, 훈도가 각 1명이었으나, 작은 군에는 훈도만을 배치하였다. 학전(學田)은 영조(英祖) 때의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7결(七結) 내지 5결(五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학전 외에 지방민에게 징수(徵收) 또는 유림의 기부에 의해 사들인 토지가 적지 않았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향교 재산으로 큰 변동없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1918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향교(鄕校) 총수는 335개소이며, 이에 소속된 토지는 모두 48만여 평(坪)에 달하여 평균 1향교당 1,432여 평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중기 이후로는 향교가 거의 무력화하여 제도상으로도 『속대전』에는 이미 교수·훈도도 없어졌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되어 종종 연간부터 일어난 사학(私學)인 서당(書堂)이 이에 대치되다시피 하였다.

이상에서 성균관·사부학당·향교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오늘날의 대학·중학·소학과 같이 연결된 계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성균관에는 생원·진사를 수용하지만 생원·진사가 반드시 사부학당이나 향교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균관 유생은 문과의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편의는 있으나 문과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성균관 유생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균관·사부학당·향교는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6) 서원(書院)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서 서원(書院)이 일어났다. 서원은 선조(先祖) 또는 선현(先賢)을 봉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결합한 것으로 종종 36년(1541) 경상도 풍기(豊基) 군수였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시대의 학자 안향(安珦)이 살았던 옛터인 순흥(順興)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이 그 처음이다. 주세붕은 이곳에 주자(朱子)의 백록동(白鹿洞) 학규(學規)를 채용하여 안향을 제사지내는 한편 유생의 독서(讀書)·강론(講論)의 편의를 도와 교육의 기능도 병행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학(私學)이다. 그 뒤 후임(後任) 군수였던 이황(李滉)은 이 서원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에 보조를 청하여 명종 5년(1550)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임금이 직접 내려보낸 현판과 서적(書籍)·노비(奴婢)·전결(田結) 등의 하사(下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이며 국가의 공인(公認)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원은 이후 인종·명종 연간에도 그 수가 날로 늘어났다. 사학(私學)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교육사상(教育史上)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한편으로 선조(先祖) 또는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초상화를 봉안(奉安)·제향(祭享)하는 사묘(祠廟)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이나, 고려 말 정주학(程朱學)의 발흥(勃興)과 함께 각종 사우(祠宇)의 설립이 성행하여 종묘(宗廟) 가묘(家廟) 등 선조를 봉사하는 혈통중심의 것 과 문묘·생사당(生祠堂; 생존자(生存者)를 신격화(神格化)한 것)·일반 사우(一般祠宇) 등 국가 또는 사회에 공로가 있는 분을 사당에 모시는 예가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갔다. 이러한 사학(私學)과 사묘(祀廟)가 융합된 것이 서원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무렵에는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가 매우 느슨해졌으며, 조정에서는 이를 부흥시킬 힘이 없었다. 이런 기회에 서원(書院)은 곳곳에 세워졌으며, 정부에서도 그 뜻이 올바르고 적당한 명분이 있는 곳에는 요청에 따라 편액(扁額)과 노비·토지를 내려주고 장려하였다. 바로 소수서원(紹修書院)과 같은 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서원이 지나

치게 많이 설치되는 폐단이 발생하여 새로운 원사(院祠)를 세우려면 각 도(道)에서 예조(禮曹)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멧대로 세워지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동일한 학자(學者)에 대해 이중 삼중 서원을 세우는 것도 금(禁)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원(院), 선조 연대에는 124원이나 되었으며, 숙종 때에는 1도(一道)에 80~90을 헤아릴 정도였으니, 각 읍(邑)마다 원사가 없는 곳이 없었으며 1읍(一邑) 내에도 여러 곳씩 있는 곳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숫자적 증대만이 아니라 이에 부속된 광대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금도 내지 않고, 또한 양민이 서원의 노비가 되어 군역(軍役)을 피하는 은가(隱家)로 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생은 향교에서 벗어나 서원으로 몰려들어 학문을 닦는 것보다도 놀고 먹으며 말로만 떠들어대는 무리로 전락되었으며, 중앙 정부의 붕당(朋黨)과 똑같은 표리(表裏)가 되어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고, 심하게는 서원을 근거로 하여 서민백성들을 들볶는 등 그 폐해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숙종 이후에는 원사(院祠)를 단속하는 것이 정부의 중대한 업무 중 하나였으며, 여러 차례 사설 서원을 철폐시키려고 하기도 하였다. 정조 때에는 상원사(尙院祠)의 수는 약 650개이나 되었다. 이중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은 유명한 노론(老論)의 수령 송시열(宋時烈)을 모시는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 화양리(華陽里)의 화양서원(華陽書院)과 같은 곳에 있는 만동묘(萬東廟)였다. 당시에 화양서원에서 발행하는 서간(書簡; 편지)은 화양 묵비(墨臂)라고 하여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원사에 대한 비판은 그 초기부터 일어나고 있었으며 행정상에도 일대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였으나 고종 초까지 그 세력은 크게 떨쳤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 때 집권을 한 대원군(大院君)의 수완에 의해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되었다. 즉, 고종 6년(1869) 8월에 우선 종래의 사액서원(賜額書院) 및 향현사(鄉賢祠)에 주어졌던 특권은 모두 폐지하였으며, 동시에 원사의 중복 설치 및 개인적인 설치를 엄금하였다. 그리고 2년 5월에는 원사 중의 우두머리라고 할 만동묘의 철

폐(撤廢)를 명하였다. 다시 8년 3월에 이르러서는 팔도의 첩향서원(疊享書院; 1인에 대하여 2이상의 서원)·향현사를 전부 철폐하는 명령을 내리고 도학(道學) 충절(忠節)이 특히 탁월한 사람에 대하여서만 1개소(一個所)의 서원 또는 향현사의 존재를 허락하였다. 또한 장차 원사의 신설을 엄금하고 향사할 인물이라면 반드시 허가를 얻어 이미 설치된 사원(祠院)에 합치도록 하였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군현(郡縣)이 있으면 그 수령을 엄벌에 처했으므로 각 도의 서원이 한꺼번에 철폐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서원 및 사(祠)의 말로(末路)였다. 따라서 이때에 특히 남게 된 원사는 겨우 47개였다.

4. 과거제도(科擧制度)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와 같이 교육제도 기초 위에 관료의 임용제도로써 과거(科擧)가 있었다. 과거는 문과(文科; 대과(大科)와 소과(小科)가 있는데 문과(文科)라 하면 대과(大科)를 말한다)·무과(武科)·잡과(雜科)로 분류되지만, 조선 시대에도 문(文)을 높이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과거라 하면 문과를 가리킨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미사자(未仕者;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를 유학(幼學),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미사자를 한량(閑良)이라고 하였으며 그 자격에도 제한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① 『범죄자는 영구히 뽑지 않는다(犯罪永不敍用者)』, ② 『벼슬자리를 팔아먹은 자의 자식(贓吏瀆職之子)』, ③ 『어머니가 재가를 했거나 부녀자의 행실을 잃은 자의 자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④ 『서얼의 자손(庶孽子孫)』(뒤에는 약간 緩和하였음)은 그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보다도 신분상으로 큰 제한이 있었다. 곧 생원(生員)·진사과(進士科)와 문과는 양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격이 없었다(『속대전』). 그러나 무과(武科)는 그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어 천인(賤人)만이 자격이 없었다. 또한 잡과(雜科)는 그 직업상의 기술(技術)이 일정한 신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개 그

범위에서 한정되어 응시하였다. 과거는 식년시(式年試)를 원칙으로 하였다. 곧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았는데 자(子)·묘(卯)·오(午)·유(酉)년에 문과(생원·진사과 포함)·무과(武科)·잡과(雜科)를 함께 보았다. 식년 문과는 태조 5년(1397)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문과에는 사마시(司馬試) 혹은 생원·진사과라고 하는 소과(小科)와 문과(文科)라고 부르는 대과(大科)가 있다.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二段階),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5단계(五段階)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문과 급제가 되는 것이었다.

과거의 첫 단계인 소과 초시(初試; 감시(監試)·감시초시(監試初試)·초시(初試)·생진시(生進試))는 공부하는 선비(士人)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시험(國家試驗)으로서 식년시의 경우는 식년 전년(前年)의 가을, 대개는 8월에 한성부(漢城府) 및 팔도(八道; 뒤에는 경기도를 한성부에 포함하여 7도))에서 지역별로 관찰사의 주관 아래 시행하였다. 고려시대의 제도에 따라 제술과(製述(進士)科)와 명경과(明經(生員)科)의 2종(二種)이 있다. 진사과는 부(賦) 1편과 고시(古詩)·명(銘)·잠(箴) 중에서 1편을 짓게 하였으며(뒤에는 부(賦) 1편으로 하였다), 생원과(生員科)는 오경(五經)의 의(義) 1편(뒤에는 춘추의(春秋義)를 없애고 사경(四經))과 사서(四書)의 의(疑) 1편을 짓게 하는데 각도(各道)의 정해진 숫자에 따라 전국에서 양과(兩科)에 각각 700명(뒤에는 540명)씩, 도합 1,400명(뒤에는 1,080명)을 선발하였다. 소과 초시에 대항하는 것으로 사학유생(四學儒生)에게는 성균관 대사성이 시행(施行)하는 승보(陞補; 개성유수와 제주목사)가 시행하는 것도 있음), 사학합제(四學合製)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각도의 도사(都事)와 개성·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시행하는 공도회(公都會) 등도 있다. 이에 합격되면 곧 소과 복시에 응할 수 있었으나 그 정원은 각 수명(數名)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소과 복시(회시(會試), 감시복시(監試覆試), 생진복시(生進覆試))는 소과 초시의 합격자를 식년 봄 대개는 2월에 한성(漢城)에 모아 예조(禮曹)의 주재 하에 시행하였는데 이를 회시(會試)라고 하였다. 복시 전에 소학(小學)·가

례(家禮)의 강(講)으로 녹명(錄名)을 한 뒤 초시와 동일한 과목을 시험보아 생원·진사 각과에 100명씩, 계(計) 200명을 선발하였다.

이 합격자에게는 백색지(白色紙)에 검은 묵서(墨書)의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를 주며, 제술의 합격자를 진사(進士), 명경(明經)의 합격자를 생원(生員)이라 하였다. 생원·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만이 아니라 사류(士類)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하급관료에 취직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후기에 와서 과거가 세도 있는 집안의 농락(籠絡)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생원·진사를 소성(小成)이라 하여 이에 만족하고 대과로 나아갈 것을 단념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방에서 시험을 치루는 자들은 대부분 그 목표를 여기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단계인 대과 초시(大科初試; 동당초시(東堂初試))는 소과 복시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가 응시하는데 식년 전년의 가을에 역시 한성부와 조선 팔도에서 지역별로 관찰사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이 밖에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생원·진사에게는 별도의 기회를 주었는데 성균관의 과시(科試)를 관시(館試)라 하였다.

대과(大科)도 처음에는 제술·명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나누는데 제술시(製述試)는 초장에서 오경사서(五經四書)의 의(疑)·의(義) 또는 논(論) 중에서 2편을 시취(試取)하였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오경의(五經疑)가 폐지되어 사서(四書)의 의(疑)·의(義) 중에서 1편과 논(論) 1편으로 하였다. 중장에서는 부(賦)·송(頌)·명(銘)·잠(箴) 중에서 1편(뒤에는 부(賦) 1편)과 표(表)·전(箋) 중에서 1편,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으로 시취하였다. 명경시(明經試)는 뒤에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오경사서에서 시취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에서 340명(뒤에는 223명)을 선발하였다. 또 대과 초시에 대항하는 것으로 경향(京鄕) 유생에게 성균관이 시행하는 통독(通讀)이 있었으나 정원은 10명에 불과하였다.

넷째 단계인 대과 복시(大科覆試; 동당복시(東堂覆試))는 대과 초시의 합격자를 식년 봄에 한성에 모아 예조의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먼저 이 복시 전에 『경국

대전』 『가례(家禮)』로서 녹명(錄名)을 한 뒤 초장에는 사서삼경의 강서(講書), 중장은 부(賦) 1편과 표(表)·전(箋) 중 1편의 제술로 33명(三十三天에 應하는 뜻),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의 제술로써 33명(三十三天에 응하는 뜻)을 선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인 대과 전시(大科殿試)는 국왕(國王)이 친히 주재하는 가운데 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대과 복시의 합격자 33명을 모두 급제시키는데,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 1편(뒤에는 논(論)·부(賦)·명(銘)도 첨가)의 제술로서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兵科) 23명의 등급을 정했다. 대과의 급제자에게는 국왕이 홍색지(紅色紙)에 검은 묵서(墨書)의 합격증서인 홍패(紅牌)와 모화(帽花; 어사화(御賜花))를 하사하고, 이 영광스러움을 축하하는 갖가지 행사가 있었다. 이 전시(殿試)의 급제자 중 갑과의 제일인자를 장원(壯元)이라 하여 종6품(從六品), 제2인자를 방안(榜眼)이라 하고, 제3인자를 탐화(探花)라 하여 각각 정7품(正七品)을 주었으며, 을과(乙科)는 정8품(正八品)을 병과(丙科)는 정9품(正九品)의 품계를 주어 성균관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권지(權知; 임시직(臨時職))로 나누어 임명하였다. 또한 원유계자(元有階者)라 하여 기성(既成) 관료로서 승진을 위하여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는 갑과 제1인은 4품계를 올려주고, 갑과 제2,3인 자는 3품계를 올려주고, 을과는 2품계를 올려주고, 병과는 1품계를 올려주었다.(『경국대전』 「예전(禮典)」)

정기 시험(定期試)인 식년시 외에 임시 부정기(不定期)의 과거시험도 여러 가지 있었다. 첫째로 경과(慶科)라 하여 국가의 큰 경사, 누경(累慶)이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는 문무 잡과를 과시(科試)하였으며 그 절차는 대개 식년시와 같은 5단계로 치러졌다. 또한 경과(慶科)로 설치 시행된 별시(別試)·정시(庭試)와 국왕이 문묘에 참배(參拜)하는 날 시행하는 알성시(謁聖試)가 있었으며, 국왕이 창경궁(昌慶宮)의 춘당대(春塘臺)에 친림하여 과시하는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은 문과(生進科는 없음) 무과에 한정하였다. 이 밖에도 문과에는 여러가지 임시 과거시험이 있었다.

무과(武科)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이 다만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가 있을 뿐이었다. 잡과(雜科)는 기술관(技術官)을 위한 과거로 역과(譯科; 한(漢)·몽(蒙)·왜(倭)·여진(女眞))·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학(命課學))·율과(律科)가 있으며 대, 소과의 구별 없이 단일과로 초시, 복시의 2단계로 시험을 치렀다. 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僧侶)의 자격을 공인하는 도첩(度牒)을 얻기 위한 송경(誦經)과, 승직(僧職)을 주기 위한 승과(僧科)가 있어 선(禪)·교(敎) 양종(兩宗)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일이 있었다.

5. 조선 전기(前期)의 유학

조선시대의 유교는 고려 시대의 계통을 이어받아 왔다. 이는 ‘성리학의 전래’에서 언급하였다. 즉,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을 중흥(中興)의 시조로 삼아 그 문하에 이재(彝齋) 백이정과 역동(易東) 우탁(禹倬)이 나오고, 백이정의 학문은 익재(益齋) 이제현·목은(牧隱) 이색으로 전승되었으며, 이색의 문인으로 양촌(陽村) 권근·삼봉(三峰) 정도전,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이 나와 조선 시대의 유교로 그 계통이 이어진다. 또한 정몽주의 학문은 야은(治隱) 길재가 이어받고 그의 문인으로 강호(江湖) 김숙자와 그 아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이 나오면서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갔다. 이리하여 조선 초기의 유학은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와 사장(詞章)을 숭상하는 한(漢)나라나 당(唐)나라 계통의 학풍을 지닌 고려 말기의 경향을 답습하는 동시에, 사색(思索)과 이론을 숭상하는 송나라 학풍을 지닌 조선 중기 이후의 경향을 몰아가면서 그 양자의 혼합 내지는 교량적(橋樑的) 위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겠다.

태조 이래 역대 왕의 숭유정책(崇儒政策)은 날로 발전하여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세종 초에는 권근(權近)의 문인(門人)으로 매촌(梅村) 권우(權遇)·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동포(東浦) 맹사성(孟思成)·경암(敬庵) 서조(徐稠)·송정(松亭) 김반(金泮) 등이 나왔다. 특히 김반은 김구(金鉤)·김말(金末) 등과 함께

세종대(世宗代)에 연이어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많은 준재(俊才)를 양성하여 삼김(三金)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또한 영남(嶺南) 지방 조용(趙庸)의 문인인 별동(別洞) 윤상(尹詳)도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김반과 함께 국초에 사범(師範)의 대표였다.

세종 2년(1420)에는 유명한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어 조선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곧 유관(柳寬)·변계량을 대제학(大提學)으로 시작한 집현전에는 당대의 쟁쟁한 학자가 연달아 나오게 되었다. 청향당(清香堂) 윤희(尹淮)·지재(止齋) 권계(權蹏)·역학재(易學齋) 정인지(鄭麟趾)·한석당(閑碩堂) 박중림(朴仲林)은 집현전 제학(提學)이었으며 권채(權採)·경재(敬齋) 남수문(南秀文)·회헌(檜軒) 유의손(柳義孫)·연빙당(淵氷堂) 신석조(辛碩祖)·구천(龜川) 어효침(魚孝瞻)·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저헌(樛軒) 이석정(李石亭)·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단계(丹溪) 하위지(河緯地)·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 등이 모두 집현전 출신이었으며 이밖에도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擘)·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 등도 이 무렵의 이름있는 유학자였다.

절의(節義)·청담파(淸談派)

단종(端宗)의 손위(遜位)와 세조의 집권이 이어지는 때에 집현전 학자들 가운데는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 등이 절의를 고수하여 생명을 버렸으며, 정인지·신숙주 등은 세조에 협력하여 공신(功臣)이 되는 등 유학계에 일대 변동(一大變動)이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류(士類)들 사이에는 소수(小數)나마 절의를 지켜 대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혹은 방랑(放浪)으로 일생을 보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비롯하여 권절(權節)·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聘壽) 등 이른바 생육신(生六臣)과 같은 일파(一派)가 있었으며, 죽림칠현(竹林七賢)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청담(淸談)으로 나날을 보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소총(篠叢) 홍유손(洪裕孫)·월호(月湖) 이정은(李貞

恩)·서호주인(西湖主人) 이충(李摠)·우선언(禹善言)·조자지(趙自知)·한경기(韓景琦) 등의 일파도 있었다.

그러나 실지로 학자들 간에 세력을 형성하여 은밀히 대립의 형세를 보인 것은 경기도 근처를 근거로 하는 훈신구가(勳臣舊家)의 세력과 영남(嶺南)의 재야사림(在野士林)이었다. 이들은 점차 사상·향토(鄉土)·처세(處世)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친분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경기도 부근 훈구파(畿內勳舊派)

경기도 부근의 훈구 세력은 대개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고 단종을 보필(輔弼)하다가 이어 세조의 집권 후에도 계속 정권에 참여하여 온 이들로서 정신적·철의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정치의 현실에 입각하여 세조·성종대에 훌륭한 정치와 교화를 이룩한 이들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유자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인지·어효침·최항·이석정·양성지·권람(權擘)·신숙주(申叔舟) 등을 비롯하여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일재(逸齋) 성임(成任)과 용재(慵齋) 성현(成俔) 형제, 우봉(牛峰) 이극배(李克培)·이극균(李克均)·이극감(李克堪)·이극증(李克增)·이극돈(李克墩) 형제, 한계희(韓繼禧)·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천은당(天恩堂) 노사신(盧思愼)·허백당(虛白堂) 정란종(鄭蘭宗)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온 신하들로서 정치의 실제에 나서서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전례(典禮)와 사장(詞章)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세종, 세조, 성종에 걸치는 여러 가지 국가 발행 서적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영남 재야파(嶺南在野派)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은거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력한 길재(吉再)를 비롯하여 그 제자 김숙자와 김종직의 학통(學統)을 잇는 일파를 영남(嶺南)의 재야사림(在野士林)이라 한다. 김종직은 당시 영남사림의 우두머리 영수(領袖)로

문집(文集)과 『당후일기(堂後日記)』 『이존록(彝尊錄)』 『청구풍아(靑邱風雅)』 『동문수(東門粹)』 『경상도지도지지(慶尙道地圖地誌)』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사장(詞章)에도 능하였다. 그 문하에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을 비롯하여 매계(梅溪) 조위(曹偉)·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지지당(止止堂) 김맹성(金孟性)·뇌계(雷溪) 유희인(兪好仁)·안락재(顔樂齋) 김흔(金訢)·우졸자(迂拙子) 박한주(朴漢柱)·남계(藍溪) 표연말(表沿末)·강백진(康伯珍) 등이 있다. 또한 청담파(淸談派)로서 이 문파(門派)와 서로 기맥(氣脉)이 통하는 이가 많았다.

이 사립 일파에는 재능 있는 학자가 많아 기상(氣象)이 높고 언론(言論)이 무성하여 후일 연산군(燕山君)의 사화(土禍)는 이 파(派)와 훈구파(勳舊派)의 반목갈등(反目葛藤)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김굉필과 정여창(鄭汝昌)은 도학을 잘 실천한다는 이름이 있었다. 특히 김굉필의 문인으로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금재(琴齋) 이장곤(李長坤)·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이 있어서 조선 정주학(程朱學)의 정통은 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전수(傳授)된 것이라고도 한다.

조광조(趙光祖)

중종이 즉위하여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풍속과 교화를 좋게 일으키려고 할 때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실현하려고 한 최초의 학자로서 진일재(眞一齋) 유송조(柳崇祖)가 있었다. 성균관에 18년간 재직하면서 성리학에 전심하여 경사자집(經史子集)에 널리 통달하여 당시의 소년들과 이름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으며, 『대학감(大學監)』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 등을 저술하였다. 또 왕명에 의하여 『칠서구담(七書口談)』을 편찬하였다. 이때 조광조는 유송조가 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태학에 들어가 도학(道學)을 강구(講究)하고 사문(斯文)을 일으키겠다고 자임(自任)하며 유자(儒子)로서 이상정치(理想政治)의 실현을 결의(決意)하였다. 그의 학풍은 체험(體驗)을 주로 하여 사장(詞章)에 힘쓰지 않고 벼슬길에 나

아간 뒤에도 ‘임금의 마음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므로 그 근본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체제가 설 자리가 없어서 교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왕에게 매양 도학 수기(修己)를 권장하였다. 그는 ‘군자와 소인의 구분(君子小人之辨)’을 역설(力說)하고 소인을 엄격히 배척함으로써 마침내 훈신구가(勳臣舊家)의 반감을 사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동지파(同志派)로는 노천(老泉) 김식(金湜)·송재(松齋) 한충(韓忠)·자암(自庵) 김구(金絀)·충암(冲庵) 김정(金淨) 등과, 동조자로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지치(至治)를 목표로 하여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유교적 교화사업을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또한 조광조는 선유(先儒)를 포창(褒彰)하자고 아뢰어 정몽주·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의 학통이 정통인 것을 주장하였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휴암(休庵) 백인걸(白人傑)이 있다. 이들은 조용히 살면서 사색(思索)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기묘사화 당시에 쫓겨난 김안국(金安國)은 여주(驪州)에, 그 아우 김정국(金正國)은 고양(高陽)에 각각 물러나서 강학(講學)에 전심하고 있을 때 사방(四方)의 학자가 이리로 모여들었고,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같은 이들도 때때로 여주를 방문하여 학문을 논하였다 하며, 김안국의 교우(交友)에는 여주 목사 이순(李純)이 있었다.

조광조의 뒤를 이어 심정(沈貞)·김안노(金安老) 등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다가 실각(失脚)한 후 김안국, 김정국 형제는 다시 등용되고 종종도 그 말년에는 사림(士林) 중에 유배파직(流配罷職)된 이들을 거두어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힘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기묘사화 이후로 사류(士類)가 정계진출을 단념하고 재야(在野)에서 학문에 전심(專心)하는 풍조가 일어나서 학문의 경향도 사색(思索)과 이념(理念)의 방면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중 앞장 선 분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다. 서경덕은 일생을 학구(學究)와 사색으로만 보내어 그 주기(主氣)의 학설(學說)은 뒤에 이이(李珥)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은 다년간 벼슬길에도 나아갔으나 그 주리(主理)의 학설은 뒤에 이황

(李滉)의 사상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와 같이 그 경향은 다르다하나 둘이 독자적으로 정진(精進)하여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全盛期)를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서경덕(徐敬德) · 이언적(李彦迪)

서경덕은 개성 화담(花潭)에 은거하여 수십 년을 사색에만 전력하였다. 따라서 저술은 적고 『화담집(花潭集)』만 있을 뿐이다. 송학(宋學)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정자와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을 이어받아 이룩했다고 할 ‘기일지론(氣一之論)’의 제창(提唱)은 조선유학사상 가장 창의적인 철학(哲學)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의 ‘기리지학(氣理之學)’은 송나라 학자 장재(張載)에게서, ‘기수지학(氣數之學)’은 역시 송나라 학자 소옹(邵雍)에게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하나 어떠한 점은 더 심각하고 독창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의 문인 연방(蓮坊) 이구(李球)는 스승의 학설을 철저히 수호(守護) 발전시켜 당시에 가장 조선적인 특색을 발휘하였다고 하겠다. 또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과 수암(守庵) 박지화(朴枝華)는 기수지학에 심취하였고, 동강(東岡) 남언경(南彦經)은 이때 수입되기 시작한 양명학(陽明學)으로 기울어졌다. 사암(思庵) 박순(朴淳)·초당(草堂) 서화(徐擘)·행촌(杏村) 민순(閔純)·정암(正庵) 박민헌(朴民獻) 등은 ‘주기(主氣)’ 혹은 ‘주리(主理)’의 학(學)으로 스승의 학설을 이어받아 밝혔고, 고청(孤靑) 서기(徐起)도 이 계통을 이어받았다.

이언적(李彦迪)은 28세에 이미 망기당(忘機堂) 조계보(曹溪輔)와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을 논하여 왕복 4,5 차에 이르렀으니 이는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철학적 대논변(大論辯)이라 할 것이다. 그의 저서에는 『회재집(晦齋集)』이 있고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속혹문(續或問)』 등은 그의 만년에 가장 힘을 기울인 특색있는 학설이라 할 것이다. 후일 이황(李滉)은 이언적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와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으로 추송(推崇)하였다.

서경덕과 이언적의 뒤를 이어 명종·선조 대에는 ‘이기심성(理氣心性)’의 송학(宋學)이 크게 일어나 조선 유학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이 중 이황(李滉)과 이이(李珣)는 가장 뛰어나 조선유학사상의 대표적 유학자로 추앙받았으며, 영남인

(嶺南人)은 이황을 ‘동방의 주부자(東方之朱夫子)’라 하고, 기호인(畿湖人)인은 이이를 ‘동방의 성인(東方之聖人)’이라 하여 그 학풍이 뒷날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훗날 동서당쟁(東西黨爭)은 이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황(李滉)

퇴계(退溪) 이황은 일찍이 벼슬을 물러나 예안(禮安; 현 안동) 도산(陶山)에 귀향하여 강학(講學)을 하였으므로 스스로 퇴도(退陶)라고 호(號)를 지어 불렀다. 명종과 선조의 특별한 배려로 여러 번 부름을 받고 대제학(大提學)·좌찬성(左贊成)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굳이 사양하고 은거하였다. 그는 철저한 학자이지 정치가는 아니었다. 또한 그의 학문은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서로 보탬이 되고 서로 진전시킴(相資互進)’을 주장하고 ‘성(誠)’을 기본으로 삼아 전 생애를 통하여 ‘경(敬)’을 실천하였다. 그의 학문 태도는 비범한 총명을 구비하면서도 면밀히 살펴나가면서 깊이 가라앉혀 연구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학문은 주자(朱子)의 ‘이기이원(理氣二元)’의 사상을 철저히 발전시켰다. 그의 59세 때에 시작한 나주(羅州)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은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것으로 편지 왕래(往來)만으로 8년 간에 걸렸다. 이 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를 던진 것이다.(박종홍(朴鍾洪) 『철학개론(哲學概論)』) 그 뒤에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은 가운데 ‘사단(四端),’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 ‘칠정(七情),’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라고 한 학설(學說)은 그 논쟁의 결론(結論)인 동시에 뒤에 이이(李珥)의 학파와 논쟁의 자료(資料)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주자(朱子)를 끝까지 떠받들어 서경덕의 ‘주기론(主氣論)’과 명나라 나훤순(羅欽順)의 ‘이기합일론(理氣合一論)’에 대하여는 『비리기위일물변증(非理氣爲一物辨證)』을 짓고 명나라 왕수인(王守仁; 양명(陽明))의 ‘지행합일론(知行合一論)’에 대하여는 『양명전습록변(陽明傳習錄辯)』을 짓고, 이구(李球)의 ‘심무체용론(心無體用論)’에 대하여는 『심무체용변(心無體用辯)』을 지어 각각 이를 논박(論駁)

하였다. 그의 저작에는 위의 것 외에도 문집에 수록된 것과 『계몽전의(啓蒙傳疑)』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심경석의(心經釋疑)』 『칠서석의(七書釋疑)』 등이 있어 후학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 『천명도설(天命圖說)』 『자성록(自省錄)』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퇴계집(退溪集)』 등은 일본에도 전하여져 일본 유학계(儒學界)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마침내 명치(明治) 시대 교육 이념의 기본정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원나라와 명나라에도 학식(學識)에 있어서는 조선의 이 퇴계(李退溪)를 따를 학자가 없다는 찬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문하에는 도학·문장·덕행·사업으로 일세(一世)에 이름 있는 이가 많았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한강(寒岡) 정구(鄭誦)의 3인이 영남에서 가장 높게 추앙을 받았으며 월천(月川) 조목(趙穆)·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분지당(貫趾堂) 남치리(南致利),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문봉(文峰) 정유일(鄭惟一)·낙포(樂圃) 정탁(鄭琢) 등이 있다. 이황과 거의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학문과 관련이 있었던 학자들로는 호남(湖南)에 일재(一齋) 이항(李恒)·남명(南冥) 조식(曹植)이 있었다. 조식의 문하에는 성암(省庵) 김효원(金孝元)·덕계(德溪) 오건(吳健)·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수우(守寓) 최영경(崔永慶)·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등이 있어 기개와 절개를 숭상하였다. 이보다 뒤에 고양의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장성(長城)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해남(海南)의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한성(漢城)의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나주(羅州)의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등이 있어서 서로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이(李珣)

율곡(栗谷) 이이는 강릉(江陵)의 외가에서 출생하였으나 파주(坡州)는 율곡이 그가 대대로 살아간 고향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당대에 드문 천재(天才)로서 벼슬도 대제학,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다. 그는 성격과 태도가 이황(李滉)과

는 달리 기상(氣象)이 호탕하고 배포가 크며 학문에 있어서도 장구(章句)의 문자나 따지는 분석적 해설보다는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洞察)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의 사상은 ‘이발기승일도설(理發氣乘一途說)’로 대표된다. 그가 22세 때 지은 『천도책(天道策)』은 이미 그 바탕이 되어 있었으며, 37세 때부터는 성혼(成渾)과 또한 6년 간에 걸친 사·칠쟁론(四七爭論)으로 이황·기대승의 논쟁을 발전시켜 ‘이 주장(主張)이 주자의 진의(眞意)와 어긋난다면 주자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하는 자신(自信)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대개 화담(花潭)과 퇴계(退溪)의 학문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한다.(이병도, 『자료한국유학사초고』 3편 3장 1절)

이이(李珣)는 도학(道學)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경세가(經世家)로서도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인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성학집요(聖學輯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시무육조소(時務六條疏)』 등은 모두 군왕(君王)의 학문과 시무(時務)에 걸친 논단으로서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유가의 이상인 요순(堯舜)과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조광조(趙光祖)와 같이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임금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옳게 만드는 것(格君正俗)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었으나 잘못된 정치를 차츰 바꾸려는 것과 백성을 구제하려는 대책에 대하여는 한층 더 실제적인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때마침 싹트기 시작한 동서(東西) 분당(分黨)에서 중립(中立)의 입장을 지키고 분열방지를 위해 힘썼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 향읍(鄉邑)에 있어서는 『서원향약(西原鄉約)』 『해주향약(海州鄉約)』 『사창계약속(私倉契約束)』을, 가정(家庭)에 있어서는 『동거계사(同居戒辭)』를, 학교에 관하여는 『학교모범(學校模範)』 『해주은병적사학규(海州隱屏積舍學規)』와 『약속』 『문헌서원학규(文憲書院學規)』와 같은 규례(規例) 조약을 많이 만들었다. 그의 저서로는 위의 것 외에도 『격몽요결(擊蒙要訣)』 『경연일기(經筵日記)』와 함께 『김시습전(金時習傳)』 등 시문(詩文)이 전하여 온다.

그의 많은 문인(門人) 중에서 유명하기로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수몽(守夢) 정엽(鄭曄)·동담(東潭) 한교(韓嶠)·묵재(默齋) 이귀(李貴)·중봉(重峰) 조헌(趙憲)·추포(秋蒲) 황신(黃愼)·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등이 있다.

이이(李珣)와 동시대에 있어 서로 교유(交遊)하며 학문을 토론하는 사이에 있었던 학자로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있었다. 따라서 이이의 문인이 성혼의 문하에 출입하는 이가 많았다. 성혼의 문인으로는 수은(睡隱) 강원(姜沅)이 있었다. 또 고양(高陽)의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은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그의 문인으로 사계 김장생, 수몽 정엽,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약봉(藥峰) 서성(徐省), 기옹(畸翁) 정홍명(鄭弘溟) 등이 있다. 이 중 예학의 태두(泰斗)라는 김장생은 이이의 학문적 계통(學統)을 이으면서도 예학은 송익필을 근원으로 하였다. 이들은 조선 후기에 크게 활약하고 있었다.

유학(儒學)의 2대 계류(二大系流)

이황(李滉)과 이이(李珣)의 교우 문인 등은 점차로 학파를 형성하여 갔다. 선조 8년(1574)에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 마침내 대립하게 되어 이른바 당쟁(黨爭)이 오래가게 되자, 이황·조식의 계류(系流)는 대개 동인(東人)으로, 이이·성혼의 계류는 서인(西人)으로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사류(士類)로서 이 양파(兩派)의 어느 편에 들지 않은 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학설상(學說上)의 시비(是非)와 정치상의 이견(異見)과 지방별(地方別)의 대립을 일으켜 마침내 몇 백년 동안의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이 당쟁은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당면하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으나 재야(在野)의 사류(士類)들 가운데에는 의병(義兵)을 조직하여 몸을 던져 싸움을 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동인(東人)의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서인(西人)의 중봉(重峰) 조헌(趙憲)·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은 유명한 예이다.

6. 조선 후기(後期)의 유학

조선 중기 이후의 학풍은 그전처럼 경서나 역사에 통달하거나, 문장 공부에 힘쓰던 시대에 비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나 교화주의에 힘쓰던 실천유학시대를 거쳐서 이학(理學)의 전성기(全盛期)에 있었으므로 특히 예학(禮學)을 숭상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후기에 이르면서 이른바 조선유학사상 예학과(禮學派)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예(禮)라 함은 천리(天理)의 절차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말과 행실을 천리 자연의 이치에 꼭 맞게 하며 인생 상호간의 사랑과 공경을 극진히 하도록 하는 기준이고, 그 천리(天理)와 성경(誠敬)에 맞는 일정한 방식과 절차이므로 유교에서 이를 중히 여겨 온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현상윤, 『조선유학사』 7장 1절)

그러나 예(禮)를 지나치게 숭상하고 중시한 나머지 형식적인 의례(儀禮)에만 사로잡혀서 유교의 근본정신과는 관계가 적은 지엽적(枝葉的)인 예론(禮論)의 시비가 되풀이 되어가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이른바 예송(禮訟)이라는 당쟁으로까지 확대되어감으로써 적지 아니한 폐단을 남기게 된 ‘예학중심(禮學中心)의 유학’이라는 변태적인 시기를 맞게 되었다.

예학과(禮學派)

조선 예학의 태두(泰斗)라고 하는 사계 김장생을 비롯하여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한강(寒岡) 정구(鄭逵)·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등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 김장생은 처음에는 구봉 송익필을 스승으로 섬기다가 뒤에는 울곡 이이의 문에 들어갔으니 그의 예학은 송익필에게서 배우고 이학은 이이에게서 근원한 것이라고 하겠다. 저서로는 『의례문해(疑禮問解)』 『가례집람(家禮集覽)』 『상례비고(喪禮備考)』 『경서변의(經書辨疑)』 『근사록차의(近思錄劄疑)』 『서소잡록(書疏雜錄)』 등이 있다. 김집(金集)은 부친 김장생에게 배워 전승(傳承)된 가학(家學)을 더욱 깊이 연구 발전시켜서 조선의 예학이 이 부자(父子)를 통하여 체계(體系)를 세우

게 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정구(鄭述)는 조식(曹植)과 이황(李滉)의 두 분 문하에 출입하면서 학문을 하였다. 예학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산(算)·병(兵)·의학(醫學) 등에도 널리 통하는 박학(博學)으로서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 『가례집람보주(家禮集覽輔註)』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등의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정경세(鄭經世)는 유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으로 이황을 조술(祖述)하였는데 특히 예론에 밝아 『사문록(思問錄)』 『주문작해(朱文酌海)』 『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의 저작을 남기고 있으며 이기론(理氣論)에 대하여는 김장생과의 사이에 왕복(往復) 변론(辯論)한 일이 있다.

월·상·계·택(月·象·谿·澤)

예학과의 유학자보다 조금 앞서서 조선 중기 한문(漢文)의 정종(正宗)으로 뽑히는 문학자들로 월상계택이라 불리우는 뛰어난 문장가(文章家)가 있었다. 즉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상촌(象村) 신흠(申欽)·계곡(谿谷) 장유(張維)·택당(澤堂) 이식(李植)을 말한다. 당시 최고의 유학자로서 특히 이정구는 『경연강의(經筵講義)』 『대학강화(大學講話)』 등의 저작을 남기고 있다.

또한 이 무렵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일찍이 이황의 문인인 정구(鄭述)에게 배웠으므로 이황의 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학술상으로는 명나라의 나흠순(羅欽順)과 이이(李珥)의 영향을 받았다. 이기설에 있어서는 이이와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가졌으니 당시로서는 오히려 이례적(異例的)인 학자였다고 하겠다. 그는 문집 외에 『역학도설(易學圖說)』 『도해발휘(圖解發揮)』 『역봉총설(易封總說)』 『성리설(性理說)』 『만학회요(晚學會要)』 『녹의사질(錄疑俟質)』 『노모계(老耄戒)』 등의 저술이 있다.

승명사상(崇明思想)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에 중국을 숭상하는 모화사상(慕華思想)이 크

게 일기 시작하였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비롯하여 동계(桐溪) 정온(鄭蘊)과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 이른바 삼학사(三學士)를 그 대표자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송명배청(宋明排淸) 사상은 당시의 학자는 물론이며 일반 백성에게까지 뿌리깊이 박혀 내려오다가 송시열(宋時烈)에 이르러서 극(極)에 달하게 되었다.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우암(尤庵) 송시열과 동춘(同春) 송준길은 같은 집안 사람으로 김장생(金長生)과 그의 아들 김집(金集)의 많은 문도(門徒) 중 가장 걸출한 학자이다.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것도 같아서 흔히 양송(兩宋)이라고도 한다. 송시열은 이황의 ‘물격설(物格說)’을 비판하면서 ‘퇴계(退溪)의 설이 주자(朱子)의 말에서 온 것이기는 하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주자의 뜻과 같지 않으니 주자의 진의(眞意)를 터득한 이로는 오직 울곡(栗谷)만이 있을 뿐이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104, 답김직경(答金直卿)·김중국급이군보서(金仲國及李君輔書))라고 하였다. 또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있어서도 이황의 설에 반대하고 이이의 ‘사단칠정(四端七情) 개기발이승지묘(皆氣發而乘之妙)’라는 설을 신조(信條)로 삼았으며 나아가서는 ‘사단칠정이 모두 정(情)이며 또한 발이승지(發而乘之)하는 것인즉 사단도 칠정과 같이 선악(善惡)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여 이이의 설을 더욱 발전시켰다(권상하, 「송시열묘표문」)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송시열의 유학은 주자(朱子)의 연구로 시작하여 끝을 맺었다. 그의 저작집 『송자대전』은 대개 이에 관한 것이며 조선의 유학자로는 이이(李珣)를 스승으로 하여 언행진퇴(言行進退)의 귀감(龜鑑)으로 격렬한 당쟁 속에서 좌충우돌(左衝右突)하는 일생을 보내는 중에도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북벌(北伐)을 꾀하였으며 존화(尊華) 사상을 끝내 높이 부르짖었다.

송준길은 송시열과 동문이기는 하나 처부(妻父) 정경세(鄭經世)에게도 배웠으므로 이황의 영향을 받아 항상 이황과 이이의 설을 절충(折衷)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밖에도 당대의 학자로서 예학에 뛰어난 이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시남(市南) 유계(兪槩), 김상헌(金尙憲)의 문하인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와 포저(浦渚) 조익(趙翼)·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등이 있었다.

허목(許穆)

이 시기에 송시열과 맞선 남인(南人)의 학자로 미수(眉叟) 허목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정구(鄭逑)에게 배웠으므로, 그의 직계 제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고문(古文)에 뛰어났으며 글씨를 잘 써서 ‘학(學)·문(文)·서(書)의 삼고(三古)’라는 칭송을 듣는 석학(碩學)이었다. 저서로는 『심학도(心學圖)』 『요순우전수심법도(堯舜禹傳授心法圖)』 『경설(經說)』 『동사(東事)』 등이 있다.

윤휴(尹鑄)

허목(許穆)과 아울러 남인학파(南人學派)의 영수로서 서인(西人)과 대항하여 유림(儒林) 당파사(黨派史)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이는 백호(白湖) 윤휴(尹鑄)이다. 그는 허목과 가까이 지냈으며 문학까지 하였으므로 허목의 문인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나, 그의 경전(經典)에 대한 연구태도는 전혀 독자적인 것이어서 옛사람의 주소(註疏)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체득하려고 힘썼다. 경전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독자적인 견해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힘써 연구하여 스스로 장(章)을 나누고 주석을 붙여서 설명을 하였으니 흔히 『윤휴중용개주(尹鑄中庸改註)』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뒤에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배척을 받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윤휴와 송시열의 의견 대립은 청남(淸南)·탁남(濁南) 등의 분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윤선거(尹宣擧)와 윤拯(尹拯)

미촌(美村) 윤선거는 송시열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김장생(金長生) 부자의 문

하에서 배우던 큰 학자이다. 그는 윤희의 논쟁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힘썼으나 오히려 양인(兩人)으로부터 모두 오해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뒤에 일어난 ‘회니(懷尼)의 논쟁’ 또는 ‘노론과 소론 분당(分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문집 외에 『가례원류(家禮源流)』와 『첩천도(疊天圖)』의 저서가 있다. 그의 아들 명재(明齋) 윤증(尹拯)은 송시열의 문도(門徒)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 학자였다. 그러나 남인과 연인(連姻)이 많아, 숙종 초 서인(西人)이 실각(失脚)할 때에도 그 만은 화를 면하여 송시열에게 의심을 받았으며 끝내는 그 부자(父子)가 송시열과 사제(師弟)의 의(誼)가 끊어지고 적대시(敵對視)하게까지 되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확대되어 노론과 소론 분당의 큰 원인이 되어버렸다.

송시열과 같은 시대에는 윤증의 처부(妻父)인 탄옹(炭翁) 권시(權誥)가 있어 학행(學行)으로 알려졌으며,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은 『사변록(思辨錄)』을 지었는데 주자의 사서장구(四書章句)와는 다른 것이 있어서 당시 서인 학자 중에서 이채(異彩)로운 존재로 남인의 윤희와 비유되었다. 또한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도 『예기류편(禮記類篇)』을 편집하였는데 이도 주자(朱子)와 다른 점이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창계(滄溪) 임영(林泳)과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는 ‘이기론(理氣論)’에 이황과 이이의 학설을 절충한 학자이다.

권상하(權尙夏)

송시열은 자신의 걸출한 문도(門徒)로 윤증을 인정하였으나 뒤에 사제의 의가 끊어지자 만년(晩年)에 수암(遂庵) 권상하를 자신의 적통(嫡統)으로 삼으려고 만동묘(萬東廟)의 건립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이이의 학통은 김장생·송시열을 거쳐 권상하에게 전하여졌다고 한다. 그는 이이의 ‘기발이승일도론(氣發理乘一道論)’을 고수하였으며 『사칠호발변(四七互發辨)』 『태극설(太極說)』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초산어록(楚山語錄)』 『화양어록(華陽語錄)』 등의 저서를 남겼다.

김창협(金昌協)

송시열의 문하에 또한 농암(農巖) 김창협이 있다. 그는 이이의 계통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이황과 이이를 절충하였을 뿐 아니라 ‘사단칠정설’과 ‘인심도심설’을 논하면서는 양인(兩人)이 언급치 않았던 부분까지 논리정연하게 전개시켰던 학자이다.

김성일(金成一) 문파(門派)

퇴계학파(退溪學派)로서 허목·윤휴 이후의 남인학자로 근래까지 학통이 연면히 이어온 것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파(門派)이다. 그의 문인 경당(經堂) 장흥효(張興孝)는 뚜렷한 학설은 없으나 그의 후계자에는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 형제가 있다. 이현일은 경사자집(經史子集)과 올려 성력(律呂星曆)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퇴계를 신(神)과 같이 믿었고 『율곡이씨론(栗谷李氏論)』 『사단칠정서변(四端七情書辨)』 등의 저서가 있다. 그의 아들 밀암(密菴) 이재(李裁)는 가학(家學)을 이어받아 『밀암집(密菴集)』에서 퇴계의 학설을 지켰으며, 그의 외손(外孫)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 형제가 있어 당대 영남학파(嶺南學派)의 대종(大宗)이 되었다.

이상정은 특히 퇴계의 한 마디 한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였기 때문에 소퇴계(小退溪)라고까지 하였다. 『대산집(大山集)』 중에서 퇴계를 조상으로 섬기고 기대승(奇大升)·이이의 사칠설(四七說)을 비평하고 퇴계의 학설을 변호(辯護)하였다. 그의 학문은 손재(損齋) 남한조(南韓朝)에게 전해지고, 손재는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에게, 정재는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祖)에게, 응와는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에게, 한주는 면우(旻宇) 곽종석(郭鍾錫)에게 전하여 학통(學統) 연원(淵源)이 연면(連綿)히 계승하여 왔다.

호락논쟁(湖洛論爭)

권상하(權尙夏)에게 배운 많은 제자 중 강문(江門) 팔학사(八學士)가 나왔다. 곧 한원진(韓元震)·이동(李東)을 비롯하여 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

(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취후(崔徽厚)·성만휘(成晩徽) 등 8인(八人)이다. 이들 중 특히 남당(南唐) 한원진과 외엄(巍嚴) 이동이 뛰어났다. 이 양인(兩人)은 학설에 서로 이견(異見)이 있었다. 이들은 심성(心性)의 변(辯)에 이론(異論)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굽히지 않고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하며 심성의 변을 말하면 반드시 양론 중 어느 한편에 가담하게 되었다. 권상하를 비롯하여 병계(屏溪) 윤봉구·봉암(鳳巖) 채지홍 등은 한원진의 설을 지지하여 호론(湖論)이라 하였으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도암(陶菴) 이재(李穡)·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 등은 이동의 설(說)에 찬동하여 낙론(洛論)이라 하였으니 이 양론의 시비를 호락시비(湖洛是非)라고 한다.

7.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이황과 이이의 학파가 각기 그 문로(門路)를 따라 학문상(學問上)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어서 송시열 등을 전후하여 국가 사회 유지(維持)의 규범으로 정치와 결합된 주자학(朱子學)은 마침내 자유로운 학문의 비판을 거부하고 형식적 관념적 배타적 탄압적인 일면만이 점차 강화되어서 주자의 비판자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의 종교화에 대한 유학자 간에서도 스스로의 비판도 있어 왔으며, 이러한 비판적 경향은 그 뒤 학문연구의 방법도 크게 진전되어 경세실용(經世實用)의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낳기도 하였으니 조선유학사상 크게 취급되어야 할 학파로서 실학파(實學派)라고 한다.

조선 역대의 경사론자(經史論者)를 들면 초기에는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이 있었고 그 뒤에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와 율곡(栗谷) 이이(李珣)가 있었다. 그리고 후기에 와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이 있고 뒤이어 성호(星湖) 이익(李瀾)이 있었다. 유형원과 이익이 각기 경사실용의 학을 주장했던 조금 뒤인 영조·

정조 때에 이르러서는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은 경사(經史)를 섭렵하고 제자백가 서적을 통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을 기치로 하여 매우 불만한 업적(業績)을 내었다.

실학사상의 대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급속히 붕괴해 가는 농촌의 보호를 주안점으로 하는 사회정책 및 농업정책이 요청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대응하여 위정자(爲政者)로서 실지로 당면한 문제의 개혁과 시책(施策)을 소(疏)·계(啓) 등의 형식으로 그 경론(經論)을 표명하고 그 실현을 추진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근본적 또는 전반적인 정책체계는 되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있는 현상을 정확히 통찰하고 훌륭한 의견을 토해낸 이가 있었으니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조헌(趙憲) 등을 들 수 있다.

그 뒤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의 저자인 구암(九庵) 한백겸(韓百謙)은 고증학적 방법을 사용한 저술을 통하여 후세의 경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전부터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가던 백과사전파(百科事典派)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수광(李睟光)의 『지봉류설(芝峯類說)』 권문해(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김육(金堉)의 『유원총보(類苑叢寶)』 등이 나오게 되니 이들은 모두 보학(譜學)의 선구적(先驅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흐름은 뒤 이어 싹트기 시작하였으니 그 시초는 유형원을 선두로 하여 이익(李瀾)·안정복(安鼎福) 등이 사회정책, 서학(西學), 국학(國學)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개시하였다.

류형원(柳馨遠)

『반계수록(磻溪隨錄)』은 자신이 농촌생활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근원을 뽑아 버리고 잘못된 정치에 대한 대책(對策)은 반드시 조선과 중국의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정밀한 실증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유교 본래의 논리와 정책과의 교합(膠合)에서 벗어나서 사회개혁에 기본 전제를 두고 사회의 현실적, 구체적 경제적(經濟的)인 여러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개혁은 부분적인 수정에 그치지 않고 전 국가체계의 일대 반성을 감행하여 『주례(周禮)』에서 말한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 속에 그려본 것이다. 그는 토지(土地)·조세(租稅)·부역(賦役)·공(貢)·과거(科擧)·교육(敎育)·관료(官僚)·군사(軍事)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걸쳐서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의 사회사상은 관료적 집권제(執權制)를 전제로 한 중앙집권의 강화와 재정확립(財政確立)에 의한 자영농민(自營農民)의 육성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이르면 실학은 비로소 학문으로서 존재를 지닐 수 있다고 하겠다.(천관우, 반계 유형원 연구 『역사학보』)

이익(李翼)

성호(星湖) 이익은 유형원을 사숙(私淑)하였다. 그는 고증(考證)에 대하여는 훨씬 정밀하였고, 게다가 서학(西學)까지도 섭취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弟子)와 함께 한 학문의 집단으로, 학파(學派)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익은 백과사전파(百科事典派)의 영향을 받아 『성호사설류선(星湖僊說類選)』을 지었으며, 『곽우록(藿憂錄)』을 비롯한 많은 저작을 내었다. 그는 이 저작물을 통하여 정치의 잘못과 백성들의 괴로움을 통렬하게 따졌으며, 그런 폐단을 구제할 방법으로는 법적으로 매매(賣買)할 수 없는 영업전(永業田)을 두어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서 자본축적(資本蓄積)의 방법으로서 ‘생재(生財)’를 논하였다. 그리고 ‘전론(錢論)’에서는 화폐 사용의 이익과 손해를 말하고, 또 과거의 폐단을 들어 문벌(門閥)을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한우근, 『성호사설연구』) 이익은 이수광(李睟光)의 서구적(西歐的) 문화와 유형원의 실사구시적 태도 및 학문적 체계를 통합하여 종래의 사조(思潮)를 새롭게 하여 확고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안정복(安鼎福)

순암(順庵) 안정복은 이익의 문인(門人)으로 그의 학풍을 계승하여 백과사전류

로서 『잡동산이(雜同散異)』, 역사학으로서 『동사강목(東史綱目)』을 남기었다. 이와 전후하여 실학사상에 기저(基底)를 둔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색경(穡經)』이 농촌생활을 토대로 한 박물학(博物學)의 유파(流派)로서,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誌)』와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의 『미계지(彌界志)』 『산수경(山水經)』 등이 지리학(地理學)과 고증적 방법의 저술로서 주목된다.

정약용(丁若鏞)

다산(茶山) 정약용은 훈고(訓古)·사회정책·서학(西學)·국학(國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흙흙신서(欽欽新書)』의 삼부작(三部作)을 포함한 전 314권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조선문화사(朝鮮文化史)에 대단한 안목일 뿐더러 조선의 실학은 이로써 집대성(集大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희(金正喜)

추사(秋史) 김정희는 그의 부(父)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중국에 가서 청나라의 석학(碩學)들과 친교(親交)를 맺었으며, 금석(金石)·도서(圖書)·시문(詩文)·전예(篆隸)의 대가(大家)로서 이름을 떨쳤다. 또한 학문의 방법은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중요한 길임을 주장하고 그것은 훈고(訓詁)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있다고 힘써 강조하였다.

성해응(成海應)·서명응(徐命膺) 서유구(徐有槩) 삼대(三代)

연경재(研經齋) 성해응은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있으면서 경학(經學)에 밝았으며, 보만재(保晩齋) 서명응의 아들 서호수(徐浩修), 손자 서유구(徐有槩)가 삼대(三代)에 걸쳐 문명(文名)이 높았고, 특히 북학파(北學派)의 시조(始祖)라고도 일컫는다.

홍양호(洪良浩) · 박지원(朴趾源)

이계(耳溪) 홍양호는 두 차례나 중국 북경에 가서 청나라의 유학자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동문회고(同文彙考)』를 편찬하였다. 연암(燕巖) 박지원은 활달하고 유려(流麗)한 문장만이 아니라 사회사상가(社會思想家)로도 선구적(先驅的)인 인물이었다. 북학파(北學派)의 큰인물로서 그가 지은 연행록(燕行錄)인 『열하일기(熱河日記)』는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홍대용(洪大容) · 박제가(朴齊家)

담헌(湛軒) 홍대용은 박지원과 특히 우의가 깊었으며, 『의산문답(醫山問答)』 『임하경론(林下經論)』 『주해수용(籌海需用)』 『연기(燕記)』 등의 저서를 남기었다. 특히 그는 독자적(獨自的)으로 지구(地球)의 자전설(自轉說)을 주장하였으며, 북학파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중국에 갔었다. 그리하여 북학론(北學論)에서 홍대용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초정(楚亭) 박제가는 모두 세 차례 북경에 다녀와서 『북학의(北學義)』를 저술하여 구국경세(救國經世)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밖에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 혜풍(惠風) 유득공(柳得恭)도 이들과 친교가 있는 학자로서 각각 북경에 다녀온 기록을 책으로 내어 북학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려실(燃藜室) 이궁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을, 옥유당(玉蕤堂) 한치윤(韓致堧)은 『해동역사(海東譯史)』를 지어 역사학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제작에서, 현동(玄同) 정동유(鄭東愈) ·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 서파(西波) 유희(柳僖) 등은 언어학(言語學)에서 그들의 독창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는 『명남루전집(明南樓全集)』에서 실학(實學) 전성기(全盛期)의 마지막 역군(役軍)으로 빛을 낸 학자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창 시대를 앞서가던 실학(實學)은 그 빛을 잃게 되었다. 뒤를 따라 흘러들어 오는 서구(西歐)의 근대문명과 시대사조(時代思潮)의 주류를 서

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 시대에 쇄국주의(鎖國主義)의 타파를 주창(主唱)한 오경석(吳慶錫)이나, 그 뒤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동 인물들의 진취적·적극적인 정신적 자세나, 『해국도지(海國圖志)』 『영환지략(瀛環志略)』의 저자인 유대치(劉大致) 같은 이들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실학적 정신을 따른 이들이라고 하겠다.

8. 양명학(陽明學)과 실학

양명(陽明)은 명나라 후반의 학자 왕수인(王守仁)의 호(號)이다. 그는 육상산(陸象山)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계승하여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여 정주학(程朱學)의 ‘성즉리설(性卽理說)’에 대립하는 학설로 양명학을 성립시켰다. 양명학은 명대를 대표하는 학설로 왕양명 육상산과 더불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기도 하였다.

양명학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대개 명종 연간이다. 그 후 이황(李滉)의 문인(門人) 조목(趙穆)·유성룡(柳成龍) 등이 스승의 학설에 입을 맞춰 이를 논척(論斥)한 다음부터는 정주학과(程朱學派)에 의하여 이단사설(異端邪說)로 몰리고 그 전파가 거의 봉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내지는 못하나 양명학을 신봉하여 거의 혼자서 공부를 하다시피 한 몇몇 학자(學者)가 있었다. 그 최초의 학자로는 서경덕(徐敬德)의 문인(門人)인 동강(東岡) 남언경(南彦經)과, 조식(曹植)의 문인인 경안령(慶安令) 이요(李瑤)라 하겠다. 이요는 선조 27년(1593)에 왕(王)과 만나서 양명학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하여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요는 남언경(南彦經)에게 수학하였다 한다.

최명길(崔鳴吉)

그 후 인조 때에 이르러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이 이를 혼자서 공부하였다. 그가 병자호란 때에 홀로 화의(和議)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양명학의

이론에 힘입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후 양명학이 최씨네 집안 학문의 근원이 되어 아들 정수재(靜修齋) 최후량(崔後亮)·손자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증손 곤륜(崑崙) 최창대(崔昌大)에게로 전하여져 내려왔다고 한다.(정인보, 『양명학연론』)

장유(張維)

최명길과 깊은 친구 관계에 있던 계곡(溪谷) 장유(張維)도 양명학을 믿고 따랐다. 그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이전의 손꼽는 조선의 문장가였다. 장유는 양명학을 선학(禪學)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변론하고 반박하여 ‘양지(良知)의 훈(訓)은 용공(用功)하는 실지(實地)를 전혀 성찰(省察)하지 아니하고 확충(擴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정염동(嘉靜厭動)은 학자(學者)들이 조심해야 할 바다.’라고 하였다. 또, 유학자(儒學者)들의 학문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자는 모두 악착같이 한곳에만 엮매여서 도무지 지기(志氣)가 없고 정자나 주자를 배운다 하면서 도리어 헛되이 입모양만 숭상할 뿐이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조선에는 정자 주자 이외에는 다른 학파가 없음을 통탄하였다.(『계곡만필(谿谷漫筆)』)

정제두(鄭齊斗)

조선의 양명학은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에 이르러 종합적인 학설을 세우기에 이르렀는데 최명길(崔鳴吉)과 장유(張維)는 양명학을 처음으로 논한 데 있기 때문이다. 정제두는 처음에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따라 공부하다가 중년에 양명학을 얻어 ‘치양지(致良知) ‘지행합(知行合)’의 가르침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이 뒤로는 평생 양명학에만 전적으로 매달렸다. 저서로는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에 비할 수 있는 『존언(存言)』과 『서(書)』 『성학설(聖學說)』 『논어해(論語解)』 『대학설(大學說)』 『중용해(中庸解)』 『맹자설(孟子說)』 등이 있다. 모두 왕양명의 요점을 그대로 이은 것이다. 그의 정치사상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이면 하자.’(『차록(劄錄)』)는 말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이 사상은 때마침 싹트고 있던 실학(實學)의 학풍과도 일치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옛것을 굳게 지키는 것보다 변화에 따라 힘을 기울여서 정치에 대한 연구도 그제 당(唐)·우(虞) 삼대(三代) 요순우탕문무(堯舜禹湯文武)를 공상(空想)하거나 중국 문물에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를 두고 실행하여 실익(實益)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제두가 홀로 터득한 학문도 자유롭게 문호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이후부터 조용히 공부하는 이가 생겨서 양명학은 소론(少論)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학(家學)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의 학통(學統)이 끊이지 않았다.

정제두(鄭齊斗)의 아들 정후일(鄭厚一)도 독학자(篤學者)로서 특히 수학(數學)에 밝으며 부친의 학문을 이어받았고, 외손(外孫) 석천(石泉) 신작(申綽) 또한 그 학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항재(恒齋) 이광신(李匡臣)은 강화(江華)에 가서 정제두(鄭齊斗)에게 학문을 들은 뒤 양명학에 감동하여 『의주왕문답(擬朱王問答)』을 지어 송학(宋學)의 분분(紛紛)함을 변론하고 혁파하였으며 그와 동문(同門) 또는 교우관계에 있던 전택수(全澤秀)·홍재(弘齋) 민옥(閔鉦) 등도 양명학에 기울어졌다고 한다.

이광사(李匡師)

이광신(李匡臣)의 아우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도 정제두(鄭齊斗)의 문하에서 수업(受業)하였으며 그의 아들 신재(信齋) 이영익(李令翊)에게 전하고, 그의 종질(從姪)인 초원(椒園) 이충익(李忠翊)도 철저한 양명학자였다. 이광신(李匡臣)에게 수학하고 이만수(李晩秀)·이충익(李忠翊) 등과 친교(親交)가 있던 현동(玄同) 정동유(鄭東愈)도 그의 저서 『화영편(畫永編)』이 나오게 된 근원을 찾는다면 양명학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홍대용(洪大容)

담헌(湛軒) 홍대용도 양명학에 상당한 소양(素養)을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론 주자학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주자학파(朱子學派)의 왜곡(歪曲)된 부분은 양

명학보다 못하다고 하였다.(천관우, 『홍대용의 실학사상』) 이 밖에 소론(少論) 중 특히 이광신 등의 가문(家門)에는 가학으로 양명학이 끊이지 않았다. 이견창(李建昌)·이견방(李建邦) 등은 조선 말기의 학자이며 박은식(朴殷植) 등도 양명학 공부에 깊었다고 한다.

9. 서학(西學)의 전래와 문호(門戶) 개방

우리나라에 서학(西學)이 들어온 것은 명나라부터였으니, 명에 와있던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였다. 이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실학자(實學者)들이었다. 광해군은 『지봉류설(芝峰類說)』 속에서 맛데오릿치(利馬竇)가 지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하고 있다. 뒤에는 이익(李瀾)·안정복(安鼎福) 같은 실학자 등도 역시 서학에 호기심을 갖고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비판적이었으며 서학에 대해 신앙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정조 때에 남인(南人) 학자(學者)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정조 7년(1783) 남강(南岡) 이승훈(李承薰)이 부친을 따라 중국 연경(燕京; 북경)에 갔다가 세례(洗禮)를 받고 돌아온 뒤 부터였으니 당시 신자(信者)들은 이승훈을 비롯하여 이벽(李穡)·이가환(李家煥)·정약전(丁若銓)·정약중(丁若鍾)·정약용(丁若鏞)·권철신(權哲身)·권일신(權日身) 등 남인의 명사(名士)가 많았다. 이들은 대개 이익(李瀾)의 문인(門人)들이었다. 즉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의 시파학자(時派學者)들과 김범우(金範禹) 같은 중인신분(中人身分)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 비판적이었던 재야학자(在野學者)들로서 일부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자들은 종교적 신앙을 통하여 천국(天國)을 건설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학의 유행은 당시 집권 양반사회와 성리학 지상주의(至上主義)의 사상적 질곡에 대한 일종의 도전(挑戰)이었다. 더욱 사회의 논란거리가 된 것은 유교적인 의식(儀式)을 이들이 거부함으로 야기

된 전례문제(典禮問題)는 서학을 사교(邪教)로 규정하여 금지령을 내리고 점차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끝내는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났으니, 이 때 이승훈(李承薰)을 비롯하여 이가환(李家煥)·정약중(丁若鍾) 등과 청인(淸人) 신부(神父) 주문모(周文謨)가 사형 당하고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은 유형(流刑)을 당하였다. 이 때에 황사영(黃嗣永)이 몰래 백서(帛書)를 북경(北京)으로 보내려다 발각되어 사형 당한 일도 있다. 이 뒤에 사옥(邪獄)이 계속 일어나 신도(信徒)들이 차례로 죽음을 당하였다.

고종 초에 대원군(大院君)도 크게 서학을 탄압하여 쇄국정책을 펴서 서양인들에게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열지 못하겠다는 결과를 주었다. 그 결과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개방하고 통상(通商)을 실현하려 하였다. 이것이 두 차례의 양요(洋擾)였으니 고종 3년(1866)의 병인양요(丙寅洋擾)요, 고종 8년(1871)의 신미양요(辛未洋擾)였다. 양요를 그런대로 물리친 대원군은 더욱 쇄국을 다지고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바로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라 새긴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는 오히려 일찍 개국(開國)을 한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종 12년(1875)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으로 인한 이듬해의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또는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개화정책의 길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10. 조선 말기(末期)의 성리학(性理學)

앞서 논한 호락(湖洛)의 시비(是非)는 각각 문파를 따라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양파(兩派)에 치우치지 않고 그 장점만을 취하여 절충하려는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입장(立場)과, 양론(兩論)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로

스스로 고등(高等) 비평을 내리고자 한 화서(華西) 이항노(李恒老)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이항노와 기정진은 때때로 선현(先賢)들의 학설이 타당치 않다고 비판을 하여 사학(邪學)으로 배척되기까지 하였다.

이항노(李恒老)

화서(華西) 이항노(李恒老)는 죽촌(竹村) 이우신(李友信)을 따라 학문을 논한 적이 있으나, 그의 학문은 스승을 이어받지 않고 곧바로 주자(朱子)의 학문을 이어 받아 주자를 성인(聖人)이라고 여겼으며, 송시열(宋時烈)을 존중하여 주자의 정통이라고 여겼다. 그는 13세에 학교 규범을 정하고 규율을 지어 시행하자 모이는 이가 항상 백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고종 3년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나자 ‘화친을 물리치고 오랑캐를 제거하자(斥和攘夷)’는 상소(上疏)를 올렸다. 그는 서양문물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채 서교(西教)에 대한 배척에 힘을 기울였다. 저서로는 『화동역사합편강목(華東歷史合編綱目)』 『화서아언(華西雅言)』 『주자대전차의전보(朱子大全割疑轉補)』와 문집(文集)이 있다.

그의 문인(門人) 중에는 이름 있는 이들이 많았다. 가장 걸출했던 이는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면암(旼菴) 최익현(崔益鉉)이다. 최익현은 현실에 참여를 많이 하면서 일생토록 분주하게 살다가 일인(日人)들에게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유중교와 김평묵은 오래동안 이항로의 문하에 따라다니면서 모두 스승의 뒤를 이어받았다. 두 사람은 이항로가 죽은 뒤에 『아언(雅言)』을 편찬했는데 이 책은 이항로 학설의 요점이 되었다.

김평묵(金平默)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은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숙재(肅齋) 조병덕(趙秉德)과 함께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학문을 해서 동문(同門)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임헌회(任憲晦)와 조병덕(趙秉德)이 모두 홍직필(洪直弼)의 학설(學說)을 따라 ‘명덕(明德)은 본심(本心)이고 본심(本心)은 기(氣)의 근본(根

本)으로서 그 가운데 이(理)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는 화서의 학설을 따라 '심(心)은 기(氣)로서 말한 것이 있고, 이(理)로서 말한 것이 있다. 명덕본심(明德本心)은 이(理)로서 말한 것이니 기(氣)로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명덕본심(明德本心)이 주기(主氣)인가 주리(主理)인가'의 논쟁이 학계에 커다란 논제(論題)가 되었다.

홍직필과 노주(老州) 오희상(吳熙常)의 문도(門徒)인 봉서(鳳棲) 유신환(俞莘煥)·조병덕(趙秉憲)·임헌회(任憲晦) 또 유신환의 문인인 문우(文藕) 윤치담(尹致聃)·강당(綱堂) 서응순(徐應淳)·민영목(閔永穆)·이응신(李應辰), 임헌회의 문인인 간재(艮齋) 전우(田愚)·윤치중(尹致中)·서정순(徐政淳) 등 낙론계(洛論系)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명덕주기론(明德主氣論)'을 주장했으나, 이항로(李恒老) 계통의 학자들은 모두 '명덕주리론자(明德主理論者)'였다. 오직 유신환의 문인(門人)인 서응순(徐應淳)만은 화서(華西)에 대하여 그다지 배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시비논쟁은 양쪽 학파사이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의 화서학과 낙론학파의 암투(暗鬪), 명덕주리파(明德主理派)와 주기파(主氣派)의 논쟁은 학설과 학벌의 다툼에서 당쟁적인 경향으로까지 전개된 점도 있었다.

기정진(奇正鎭)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은 삼정(三政)의 문란과 서세동점(西勢東漸)을 우려하여 당시의 폐단과 외환(外患)의 문제를 상소하였다고 문집(文集)에 전한다. 그는 화서(華西) 이항로처럼 스승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경사자집(經史子集)에서 백가의 서(書)·예악(禮樂)·병학(兵學)·수학(數學)·천문(天文)·지리(地理)에 이르기까지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성명이기설(性命理氣說)에 관하여는 바로 정자와 주자의 이론에서 근본을 찾아 자득(自得)과 자견(自見)이 많았다. 저술로서 『외필(猥筆)』 『납량사의(納涼私議)』 『이통설(理通說)』이 있는데 이도 모두 깊이 자득한 데에서 나온 견해로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도 『외필』과 『납량사의』는 이전 학자의 학설에 대하여 차원이 높은 비평을 시도한 저술로

서 ‘선배 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혔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비평을 꺼려 감추었다가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광무 6년(1902)에 손자 기우만(奇宇萬)과 문도(門徒)들이 문집을 발간하였다. 문집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의견이 들끓었다. 교리(校理) 권봉희(權鳳熙)는 크게 성토하며 불살라야 마땅하다고까지 하였으며, 전우(田愚)도 『외필변(猥筆辨)』 『납량사의변(納涼私議辨)』을 지어 조목별로 비판까지 하였다.

전우(田愚)

간재(良齋) 전우(田愚)는 면우(旼宇) 곽종석(郭鍾錫)과 조선 말기 2명의 큰 학자로 알려지고 있다. 전우(田愚)는 임헌회(任憲晦)의 문인(門人)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서해의 여러 섬을 왕래하며 한 두 제자들과 더불어 의리(義理)의 학문을 강의하였다. 저술로는 『사고(私稿)』 67권과 『추담별집(秋潭別集)』 4권이 있다. 그의 학문은 이이(李珣)의 연원(淵源)에 속하고, 또 낙론(洛論)의 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이·송시열의 학설과 다르거나 낙론의 학설에 반대하는 이가 있으면 극력 배척하였다. 예를 들면 이항노(李恒老)에 대하여는 그의 심리학(心理學)을 배척하여 『아언변(雅言辨)』을 지었고, 기정진(奇正鎭)에 대해서도 그의 주리설(主理說)을 배척하여 『외필변(猥筆辨)』 『납량사의변(納涼私議辨)』을 지었음은 전술(前述)한 바이다. 권상하(權尙夏) 한원진(韓元震)에 대해서도 『수암집기의(遂庵集記疑)』 『구계서기의(癸溪書記疑)』 『남당리기영자주의목(南塘理氣詠自注疑目)』 『남당상수암서의목(南塘上遂庵書疑目)』 등을 지어 그들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및 미발기질론(未發氣質論)을 극히 배척하였다.

곽종석(郭鍾錫)

면우(旼宇) 곽종석(郭鍾錫)은 조선 말기의 큰학자로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문하(門下)로 현풍(玄風) 봉화(奉化) 거창(居昌) 등지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고종 만년에 왕이 ‘면우(旼宇)가 경술(經術)과 시무(時務)에 통하

였다’는 칭송을 듣고 불렀으나 사양하다가 잠시 왕을 혼자 마주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얼마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경술년 이후 두문불출하고 저술과 강의에 전심하였다. 문집 179권이 남아 있다. 그의 학통은 이황(李滉)의 계통을 이어 받아 퇴계(退溪)를 주자(朱子)처럼 숭배하였다.

그의 제자인 이인재(李寅梓)는 『철학방변(哲學放辨)』을 지어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서양철학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그 득실(得失)과 이동(異同)을 고찰하고 유교의 입장과 절충하려 하였으나 ‘천리본연(天理本然)의 묘(妙)에 반대(反對)된다’고 하였다. 이 책의 발문(跋文)을 곽종석(郭鍾錫)이 썼는데 서양철학 및 과학에 대해 배타적인 평이 있었다. 이런 태도는 당시 유자(儒者)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괴이할 것은 없다.

만일 당시의 총명한 유학자들이 정주학(程朱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에 몸을 던져 자신의 관심에 따라 연구하고 또 실사구시적인 주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면 과거에 찬란했던 조선의 학술문화는 그 색채가 더욱 발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여 백

제6장 근대(近代)의 교육제도

1. 갑오개혁(甲午改革)과 교육제도
2. 근대의 교육기관
3. 향교(鄕校)와 성균관(成均館)의 변화
4.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으로의 발전

여 백

1. 갑오개혁(甲午改革)과 교육제도

조선은 고종 13년(1876) 일본의 강압에 의해 운양호사건을 빌미로 한 소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이후 쇄국에서 개화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치밀한 계획 하에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개화파(開化派)를 내세워 내정(內政)을 간섭하여 왔다. 이에 대해 청나라도 맞서서 나서며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미국·러시아·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게 되었으니 조선은 마치 그들의 싸움 장소가 된 셈이었다. 따라서 국내 정치 사정은 점점 혼미를 거듭하고 부패와 탐관오리의 행패, 세금의 과중 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더욱 외국 세력의 침투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막연하게나마 외세를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풍조가 높아가게 되다가 동학 교도(東學敎徒)들에 의한 봉기(蜂起)가 일어났다. 이 난리를 수습키 위해 정부에서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었으며, 이에 맞서 일본군도 진입하여 청일전쟁으로까지 발전해갔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하게 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지 503년(고종 31년, 1894) 유월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개혁의 담당은 이미 설치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였다. 여기에는 김홍집(金弘集)이 총재(總裁)가 되고 일본 공사(日本公使) 대조규개(大鳥圭介)가 고문(顧問)이라는 이름으로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중앙 관제(中央官制)는 왕실(王室)과 정부를 분리하여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종래의 육조(六曹)를 개혁하여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농상무(農商務) 등 팔아문(八衙門)을 두고, 의정부의 장관(長官)을 총리대신(總理大臣), 각 아문(各衙門)의 장관을 대신(大臣)이라고 하였다.

이 때에 신설된 학무아문(學務衙門)은 ‘국내의 교육·학무 등을 관장’하여 대신

1명, 협판(協辦) 1명, 참의(參議) 6명, 주사(主事) 18명을 두고 다음의 5국(局)을 분설(分設)케 되었다. 여기에 ① 총무국(總務局)은 참의(參議) 1명, 주사(主事) 2명이며, ② 성균관(成均館) 및 상고서원(庠校書院) 사무국은 ‘선성(先聖)·선현(先賢)의 묘사(廟祠) 및 경적(經籍)을 보수(保守)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명, 주사 2명이며, ③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은 ‘중학교·기술학교·외국어학교 및 전문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명, 주사 4명이며, ④ 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은 ‘소학교·사범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명, 주사 4명이며, ⑤ 편집국(編輯局)은 ‘국문 철자(國文綴字)·여러 나라 문장의 번역 및 교과서의 편집 등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명, 주사 4명이다.

또한 7월에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이상(理想)을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으니 시국(時局)의 변화에 따라 모든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제일의 급한 일이라 하였다. 또한 본 아문(本衙門)은 소학교·사범학교를 우선 서울에 세워서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들과 아래로는 모든 백성 중 준수한 자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학교에 들어가 경서(經書)·자전(子傳)·육예(六藝)·백가(百家)의 학문을 배우고 장차 실무에 있어서 시국을 구제하고 안팎의 외교에 각기 적용하고자 하니 참으로 일대의 기회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교·전문학교는 장차 차례로 설치한다고 하면서도 즉시 실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월에 국왕이 세자(世子)와 함께 종묘(宗廟)에 나아가 홍범(洪範) 14조를 포함한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발표하여 개혁의 실행을 다지고 있다. 이 중 11조에는 ‘나라 안에 있는 총명한 자제를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술을 전달받아 익히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조선교육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하겠다.

다음 해인 개국 504년(고종 32, 1895) 4월에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관제(官制) 발표를 비롯하여 수년 내에 새로운 학제의 기틀이 정하여졌다. 동년 3월에는 중앙정부의 조직을 다시 개정하였으니 의정부를 내각이라 하고, 교육은 학부

(學部)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다음에 학교의 관제발표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한성사범학교 관제(개국 504년 4월 6일 칙령 제79호)

외국어학교 관제(동년 5월 10일 칙령 제88호)

성균관 관제(동년 7월 2일 칙령 제136호)

소학교령(동년 7월 19일 칙령 제145호)

한성사범학교 규칙 (동년 7월 23일 학부령 제1호)

성균관 경학과(經學科) 규칙(동년 8월 9일 학부령 제2호)

소학교 교칙 대강 (동년 8월 12일 학부령 제3호)

보조공립소학교 규칙 (개국 505년 2월 20일 학부령 제1호)

중학교 관제 (광무 3년 4월 4일 칙령 제11호)

외국어학교 규칙 (동년 6월 27일 학부령 제11호)

이후 교육제도는 일본의 고문정치(顧問政治)에서 광무 10년(1906) 2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면서 또 한 차례의 개혁이 있었다. 이해 8월에는 ① 사범학교령 및 동시행 규칙, ② 고등학교 및 동시행 규칙, ③ 외국어학교 및 동시행 규칙, ④ 보통학교령 및 동시행 규칙이 발령되었으며, 융희(隆熙) 2년 4월과 8월에는 ⑤ 고등여학교령 및 동시행 규칙, ⑥ 사립학교령 및 동학교 보조규정, ⑦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및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비 규정, ⑧ 학회령(學會令), 이듬해인 융희(隆熙) 3년에는 ⑨ 실업학교령 및 동시행 규칙을 발포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은 복잡한 제도나 수업 연한이 장기간에 이르는 학교의 설치를 피하고 학제를 단순화하고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실용에 적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서는 교육의 기초를 보통교육에 두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기타의 학교로 확장하려고 계획된 것이라 하겠다.

2. 근대의 교육기관

제도의 개혁과 이에 따른 법령에 의해 각급 학교가 설치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종래의 향교·성균관의 변화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사범학교(師範學校)

개국 504년(1895) 한성사범학교 관제에 따라 서울에 설치하고 본과(本科)·속성과(速成科) 2과를 두었다. 수업 연한은 본과 2년(뒤에 4년으로)과 속성과 6개월로 하였다.

소학교(小學校)

역시 소학교령에 따라 관립·공립·사립의 3종으로 하고 관립은 정부가, 공립은 부군(府郡)에서, 사립은 개인에 의해 설립하도록 하였다. 소학교는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로 나누고 3년으로 하였다.

중학교(中學校)

광무 3년(1899) 중학교관제에 따라 서울에 유일한 관립 중학교를 설치하였다. 수업 연한은 7년으로, 처음 4년을 심상과(尋常科), 뒤의 3년을 고등과(高等科)로 하였다. 지방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우선 심상과를 설치하되 그 군(郡)의 향교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당시 폐교 상태와 같았던 향교를 중학교로 개편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다.

초기에 이들 학교는 교과과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한문(漢文) 교육에 주력하였을 뿐이며 정원이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당시 학교의 수는 서울에 관립 고등소학교 1, 동 심상소학교 8, 지방에는 공립 심상소학교 57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으로 전문교육 및 실업교육은 개국 504년에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각국에 파견할 공사관원(公使館員)을 양성하기 위한 일본어학교·영어학교·프랑스어학교를 설치하였다. 이듬해에는 러시아어학교를, 광무 4년에는 한어학(漢語學)·독일어(獨語)학교도 설치하였다. 일어·한어학은 3년, 기타는 5년의 수업 연한이었다. 또한 광무 5년(1901)에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를, 이듬해에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를 세웠다.

보통학교(普通學校)

소학교령에 의한 소학교는 사실상 종래의 서당(書堂)과 다를 바 없었다. 이의 개선책으로 마련된 것이 광무 10년 8월의 보통학교령이다. 이도 관(官)·공(公)·사립의 3종(三種)으로 하고 심상·고등의 구별없이 단일 조직으로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하였으며, 지방은 상황에 따라 3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두도록 하였다. 일제(日帝)의 침탄(侵呑)인 1910년까지 전국의 보통학교수는 101교(校)이며 학생 수는 16,946명이었다. 광무 10년에 22교(校) 1,924명에 비해 매우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범학교(師範學校)

종래의 사범학교를 광무 10년 학제개혁에 따라 정리에 힘을 기울였으니 보통학교의 확장에 따른 교원양성의 내실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에는 본과(本科)·예과(豫科)·속성과(速成科) 및 강습과(講習科)를 두었으며, 본과는 3년 기타는 1년 이내로 하였다. 보통학교 졸업 이상자 만이 본과에 입학이 되었으며 기타 과도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일제의 병탄(併呑) 이후 사범학교 제도는 폐지되고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 임시 교원양성소로서 당분간 존속되었다.

고등학교(高等學校)

유일한 관립중학교가 광무 10년의 고등학교령에 따라 이름이 고등학교로 바뀌

었다. 이도 관·공·사립으로 구분되었으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3년으로도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예과(豫科) 및 보습과(補習科)를 두었다. 종래의 관립중학교는 관립 한성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 제도는 일제의 침략 이후 폐지되고 고등보통학교라 하였다.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

앞에 기술한 복잡한 외국어의 각급 학교는 광무 10년의 외국어학교령에 따라 모두 하나로 합쳐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라 개칭하여 명실공히 1교(一校)로 운영하게 되었다. 교사(教師)는 일인(日人) 6명, 영불독청인(英佛獨淸人) 각 1명이었으나 이도 일제의 침략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개국 504년에 법무(法部) 밑에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가 설치 운영되다가 융희(隆熙) 3년에 학부(學部)로 이관되어 법학교(法學校)로 개칭 운영되었다. 또한 융희 2년(1908)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5월에 관립 한성고등여학교가 본과 3년 예과 3년으로 설립되어 재봉(裁縫)·수예(手藝)·가사(家事)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으니 유일한 여자교육기관이었다. 이듬해의 실업학교령에 따라 관(官), 공립(公立) 실업학교가 설립되었으니 관립 인천(仁川) 일어학교(日語學校)를 인천실업학교로, 공립 부산실업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사립의 실업학교 25교(校)가 설립되었으며 기타 학교가 여럿 있었다.

3. 향교(鄕校)와 성균관(成均館)의 변화

성균관을 비롯하여 옛 제도에 있었던 교육기관도 새로운 개혁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향교(鄕校)

광무 3년(1899) 중학교 관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에 중학교를 설치할 경우 향교를 그 교사(校舍)로 사용케 하였으나 사실상 중학교는 서울에 관립중학교 1교만이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지방의 향교는 그대로 본래의 형체(形體)를 갖고 존재하였으며, 서당(書堂)도 또한 전국을 통하여 10,000여 곳 가까이 있었으며 그 모습은 예와 다름없이 변화가 없었다.

성균관(成均館)

개국 504년(고종 32, 1895) 7월 2일에 성균관제를 공포하였으며, 그 제1조에 성균관은 학부대신(學部大臣)의 관리에 속하며 문묘(文廟)에 건봉(虔奉)하고 경학과(經學科)를 사습(肆習)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관직(官職)을 폐하고 장(長)·교수(教授)·직원(直員)을 두었다.

그리고 동년 8월 9일 학부령(學部令)으로 경학과(經學科)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그 제1조에 학생으로서 경학을 사습하고 덕행(德行)을 수칙(修飭)하여 문명의 진보에 주의할 것을 요지로 한다고 하였다. 그 학과목은 삼경(三經)·사서(四書) 및 언해(諺解) 외에 강목(綱目; 宋·元·明史) 및 조선사(朝鮮史)·작문(作文)을 부과하고, 때에 따라 조선지지(地誌; 朝鮮地理)·만국사(萬國史)·만국지지(萬國地誌)·산술(算術)을 사습(肆習)하였으니 종래에 비하여 대단한 개혁이라고 하겠다.

또한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 학생은 전부 기숙사에 들여보내 관(官)으로부터 학자금을 주었다. 수업일수와 시험제도 등을 정하였으나 그 입학자격은 ① 스무 살 이상 마흔 살에 이르는 자 ② 행동거지가 방정(方正)한 자 ③ 의지가 확고한 자 ④ 의리(義理)에 분수가 밝은 자 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자로 하였다. 오늘날과 비교할 때 기이(奇異)하다 할 수 있다. 이 성균관 경학과 규칙은 이듬해인 개국 505년(1896) 7월에 개정하였는데 그 학과목 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입학(入學) 연령을 20세 이상 50세까지로 고치고, 수업 연한을 폐지하고, 연중시험(年終試驗)에 급제하면 졸업기(卒業期)로 하였다. 따라서 시험제도를 엄

정하게 정하고, 시험을 나누어 일과(日課)·월과(月課)·연종시(年終試)의 3종(三種)으로 하고 연종시에 급제한 자에게는 붉은 종이에 큰글씨로 쓴 증서(證書; 과거급제자에게 주는 홍패(紅牌)에 해당한다)를 주었다. 급제자는 학부로부터 궁내부(宮內部) 및 내각(內閣) 각부에 통조(通照)하여 순차(順次)로 상당직(相當職)을 받게 되도록 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연종시를 과거(科擧)에 대신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연종시에 급제한 자로서 생기는 결원(缺員)은 고등학교(즉 중학교) 생도(生徒)의 우등자(優等者) 및 사범학교의 고급생도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종래의 향교는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성균관은 약간 문명적(文明的)인 제도에 따라 개혁을 하였으나 역시 종래와 같이 일종의 관리양성기관으로 존재하였다. 과거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본래 제도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광무 10년의 학제 개혁시에 성균관은 칙령(勅令)에 의해 학부의 직할학교(直轄學校)에 편입된 이후 별도 조직의 변경은 없었다. 이듬해인 융희 원년(1907) 황제는 황태자 영친왕(英親王; 垕)을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하고 도일(渡日) 전에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參拜)하였을 때 성균관 생도들은 영친왕에게 신학문(新學文)을 받지 말라고 탄원(歎願)하였다. 또한 다음해 융희 2년(1908) 황제의 문묘 참배시(參拜時)에 학부대신(學部大臣)에게 학과의 상황을 자문하고 신교육을 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동년 11월 성균관 학칙을 개정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국어·일어·역사·지리·수학·이과(理科)·도화(圖畫)·법제(法制)·경제(經濟)·체조(體操)의 신학과(新學科)를 더하고 입학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경학에 소양(素養)있는 자를 선발하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하였다. 학원의 수는 39명으로 하고 관내에 기숙케 하고 밥값을 급여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에 따른 개혁의 기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희 2년에 개정된 성균관의 직제(職制)는 관장(館長) 칙임(勅任) 1명, 교수 3명, 직원(直員) 2명을 두고 별도로 강사(講師)를 두어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이때에 처음으로 향교에 직원 1명(判任)을 두는데, 해당 군(郡) 유림(儒林) 중에서 선임(選任)하였으나 봉급을 주지 않은 명예직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성균관 최후의

직제라고 하겠다. 성균관의 박사(博士)는 융희 원년(1907)까지 계속 선임(選任) 제도가 유지되었으나 이해의 관제개정에 의하여 박사를 사업(司業)으로 바꾸었으며 이듬해부터 시험에 의해 선발하고 증서(證書)를 주었다. 성균관 졸업생 또는 사업 시험의 합격증서(合格證書)를 소유한 자는 사업(司業)이라 칭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였으나 일정한 직책은 주지 않았다.

이 시험과목은 사서삼경(四書三經) 외에 정치, 법률, 경제, 내외역사(內外歷史), 지리, 수학도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부터 계속 유지되던 성균관의 교육사업도 일제의 침략으로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하여 조선총독부의 감독 하에 두고 경학의 강구(講究)를 위해 풍교덕화(風教德化)를 비보(裨補)키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교육으로 바뀌게 된 이후 최고학부로서의 기능도 상실되게 되었다.

4.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으로의 발전

일제의 침략으로 본래 최고학부로서의 성균관은 폐지되고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일환으로 변모하게 되어갔으니 경학원(經學院)으로의 개편이 그것이다. 성균관은 다만 문묘의 석전제향(釋奠祭享)과 재산(財産)관리를 주임무(主任務)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구실(口實)만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전국의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의 부설로 명륜학원(明倫學院)이 설치되게 되었다. 이후 계속 변화의 모습을 찾으면서 1939년에는 명륜전문학원(明倫專門學院)으로 승격되는 부령(府令)이 공포되었으며, 1942년에는 재단법인(財團法人) 명륜전문학교의 설립 인가를 얻어 신입생을 뽑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일제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 광분하느라 젊은이를 모두 전선(戰線)에 보내고자

폐교(廢校) 조치하고 말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요구되면서 새로운 교육기관이 서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명륜전문학교는 부활(復活)되고 경학원도 성균관으로 환원되었다. 명륜전문학교는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의 교육기관에서 근대의 교육기관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1946에 전국유림대회에서는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할 대학설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期成會)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림사(學隣舍)의 재산을 희사(喜賜)하고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財團)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여 같은 해 9월에 성균관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초대 학장에는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으며, 문학부(文學部)와 정경학부를 설치하였다.

1953년 2월에 종합대학으로 개편되고 같은 해 6월에 각 도(各道)의 향교재단(鄕校財團)의 재산을 각출하여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변경하고, 1963년에 다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조직 변경하였다. 1965년에 삼성문화재단(三星文化財團)이 운영을 맡아 오다가 1979년부터는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 운영을 맡아 왔었으며 그 후 대학교 자체(自體)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최근 다시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유학대학이 단과대학(單科大學)으로 특설(特設)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제7장 선성현(先聖賢) 약사(略史)

1. 오성위(五聖位) 약사(略史)
2. 사성찬(四聖贊)(작자 미상)
3. 공문십철(孔門十哲) 약사(略史)
4. 송조 육현 약사(宋朝六賢略史)
5. 동국 십팔현(東國十八賢) 약사(略史)

여 백

1. 오성위(五聖位) 약사(略史)

1) 공자(孔子)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성은 공(孔),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단기 1782년(경술, 서기 BC 551) 11월 경자(庚子) 주(周) 영왕(靈王) 21년, 노(魯) 양공(襄公) 21년에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추현(鄒縣) 노원촌(魯原村))에서 탄생하였다.(경술 11월 경자는 현행 역법(歷法)으로는 음력 8월 27에 해당하며 중국에서도 8월 27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공부자 탄강 기념석전(孔夫子誕降紀念釋奠)을 거행하고 있음) 부(父)는 숙량홀(叔梁紇), 모(母)는 안징재(顏徵在)인데 니구산(尼丘山)에 기도(祈禱)하여 공자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구(丘), 자를 중니(仲尼)라 한다.

공자께서는 하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을 지닌 대성인(大聖人)으로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싫증을 내지 않았다. 일찍이 2제(帝) 3왕(王)이 천하를 다스리던 큰 범도를 깨닫고 백성을 측은하게 여기는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 공자는 하루라도 천하를 잊지 못하여 따뜻한 자리에 앉을 사이도 없이 천하를 돌아다녔다. 또한 당시 은둔주의자(隱遯主義者)의 비난(非難)을 무릅쓰며 광(匡) 지방의 어려움과 진채(陳蔡) 사이에서 벌어진 고난을 겪으며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당시 임금들은 공자를 등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공자는 만년에 자신의 도(道)가 세상에 그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교육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시경(詩經)』 『서경(書經)』을 산정(刪定)하고 예악(禮樂)을 저술하고 『주역(周易)』을 편찬(編纂)하였으며, 『춘추(春秋)』를 엮어 이 육경(六經)의 학문을 3,000 제자에게 전수(傳授)하였다. 비록 당시 정치에는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천하만세(天下萬世)에 인간의 도리와 규범(規範)을 들려주신 그 위대한 업적은 참으로 만세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공자의 실제적인 역량(力量)과 덕행(德行)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51세에 노(魯)나라 중도(中都)의 원님 자리를 맡자 1년 만에 사방 제후(四方諸侯)가 다 공자의 정치 체도를 본받았고, 그 후 대사구(大司寇)로 승진(陞進)하여 재상들이 하는 일을 함께 겸직하였으며, 국가 정치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였다. 이렇게 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노(魯)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이 위대한 정신(精神)의 묘한 이치는 아마도 천지와 동류(同流)라 할 것이다. 주(周) 경왕(敬王) 41년 임술 4월 11일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나이가 73이었다. 노(魯)나라 성북 사수 근처(城北泗上)에 장례를 지냈다.

역대 임금들이 시호를 덧붙여주어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에는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이라 하였고, 원(元)나라 무종(武宗) 때에는 대성(大成) 2글자를 더 붙였고, 명(明)나라 세종(世宗) 때에는 지성선사(至聖先師)라고 고쳐 불렀다.

(1) 공자 연보(孔子年譜)

- 2남 9녀(二男九女) 중 차남(次男).
 - 3세, 숙량흘 사망으로 모친을 따라 곡부(曲阜)로 옮겨 살면서 15세(十五歲) 때 ‘서(序)’라는 학교에 입학함.
 - 17, 8세, 이미 학식(學識)이 있다고 부근에 유명하여 짐.
 - 19세, 모친의 권유로 혼인(부인은 변관씨(弁官氏)의 딸)
 - 20세, 노나라 위리(委吏; 창고관리인 및 세금을 걷는 담당)
 - 24세, 모친 사망. 노나라 동방(東方) 니산(尼山)에 부친과 합장(合葬)하고 25개월간 상복을 입고 지냈다.
 - 28세, 담자(鄆子)에게 고대관제(古代官制)를 질문하였다.
 - 31세,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안평중(晏平仲)을 대동(帶同)하고 노나라를 방문하여 공자에게 패도(霸道)에 대해 문답(問答)하였다.
- 명성(名聲)이 점차 높아졌다.

35세, 노나라 소공(昭公)의 허락(許諾)을 받아 제자 남궁경숙(南宮敬叔)과 동행하여 대망(待望)의 주(周) 나라 낙양(洛陽)에 가서 노자(老子)를 만났다.(노자 당시 70세) 동시에 장홍(萇弘)에게 음악을 배웠다 (이미 경지에 올랐다).

‘장홍(萇弘)의 공자평(孔子評)’

공자는 성인(聖人)의 상(相)을 갖고 있다. ‘얼굴은 황제(黃帝)같고 그 모습은 탕왕(湯王)과 같도다’하였다. 귀국 후 학식과 덕망이 점차 유명하여지고 제자가 3,000명에 이른다.

36세, 노나라 소공(昭公)이 계평자(季平子; 삼환(三桓)의 한 사람)의 난(亂)으로 제(齊)나라로 도망가자 소공(昭公)을 따라 제(齊)나라로 갔다.

제나라 소공(昭公)이 공자를 만나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다. 제나라 소공(昭公)이 공자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안평중(晏平仲)의 반대로 실패하다. 제 나라에서 ‘순(舜)의 소(韶)’(音樂)를 듣고 너무 감격하여 3개월간 침식(寢食)을 잊고 배웠다.

43세, 노(魯)나라로 돌아왔다. 노나라 소공(昭公)이 노나라 변방(邊方) 훈에서 죽고, 소공(昭公)의 아우 정공(定公)이 계승(繼承)하였다.

51세, 중도(中都)의 원님으로 정공(定公)에게 임명받았다. 중도(中都)의 정치가 크게 성공하였다.

52세, 사공(司空)에 임명되었다(내무부장관).

53세, 사구(司寇) 겸 재상(宰相)에 임명되었다(법무부장관). 계속하여 대사구(大司寇)에 임명되었다. 사구(司寇)에 임명된 후 7일 만에 노나라 대부 소정묘(大夫 少正卯)를 죽였다.

노나라와 제나라 국경(國境)의 협곡(夾谷)에서 회맹(會盟)하게 되자 공자가 정공(定公)을 따라가서 큰 공로를 세웠다.

55세, 노나라 왕실에서 삼환씨(三桓氏; 맹손(孟孫), 숙손(叔孫), 계손(季孫))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齊) 나라에서 보내온 미녀(美女; 여자 악사(樂女) 80명과 말 46필))에게 정공(定公)이 미혹하여 공자를 멀리하였

다(노나라 국력이 점차 약해졌다).

- 56세, 천하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공자 당시의 중국 정세’

주(周) 나라 말기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주나라 황실(皇室; 시조(始祖) 후직(后稷), 문왕(文王), 무왕(武王)에서 영왕(靈王), 경왕(景王), 경왕(敬王) 시대(時代))

황하(黃河)를 중심으로 제후국(諸侯國)이 100여개 국(百餘個國)으로 약육강식(弱肉強食) 상쟁(相爭)이 계속되었다. 공자와 관련된 제후국(諸侯國)은 10여 국(十餘國)이 되었음.

- 노(魯; 공자 모국(母國))
- 제(齊; 노의 맹주국(盟主國)) 노의 동북방
- 위(衛; 노의 서방) 공자가 3차(三次)방문
- 송(宋; 노 위의 남방)
- 진(陳; 노의 남방) (민공(湣公)이 공자를 객경(客卿)으로 대우함)
- 채(蔡) 은자 장저(隱者長沮)와 결익(桀溺)을 만남.
- 초(楚), 정(鄭), 조국(曹國).
- 오(吳; 부차(夫差))
- 월(越; 구천(句踐)) 등 여러 나라.
- 56세부터 69세까지 전후 14년 동안 각 제후 나라를 방문하여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主張) 설교(說教)하였음.
광(匡)의 난(亂) : 양민(良民)을 학살하고 식량을 약탈하는 양호(陽虎)로 오인(誤認)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였다.
진(陳)과 채(蔡)의 황야에서 어려움을 당함. 공자가 초(楚)나라로 가던 도중 진과 채 지방 사이에서 극심한 수난(受難)을 당하였다.
- 65세, 위(衛) 나라에 있을 당시 고국(故國) 노나라의 위기(危機)를 듣고 제자들과 상의하여 자공(子貢)에게 노나라를 구제하게 하시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

며 왕도(王道)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하였다.

- 69세, 고국(故國) 노나라에 돌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공자의 제자는 전후(前後) 3,000명

안자(顔子), 증자(曾子)를 위시하여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육예(六藝)에 통달한 제자가 72명에 달하였음.

- 73세, 주나라 경왕(敬王) 41년 임술(壬戌) 4월 11일에 돌아가심. 노나라 성 북방(城北方) 사수(泗水) 가에 장례지냈다.

노 성 북방(北方) 사수변(泗水邊)에 제자들이 모여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중 『논어(論語)』를 편집하였으며 100여 호(百餘戶)가 정착 거주(定着居住)하여 공리(孔里)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함.

송(宋)나라 진종(眞宗)은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으로 대우하고, 원(元) 나라 무종(武宗)은 ‘대성(大聖)’이란 말을 덧붙이고, 명(明) 나라 세종(世宗)은 ‘지성선사(至聖先師)’라고 바꾸어 불렀다.

학문의 태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전념하였다(好學專念; 『논어, 술이』)

나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성실하게 찾은 사람이다(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 可矣).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生而知之者)

기질이 맑고 왕성하다(氣質清旺, 학문의 노력을 기다리지 않고 도리를 아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상등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어려운 가운데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어려운데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급이다(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者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경력

- 신장(身長) 9척 6촌, 용모비범(容貌非凡).
- 생남(生男) (노나라 임금의 축하를 해줌. 이름은 이(鯉), 자는 백어(伯魚))
- 사직전임(司職轉任) 가축관가(家畜官家)를 맡아 노나라의 축산업(畜産業)이 번창(繁昌)함.
- 학식과 덕망이 점차 유명해지고 제자들이 점차 많아짐.

당시 공자가 존경한 인물

주(周)의 노자(老子), 초(楚)의 노래자(老萊子), 제(齊)의 안평중(晏平仲), 위(衛)의 거백옥(蘧伯玉), 정(鄭)의 자산(子產), 노(魯)의 맹공작(孟公綽)

공자의 인격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안연(顏淵)이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단단하며 쳐다볼 적에 앞에 계시더니 어느덧 뒤에 계시도다(謂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하였다.

공자의 저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산정(刪定), 예악(禮樂)을 논술(論述), 『주역(周易)』을 편찬, 『춘추(春秋)』를 수(修)함.

(2) 공자의 선계(先系)

황제(黃帝)－헌원씨(軒轅氏)－현호(玄囂)－교극(蛟極)－제곡(帝嚳)－계(契)－소명(昭明)－상토(相土)－창약(昌若)－조어(曹圉)－명(冥)－진(振)－미(微)－보정(報丁)－보을(報乙)－보병(報丙)－주임(主壬)－주계(主癸)－천을(天乙; 殷湯)－태정(太丁)－태갑(太甲)－태경(太庚)－태무(太戊)－하단갑(河亶甲)－조을(祖乙)－조신(祖辛)－조정(祖丁)－소을(小乙)－무정(武丁)－조갑(祖甲)－경정(庚丁)－무을(武乙)－문정

(文丁)－제을(帝乙)－미중(微仲)－송공계(宋公稽)－정공신(丁公申)－양공희(煬公熙)
 －불부하(弗父何)－종부주(宗父周)－세부승(世父勝)－정고부(正考父)－공부가(孔父
 嘉)－목금부(木金父)－공기부(孔祈父)－방숙(防叔)－백하(伯夏)－숙량홍(叔梁紇)－
 공자(孔子)

(3) 공자의 성스런 발자취 개요(孔子聖蹟撮要)

『사기세가(史記世家)』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의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선조는 송(宋)나라 사람이다. 부(父)는 숙량홍(叔梁紇)인데 위(衛)나라 추읍(陬邑)에서 대부(大夫)를 지냈다. 첫째 부인 시씨(施氏)에게서 9녀(九女)를 낳고, 또 첩(妾)에게서 1자(一子)를 낳았는데 이름은 맹피(孟皮)다. 족병(足病)이 있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자, 안씨(顔氏) 집안에서 혼인할 여자를 찾았을 때 안씨에게는 3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추씨 집안 대부는 선왕(先王)의 후예로서 지금 그 사람은 키가 9척이고 힘이 장사이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구태여 따질 것 없으니 세 딸 중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는가’하였다. 그 때 어린 딸 징재(徵在)가 말하기를 ‘제가 출가하겠습니다’하였다. 드디어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안씨 부인이 생각하기를 지아버가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이구산(尼丘山)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그 때 산 언덕의 풀과 나뭇가지가 모두 뻗쳐 일어나고 산골짜기의 풀과 나무가 모두 아래로 내려 숙였다. 이것은 『조정광기록(朝廷廣記錄)』에 기록되었다. 공자 탄강(誕降) 전에 기린(麒麟)이 옥서(玉書)를 쫄리촌(闕里村)에 토(吐)하였는데 그 문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 ‘수정의 자식이 쇠퇴한 나라를 이어 소왕(素王)이 될 것이라’ 하였다. 어머니 안씨(顔氏)께서 기이(奇異)여기어 수놓은 비단으로 뿔에 매어 3일간 묵힌 다음 그곳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조정광기록』에서 또 말하기를, ‘탄생하는 저녁에 두 마리 용이 허공에 솟구치고 5명의 노인이 마당 가운데 내려와 대응하고 안씨가 방 안에서 하늘의 음악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하는

말이 하늘이 감동하여 성인 아들을 내어주므로 아래로 화답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誕生之夕 二龍 繞空 五老人(五星의 精氣임 庭中 降下應之 顏氏房中 鈞天之樂聲 鈞天樂 天上音樂 有自空中 有聲音 天感生聖子故 降以和樂之音)’이라 하였다. 또 공자 탄강 당시에 3신녀(三神女)가 하늘에서 향로수(香露水)를 공손히 가지고 내려와서 목욕(沐浴)을 하게 했으며 하느님이 하늘을 건지는 음악을 내려 보내어 안씨의 방에 벌려놓게 하고, 공중에서 하는 말이 하늘이 감동하여 성인을 낳게 하는 고로 화답하는 음악을 내려보낸다고 하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광기록』에 있는 말이다.

(4) 공자의 모습과 기상(氣像)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49가지의 특징이 있다.

반수(反首), 와면(洼面), 월용(月雨), 일준(日準), 하목(河目), 해구(海口), 용안(龍顏), 두진(蚪唇), 창안(昌顏), 균이(均頤), 보후(輔喉), 명치(駢齒), 용형(龍形), 구배(龜背), 호장(虎掌), 변협(胼脅), 수광(修肱), 참옹(參膺), 우정(圻頂), 산요(山腰), 임배(林背), 익비(翼臂), 주두(注頭), 부협(阜脅), 제목(堤目), 지족(地足), 곡궁(谷窮), 역성(霹聲), 택복(澤腹), 수두(修肚), 추하(趨下), 말루(末僂), 후이(後耳), 면여몽기(面如蒙俱), 수수과슬(手垂過膝), 이수주정(耳垂珠庭), 미유십이채(眉有十二彩), 목유육십사리(目有六十四理), 입여봉치(立如鳳跂), 좌여용준(坐如龍蹲), 수악천문(手握天文), 족리도자(足履度字), 망지여부(望之如仆), 취지여승(就之如昇), 시약영해(視若營海), 궁리겸양(躬履謙讓), 흉유문왈제작성세부(胸有文曰製作定世符), 신장구척육촌(身長九尺六寸), 요대십위(腰大十圍) 근부재(謹付載)이라.

하목(河目)과 해구(海口)와 용안(龍顏)은 황제의 모양이요, 수수과슬(手垂過膝)과 구배호장(龜背虎掌)과 신장(身長) 9척 6촌(九尺六寸)은 성탕의 용체(成湯之容體)라.

주나라 경왕(敬王) 41년 임술(壬戌) 4월 11일에 돌아가시니 그 당시 73세였다. 임종(臨終) 전에 전일(前日)의 기린(麒麟)이 또 나타나는데 뿔 위에 보불 문채가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다. 공자가 그 어머니가 수놓은 자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수놓은 보불 문채를 끊어 놓아주었다. 노나라 성북(城北) 사수(泗水) 가에 장례지내 주었다. 제자가 모두 심상(心喪) 3년을 입었는데 오직 자공(子貢)만은 묘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6년을 지냈다.

(5) 공자가 손수 심은 회나무(孔子手植檜)

공자가 두 그루의 회나무를 심었다. 두 주 가운데 하나는 성전(聖殿)앞에 있고 하나는 행단 동편(杏壇東便)에 있는데 향기(香氣)가 특이(特異)하고 무늬가 또 기이하다. 좌편(左便)에 있는 나무는 좌편(左便)으로 우편(右便)에 있는 나무는 우편(右便)으로 무늬가 있고 나무가지는 용(龍)의 형상(形狀)과 같이 구불구불하며 높이가 5-6장(丈)이나 된다. 그런데 역대 국가의 흥망성쇠에 변화가 있을 때면 그 나무가 먼저 무성하거나 바짝 말라서 마치 거북이나 시초점과도 같은 조짐(兆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시대를 상고(詳考)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진(晉)나라 회제 영가 3년(懷帝永嘉三年)에 말라 죽었다가 309년 만에 수(隋)나라 공제 의녕 원년(恭帝義寧元年)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지 51년이던 고종 건봉(高宗乾封) 2년에 또 말라 죽었다. 그 후 374년이던 송(宋)나라 인종 강정 원년(仁宗康定元年)에 다시 번성하였다가 금(金)나라 선종 정우(宣宗貞祐) 2년 병화(兵火)에 불에 타서 죽었다. 그 뒤 81년 지난 원나라 세조 지원(元世祖至元) 31년에 옛뿌리가 다시 나와서 동무(東廡) 무너진 사이로 세 가닥이 살아나왔다. 그 때에 교수를 지내던 장적(張績)이 그 전에 나무가 있던 곳으로 옮겨 심었는데 명나라 태조(太祖) 22년에 높이가 3장(三丈), 둘레가 4척(四尺), 무늬는 왼쪽으로 감아돌아서 그전 나무와 다름이 없었다. 효종 홍치(孝宗弘治) 12년 기미(己未)에 또 불에 타서 가지와 잎이 모두 떨어졌고 한 줄기 가닥만이 마르지도 않고 번성하지도 않으면서 쇠덩이처럼 단단하였다. 청(淸)나라 세종 옹정(世宗雍正) 2년에 다시 불에 타서 뿌리와 기둥이 다 사라졌다가 옹정 10년에 행단(杏壇) 남쪽으로 수십 보 쯤에 갑자기 싹이나서 지금은 아릅드리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태산지

『(泰山志)』를 보면 것처럼 말라 죽었던 것은 오호(五胡)의 난(亂)을 조짐(兆朕)한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은 당(唐)나라 정관(貞觀)의 거룩한 정치를 조짐(兆朕)한 것이고, 건봉(乾封)에 다시 말라 죽은 것은 무후(武后)가 절정(竊政)하던 일과 오대(五代)의 난(亂)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조짐(兆朕)한 것이고, 강정(康定) 시대에 다시 번영한 것은 송(宋)나라 300여년 간에 많은 어진 학자들이 배출(輩出)되는 것을 조짐(兆朕)한 것이고, 정우(貞祐)에 불에 타 죽은 것은 호운(胡運)이 왕성할 조짐(兆朕)이고, 지원 갑오(至元甲午)에 다시 핀 것은 명(明)나라가 일어날 징조(徵兆)라 하였다. 그런데 홍치 옹정(弘治雍正) 때에 불에 타 죽은 것은 무슨 조짐(兆朕)이 되었으며 또 옹정(雍正) 10년에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을 징조(徵兆) 함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성인(聖人)의 손때가 묻은 것은 보통 나무와 다른 것이다.

(6) 성묘(聖墓)와 성전(聖殿)의 사죽성(絲竹聲)

공자는 진시황(秦始皇)이 분서갱유(焚書坑儒)할 것을 미리 알고서는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허묘(虛墓)를 묻어두라고 경계를 하였다. 제자들은 공자의 묘를 사수(泗水) 가에 모시고 묘(墓) 북쪽으로 허묘(虛墓) 5칸(間)을 들로 쌓아 조성(造成)하였다. 뒤에 과연 진시황이 시서(詩書)를 불지르고 유생(儒生)을 땅에 묻어 죽일 적에 공자의 묘를 파내어 만일 시서(詩書) 같은 서적이 있으면 불태워 없애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허묘(虛墓)를 공자의 묘로 알고 파내는데 허묘 속에서 흰토끼(白兔)가 갑자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시황(始皇)이 잡으려고 곡부 서쪽 팔리구(八裏溝)까지 쫓아 갔는데 백토(白兔)가 별안간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나라 사람들은 팔리구(八裏溝)를 백토구(白兔溝)라고 바꾸어 불렀다. 그때에 허묘 벽상(壁上)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에 진시황하강량(秦始皇何強梁), 개오호반오장(開吾戶飯吾漿), 타오당창오반(唾吾堂滄吾飯), 이위량장오궁(以爲糧張吾弓), 사동장전지사구(射東牆前至沙丘), 당멸망(當滅亡)이라고 하였다. 시황(始皇)이 이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빠 묘를 파내려고 하자 갑자기 묘 속에서 거문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는 매우 두려워하여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시

황(始皇)이 과연 동쪽으로 갔다가 사구(沙丘)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다. 이 역시 기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한(漢)나라 노공왕(魯共王)은 궁실(宮室) 설치하기를 매우 좋아하여 심지어 공자가 살던 옛집을 허물어서 자기의 거실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고택(古宅)은 공자가 평일에 머물던 곳이다.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여러 학자들이 항상 모여서 도덕을 강론하고 향사례(鄉射禮)같은 것을 일삼던 곳이다. 이에 노 양공(襄公)이 공자의 묘를 설립하였고 그 전내(殿內)에는 선성(先聖)의 의관(衣冠)과 금슬(琴瑟)과 거서(車書)를 보관하였다. 공왕(共王)이 아무 거리낄 것 없이 이를 깨치려고 하자 전내(殿內)로부터 금석사죽(金石絲竹)의 맑은 풍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역시 두려워하면서 없애지 못하였다. 다만 벽(壁) 속에서 공부(孔鮒)가 보관해 놓은 고문경서(古文經書)를 얻었을 뿐이다. 금(金)나라 진화(秦和) 8년에 어떤 이가 공자의 탄신일에 친족들을 거느리고 니산묘(尼山廟)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데 날이 한나절 짝 되어서 공중에서 5음 8률(五音八律)의 음악 소리가 떨어치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기이한 자취는 누구나 괴상하다고 하겠지만 성인(聖人)의 정령(精靈)이 그 곳에 내려오면 모든 신(神)이 호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찌 공경치 아니하라. 조선 역사(朝鮮歷史)에 있는 예(例)를 들어보더라도 임진왜란 시에 일본군(日軍)이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건원릉(健元陵)을 침범하려고 할 때에 능(陵) 안에서 우레소리같이 진동(震動)하는 소리가 있어서 감히 침범치 못하였다.

(7) 공자묘비(孔子廟碑)

명태종(明太宗) 어제(御製)

도원어천이계어성인(道原於天而界於聖人)하니 성인자(聖人者)는 계천입극이통승호사도자야(繼天立極而統承乎斯道者也)라.

약복희(若伏羲) 신농황제(神農黃帝)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이 역성상전(歷聖相傳)하여 일도이이(一道而已)라 주공몰후(周公沒后) 오백여년이생공

자(五百餘年而生孔子)하사 사이계왕성개래학(斯以繼往聖開來學)하니 기공(其功)이 현어요순(賢於堯舜)이라.

고왈(故曰) 자생민이래(自生民以來)로 미유성어공자자야(未有盛於孔子者也)라 부사시유행(夫四時流行)하여 화생만물이고하산수(化生萬物而高下散殊)하여 성수기성자(成遂其性者)는 천지도야(天之道也)라.

공자(孔子)는 참천지찬화육(參天地贊化育)하며 명왕도정인륜(明王道正人倫)하여 사군군신신부부자자부부부부(使君君臣臣父父子子夫夫婦婦)로 각득이진기분(各得以盡其分)하여 여천지(與天地)로 성무간언이(誠無間焉爾)라 고(故)로 기도왈(其徒曰) 부자지불가급야(夫子之不可及也)는 유천지불가계이승야(猶天之不可階而升也)라 하고 우왈(又曰) 중니(仲尼)는 월일야(月日也)라 무득이유언(無得而踰焉)이라하니 재당시지론(在當時之論)이 여차(如此)하여 횡만세(喧萬世) 무감유이사언(無敢有異辭焉)하니 오호(於乎)라 차(此) 공자지도소이위성야(孔子之道所以爲盛也)라 천하후세지몽기택자(天下後世之蒙其澤者) 식여천지(寔與天地)로 동기구원야(同其久遠也)라. 자공자몰(自孔子沒)로 어금천팔백여년(於今千八百餘年)에 기간도지용체(其間道之隆替) 여시척강(與時陟降)하여 과대유위지군(過大有爲之君)하여 극표장지(克表章之) 즉기정치(則其政治) 유족칭자(有足稱者)하니 약한당송치치지군(若漢唐宋致治之君)을 가견의(可見矣)라 짐황고(朕皇考) 태조고황제천명성치(太祖考皇帝天命聖治)하사 위천하군(爲天下君)하여 무공고성(武功告成)에 즉흥문교(卽興文教)하여 대명공자지도(大明孔子之道)하여 자경사(自京師)로 이달천하(以達天下)히 병건묘학(並建廟學)하여 편사경적(偏賜經籍)하시고 작양사류(作養士類)하니 의교지비초호왕석(儀交之備超乎往昔)이라. 봉공씨자손(封孔氏子孫)하여 습연성공(襲衍聖公)하고 질시이품(秩視二品)하며 세택일인(世擇一人)하여 위곡부령(爲曲阜令)하고 입학관(立學官)하여 이교공안맹삼씨자손(以教孔顏孟三氏子孫)하고 상행태학(常幸太學)하여 석전공자(釋奠孔子)하여 갈기엄경(竭其嚴敬)하니 존송공자지도(尊崇孔子之道) 미유여사지성자야(未有如斯之盛者也)라. 짐(朕)이 계승대통(繼承大統)하여 비법성헌(丕法成憲)이 상유공씨지도(尙惟孔氏之道)니 황고지소이표장지자(皇考之所

以表章之者) 약차(若此)하니 기가홀호(其可忽乎)아 급곡부(及曲阜)는 궐리(闕里) 재언(在焉)이라 도통지계(道統之系) 실유어자(實由於茲)하고 이묘우역구(而廟宇歷久)하여 점견추폐(漸見隆敝)하여 불칭첨양(弗稱瞻仰)하니 왕명유사(往命有司)하여 철기구이신지(撤其舊而新之)할새 금년하(今年夏)에 필공(畢工)하니 광원장관(廣遠壯觀)이 서칭짐경앙지의(庶稱朕敬仰之意)하여 비범관어사자(俾凡觀於斯者)로 유소흥기(有所興起)하여 치력어성현지학(致力於聖賢之學)하여 돈기본이거기말(敦其本而去其末)하여 장견천하지사(將見天下之士) 개유가용재(皆有可用材)하여 이찬부태평유구지치(以贊夫泰平悠久之治)하며 이진요공자지도(以震耀孔子之道)하니 어시(於是)에 심유소망언(深有所望焉)이라 수서록비(遂書勒碑)하여 수지어묘(樹之於廟)하고 병계이시(并系以詩) 왈외외현성(曰巍巍玄聖)은 고금지사(古今之師)라 수세입언(垂世立言)을 생민(生民) 시자(是資)라 천강목탁(天降木鐸)하여 이교시계(以教是界)라 위욕무언(謂欲無言)은 시지자지(示之者至)라 유천위고(惟天爲高)에 유도여참(惟道與參)이라 유지위후(惟地爲厚)에 유덕여합(惟德與合)이라 생민(生民) 이래(以來)로 실왈미유(實曰未有)라 출류발취(出類拔萃)에 난호선후(難乎先後)라 시즉불원(示則不遠)에 왈용유추(曰用攸趨)라 돈서유이(敦叙有彝)에 준우성모(遵于聖模)라 양유황고(仰惟皇考)는 성도식숭(聖道寔崇)이라 예악치평(禮樂治平)은 신저궐공(身底厥功)이라 왈예지술(曰豫祗述)이 거감혹해(詎敢或懈)아 성서비승(聖緒丕承)이 요 의헌영뢰(儀憲永賴)라 암암태산(巖巖泰山)은 노방소침(魯邦所瞻)이라 신묘혁혁(新廟赫赫)에 식사유엄(飾祀有嚴)이라 고종황황(鼓鐘煌煌)에 구형하격(璆馨夏擊)이라 팔음상선(八音相宣)에 성정태역(聖情胎擘)이라 작아사류(作我士類)에 세유재현(世有才賢)이라 좌아대명(佐我大明)하니 어만사년(於萬斯年)이라 영락(永樂) 십오년 정유(十五年丁酉) 구월 십구일(九月十九日) 출궐리지(出闕里志)

공자묘비문 번역

도(道)라는 것은 하늘에서 근원하여 성인에게 내린 것이니, 성인이란 하늘을 경仰하고 가운데 서서 이 도를 거느려 잇는 분이다. 말하자면 복희와 신농과 황제와

제요와 제순과 우왕과 탕왕과 문왕과 무왕과 주공, 역대 성인이 서로 하나의 도일 뿐이다.

주공이 돌아가고 또 오백여 년에 공자가 태어나 옛 성인의 도를 잇고 앞으로의 학문을 열었으니 그 공이 제요와 제순보다도 어질었다. 그런고로 백성이 나면서부터 이제까지 공자보다 더 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다.

무릇 사계절이 흐르고 돌아서 만물을 낳으며, 높고 낮고 흠어지고 다르게 모두 그 성품을 이룬 것은 하늘의 도이다. 공자는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변화시키고 기르는 것을 도우며, 왕으로서의 길을 밝히고 떳떳한 윤리를 바로 잡으며, 임금을 임금답게 하고 신하를 신하답게 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아들을 아들답게 하며, 지아비를 지아비답게 하고, 지어미를 지어미답게 하여 각기 자기의 분수를 다 하게 하였으니 하늘 땅과 더불어 진실로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부자 즉 공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에 사다리 놓고 오르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또 말하기를, “중니 즉 공자는 해와 달같이 높은지라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의 의론이 이와 같으며, 만세에 걸쳐서 감히 다른 말이 없으니, 아! 이것이 바로 공자의 도가 변성한 까닭이다. 천하 후세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실로 하늘 땅과 더불어 멀리 오래도록 함께 할 것이다.

공자가 돌아간 후로부터 이제 천팔 백여 년에 그 동안 도의 내림과 바뀔이 시대와 더불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크게 될 임금을 만나면 족히 칭찬할 만한 것이었으니,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정치의 착하고 잘한 것은 가히 볼만 하였다.

나의 황고(皇考) 태조 고향제께서는 하늘의 명으로 성스럽게 다스려서 천하의 임금이 되니 무공(武功)이 이룩되자 곧 문교(文教)를 일으켜서 공자의 도를 크게 밝히었다. 서울에서부터 온 천하에 아울러 묘학(廟學)을 세우고 두루 경서와 서적을 내려주어서 선비들을 기르게 하니, 예의와 글의 갖추어짐이 지난 옛적보다 나왔다.

공씨의 자손을 봉하여 연성공(衍聖公)으로 삼아 2품 자리에 있게 하며, 대대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곡부령(曲阜令)으로 삼고 학관(學官)을 둬으로써 공씨 안씨 맹씨의 세 자손을 가르쳤다.

일찍이 태학을 두고 공자를 제사 지내어 그를 엄히 공경하여 보임하게 하니 공자의 도를 높이고 숭상함이 이와 같이 성한 적이 없었다.

나는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큰 법과 근본 법을 이룩한 것이 오직 공씨의 도라고 생각하며, 황고(皇考)께서 본받아 표창한 까닭이 이와 같았으니 그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에 곡부(曲阜) 그 마을에 도(道)의 계통이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았으나 묘(廟)의 집이 오래되어 점점 무너져가므로 우러러 볼 수 없었다. 일 맡을 사람을 보내어 그 중 오랜 것을 걷어치우고 새로 고치기 시작하여 금년 여름에 공사를 마치니 넓고 흰하여 장한 경치를 이루었다.

내가 삼가 우러러 받드는 뜻을 헤아려서 이를 보는 사람에게 떨쳐 일어나 성현의 학문을 힘쓰게 하며, 그 근본을 돈독히 하고 그 끝을 버려서 장차 천하의 선비가 모두 다 가히 쓸 만한 재목이 됨으로써 나라를 태평하게 오래 잘 다스리도록 도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자의 도를 진동하여 빛내도록 하라.

나는 이에 깊이 바라는 바 있다. 드디어 글을 비석에 새기어 묘(廟)에 세우고 아울러 시(詩)로 써 이었으니, 그 시에 말하기를,

높고도 웅장한 하늘의 성인이어

예와 이제의 스승이로다.

말씀을 세워 세상에 본보이니

태어난 백성이 이를 밀천으로 하도다.

하늘이 장차 목탁으로 이 세상을 가르칠 것이니

말씀이 없다고 하신 것은 본보기가 지극하다는 것이로다.

야! 하늘이 높다 한들 이 도에 어찌 더불어 참례하며

야! 땅이 두텁다 한들 오직 이 덕에 더불어 합할 수 있으리오.

백성이 태어난 이래로 실로 아직 없었던 일이니
 무리에서 빼어나고 모이었으며 앞 뒤를 가리기 어려워라.
 본 보인 법은 먼데 있지 않아 날마다 쓰고 따르는 바인데
 떳떳한 윤리를 돈독히 품에 있어서 성인의 모양 그대로 지키도다.
 아! 황고(皇考)께서는 성인의 도를 이에 높이셨도다.
 예의와 음악으로 평화롭게 다스려 몸소 그 공을 정하였도다.
 먼저 공경하여 모시는 것을 어찌 감히 게을리 하랴?
 성인을 이어 크게 받들며 의식과 법을 길이 믿을 것이로다.
 높고 높은 태산은 노나라가 우러러보는 바로다.
 새 묘(廟)는 크고 아름다우며 제사 지냄은 엄숙하도다.
 북과 쇠북은 휘황하며 구슬과 경쇠는 굴리고 치는구나
 여덟 음을 서로 연주하자 성인의 정이 화하고 기쁘도다.
 내가 선비들을 기르매 대대로 재주있고 어질겠도다.
 우리 명나라 도움기를 길이 만년토록 하옵소서.

영락 15년(1417) 정유 9월 9일

2) 안자(顏子)

복성공(復聖公) 안자(서기 전 521~490년)의 이름은 회(回), 자는 자연(子淵), 노국인(魯國人)이다. 중국의 유학자이며 공자의 수제자(首弟子)이다. 부는 무요(無繇), 모는 강(姜)씨이다. 안자는 공자보다 30세가 적다. 안자는 타고난 자태가 조용하고 순수하며 상지(上智)의 자질을 지니고 문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행의 수위가 높고 3개월 동안 인(仁)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으나, 한 가지 만은 미달하였다. 그의 학문 좋아함은 끝이 없었으며 잘못된 일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는 아무리 가난한 가운데 살아도 자기의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주나라 경왕(敬王) 38년에 돌아갔는데 그 당시 나이 32세였다. 공자

께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어 울기를, “아아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셨다. 원(元)나라 문종(文宗) 당시 연국 복성공(兗國復聖公)에 봉(封)하고 명나라 세종 당시에 복성안자(復聖顏子)라 바꾸어 불렀다.

3) 증자(曾子)

종성공(宗聖公) 증자(서기 전 505~?)의 이름은 삼(參), 자는 자흥(子興)인데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이다. 아버지는 점(點)이며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사람이다. 증자는 공자보다 46세가 적다. 증자는 매우 성실하고 근엄하고도 장중(莊重)하여 ‘나의 도는 하나면 다 통한다(吾道一以貫之)’는 종지(宗旨)와 대학교인의 법(法)과 선왕(先王) 효치(孝治)의 도를 모두 공자 문하에서 친히 받아 그 계통을 터득하였다. 공자가 돌아가실 때에 겨우 26세였으나 조예(造詣)가 정밀하고 깊었고, 만년에는 안목이 높고 몸가짐이 독실하여 더욱 더 높고 밝고 넓고 큰 경지에 도달하였고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제자로 삼아 도통(道統)을 전하였다. 『대학(大學)』을 저술하여 공자의 인의(仁義)의 도(道)를 알리고 공자의 의견으로 『효경(孝經)』을 만들었다. 원(元)나라 문종(文宗) 때에 성국 종성공(鄭國宗聖公)에 봉(封)해지고 명(明)나라 세종(世宗) 때에 종성 증자(宗聖曾子)라고 바뀌어 불렀다.

4) 자사(子思)

술성공(述聖公)(서기 전 492~432년) 자사의 성은 공(孔), 이름은 급(伋), 자는 자사(子思)로서 공자의 손자이며 공리(孔鯉)의 아들이다. 어렸을 적에 조부(祖父) 공자의 교훈을 이어받고 책임질 것을 스스로 맡았다. 증자(曾子)가 공자의 학통을 계승하는 인물로 되자 그 문하에서 공부를 하여 성명(性命)의 본원(本源)을 끝까지 찾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묘(妙)를 탐색(探索)하였다. 그는 ‘성(誠)’을 본령(本領)으로 삼고 자신을 공손히 하고 도를 따르는 것을 위주로 깊이 공자의 전통

을 계승하고 그 도학(道學)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중용(中庸)』을 저술하였다. 원(元)나라 문종(文宗) 때에 기국술설공(沂國述聖公)에 봉(封)해지고 명(明)나라 세종(世宗) 때에 술성자사(述聖子思)라 개칭했다.

5) 맹자(孟子)

아성공(亞聖公) 맹자(서기 전 372~289년 경)는 중국 동주(東周)시대의 사상가 유학자이며 이름은 가(軻), 자는 자거(子車) 또는 자흥(子興)이며 노(魯)나라 공족(公族) 맹손씨(孟孫氏)의 후예(後裔)이다. 부(父)는 맹격(孟激; 字 공의(公宜))이며 모(母)는 장(仉)씨로 산둥성 추현(山東省鄒縣)에서 출생하였다. 추현은 공자의 출생지 노(魯)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배하고 그를 사숙하였다. 어머니 장씨는 삼천지교(三遷之教; 세번 이사를 가면서 가르침)와 단기지훈(斷機之訓; 베틀을 자르면서 가르침) 등으로 유명한 어진 어머니로서 그의 감화(感化)를 크게 받고 자사의 제자로 들어가서 배웠다. 학업을 마친 후 양(梁), 제(齊), 송(宋), 노(魯)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제후에게 왕도정치를 해야한다고 설득하였다. 제나라의 선왕(宣王)이 등용하지 못하고 양(梁)나라의 후한 대접에 응하였으나 혜왕(惠王)이 왕도정치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등(滕)나라의 문공(文公)이 정신적인 공명(共鳴)을 얻었을 뿐 실제로 정치에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당시는 전국시대로 각국이 상호 침벌(相互侵伐) 공격하여 땅을 빼앗는 것을 제일로 알고 합종연횡(合縱連衡)의 정책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의 논쟁과 외타파음사도(外他破淫邪道)의 설(說)이 널리 유행하였는데 맹자만이 요순(堯舜)시대와 하은주(夏殷周)삼대의 인의도덕(仁義道德)의 왕도정치를 주장하여 당시 군주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귀국 후에는 제자 만장(萬章) 등과 시(詩)·서(書) 및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저술하였으니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맹자 칠편(孟子七篇)』이라고 한다. 맹자는 공자의 뜻을 더욱 발전케 하고 유교의 정통을 후세에 전달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

었다. 맹자의 윤리설(倫理說) 및 정치설(政治說)의 중심(中心) 사상(思想)은 성선설(性善說)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은 모두 같으며 선(善)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잔인한 일을 보았을 때에 측은한 마음, 추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羞恥)의 마음, 어른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선악을 식별하는 시비의 마음, 곧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 4덕(四德)의 단서(端緒)로서 이 4단(四端)이 존재하는 이상 성(性)이 선(善)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사람이 악행(惡行)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물욕에 빠졌기 때문이라 했다.

학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선천적(先天的) 선성(善性)을 길러야 할 것을 역설하고, 정치설로는 공자와 거의 같으나 시대적인 변화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자가 존주론(尊周論)을 주장한 데 대하여 맹자는 민권주의(民權主義)로 발전하여 아무리 군주라도 덕(德)을 잃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다는 혁명론(革命論)을 말했다. 또 성선설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론 교화론(教化論)을 주장하는 한편 주(周)의 문왕(文王)을 이상으로 하여 정전법(井田法)의 실시를 주장했다. 맹자의 학설은 여러 제후의 공명(共鳴)을 얻지 못했으나 공자의 인의설(仁義說)을 확장하고 유학의 이론적인 기반을 수립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사성찬(四聖贊)(작자 미상)

공자(孔子)

乾坤正起素王生	천지의 정기 받아 소왕(素王)이 탄생하시니
玉振金聲集大成	조리 있는 사상을 모아서 집대성(集大成)하였도다
禮樂威儀墻內備	예악(禮樂)과 위의(威儀)는 문묘(文廟)에 갖추어졌고
典章文物室中明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집집마다 밝구나
敦仁博義天人立	인의(仁義)에 돈독하니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서고
孝父忠君國家平	효도와 충성의 교화 가르치니 국가가 평화롭다

河馬洛龜今不到 황하의 용마(龍馬)와 낙수의 신귀(神龜)가 나오지 않으나
 秋陽江漢亦云清 그 도덕성은 추양(秋陽)과 한수(漢水)가 만물에 결백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위대하다.

증자(曾子)

聖門參也得其宗 공자 제자 중 증삼(曾參)이 홀로 우뚝하니
 八目三綱次第通 팔 조목과 삼 강령의 원리가 차례로 통하였다
 天下國家治有異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小人君子道無同 소인(小人)과 군자(君子)는 도(道)가 같지 아니하다
 修身可見新天道 자신을 수양하면 신민(新民)할 수 있는 도를 보겠고
 慎獨方知入得功 자신을 조심하여 덕(德)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誠意執中誰是主 지성을 다하고 중용을 잡는 도를 누가 주장하였는고
 靈臺臺上一醒翁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깨달은 한 노인이구나

자사(子思)

聖人傳道聖人孫 공자의 도통이 손자에게 전해졌으니
 萬理分明總一元 온갖 이치가 한 원리로 모였구나
 查滓不存昭日月 찌꺼기가 없으니 해와 달처럼 밝고
 至誠無忽體乾坤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의 원기를 체득하였다
 爲山九仞知眞積 산(山) 9길(仞)을 완공하였으니 그 자취 진실로 쌓여
 連海百川有本源 바다에 모여드는 온갖 물줄기처럼 근원이 있구나
 濂洛新安今寂寞 염낙(濂洛)과 신안(新安)의 학자들이 조용히 있으니
 鳶飛魚躍孰能言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진리를 누가 말할고

맹자(孟子)

浩然之氣備天儀 호연지기를 기르는 타고난 성품을 갖추었으며

孕出鄒邦亞聖姿	추나라에서 탄생(誕生)한 아성(亞聖)의 자태(姿態)
齊宣梁惠言無用	제 선왕과 양 혜왕이 정치발언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平仲夷吾矢不爲	안평중과 관중의 패도정치 맹세코 하지 않았다
力排墨翟楊朱道	묵적(墨翟)과 양주(楊朱)의 이단사설을 배척하고
志綴唐虞文武治	요순과 주공 무왕의 도덕 정치를 주창(主唱)하였다
人欲已消天理在	물욕을 끊고 천리(天理)를 얻으니
至今功德後生知	지금까지 그 공덕을 후세 사람이 아는구나

3. 공문십철(孔門十哲)

1) 비공(費公) 민손(閔損)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사람으로 성은 민(閔), 이름은 손(損), 자는 자건(子蹇)이다.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15세 어리다. 덕행(德行)으로는 최고를 차지하였다. 어려서 계모(繼母)에게 고생하였다. 추운 겨울날 계모가 민자건에게는 노화(蘆花) 옷을 입히고 두 아들에게는 솜옷을 입혔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계모를 쫓으려하니 민자건이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니가 가면 세 아들을 외롭습니다’하여 드디어 중지하였다. 계모가 크게 깨달아 세 아들을 똑같이 대하였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이모(異母)의 자녀들에게도 잘 하였으므로 공자께서 “효자로다! 민자건(閔子蹇)이여”라고 하였다. 후에 비공(費公)에 봉(封)해졌다.

2) 운공(鄆公) 염경(冉耕)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성(姓)은 염(冉), 이름은 경(耕), 자는 백우(伯牛)다. 공자의 제자. 덕행이 있다고 칭송되었다. 불행히 질병이 있어 죽으려 할 때 공자

게서 직접 손을 잡고 영결(永訣)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다니. 천명(天命)이다” 라고 탄식하셨다. 뒤에 운공(鄆公)에 봉(封)해졌다.

3) 설공(薛公) 염옹(冉雍)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성(姓)은 염(冉), 이름은 옹(雍), 자는 중궁(仲弓)이다.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29세 나이가 어리다. 덕행(德行)이 있다고 이름이 낮았다. 사람이 너그럽고 행동이 간략하고 엄중하여 인군(人君)의 도량(度量)이 있으므로 공자께서 “옹야(雍也)는 임금 자리에 앉을 만하다”고 하셨다. 뒤에 설공(薛公)에 봉(封)해졌다.

4) 제공(齊公) 재여(宰予)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이며 성(姓)은 재(宰), 이름은 여(予), 자(字)는 자아(子我)로 공자의 고제(高弟)로 언어(言語)에 있어 자공(子貢)과 함께 뛰어나다고 일컬어졌다. 제(齊)나라에 벼슬하여 임치(臨菑) 땅의 대부(大夫)가 되었다. 『사기(史記)』 「이사전(李斯傳)」을 살펴보면 ‘사상서(斯上書) 이세(二世)에 전상(田常)이 제(齊)나라를 빼앗고 재여(宰予)를 뜰에서 죽였다’하고 또 「중니제자전(仲尼弟子傳)」에 ‘재여는 임치의 대부(大夫)였는데 전상과 더불어 난(亂)을 일으켜 그 죽이 멀하였다’ 하였다. 같은 책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재여와 전상이 난(亂)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점이 있으므로 공자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것은 재여에게서 시작하였다’라 하셨다. 또 3년상(三年喪)을 1년만 하여도 좋다고 하여 공자께서 재여가 어질지 못하다고 매우 꾸짖었다. 뒤에 제공(齊公)에 봉(封)해졌다.

5) 여공(黎公) 단목사(端木賜)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이다. 성(姓)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자(字)는 자공(子貢)이고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31세가 어리다. 인물(人物)을 비교(比較)하기를 좋아하고, 성인을 알아볼 만큼 지혜가 풍족하였고 한번 들으면 그 뜻을 꿰뚫었다. 공자가 일찍이 자공을 호련(瑚璉; 기장(黍稷)을 담아 종묘(宗廟)에 바치는 제기(祭器). 존경(尊敬)할 만한 품격이 있음)이라고 칭찬하였으며, 말을 잘하였다. 오(吳) 나라가 군사(軍事)를 일으켜 제(齊)나라를 대적(對敵)하게 하여 노(魯)나라를 구하자, 이 때문에 월(越)나라가 패자(霸者)가 되었다. 또 재물(財物)을 잘 모으고 70인(人)의 제자 중 가장 부유했다. 뒤에 여공(黎公)에 봉해졌다.

6) 서공(徐公) 염구(冉求)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이다. 성(姓)은 염(冉), 이름은 구(求), 자(字)는 자유(子有)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29세가 어리다. 여러 가지 재주가 많으며 정치학(政治學)에 능하였다. 일찍이 공자께서 “염구는 재주가 많으니 정치를 맡아 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 하셨다. 또, 염구는 천실의 고을(千室之邑)과 백승의 집안(百乘之家)에 재상(宰相)을 할만하다 하였다. 잉씨(孕氏)의 재(宰)로 벼슬하였고 뒤에 서공(徐公)에 봉(封)해졌다.

7) 위공(衛公) 증유(仲由)

춘추시대 노(魯)나라 변인(卞人)이다. 성(姓)은 증(仲), 이름은 유(由), 자(字)는 자로(子路) 또는 계로(季路)라 하였고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9세 어리다. 성격이 용맹함을 좋아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한 충고 듣기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허물을 듣고 고치기 전에 또 다른 허물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효성이 극진하였

고 일찍 부모를 위하여 백리 길을 쌀을 지고 왔으며, 정사(政事)에도 재주가 있었다. 처음에 노(魯)나라에 벼슬하고 뒤에 위(衛)나라에 벼슬했다. 공희의 어머니(孔悝母) 백희(伯姬)가 혼량부(渾良夫)와 함께 태자(太子) 괴외(蒯賁)를 세우자고 모의하고 공리를 협박하여 맹세케 하여 겁을 주어 내쫓으니 공리는 달아났다.

자로(子路)는 위(衛)나라 공희를 섬기고 있었는데 장차 성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자고(子羔)가 제지하였다. 자로가 그에게 녹을 먹고 있었는데 자로의 생각은 그가 어려운 지경에 당했는데 피할 수 없다하고 드디어 쳐들어갔다. 괴외의 사인(使人)이 자로를 공격해서 자로의 갓끈이 끊어졌다. 자로는 ‘군자가 죽을지언정 갓을 벗지 않는다’ 하고 관을 고쳐쓰는 동안 두 장사의 칼을 맞아 죽었다.

8) 오공(吳公) 언언(言偃)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이다. 성(姓)은 언(言), 이름은 언(偃), 자(字)는 자유(子遊)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45세가 어리다. 문학(文學)에 뛰어났다. 노(魯)나라 무성(武城)의 원님 벼슬을 하였고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教化)시켜 다스렸다. 공자께서 “닭은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割雞 焉用牛刀)”라고 하여 큰 재주를 지닌 사람이 시원찮은 벼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 뒤에 오공(吳公)에 봉(封)해졌다.

9) 위공(魏公) 복상(卜商)

춘추시대(春秋時代) 위(衛)나라 사람. 성(姓)은 복(卜), 이름은 상(商), 자(字)는 자하(子夏)이며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44세가 어리다. 자유와 더불어 문학(文學)에 뛰어났다. 공자가 돌아간 뒤 서하(西河)에서 후학(後學)을 가르치고 위 문후(魏文侯)가 스승으로 섬겼다. 아들이 죽었을 적에 곡(哭)을 지나치게 하여 눈을 잃었다. 저서로는 시서(詩序)와 역전(易傳)이 있다. 뒤에 위공(魏公)에 봉해졌다.

10) 진공(陳公) 전손사(顓孫師)

춘추시대(春秋時代) 진(陳)나라 사람이다. 성(姓)은 전손(顓孫), 이름은 사(師), 자(字)는 자장(子張)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48세가 어리다. 사람됨이 용모(容貌)가 잘나고, 자질이 너그럽고 널리 사귀고 조용하나, 인의(仁義)의 행실(行實)에는 힘쓰지 않아서 공자 제자들이 벗은 했어도 공경(恭敬)하지 않았다. 증자(曾子)는 “당당하도다 자장이여, 함께 인(仁)을 하기가 어렵구나(堂堂乎張也 難與並爲仁矣)”라 하였고 자유는 “내 친구 자장은 어려운 일에는 능하다. 그러나 어질지는 않도다(吾友張也 爲難能也 然而未仁)”라고 하였다. 뒤에 진공(陳公)에 봉해졌다.

4. 송조 육현 약사(宋朝六賢略史)

1)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주돈이의 자(字)는 무숙(茂叔)인데 뒤에 국(國) 자를 피하여 이름을 돈이(惇頤)라고 바꾸었다. 호(號)는 럽계(濂溪)인데 북송(北宋) 도주(道州)인이다. 박학(博學) 역행(力行)하여 매우 어렸을 적에 도(道)를 들었다. 여러 차례 관직을 겪으면서 일을 만나면 정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도리를 다하였다. 저서에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이 있는데 이것은 주자(朱子)가 ‘선조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찾아냈다(發前聖之所未發)’고 하였다. 저서가 수십편(數十篇)인데 성학(聖學)의 본원(本源)을 찾아낸 것들이다. 황정견(黃庭堅)이 그 인품을 칭찬하며 “가슴 속이 시원스럽고 광풍이 맑은 달 같다”고 하였다. 57세에 졸(卒)하였는데 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도국공(道國公)에 봉해졌다.

2)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1032~1085)

정호의 자(字)는 백순(伯淳), 호(號)는 명도(明道)인데 송(宋)나라 하남인(河南人)이다. 이천(頤川)과 함께 주렴계(周濂溪)에게 공부하였으며 타고난 자질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몸가짐에 도(道)가 있었다. 그리하여 문인(門人) 친구들과 사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성을 내는 기색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도(道)가 밝지 못한 것은 이단(異端)이 해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 올바른 길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인의 문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단을 극력히 배척하였다. ‘하늘과 땅은 근원이 하나(一氣)’라는 철학을 수립하고 54세에 졸(卒)하였다. 노공 문언박(潞公文彦博)이 그의 묘비에 쓰기를, ‘명도 선생(明道先生)’이라고 하였다. 송(宋) 영종(寧宗) 때에 시호를 순공(純公)이라 하고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게 하고 예국공(豫國公)에 봉했다.

3)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1033~1107)

정이의 자(字)는 정숙(正叔), 호(號)는 이천(伊川)인데 명도(明道)의 아우이다. 형 정호와 함께 주렴계(周濂溪)에게 배웠다. 나이 18세에 인종(仁宗)에게 상서(上書)하여 ‘왕도정치로 마음을 삼아야 한다’고 권(勸)하였다.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사마광(司馬光)과 여공저(呂公著)가 추천하면서 말하기를, “하남(河南) 처사(處士) 정이(程頤)는 도덕(道德)이 순수하게 갖추어져 있고 학문이 깊고도 넓어서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재능이 있습니다.”고 하였다. 그 뒤 크게 등용되었으며 또 선생 자신도 천하의 일을 스스로 맡아 논의하고 상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자 많은 소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시골로 쫓겨갔다. 이기(理氣)의 철학을 창도(唱導)하고, 저술로는 『춘추전(春秋傳)』과 『역전(易傳)』이 후세에 전한다. 75세에 졸(卒)하였다. 문인(門人) 중 훌륭한 제자가 먼저 죽어서 그의 그 미덕(美德)을 형용(形容)한 사람이 없었다.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낙국공

(洛國公)에 봉해졌다.

4)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소옹의 자(字)는 요부(堯夫), 호(號)는 강절(康節)인데 송(宋)나라 하남인(河南人)이다. 어렸을 적에 매우 독하게 공부를 하였는데 겨울에도 난로불을 때지 않고 여름에는 부채질도 하지 않았다. 또 밤에는 자리에 눕지도 않으면서 커다란 의자를 불태우고 자신의 재질을 달구어 나갔으며 선왕(先王)의 대업(大業)을 세우려고 하였다. 늦으막에는 학문이 날마다 진보되고 덕(德)이 날마다 밝아져서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소장(消長)과 만물의 변천을 하나하나 탐색하여 높고 밝은 지역에 혼자 이르러 조예가 깊었다. 지은 저서에는 『황극경세(皇極經世)』가 있는데 천지 음양성쇠소장(天地陰陽盛衰消長)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세상의 운수를 예언하였다.

소옹의 학문은 주렴계, 정자 형제, 장횡거, 주자의 학설과는 다소 차이(差異)는 있다. 정명도가 소강절의 학문을 안으로는 성인이며 밖으로는 왕도(內聖外王)의 학문이라 하고, 소옹이 돌아간 뒤 정명도가 그의 묘지(墓誌)에서 말하기를 “순수하여 잡것이 없다(純一不雜)”고 하였으니 대개 취향은 달라도 도는 한가지로 귀결된다(異趣同歸)라 할 것이다.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신안백(新安伯)으로 봉해졌다.

5) 미백(郟伯) 장재(張載)

장재의 자(字)는 자후(子厚), 호(號)는 횡거(橫渠)인데 송(宋)나라 대량인(大梁人)이다. 18세에 범문정공(范文正公; 范仲淹)에게 군대에 대한 의논을 올리자 문정공이 그의 자질이 쓸만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유학(儒學)으로 성취(成就)시키려고 『중용(中庸)』을 읽으라고 권하였다. 뒤에 백순(伯淳; 정호)·정숙(正叔; 정이) 형제를 만나 도학(道學)의 요점을 듣고 이후로는 독실히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하

며 예학(禮學)을 권장하여 풍속을 변화시켰다. 저서에 『정몽(正蒙)』과 『서명(西銘)』이 있는데 모두 다 명저(名著)이다. 『서명』은 인도(仁道)를 천명(闡明)하여 ‘맹자 이후 이런 작품이 없었다’는 정자(程子)의 찬사가 있다. 58세에 졸(卒)하니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미백(郟伯)에 봉하였다.

6)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1130~1200)

주희의 자(字)는 원회(元晦), 호(號)는 회암(晦庵)인데 송(宋)나라 휘주인(徽州人)이다. 본성이 총명하고 근엄하였다. 그의 학문은 연평(延平) 이동(李侗)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천(伊川; 程頤)을 독실하게 믿어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集大成)한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한 뒤 50세에 봉사(封事)와 상서(上書)로 수 없이 많은 의견을 올려 요순(堯舜)의 덕치(德治)를 기대하였는데 조정에서 벼슬을 한 것은 겨우 40일에 불과하여 생각한 의지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소인배의 미움을 받아 거짓 학문이란 지목(指目)을 받아 늘그막에는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뒤 700년이 지나도록 주자학의 광명(光明)은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것과 같아 공자 이후 대현(大賢)이란 칭송을 받게 되었다. 저서에는 『주역본의(周易本義)』 『계몽(啓蒙)』과 『시집전(詩集傳)』과 『대학중용장구혹문(大學中庸章句或問)』과 『논어집주(論語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가 있고, 편찬에는 『논맹집의(論孟集義)』와 『중용집략(中庸輯略)』과 『효경간오(孝經刊誤)』와 『소학서(小學書)』와 『통감강목(通鑑綱目)』과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과 『근사록(近思錄)』과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등이 있다. 또 『주자문집(朱子文集)』 100권(卷)과 『생도문답(生徒問答)』 80권(卷)과 『별록(別錄)』 10권(卷)이 다 그가 평생 정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71세에 졸(卒)하였는데 영종(寧宗) 때에 시호를 문공(文公)이라 하고 뒤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고 휘국공(徽國公)이라고 봉하였다.

5. 동국 십팔현(東國十八賢) 약사(略史)

1) 동종향 9위(東從享九位)

(1)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설총(新羅, 655~?)의 자(字)는 총지(聰智), 호(號)는 빙월당(氷月堂), 경주(慶州) 설씨(薛氏)의 시조(始祖)이다. 조부(祖父)는 담날내마(談捺奈麻)이다. 부친(父親) 원효(元曉)는 처음에 스님이 되어 불서(佛書)에 해박하였다. 얼마 후 파계(破戒)하여 소성거사(小性居士)라는 이름을 지어 스스로 불렀다. 모친(母親)은 무열왕의 따님(武烈王女) 요석 공주(瑤石公主)이다. 부(父)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노래 부르기를, “누가 나에게 자루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받칠 기둥을 베어주리라(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태종(太宗)이 그 노래 가사를 전해 듣고 이르기를 “이 스님이 귀부인(貴婦人)을 얻어 현자(賢者)를 낳으려고 하는구나. 나라에 대현(大賢)이 있으면 그 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하였다. 그때 요석궁(瑤石宮)에 홀로된 공주가 있었는데 관리를 시켜 원효를 요석궁에 맞아들이게 하니 얼마 후 공주가 잉태하여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천성(天性)이 영특하여 슬기로우며, 태어나면서부터 도(道)를 깨달았다. 신라 10현(十賢)의 한 사람으로서 벼슬은 한림(翰林)을 지냈고 왕(王)의 정치에 자문 역할을 했다. 유학(儒學)과 문학(文學)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일찍이 국학(國學)에 들어가 학생을 가르쳐 유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말로 구경(九經)을 풀이하여 후세 사람들을 가르쳤으므로 학자들이 설총을 유학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었다. 그가 창제한 중국 문장에 토(吐)를 다는 방법은 그 당시 중국 학문 섭취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가 이러한 이두(吏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그가 태어나기 전 진평왕(眞平王) 때의 「서동요(薯童謠)」, 선덕(善德)

여왕(女王) 때의 <풍요(風謠)> 등이 이와 유사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집대성(集大成)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잘 지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고 『삼국사기』에 <화왕계(花王戒)>가 지금까지 전하며 남쪽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비명(碑銘)이 있으나 글자가 문드러져서 읽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고려 현종 13년(서기 1022)에 홍유후(弘儒侯)에 추증(追贈)되었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경주(慶州)의 서악서원(西岳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2)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처음 이름은 향(珦))

안유(고종 30, 서기 1243~충렬왕 32, 서기 1306)는 고려의 명신(名臣)·학자(學者)로서, 처음 이름은 향(珦), 자는 사온(士蘊), 호(號)는 회현(晦軒), 본관(本貫)은 순흥(順興)이다. 밀직부사(密直副使) 안부(安孚)의 아들로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 상평리(上坪里)에서 출생(出生)하였다. 안유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더니 원종 원년(서기 1260) 18세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이 되고, 이어 한림원(翰林院) 직(直)이 되었으며, 원종 11년(1270) 삼별초(三別抄)의 난(亂) 때 강화(江華)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감찰어사(監察御使)가 되었다. 충렬왕 원년에 상주(尙州) 판관(判官)으로 있을 때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무당(巫堂)을 엄중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했고 판도좌랑(版圖佐郎) 전중시사(殿中侍史)를 거쳐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올랐다.

충렬왕 14년 우사의(右司議)가 되고 좌승지(左承旨) 정동행성 원외랑(征東行省員外郎)을 거쳐 유학 제거(儒學提舉)가 되어 왕(王)과 공주(公主)를 따라 원(元)나라에 가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베껴 쓰고 돌아와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충렬왕 20년 동지밀직(同知密直)으로 동남도병마사(東南道兵馬使)가 되어 합포(合浦)에서 방어(防禦)를 잘하였고, 밀직사사(密直司使) 삼사좌사 첨의참리 세자이보(三司左使僉議叅理世子貳保)를 역임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참지기무(參知機務) 행동경유수(行東京留守) 집현전(集賢殿) 태학사(太學士) 계림부윤(鷄林府尹) 첨의참리 수문전 태학사(僉議參理修文殿太學士) 감수국사(監修國史)가 되었고 태상왕(太上王)인 충렬왕을 따라 원(元)나라에 다녀왔다. 충렬왕이 복위(復位)하자 충선왕을 따라 다시 원나라에 다녀왔다. 충렬왕 30년 첨의시랑 찬성사 판판도사사(僉議侍郎贊成事判版圖司事)가 되었는데 양현고(養賢庫)가 탕진되어 선비들을 양성할 비용이 없자 섬학전(贍學錢)이라는 육영재단(育英財團)을 설치하고 국학(國學)인 대성전(大成殿)을 낙성(落成)하고 공자 및 70인의 초상화를 봉안(奉安)하고, 제기(祭器) 악기(樂器)와 육경(六經) 제자사(諸子史) 등의 서적을 비치하여 배우게 하였다. 이로써 유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朱子學者)로 지칭된다.

도첨의중찬(都僉義中贊)으로 벼슬에서 물러나고 평생을 문교 진흥(文教振興)에 힘쓰고 64세인 충렬왕 32년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라 하고 충숙왕 5년에 원나라 화가(畫家)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현재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봉안(奉安)되어 있다. 충숙왕(忠肅王) 6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곡성(谷城)의 회현영당(晦軒影堂), 순흥(順興)의 소수서원에 배향(配享)되었다.

문인(門人)으로는 권부(權溥)·우탁(禹倬)·백이정(白頤正)·이조년(李兆年)·신장(辛藏)·이성(李晟)·윤선좌(尹宣佐)·윤안록(尹安鹿)·서견(徐甄)·허관(許冠)이 있다.

(3)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김굉필(단종 2, 1454~연산군 10, 1504)의 자(字)는 대유(大猶), 호(號)는 한훤당(寒暄堂)·사옹(叢翁), 본관(本貫)은 서흥(瑞興)이다. 단종 2년 사옹(司勇) 김뉴(金紐)의 아들로 서울 정릉동(貞陵洞)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호탕하고 성장하면서 학문(學問)에 분발(奮發)하였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門下)에서 『소학(小學)』을 읽고 스스로 ‘소학동자(小學

童子)라 이르며 소학(小學)에 써있는 대로 몸소 실천(實踐)하였다. 향시(鄉試)에서는 “글 공부를 해도 아직 천기를 알지 못하니 소학 책 가운데 지난 번 잘못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자식의 직분을 다하겠으니 구구하게 어찌 좋은 옷과 말을 부러워하라(業文猶未識天機 小學書中悟昨非 從此盡心供子職 區區何用羨輕肥)”라 하였다. 성종 11년(1480)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고, 성종 25년 행의(行宜)로 추천을 받아 남부 참봉(南部參奉)이 되고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 감찰(監察) 등을 거쳐 연산군 3년 형조좌랑(刑曹佐郎)이 되었다.

연산군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 일파로 몰려 희천(熙川)에 유배(流配)되었다가 나중에 순천(順川)으로 옮겨갔다.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그 당시 나이 51세였다. 평소 육경(六經)연구에 전심을 다 기울였으며, 성리학(性理學)에 통달하여 문하(門下)에 조광조(趙光祖)·이장곤(李長坤)·김안국(金安國)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그림도 잘 그렸으며, 저서에는 『한훤당집(寒暄堂集)』이 있다.

중종 때 우의정(右議政)에 추증(追贈)되고 광해군 때 전국 유생의 상소에 의해 정여창(鄭汝昌)·조광조·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과 함께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서흥(瑞興)의 화곡서원(花谷書院)·희천(熙川)의 상현서원(象賢書院)·순천(順川)의 옥천서원(玉川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문인(門人)으로는 조광조·김안국·김정국(金正國)·이장길(李長吉)·이장곤(李長坤)·정봉(鄭鵬)·성세창(成世昌)·강흔(姜訥)·이적(李勣)·정응상(鄭應祥)·허경(許馨)·박한삼(朴漢參)·민구손(閔龜孫)·윤신(尹信)·김구(金球)·윤탁(尹倬)·이연경(李延慶)·주계군 이심원(朱溪君 李深源)·최충성(崔忠成)·우성윤(禹成允)·최수성(崔壽暱)·유우(柳藕)·이온(李溫) 등이 있다.

(4)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조광조(성종 13, 1482~중종 14, 1519)의 자(字)는 효직(孝直), 호(號)는 정암(靜庵), 본관(本貫)은 한양(漢陽)이다.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조원강(趙元綱)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했다. 14세 때 어천도(魚川道) 찰방(察訪)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 희천(熙川)에 유배(流配) 중인 김굉필(金宏弼)에게 배웠으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 학문 계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우두머리이다.

중종 5년에 진사(進士)가 되고, 중종 10년에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직(成均館典籍)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歷任)하며 왕(王)의 신임(信任)을 얻고 임금의 모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교를 정치와 백성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말했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장경 황후(章敬王后)가 죽고 중종의 계비 책봉(繼妃冊封) 문제가 논의될 때 박상(朴祥) 김정(金淨) 등이 지난번에 폐위(廢位)된 신씨(愼氏)의 복위(復位)를 상소(上疏)하다가 대사간(大司諫) 이행(李荇)의 탄핵(彈劾)으로 유배(流配)되자, 상소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은 언로(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國家存亡)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을 파직시켰다.

그 후 수찬(修撰)에 이어 호조(戶曹)와 예조(禮曹) 정랑(正郎)을 거쳐 중종 12년 교리(校理)로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註官)을 겸임하고 향촌(鄉村)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위해 여씨 향약(呂氏鄉約)을 조선 팔도(八道)에 실시하게 하였다. 중종 13년에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미신(迷信)을 타파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도교(道教)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나타내는 상청(上淸) 태청(太淸) 옥청(玉淸)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맡아보는 소격서(昭格署)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없앴다.

중종 14년 대사헌(大司憲)에 승진(昇進)되어 세자 부빈객(世子副賓客)을 겸하였으며 현량과(賢良科)를 설치(設置)하여 신진 사류(新進士類)의 소장학자(少壯學者)를 요직(要職)에 배치(配置)하였다. 한편 훈구파(勳舊派)를 외직(外職)으로 몰아내

고 정국공신(靖國功臣)의 공로를 깎아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 공신(功臣)의 3/4에 해당하는 70여 명(七十餘名)을 삭훈하여 훈구파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훈구파는 조광조 등 신진사류(新進士類)를 무고하고 왕(王)도 조광조의 도학적(道學的)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영의정 윤광필(尹光弼)의 변호로 사형은 면제하고 능주(綾州)로 유배시킨 뒤에 사약을 내렸다. 저서로는 『정암집(靜庵集)』이 있다.

선조(宣祖) 초기에 신원(伸冤)되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어 문묘(文廟)에 배향(配享), 능주(綾州)의 죽수서원(竹樹書院)·양주(楊州)의 도봉서원(道峯書院)·희천(熙川)의 상현사(象賢祠) 등에 배향(配享)되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문인(門人)으로는 성수침(成守琛)·기준(奇遵)·김명달(金明達)·조욱(趙昱)·백인걸(白仁傑)·양언진(梁彦鎭)·정환(丁煥)·나식(羅湜)·허백기(許伯琦)·이연경(李延慶)·홍섬(洪暹)·홍봉세(洪奉世)·정원(鄭源)·윤관(尹寬)·이희민(李希閔)·이충건(李忠健)·박세후(朴世煦)·김대유(金大有)·윤변(尹忭)·이노(李屺)·안담(安曇)·최여주(崔汝舟)·민의(閔義)·홍순복(洪舜福)·심광언(沈光彦)·박소(朴紹)·조희윤(趙希尹) 등이 있다.

(5)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이황(연산군 7, 1510~선조 3, 1570)의 자(字)는 경호(景浩), 호(號)는 퇴계(退溪)·도옹(陶翁)·퇴옹(退翁)·청량산인(淸涼山人), 본관(本貫)은 진보(眞寶)이다. 진사(進士) 이식(李植)의 아들로 예안(禮安) 온계천리(溫溪川里)에서 출생했다.

12세 때 숙부(叔父) 이우(李堧)에게 배우고 『논어』에 “집안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에게 공손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경계(警戒)하기를 “인간의 도리는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종 18년 23세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중종 28년에 진사(進士)가 되고, 중종 29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하였으며, 부정자(副正字) 박사(博士) 전직(典籍) 호조좌랑(戶曹佐郎) 등을 거쳐 중종 35년에 수찬(修撰)으로 지제교 검토관(知製敎檢討官)

을 겸직하고 이어 정언(正言) 형조좌랑(刑曹佐郎)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겸직하였다. 중종 37년 검상(檢詳)이 되고 충청도 암행어사를 거쳐 사인(舍人)으로 문학(文學) 교감(校勘)을 겸직하였으며 장령(掌令)을 역임하고 사예(司藝) 필선(弼善)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이기(李芑)에 의해 벼슬을 빼앗겼으나 사복시정(司僕寺正) 응교(應教)를 거쳐 단양군수(丹陽)·풍기군수(豊基郡守)·대사성(大司成)에 다시 올랐다. 명종 9년 형조(刑曹)·병조(兵曹)의 참의(參議)에 이르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부제학(副提學)·공조참판(工曹參判)·공조판서(工曹判書)·예조판서(禮曹判書) 등을 거쳐 선조 원년에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이황은 주자학을 집대성(集大成)한 대유학자(大儒學者)로 율곡 이이(李珥)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계의 쌍벽을 이루었다. 그의 학설은 ‘성(誠)’을 기본으로 일생 동안 ‘경(敬)’을 실천하고 주자(朱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사상을 핵심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 사단(四端)이며, 기(氣)가 발(發)하여 이(理)가 승(乘)하는 것이 칠정(七情)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주제(主題)로 한 기대승(奇大升)과의 8년에 걸친 유명한 논쟁은 사칠분리기여부론(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다. 뒤에, 그의 학풍(學風)은 뒤에 그의 이론을 반발하고 나선 이이의 기호학과(畿湖學派)에 대하여 영남학과(嶺南學派)를 이루었다.

풍기 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내리게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게 하였다. 뒤에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창설하여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전심(專心)을 기울였다. 시문(詩文)에는 물론 글씨도 뛰어났다. 겸허(謙虛)한 성격의 학자로서 중종·명종·선조 임금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특히 명종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계속 사양하니 “어진 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탄식함(招賢不致歎)”이란 제목으로 유생에게 글을 짓게 하고,

화공(畫工)을 도산(陶山)에 보내어 도산의 경치를 그리게 한 후 병풍을 만들어 거실에 두었다.

선조가 즉위하니 무진 육조본소(戊辰六條本疏)를 올려 여섯 가지로 된 임금으로서의 임무를 논(論)하고, 같은 해에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차자(筴子)를 같이 올렸다. 『성학십도』는 유학의 근본 원리와 수행의 방법을 망라한 가장 중요한 진수를 압축한 것이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천명도설(天命圖說)』 『자성록(自省錄)』 등의 학설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선조 3년 70세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말하기를 죽은 뒤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비석(碑石)도 없이 작은 돌에 “퇴도 만은 진성이공지 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기라 유언하고 졸(卒)하였다. 선조는 영의정에 추증하고 선조 8년에 문순(文純)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광해군 2년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였으며, 단양(丹陽)의 단암서원(丹巖書院)·괴산(槐山)의 화암서원(華巖書院)·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퇴계전서(退溪全書)』 등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노수신(盧守愼)·황준량(黃俊良)·허충길(許忠吉)·구사맹(具思孟)·허엽(許曄)·김명원(金命元)·정탁(鄭琢)·민응기(閔應祺)·김성일(金誠一)·정곤수(鄭崑壽)·유운용(柳雲龍)·유성룡(柳成龍)·이요신(李堯臣)·심희수(沈喜壽)·허성(許箴)·허봉(許篈)·허사렴(許士廉)·허천수(許千壽)·이양원(李陽元)·황수량(黃遂良)·윤두수(尹斗壽) 외 161인이 있다.

(6)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

이이(중종 31, 1536~선조 17, 1584)의 자(字)는 숙헌(叔獻), 호(號)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중종 31년에 부(父) 찰방(察訪) 이원수(李元秀)와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의 아들로 강릉(江陵)에서 출생했다. 사임당 신씨의 태몽(胎夢)에 흑룡(黑龍)이 침실(寢室)에 날아들어왔으므로 갖

난 아이 때의 이름을 견룡(見龍)이라고 하였다.

어려서는 어머니에게 공부를 배우고 명종 3년 13세로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합격하고, 16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19세 때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서 불서(佛書)를 연구하다가 돌아왔으며, 21세 때 한성시(漢城試)에 수석 합격(首席合格)하고, 성주 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고, 23세 때 성주에서 강릉 외가집으로 가던 중 퇴계 선생(退溪先生)을 방문하여 이기(理氣)를 논하였다. 명종 19년 생원시(生員試)와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모두 장원(壯元)하여, 아홉 번이나 장원한 공(九度壯元公)이라고 일컬어졌다. 사가독서(賜暇讀書) 한 뒤 호조좌랑(戶曹佐郎)·예조좌랑(禮曹佐郎)·정언(正言)·이조좌랑(吏曹佐郎)·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원년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부교리(副校理)·춘추관 기사관(春秋官記事官)을 겸하여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4년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고 선조 5년 응교(應教)에 임명되었으나 황해도 해주(海州)에 낙향(落鄉)하여 우계 선생(牛溪先生; 성혼(成渾))과 이기(理氣) 사단(四端) 칠정(七情) 인심(人心) 도심(道心)을 논(論)했다. 선조 6년 직제학(直提學)이 되고 동부승지(同副承旨)·참찬관(參贊官)을 겸직(兼職)하고, 다음해 우부승지(右副承旨)·병조참지(兵曹參知)·대사간(大司諫)을 지낸 후 병으로 사퇴했다. 울곡(栗谷)은 석담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다가 선조 14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임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吏曹)·형조(刑曹)·병조(兵曹)의 판서(判書)가 되어 조만간 외적이 침입할 징조에 대비하여 10만 군사(十萬軍)를 양병(養兵)하자고 하였으나 유성룡이 태평성세(太平盛世)에 예(禮)와 의(義)로 인도(引導)할 것이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할 당시 선조 16년 당쟁(黨爭)을 조장한다는 동인(東人)들의 탄핵(彈劾)을 받고 사직했으나 태학생(太學生) 양호 유생(兩湖儒生) 800여 명(八百餘名)이 쫓겨 항소(抗疏)하여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등용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러 동서분당(東西分黨)의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조 17년에 졸(卒)했다.

조선 유학계(朝鮮儒學界)의 이황(李滉)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기호학과(畿湖學派)를 형성(形成)했고, 장구(章句)의 분석적(分析的) 해석(解釋)보다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것을 학문 연구의 태도라고 하였다.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대하여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근본 사상으로 삼아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思想)의 차이가 당쟁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학문의 목적을 민생문제와 직결시켰고 당쟁의 조정과 대동법(大同法)과 사창(社倉)의 실시(實施)에 노력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글씨도 잘 썼는데 조자양(趙子昂)의 서체(書體)를 터득했다 하며 그림에도 뛰어났다.

인조 즉위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성(文成)이라고 하였다. 숙종 8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선조 묘정(宣祖廟廷)에 배향(配享)하였다. 파주(坡州)의 자운서원(紫雲書院)·강릉(江陵)의 송담서원(松潭書院)·풍덕(豐德)의 귀암서원(龜巖書院)·서흥(瑞興)의 화곡서원(花谷書院)·함흥(咸興)의 운전서원(雲田書院)·황주(黃州)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율곡전서(栗谷全書)』 등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김장생(金長生)·조헌(趙憲)·이귀(李貴)·윤방(尹昉)·허우(許雨)·허극심(許克謙)·허극성(許克誠)·허흔(許昕)·이로(李魯)·성람(成瀾)·이통(李通)·심례겸(沈禮謙) 외 95인이 있다.

(7)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김장생(명종 3, 1548~인조 9, 1631)의 자(字)는 희원(希元), 호(號)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대사헌(大司憲) 김계휘(金繼輝)의 아들로 서울 정동(貞洞)에서 출생했다.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문하(門下)에서 예학(禮學)을 전수(專修) 받고, 19세 때 율곡 이이에게 성리학을 배워 동방예학(東方禮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선조 11년 학행(學行)으로 천거(薦舉)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순릉 참봉(順陵參奉) 등을 거쳐 동몽교관(童蒙教官)·정산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호조 정랑(戶曹正郎)으로 명나라 군대의 군량 조달(軍糧調達)에 공을 세우고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남양부사(南陽府使)·안성군수(安城郡守)로 있다가 유성룡의 천거(薦舉)로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가 되고, 선조 35년 청백리(清白吏)에 뽑히고 익산군수(益山郡守)·회양(淮陽)·철원 부사(鐵原府使)를 역임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심문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 뒤 벼슬을 사퇴하고 충청남도 연산(連山)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장령(掌令)·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상의원정(尙衣院正) 등을 거쳐 집의(執義)에 이르렀고, 공조참의(工曹參議)·부호군(副護軍)을 지내고 인조 2년 벼슬을 사퇴하면서 ‘현재 급히 서둘러야 할 13가지(時務十三事)’를 올렸다. 좌의정 윤방(尹昉)과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당대의 현자(賢者)인 김장생을 발탁하여 사류(士類)들의 기풍(氣風)을 권장하라고 하여 인조 3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다음해 형호군(形護軍)에 보직되었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양호 호소사(兩湖號召史)로 군량미(軍糧米) 조달에 힘쓰고 화의(和議)에 반대했다. 다음해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향리(鄉里)에서 교육에 전심했다. 문하(門下)에 아들 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신흠(申欽)·최명길(崔鳴吉) 등이 배출되었다. 서인(西人)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과(畿湖學派)를 이룩하였다.

인조 9년 84세로 졸(卒)하였다. 효종 8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라고 하였다. 숙종 14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연산의 둔암서원(遯巖書院)·회덕(懷德)의 승현서원(崇賢書院) 등에 배향(配享)되었다. 저서로는 『사계집(沙溪集)』 등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강석기(姜碩期)·신흠(申欽)·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신경진(申景禎)·구굉(具宏)·이후원(李厚源)·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榮)·구인후(具仁后)·최명길(崔鳴吉)·이경직(李景稷) 외

63인이 있다.

(8)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김집(선조 7, 1574~효종 7, 1656)의 자(字)는 사강(士剛), 호(號)는 신독재(愼獨齋),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사계 김장생의 아들로 서울 정동(貞洞)에서 출생했다. 8세 때 김상헌(金象賢)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였다. 18세 때 진사(進士)가 되고, 광해군 2년에 참봉(參奉)이 되었다가 광해군의 문란한 정치를 보고 회의를 느껴 은퇴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조정의 신하들이 대헌(臺憲)의 임무를 맡기려 했으나 굳이 사양하고 외현(外縣)을 자청(自請)하여 부여 현감(扶餘縣監)이 되었다. 이어 임피 현령(臨陂縣令) 지평(持平) 집의(執義) 공조 참의(工曹參議) 등을 역임하고 인조 중기 이후 공서(攻西)가 집권하자 퇴직했다.

효종이 즉위하여 공서(攻西)의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등이 파직(罷職)되자 청서(淸西)의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등용되어 예조 참판(禮曹參判)이 되어 상례의 이동(喪禮異同)과 「시무칠조(時務七條)」를 올렸다.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어 효종과 함께 북벌 정책을 계획했다. 이때 실각한 김자점이 청(淸)나라에 북벌 계획을 밀고(密告)함으로써 야기된 청나라의 문책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 후 다시 대사헌(大司憲), 좌찬성(左贊成)을 지내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효종 7년에 졸(卒)하였는데 향년(享年)이 83세였다.

오경(五經)을 밝히고 『논어(論語)』를 강의하고 성리학의 근본을 정리하고 다듬었으며 부친의 학문을 계승하여 이를 더 깊이 연구하여 예학(禮學)의 체계(體系)를 세웠다. 고종 20년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효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으로 받았으며, 연산(連山)의 둔암서원(遯巖書院)과 임피(臨陂)의 봉암서원(鳳岩書院)·옥천(沃川)의 창주서원(滄州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와 『의례문해설(疑禮文解說)』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송시열·송준길·윤선거(尹宣舉)·김지백(金之白)·신경(申

昞) · 김남식(金南式) · 이선기(李善基) · 최석유(崔碩儒) 등이 있다.

(9)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

송준길(선조 39, 1606~현종 13, 1672)의 자(字)는 명포(明浦), 호(號)는 동춘당(同春堂), 본관(本貫)은 은진(恩津)이다. 군수(郡守) 송이창(宋爾昌)의 아들로 서울 정릉동(貞陵洞)에서 출생했다. 광해군 6년 송시열과 함께 송신조(宋申祚)에게 배우고 울곡(栗谷) 이이(李珥)의 문하(門下)에서 공부했으며 그 후 연산에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는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생이 되었다.

인조 2년 진사(進士)가 된 뒤 학행(學行)으로 천거(薦舉)받아 세마(洗馬)가 되었으나 사퇴하고 계속 학업에 정진했다. 서인(西人) 중 청서파(淸西派)였는데 효종이 즉위하자 부사직(副司直) · 시장원 필선(侍講院弼善)에 이어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고, 인조 말부터 권세를 잡고 있던 공서파(功西派) 김자점을 탄핵해서 파면(罷免)시켜 청서파(淸西派)의 집권을 가져오게 했다. 효종과 함께 북벌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좌절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이조 참의(吏曹參議) 겸 진선(進善) 등으로 여러 번 임명되었으나 계속 사퇴했다.

효종 10년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어 송시열과 함께 국정(國政)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승하(昇遐)하고 현종이 즉위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 문제(服喪問題)로 예송(禮訟)이 일어났다. 당시 남인(南人)인 윤희(尹鑄)와 윤선도(尹善道) 등이 3년제를 주장했을 때 송시열과 함께 기년제(基年制)를 주장해 승리하였다.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현종 6년 원자 보양(元子保養)에 대한 건의를 하여 첫번째 보양관(輔養官)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주장했던 기년제(基年制)의 잘못을 규탄하는 남인들의 상소로 사퇴했다. 뒤에 좌참찬(左參贊) · 제주(祭酒) · 찬선(贊善)에 이르렀다. 송시열과 학문적 경향이 같은 성리학자(性理學者)로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고 이이(李珥)의 학설(學說)을 지지했다. 문장(文章)과 글씨를 잘 썼다.

현종 13년 67세로 졸(卒)하였다. 현종 14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숙종 7년에 문정(文正)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영조 30년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고 공주(公州)의 충현서원(忠顯書院)·옥천(沃川)의 표충사(表忠祠)·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顯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동춘당집(同春堂集)』과 『어록해(語錄解)』가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권상하(權尙夏)·이상길(李相吉)·김징(金澄)·황세정(黃世楨) 등이 있다.

2) 서종향 9위(西從享九位)

(1)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최치원(헌강왕 1, 857년~?)의 자(字)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으로 금성(金城) 사랑부(沙梁部) 사람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경주 최씨(慶州崔氏)의 시조(始祖)인데 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다.

최치원은 소년시절부터 영특하여 학문을 좋아하였다. 12세 때(경문왕 9년) 상선(商船)을 타고 당(唐)나라에 들어가 공부하려 할 때 부친(父親)이 이르기를 “10년 내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써하라.”고 하였다. 당나라에 가서 스승을 따라 다니며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건부(乾符) 원년(당 희종 원년)에 예부 시랑(禮部侍郎) 배찬(裴瓚)이 고시관으로 참여하였을 적에 단번에 급제(及第)하여 선주 표수 현위(宣州漂水縣尉)가 되고 승무랑시어사내공봉(承務郎侍御使內供奉)이 되어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헌강왕 5년(879)에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고병(高駢)이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 토벌에 나섰는데 최치원을 뽑아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서기(書記)의 소임을 맡겼는데 당시의 최치원이 지은 표장서계(表裝書啓) 격문(檄文) 특히 <황소를 치는 격문(討黃巢檄文)>은 명문(名文)으로 알려졌다. 격문(檄文)은 “천하 사람들 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 속의 귀신들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의논을 하였노라(不唯天下之人 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 已議陰誅)”라는 글귀가 있는데 황소가 이 글귀를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28세 때 고향으로 돌아올 뜻을 갖고 있으므로 희종이 그 마음을 알고 광계(光啓) 원년(현강왕 11, 885)에 사신(使臣)으로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귀국(歸國) 후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이 되었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얻은 것이 많았고 귀국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신라 말기 어지러운 세상에 의심과 시기를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원하여 대산부(大山部; 지금 부여군 홍산면) 천령(天零) 부성(富城) 등의 태수(太守)를 지냈다. 진성여왕(眞聖女王) 7년 견당사(遣唐使)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들끓어 가는 길이 어지러웠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이듬해 시무십조(時務十條)를 상소(上疏)하여 시행하게 하고 아찬(阿飡)이 되었으나 난세(亂世)를 비판하여 벼슬을 버리고 산림과 강물 바닷가를 방랑하며 사대(榭臺)를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면서 책을 베개로 삼고 풍월(風月)을 읊으면서 지냈다. 경주(慶州)의 남산(南山), 강주(剛州; 지금 영풍군(榮豐郡))의 수산(水山), 함주(陝州)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智異山)의 쌍계사(雙溪寺), 합포현(合浦縣; 지금 창원(昌原))의 별장과 같은 곳이 모두 그가 놀던 곳이었다. 마지막에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은 신라 시대 화랑도(花郎徒)를 설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계원필경(桂苑筆耕)』과 『동문선(東文選)』에 시문(詩文)과 『금석총람(金石總覽)』에 비문(碑文)이 전(傳)한다.

고려 현종 때 내사령(內使令)으로 추증되고, 현종 14년에 문창후(文昌侯)란 시호를 받았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成書院)·경주(慶州)의 서악서원(西岳書院)·함양(咸陽)의 백연서원(栢淵書院)·영평(永平)의 고운영당(孤雲影堂) 등에 배향(配享)되었다.

(2)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정몽주(충숙왕 복위(復位), 1337~공양왕 4, 1392)의 자(字)는 달가(達可), 호(號)는 포은(圃隱), 본관(本貫)은 영일(迎日)이다. 성균관 학사 정운관(鄭雲觀)의 아들로 경상도(慶尙道) 영천(永川) 동우항리(東愚巷里)에서 출생했다. 처음 이름은 몽란(夢蘭) 또는 몽룡(夢龍)이라 하였다. 공민왕 4년 아버지를 잃었는데 3년간 시묘(侍墓)를 하여 효성을 다하였다. 당시는 상복을 입는 제도가 극도로 해이하여 부모가 돌아갔을 때에도 상복을 100일 밖에 입지 않을 때라 후에 공민왕이 그의 뛰어난 효도를 표창하였다. 공민왕 6년(1357) 감시(監試)에 합격, 공민왕 9년 문과(文科)에 장원(壯元)하고, 공민왕 11년에는 예문검열(藝文檢閱)이 되고, 12년에 낭특 겸 합문지후 위위시승(郎特兼閤門祗候衛尉寺承)을 맡았고 동북면 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여진족(女眞族) 토벌(討伐)에 참가하고, 공민왕 13년에 조봉랑(朝奉郎) 전보도감 판관(典寶都監判官)이 되고 전농시승(典農寺丞) 예조 정랑 겸 성균박사 성균사에(禮曹正郎兼成均博士成均司藝) 등을 역임하고, 이어 성균사성(司成), 공민왕 21년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오고, 우왕 2년(1376)에는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인임(李仁任) 등의 배명친원정책(排明親元政策)을 반대하여 언양(彦陽)에 유배되었다.

우왕 3년에 구주(九州)의 금천료준(今川了俊)에게 가서 왜구(倭寇)의 단속을 한다는 응낙을 받고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우산기상시 보문각제학 지제교(右散騎常侍寶文閣提學知制敎)를 거쳐 우왕 5년에는 전공판서 진현관제학(典工判書進賢館提學) 예의판서 예문관제학(禮儀判書藝文館提學) 전법판서(典法判書)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 우왕 6년에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이어 밀직제학 상의회의 도감사 보문관제학 상호군(密直提學商議會議都監事寶文館提學上護軍)이 되고 우왕 7년에 성근익찬공신(誠勤翊贊功臣)에 봉해지고 우왕 10년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세공(歲貢)의 감소와 5년간 미납한 세공(歲

貢)을 면제받고 긴장 상태에 있던 봉명외교(封明外交)를 회복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우왕 11년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고 우왕 12년에 다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다음해 영원군(永原君)으로 봉해졌다. 삼사좌사 문하찬성사 지서연사 예문관 대제학 문하찬성사(三司左使門下贊成事知書筵事藝文館大提學門下贊成事)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영입하고 공양왕 2년 벽상삼한 삼중대광 수문하시중 판도평의사사 병조상서사사 영경령전사 우문관 대제학 익양군 충의백(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判都評議使司兵曹尙書寺事領景靈殿事右文館大提學益陽君忠義伯)에 봉해졌다.

당시는 이성계의 힘이 날로 커갈 때이다. 조준(趙浚)·남은(南閔)·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숙청할 기회를 노리던 중 공양왕 4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世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황해도 황주(黃州)에 드러눕게 되었다.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 챈 이방원(李芳遠)이 이성계를 그날 밤으로 개성(開城)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정세(情勢)를 엿보려고 이성계를 문병(問病)하고 귀가하는 도중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의 문객(門客) 조영규(趙英珪)에게 맞아 죽었다.

지방관(地方官)의 잘못된 행실을 뿌리뽑고 의창(義倉)을 세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불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학(儒學)을 보급했다. 학문으로는 성리학에 뛰어나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始祖)로 추앙되었으며 개성의 5부(五部)에 학당(學堂)을 세우고 지방(地方)에 향교(鄉校)를 세워 교육을 진흥시키는 한편 명나라 법률을 참작하여 새로운 법률을 간행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한편 외교정책과 군사 정책에 참여하여 기울어지는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시문(詩文)에 뛰어났고, 시조(時調) <단심가(丹心歌)> 이외에 많은 한시(漢詩)가 전(傳)하며 글씨와 그림도 잘 그렸다. 고려 시대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조선 태종 1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에 추봉(追封)되었으며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중종 12년에 문묘에 종사(從祀)되고 선조 3년

개성(開城)에 서원(書院)을 세워 송양서원(松陽書院)이라 사액(賜額)했다. 송양서원 등 12개 서원에 배향(配享)되었고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길재(吉再)·권근(權近)·권우(權遇)·변계량(卞季良)·이양명(李陽明)·조용(趙庸)·하연(河演)·함부림(咸傅霖)·박신(朴信) 등이 있다.

(3)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정여창(세종 32, 1450~연산군 10, 1504)의 자(字)는 백옥(伯勸), 호(號)는 일두(一蠹),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함길도(咸吉道) 병마우후을육(兵馬虞侯乙六)의 아들로 함양 덕위리(德爲里) 개평촌(介枰村)에서 출생했다.

8세 때 의주(義州) 판관(判官)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수행하였을 때 명나라 사신 장녕(張寧)이 정여창을 보고 집안을 번창하게 할 인물이라 하였다고 한다. 세조 11년 이시애(李施愛) 난(亂)에 부친이 전사(戰死)하자 유해(遺骸)를 찾아와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자 세조가 을육의 공로를 좋게 여겨 정여창에게 아버지가 맡았던 직책을 잇게 하였으나 굳게 사양하였다. 이관의(李寬義) 문하에서 학업에 정진(精進)하고 뒤에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문하에서 김굉필(金宏弼)과 동문(同門) 수학(修學)하였다. 뒤에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3년 동안 오경(五經)과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성종 14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儒生)이 되고, 성종 21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소격서(昭格署) 참봉(參奉)이 되고, 이해 별시 문과(別試文科)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 안음현감(安陰縣監)을 역임했다. 연산군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라 하여 종성(鐘城)으로 유배되었다.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大家)로 경전(經典)과 역사(歷史)에 통달하고 독서를 하는 목적은 실천을 하는데 두었다. 『용학주소주객문답설(庸學註疏主客問答說)』 『진수잡서(進修雜書)』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부인(夫人)이 모두

소각하여 지금은 정구(鄭述)가 엮은 『문헌공 실기(文獻公實記)』 속에 그 유집(遺集)이 전해 올 뿐이다. 중종 2년 도승지(都承旨)에 복작(復爵) 추증(追贈)되고, 중종 12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 선조 8년에 문헌(文獻)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광해군 2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으며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나주(羅州)의 경현서원(景賢書院),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 함양(咸陽)의 남계서원(藍溪書院), 합천(陝川)의 이연서원(伊淵書院), 안동(安東)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종성(鐘城)의 종산서원(鐘山書院) 등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저서에 『일두집(一蠹集)』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노유명(盧有明)·이희회(李希會)·고숭걸(高崇傑) 등이 있다.

(4)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이언적(성종 22, 1491~명종 8, 1553)의 자(字)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본관(本貫)은 여주(驪州), 생원(生員) 이번(李蕃)의 아들로 경주(慶州) 양좌촌(良左村)에서 출생했다. 처음 이름은 적(迪)이었으나 나중에 중종 임금의 명(命)으로 언(彦) 자를 더했다.

어려서 외숙(外叔) 손중돈(孫中墩)에게 배웠고, 중종 8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중종 8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고시관(考試官)이던 김안국(金安國)이 이언적이 지은 책문(策文)을 보고 “왕(王)을 보좌(補佐)할 큰 인물이라”고 감탄하였다.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 설서(說書), 이조 정랑(吏曹正郎), 장령(掌令), 밀양 부사(密陽府使) 등을 역임하고 중종 25년 사간원(事諫院)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때 설서 대사헌(大司憲) 김안로(金安老)를 기용(起用)하여 동관우익(東官羽翼)을 삼으려고 할 때 조정(朝廷)이 모두 그의 의견을 따랐으나 그가 홀로 불가(不可)함을 역설(力說)하다가 그들 일당에 의해 파직(罷職)당하여 고향 경주(慶州)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했다.

중종 33년 김안로가 죽자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시강관(侍講官)을 겸직하고 교리(校理)·응교(應教) 등을 거쳐 중종 34년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어 선

정(善政)을 베풀자 백성들이 그를 위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당시의 재난에 대해 올린 대책문(對策文)이 뛰어나서 병조참판 동지경연사(兵曹參判同知經筵事)에 올랐다. 부제학(副提學)·이조(吏曹)·예조(禮曹)·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다. 인종 원년에 인종이 죽자 좌찬성(左贊成)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국사(國事)를 관장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三等)에 올랐다. 이해 어머니의 질병이 위독하여 사직했으나 원상(院相)으로 있을 당시 윤임(尹任) 일파(一派)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로 탄핵되어 벼슬이 깎이고, 명종 2년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小尹) 일당(一黨)이 조작한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계(江界)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봉선잡의(奉先雜儀)』 『구인록(求人錄)』 『속혹문(續或問)』을 저술하고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를 완성하지 못하고 명종 8년 11월에 졸하였는데 향년(享年) 63세였다. 명종 26년 아들 이전인(李全仁)이 상소(上疏)하여 벼슬이 다시 회복되었고,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선조 2년 문원(文元)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명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광해군 2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고, 경주(慶州)의 옥산서원(玉山書院)·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문인(門人)으로는 권덕린(權德麟)·김자(金磁)·안경창(安慶昌)·이전인(李全仁) 등이 있다.

(5)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

김인후(중종 5, 1510~명종 15, 1560)의 자(字)는 후지(厚之), 호(號)는 하서(河西)·담재(湛齋), 본관(本貫)은 울산(蔚山)이며 장성(長城) 대맥동(大麥洞)에서 참봉(參奉) 김령(金齡)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14년 김안국(金安國)의 문하(門下)에서 『소학(小學)』을 배우고 18세 때 최산두(崔山斗) 문하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천문지리(天文地理)에 통달(通達)하

며 막힘이 없자 최산두가 칭찬하기를 “추수수호(秋水水壺)”라 하였다. 그 후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과 함께 학문을 닦고 중종 35년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에 등용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후에 정자(正字), 홍문관(弘文館) 박사,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겸하고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부모 봉양(奉養)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후 병(病)을 핑계로 고향 장성(長城)에 돌아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정진하였다. 누차 교리(敎理)에 임명(任命)되었으나 취임(就任)하지 않고 순창(淳昌) 점암촌(點巖村)에 초당(草堂)을 세우고 문하생들 교육에만 힘썼다. 성경(誠敬)의 실천(實踐)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이항(李恒)의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반대하여 ‘이기혼합설(理氣混合說)’을 주장했으며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강론하였으며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산수율력(山水律曆)에도 정통했다.

명종 15년 “내가 죽더라도 을사사화 이후에 지냈던 관작(官爵)은 쓰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51세로 세상을 떠나자 시호는 문정(文正)이라고 받았으며, 정조 20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장성(長城)의 필암서원(筆巖書院)·남원(南原)의 노봉서원(露峯書院)·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하서집주역관상편(河西集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6)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성혼(중종 30 1535~선조 31 1598)의 자(字)는 호원(浩源),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본관(本貫)은 창녕(昌寧)이다. 현감(縣監)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서울 순화방(順化坊)에서 출생했다. 12세 때 학문에 크게 진전이 있었고, 17세 때 감시초시(監試初試)에 합격(合格)했으나 신병(身病)으로 복시(覆試)를 못 치르자 과거(科擧)를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이 탄

핵으로 죄를 입어 과주(坡州)에 우거(寓居)하고 있을 적에 그에게 나아가 공부를 하면서 그의 문하에서 경학(經學) 연구에 정진했다.

선조 원년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현(尹炫)의 추천으로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곧이 사양하고 현감(縣監) 지평(持平)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선조 13년 장령(掌令)에 임명되었을 적에 곧이 거절하자 말과 가마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라는 임금의 대우까지 받았다. 선조 25년 임진왜란(壬辰倭亂) 중에는 세자(世子)의 부름으로 우참찬(右參贊)에 오르고 선조 27년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러 영의정 유성룡(領議政柳成龍)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和議)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과주로 돌아왔다.

일찍부터 이이(李珣)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에 있어서는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는 이이와 6년 간에 걸쳐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이이의 학설을 반박해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이(李珣)의 문하생인 조헌(趙憲)·한교(韓嶠)·황신(黃愼)·이귀(李貴)·정엽(鄭曄) 등이 그의 문인(門人)이 되었다. 글씨를 잘 썼다.

선생은 본의(本意)와 진심(真心)을 세상에 밝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덕(德)이 없어 사람이 나를 참소하였고, 임금에게 불충(不忠)하고 사회에 덕(德)을 닦지 못한 몸이라 내가 죽은 후 장사(葬事)를 간략하게 하여 살아 생전에 퍼지 못한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64세로 선조 31년에 졸(卒)했다.

죽은 후 반대파들에 의해 벼슬을 박탈당했다가 인조 원년에 벼슬이 회복되어 인조 7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인조 11년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었으며, 여산(礪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창녕(昌寧)의 물계서원(勿溪書院)·해주(海州)의 소현서원(紹賢書院)·과주(坡州)의 과산서원(坡山書院)·함흥(咸興)의 운전서원(雲田書院) 등에 배향되었고, 저서는 『우계집(牛溪集)』 『주문지결(朱門旨訣)』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오윤겸(吳允謙)·김집(金集)·김상용(金尙容)·이귀(李貴)·김덕령(金德齡)·이시백(李時白)·조식(趙弼)·정엽(鄭擘)·윤훤(尹暄)·조건(曹鍵) 등이 있다.

(7)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조헌(중종 39, 1544~선조 25, 1592; 문신(文臣)·의병장(義兵將))의 자(字)는 여식(汝式), 호(號)는 중봉(重峰)·도원(陶原)·후률(後栗),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조응지(趙應祉)의 아들로 김포(金浦) 감정리(坎井里)에서 출생하였다. 명종 원년 어촌(漁村) 김황(金滉) 문하에서 시서(詩書)를 배우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독서를 하였으며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의 문인이 되었다.

명종 22년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及第)하였다. 정주(定州) 교수(教授)를 거쳐 선조 5년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로 임금이 절에 향(香)을 하사(下賜)하는 것을 반대하여 임금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나 다음해 저작(著作)에 등용되고, 선조 7년 질정관(質正官)으로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과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좌랑(佐郎),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고, 통진 현감(通津縣監)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남형(濫刑)한다는 탄핵(彈劾)을 받고 부평(富平)에 유배되었다. 선조 14년 공조 좌랑(工曹佐郎)으로 기용되고, 전라도(全羅道) 도사(都事), 종묘서령(宗廟署令)을 지냈으며, 선조 15년 모친 봉양을 위해 자청(自請)하여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 나갔다. 선조 19년 학제 개편(學制改編)으로 전국에 제독관(提督官)을 둘 때 공주목 교수 겸 제독교관(公州牧教授兼提督教官)에 임명되었다. 당시 정권을 잡은 동인(東人)이 이이(李珣)와 성혼(成渾) 등의 죄를 나중에 따지려고 할 때 이를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문에 직장(職場)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벼슬을 파직(罷職)당하고 선조 22년 동인(東人)의 전횡(專橫)을 공격하는 매서운 상소(上疏)를 올린 이유로 길주(吉州)에 유배되었으나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謀反事件)으로 동인(東人)이 실각하게 되자 돌아오게 되었다.

선조 24년 일본 사신(使臣)이 오자 옥천(沃川)에서 상경(上京)하여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을 처단하고 일본 침략에 대비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조 25년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전국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영규(靈圭)가 이끄는 승병(僧兵)과 함께 청주(淸州)를 수복(收復)했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의 일본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향했으나 전쟁의 공로를 시기하는 관군(官軍)의 방해로 대부분 의병(義兵)이 해산당하고 불과 700명 의병(義兵)으로 금산에서 싸우다가 700명의 의병이 모두 죽었다. 이이(李珣) 문하(門下)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의 한 사람으로 ‘기발이승 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고, 이어 선무원종공신 일등(宣武原從功臣一等), 이조 판서에 덧붙여졌다. 인조 27년에 문렬(文烈)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고종 20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었다. 옥천의 표충사(表忠祠)·백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김포(金浦)의 우저서원(牛渚書院)·금산(錦山)의 성곡서원(星谷書院)·보은(報恩)의 상현서원(象賢書院)과 후륜사(後栗祠)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에는 『중봉집(重峰集)』 등이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민욱(閔昱)·박정호(朴廷虎)·김충남(金忠男)·박사진(朴士振)·김승업(金承業)·박훈(朴渾)·조경남(趙敬男)·고명원(高明遠)·김선복(金善復) 외 7인이 있다.

(8)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송시열(선조 40, 1607년~숙종 15, 1689)의 자(字)는 영보(英甫), 호(號)는 우암(尤庵)·화양(華陽)·동주(洞主),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송갑조(宋甲祚)의 아들로 옥천 구룡촌(九龍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꿈에 공자(孔子)가 집에 오셨다고 해서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성퇴(聖賚)라 하였다.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인조 11년 생원시(生員試)에 일등으로 합격(合格)하고, 천거(薦舉)로 경릉(敬陵) 참봉(參奉)이 되었다. 인조 13년 봉림 대

군(鳳林大君)의 사부(師傅)가 되고, 병자 호란(丙子胡亂) 때 임금을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모시고 갔다가 화의(和議)가 성립(成立)하자 향리(鄉里)로 돌아왔다. 용담(龍潭) 현령(縣令)과 지평(持平)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고, 효종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에 등용되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진선(進善)을 거쳐 집의(執義)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인 공서파(功西派) 김자점(金自點)이 영의정에 발탁되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김자점이 파직되자 진선(進善)에 다시 임명되었다. 효종 2년에 지은 『장릉지문(長陵誌文)』에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않았다고 김자점이 청나라에 고밀(告密)하여 사직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다시 충주(忠州) 목사(牧使) 집의(執義) 부호군(副護軍)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송준길(宋俊吉)과 서적 편찬 및 후진양성에 전력을 다했다.

효종 9년 찬선(贊善)에 등용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승진하여, 효종과 함께 군사력(軍事力)을 강력하게 만들고 군포(軍布)를 늘려서 그를 바탕으로 북벌을 하자는 계획(計劃)을 추진했으나 효종이 승하(昇遐)하자 북벌 계획은 중지되었다. 효종의 장례(葬禮) 때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제기되자 3년설(三年說)을 주장하는 남인(南人)에 대하여 1년을 하자는 기년설(基年說)을 주장(主張)하였다. 그리하여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채택시켜 남인(南人)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좌참찬(左參贊) 등을 역임했다.

현종 원년 우찬성(右贊成)에 재직(在職)시 효종의 장지(葬地)를 잘못 옮겼다는 규탄을 받고 시골로 내려갔다. 현종 9년에 우의정이 되었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不和)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현종 12년에 다시 우의정에 기용(起用)되고, 이어 좌의정이 되고, 현종 15년 인선왕후(仁宣王后) 별세(別世)로 자의대비 복상문제(服喪問題)가 논의(論議)되자 대공설(大功說; 9월 복상(服喪))을 주장했으나 남인의 1년 기년설이 채택되어 실각하여 덕원(德源)에 유배되고, 웅천(熊川)·거제(巨濟)·청풍(淸風)으로 옮겨갔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기용되어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이 무렵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로 과격한 숙청을 피하던 김석주(金錫胄)를 옹호하고, 제자인 윤증(尹拯)과의 감정 대립이 악화되어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少論)과 노론(老論)으로 갈라졌다. 그 후 정계(政界)에서 물러나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에서 조용히 지내던 중 숙종 15년 왕세자(王世子)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 상조라고 반대 상소(上疏)를 했다가 제주(濟州)에 귀양 가게 되고 국문(鞫問)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 전라도 정읍(井邑)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한 평생 주자학(朱子學)을 연구한 학자로 이이(李珥)의 학설을 계승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류(主流)를 이루었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있어서 이황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배격(排擊)하고,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사단칠정(四端七情)이 모두 이(理)라 하여 ‘일원론적(一元論的)’ 사상을 발전시켰다. 예론(禮論)에도 밝았으며 성격이 과격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많이 가졌으나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글씨는 큰글자를 잘 썼다.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효종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청주(靑州)의 화양서원(華陽書院) 등 전국 14개 서원(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는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이 있고 「이순신충렬묘비(李舜臣忠烈墓碑)」 등 많은 비문(碑文)이 전한다.

문인으로는 김수항(金壽恒)·민유중(閔維重)·허완(許玩)·허황(許璜)·권상하(權尙夏) 외 190인이 있다.

(9)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박세채(인조 9, 1631~숙종 21, 1695)의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본관(本貫)은 반남(潘南)이다. 교리(敎理) 박의(朴猗)의 아들로 서울 창동(滄洞)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이이(李珥) 성혼(成渾)의 문묘(文廟) 종사(從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듣고 과거 공부(科擧工夫)를 포기하고 김상헌(金尙憲) 문하(門下)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송시열과 학문을 교류

하기도 했다.

28세에 천거(薦擧)로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가 되고, 효종 10년 효종이 승하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일어나자 남인(南人)의 반대를 물리치고 서인(西人)으로 송시열과 함께 이를 1년 기년으로 정하게 했다. 숙종이 즉위하였을 때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 서인이 제거되자 벼슬에서 쫓겨나 양근(楊根)·지평(砥平)·원주(原州) 등지로 유배되었다. 그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사업(司業)에 기용(起用)되었으며,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하였다. 노론, 소론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남인(南人)이 권력을 잡았으나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소론이 집권하자 좌의정에 올랐다.

정치 일선(一線)에서 당쟁(黨爭)에 가담했으나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주장하여 당쟁을 뿌리째 뽑는데 노력하였고, 당대의 유학자로서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글씨를 잘 쓰고 70여 권(卷)의 문집과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찬요(纂要) 등 귀중한 문헌을 남겼다. 숙종 21년에 졸(卒)하였는데 향년이 65세였고 시호는 문순(文純)이라고 받았다. 숙종 묘정(廟廷)에 배향되었고, 영조 40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저서에는 『범학전편(範學全編)』 『남계집(南溪集)』 등 다수가 있다.

문인(門人)으로는 김간(金幹)·임영(林泳)·유득일(兪得一)·이세필(李世弼)·신완(申沆) 등이 있다.



여 백

제8장 성균관(成均館) 역사(略史)

1. 성균관 위치(位置)
2. 성균관 연혁(沿革)
3. 성균관 학령(學令)
4. 성균관 기구표(機構表)

여 백

1. 성균관 위치(位置)

성균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전화 : 02-760-1472

FAX : 02-745-7013

동일장소에 재단법인 성균관(財團法人成均館)와 유도회(儒道會) 중앙회(中央會)가 함께 입주하고 있다.

2. 성균관 연혁(沿革)

성균관은 우리나라 왕조시대의 학문과 정치 그리고 국민 교화의 사명을 띤 교육기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가르쳤다.

영양왕 11년(600)에 이문직(李文直)을 태학 박사(太學博士)로 삼다.

백제 근초고왕 29년(374)에 고흥(高興)을 박사로 삼았다. 백제는 개국할 때에 문자가 없었다가 비로소 서기(書記)를 두었다.

신라 선덕여왕 2년(643)에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가서 국학에 나아가 처음으로 ‘석전례(釋奠禮)’를 보고 돌아오다.

신문왕 2년(682) 여름 6월에 국학을 세워 경(卿) 1인(一人)을 두고, 11년에 총기가 있는 설총(薛聰)을 선택하였는데 그는 아는 것이 많아서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 사서오경(四書五經))의 뜻을 풀이하여 후생을 가르쳤다.

성덕왕 16년(714)에 태감 수충(太監守忠)이 당나라로부터 문선왕(文宣王; 공자), 십철(十哲),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돌아와 올리자 임금이 태학(太學)에 보

관하라고 하였다.

경덕왕 23년에 태학에 박사를 두다. 경덕왕 23년에 박사에게 『상서(尙書)』를 가르치게 하다. 신라에서는 『주역』 『상서(尙書)』 『모시(毛詩; 시경(詩經))』 『예기(禮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논어(論語)』 『효경(孝經)』 『문선(文選)』을 가르쳤다.

고려 태조 13년(930)에 서경(西京)에 학교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박사관(博士官)을 두고 별도로 학원을 두어 6부(六部)생을 가르치고, 성종 원년에 여러 지방의 자제(子弟)를 뽑아 가르치다.

11년 12월에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서재학사(書齋學舍)를 널리 운영하고 논발을 주어 경비로 쓰도록 하다.

현종 11년에 신라 시랑(侍郎) 최치원(崔致遠)을 선성묘(先聖廟)에 배향(配享)하고, 13년 봄 정월에 신라 한림 설총(翰林薛聰)을 선성묘(先聖廟)에 종사(從祀)하고 홍유후(弘儒侯)라고 증직하다.

22년 윤(閏) 10월에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시행하니 감시법(監試法)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문종 27년(1073)에 태복경 김양감(太僕卿金良鑑)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가서 국자도(國子圖)를 그려왔다.

선종 8년(1091) 9월에 72현의 초상화를 국자감 벽에 그리고, 그 위치(位次)는 국자감 명목차제(國子監名目次第)에 의하고 복장은 모두 십철(十哲)을 모방하다.

숙종 6년에 선현을 국자감(國子監)에 종사할 때 문선왕전 좌우랑(文宣王殿左右廊)에 61자(子) 21현(賢)을 새로 그려서 석전(釋奠)에 종사(從祀)하게 하다.

예종 14년(1119) 가을 7월에 국학에 양현고(養賢庫)를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다. 7년 3월에 왕이 국학에 행차하여 선성(先聖)에게 석전(釋奠) 제사를 드리고 학자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다.

9년 3월에 노자(老子)나 장자(莊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다.

충렬왕 12년(1286) 세자(世子)가 국학에 들어가서 육경(六經)을 강(講)하다.

33년 5월에 찬성사(贊成事) 안유(安裕)가 양현고에 가서 보니 경비가 없었다.

이에 여러 관리들에게 은(銀)과 포(布)를 빌려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자고 하니 왕도 또한 궁중의 창고를 열어서 도왔다. 안유가 또 김문정(金文鼎)을 중국에 보내어 선성(先聖)과 72자(子)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또 제기(祭器), 악기(樂器), 육경(六經) 제자(諸子) 역사(歷史)를 구입하여 배껴오게 하다.

6월에 국학대성전(國學大成殿)이 완성되다.

공민왕 16년 12월에 성균관을 숭문관(崇文館)의 옛터에 짓고 이색(李穡)을 대사성으로 삼으며, 정몽주(鄭夢周)를 박사(博士)로 삼아 매일 명륜당에서 수업하니 성리학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다.

조선 태조 6년(1397)에 태학(太學)을 설립하라고 명하고, 7년(1398) 7월에 문묘(文廟)를 국도 동부 숭교방(國都東部崇教坊)에 세우다. 대성전(大成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제기고(祭器庫), 비각(碑閣), 신문(神門), 동삼문(東三門), 협문(夾門), 동서북료장(東西北寮牆), 수복청(守僕廳), 전사청(典祀廳), 포주(庖廚), 악기고(樂器庫), 차장고(遮帳庫), 악생청(樂生廳), 향관청(享官廳)으로 이루어졌다. 문묘 북편(北便)에 명륜당(明倫堂)을 세우고 성균관 제조(成均館提調)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4품(四品) 이하 유생들에게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게 하다.

정종 2년에 문묘에 화재가 발생하다.

태종 원년에 성균관 제주(祭酒)를 사성(司成)으로 바꾸고, 악정(樂正)을 사예(司藝)로 삼았다가, 동 7년 정해 정월(正月)에 옛터에 다시 세우고 묘정(廟庭)에 비석을 세우다.

동 9년에 성균 전부(成均典簿) 허조(許稠)에게 석전의의(釋奠儀)를 정(定)하게 하고, 세종 3년에 왕세자 입학의 예법을 정하다.

문종 원년에 여러 신하들에게 날마다 제생(諸生)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다.

동 9년에 예조(禮曹)가 성균관 9제학규(成均館九制學規)를 내놓으니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주역』으로 구재(九齋)를 삼고, 둘러 앉아 공부하게 하여 매 식년(式年)마다 회시(會試)에 곧장 갈 수 있도록 하다.

선조 때에 임진란(壬辰亂)으로 문묘가 전쟁통에 불에 타니 임금이 용만(龍灣)에서 돌아와 예조판서 이증(李增)을 보내어 유생을 거느리고 문묘(文廟) 터에 곡을 하게 하다.

동 34년(1601)에 문묘를 다시 세우다.

고종 경술국치(庚戌國耻; 1910년) 후에 경학원이라 칭하고 다시 명륜학원(明倫學院), 명륜전문학교라 칭하였으며, 을유년(1945) 광복과 더불어 성균관으로 환원(還元)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였다.

3. 성균관 학령(學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200명인데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입학시켰다. 그러나 생원 진사만으로 미달되면 15세 이상의 4학 생도(四學生徒)와 유음적자(有蔭嫡子), 대소과(大小科)의 초시 합격자(初試入格者) 등에서 보충하여 하재(下齋)에 수용했다. 교육내용은 주로 유학의 경서(經書)와 한학(漢學)이며 과거준비 교육에 치중되었다. 즉 학과목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가 중심이 되었다. 교수 방법은 전반에 대한 교수의 강의보다도 개별적 지도에 치중하여 각 유생이 전일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教授)의 질의에 응답케 하고, 이 고사의 결과가 만족할 경우에 다음으로 나가게 하였다. 당시의 교수 방법은 교수의 강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자학(自學)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문답식(問答式) 고사(考査)를 통하여 그 성적을 평정(評定)하였으며 획일적(劃一的)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을 표준삼아 그 진도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독서에 의한 강학과 병행하여 제술(製述) 즉 작문(作文)을 중요한 학과목으로 삼았다. 매월 3회(三回)에 걸쳐 제술을 부과함으로써 독서를 통하여 배운 것을 활용하게 하고 문장(文章)을 익히며 사상의 정확한 발표에 대한 능력을 연마하게 한 것이다. 유생은 반드시 기숙사에

머물게 하였는데 기숙사 생활은 상당히 엄격한 학칙에 의하여 이를 어기는 자는 가벼우면 면책(免責) 또는 초달(楚撻), 무거우면 손도(損徒) 영손(永損) 묵삭(墨削) 부황(付黃) 등의 벌칙을 주었다.

손도(損徒)는 식당출입을 금하는 것, 영손(永損)은 식당출입을 영구적(永久的)으로 금하는 것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며, 묵삭(墨削)은 학적부(學籍簿)인 유적(儒籍; 청금록(靑衿錄))의 이름을 먹으로 지우는 것이고, 부황(付黃)은 유적 이름 위에 노란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모두 오늘의 제적(除籍)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생(齋生)의 자치활동을 허용하여 재생(齋生) 중에서 유생의 대표인 장의(掌議)와 색장(色掌)을 선출하고, 장의의 주제 아래 재회(齋會)를 열어 필요한 사항을 중의(衆議)로 결정했다. 재생의 비달(非達)에 대한 벌칙도 이 재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유생은 국정(國政) 참여의식도 높아 왕의 잘못이 있거나 국교(國教)에 새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유생들의 상소인 유소(儒疏)를 올려 규간(規諫) 또는 탄핵을 했다. 만약 만족할 만한 비답(批答)을 얻지 못할 때에는 상의한 끝에 권당(捲堂)이라 하여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공재(空齋)라 하여 기숙사에서 나가고, 혹은 공관(空館)이라 하여 대성전의 문밖에서 4배(四拜)한 뒤 물러나는 것이 예이었다.

공재(空齋)나 공관(空館)은 오늘의 동맹휴교로서 유생이 공관을 하면 시내의 상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시장의 장사를 거두는 철시를 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때는 국왕은 상소를 올린 자의 우두머리를 벌칙으로 다스리지 않고 신하를 보내 설득시키는 데 힘을 다하여 관사에 복귀시켰다. 유생들의 기개(氣慨)는 높았으나 후세에는 이것이 도리어 당쟁에 이용되어 권당, 공재, 공관을 일삼았기 때문에 최고 학부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성균관 쇠퇴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성균관의 학령(學令)은 국초에 정한 것으로 매월 행사 매일 행사 독서 제술 강경 성적 벌칙 아침 행사 자치제 등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생들은 매월 초하루에는 관대를 갖추고 묘정에 나가 공자 사당에 참배하고 네 번의 절을 올렸다. 매일 밝기 전에 한 번의 북이 울리면 일어나고 북을 두 번

치면 의관을 갖추고 정좌하며 독서를 한다. 북을 세 번 치면 식당 앞에 정렬하여 서로 마주보고 읍(揖)을 한 뒤 차례로 식당에 들어가 동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식당에서의 앉는 차례는 처음에는 신구방(新舊榜)에 따라 구별하고 장원(壯元)을 상좌에 앉히는 방차좌(榜次座)가 시행되다가 선조(宣祖) 때 이이(李珥)의 주장으로 연령순으로 앉히는 치차법(齒次法; 연령순)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식당에 출석한 유생은 그 증거로 도기(到記; 출석부)에 서명해야 한다. 도기는 정간(井間)으로 그려져 있어 한 사람씩 한 칸에 성명을 기입하고 화압(花押)을 했다. 이는 나중에 원점(圓點)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조석으로 연달아 출석하면 1점으로 계산해주고, 조석 중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평점으로 계산해주지 않았다. 이 원점을 300점까지 계산해주고 그 이상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원점 300점을 따면 문과 초시(初試)인 관시(館試)나 향(鄉) 한성부(漢城府)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었다. 아침을 다 끝내고 학관들이 명륜당에 나와 앉으면 유생들이 읍례(揖禮)하겠다는 뜻을 아뢴다. 북을 한 번 치면 유생들이 차례로 마당에 들어가 학관에게 예를 올린 뒤에 각각의 재(齋) 앞에 모여 마주보고 읍을 한다.

다음으로 유생이 학관 앞에 나아가 일강(日講)할 것을 요청한다. 상하의 재(齋)에서 각각 1명을 뽑아 배운 것을 읽게 하여 통과한 자는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에 1년의 숫자를 통고하여 식년문과의 강경점수(講經點數)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며 불통한 자는 종아리를 치는 것으로 벌을 주었다. 두 번째 북을 치면 유생들은 책을 가지고 선생 앞에 나가 수업을 받는다. 먼저 배운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한 뒤에 새 수업에 들어간다. 많이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다. 독서하는 방식은 먼저 글의 뜻을 명백히 하고 응용에 통달하도록 하며 장구(章句)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며, 항상 사서오경을 읽고 노자 장자 불경 잡류 등을 읽지 말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매월 상중하순에는 제술(製述; 작문)이 있어 이를 윤차(輪次)라 했다. 상순에는 의(義) 의(疑) 또는 논(論), 중순에는 부(賦) 표(表) 송(頌) 명(銘) 잠(箴), 하순에는 대책(對策) 또는 기(記)를 부과했다. 또 예조 당상이 매달에 한 번 성균관에 와서 사서삼경을 물어서 이를 예조 월강(禮曹

月講)이라고 하였다. 이때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에 통고(通考)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상을 주고 혹은 점수를 두어 식년문과 초시(初試)의 분수에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유생 중에 행동이 탁월한 자가 있으면 매년 6월과 12월의 도목정전(都目政前)에 유생들이 상의하여 2,3인을 골라 예조에 천거하여 등용했다. 이 밖에도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각종 시험이 많아 대과 응시에 많은 편의가 있었다. 성균관의 학령에 규정된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벌칙 규정

(1) 비열한 행동을 벌(罰)함

- ㄱ. 성현(聖賢)을 논하기를 싫어하는 자
- ㄴ. 고담 이론(高談異論)을 좋아하는 자
- ㄷ. 전대 현인(前代賢人)을 헐뜯는 자
- ㄹ. 정부를 비방(誹謗)하는 자
- ㅁ. 재물과 뇌물을 이야기 하는 자
- ㅂ. 주색(酒色)을 이야기 하는 자
- ㅅ. 시속(時俗)에 빠지고 세력에 아부하는 자

(2)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벌(罰)함

오륜(五倫)의 범죄가 있거나 절개를 상실하여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는 여러 학생이 의견을 모아 세상에 폭로시키거나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종신토록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3) 소인(小人)의 심성(心性)을 가진 행위를 벌함

- ㄱ. 자기 재조(才操)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며, 세력을 믿고 귀한 체하며, 부(富)를 믿고 스스로 자랑하며,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凌蔑)하는 자

- ㄴ. 사치를 숭상하여 복식(服飾)이 윗사람과 다른 자
 - ㄷ. 교묘한 말씨와 아첨하는 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힘쓰는 자
- 이상의 행위를 하는 자는 내쫓되 힘써 배워 고치면 벌하지 않는다

(4) 게으르고 주위 산만한 행위 벌함

- 가.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경비만 축내며, 수업도 않고 문장도 짓지 않고, 독서도 좋아하지 않는 자
- 나. 길 다닐 때에 말을 타는 자
- 다. 규칙을 싫어하는 자

(5) 놀이를 하는 행위

매월 8일, 23일은 제생(諸生)의 의복(衣服)을 세탁하는 날로 휴가를 주는데 제생은 그날을 이용하여 자습을 해야 하고, 활, 장기, 바둑, 사냥, 낚시질의 모든 놀이를 일삼지 말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벌을 준다.

(6) 예의(禮儀)를 잃은 자를 벌함

제생(諸生)은 길에서 스승이나 어른을 만나면 가까이 나서서 공수를 하고 길 왼편에 있어야 한다. 스승이나 어른이 통과할 때에 몸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어 예를 실행해야 하는 데 이를 싫어하는 자는 벌한다.

이상과 같이 성균관의 입학(入學)·신분(身分)·학생(學生)·정원(定員)·교과과정·교수방법·거재생활(居齋生活)·벌칙(罰則) 등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성균관에서의 교육은 학문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목적이 인재를 길러 백성을 다스릴 국가의 관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다. 동시에 유교가 요구하는 선현을 따르는 선비를 양성하는데 있었던 만큼 훈육(訓育) 방면에도 세심한 주의를 가하였다. 즉 매월의 성묘 참배(聖廟參拜)와 매일의 수강절차(受講節次)를 통하여 예법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르게 하고 스승과 학

우 간의 예의를 지키고 규율있는 단체생활을 통하여 대인간에 언행의 법도를 높이게 하였으며, 진퇴(進退)에 근신하고 사생활을 깨끗이 함으로써 자아(自我)의 인격을 함양케 하였다. 그리고 노자 장자 불교와 기타 백가잡류(百家雜流)의 서적을 엄금함으로써 유교의 도(道)를 걷는 이상적 선비 양성에 힘 쓰고 학생간의 일을 자율적으로 다스리게 하여 자치정신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2) 성균관 장정(章程)

前 文

成均館은 朝鮮 太祖 8年(西紀 1398年) 創立 以來 國學의 中心, 教育의 最高學府로서 國家의 棟樑을 養成하고 倫理와 道德을 基盤으로 禮節의 나라를 지켜왔다.

時代의 變遷으로 國家와 社會의 各界各層에서 傳來의 美俗이 存廢의 危機에 處하고 있음에 本館에서는 內部組織을 強化하고 傘下機構를 增設하며 鄉校의 職制를 改善補完하여 歷史的인 儒林組織의 體制를 規律하는 諸 規程을 制定 運用함으로써 汎 儒林圈의 和合은 勿論 國民 情緒醇化와 靑少年 人性涵養에 寄與하고자 章程을 制定 公布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團體는 成均館(以下 ‘本館’이라 稱한다)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館은 孔夫子와 우리나라 18賢을 비롯한 儒教 聖賢의 宗旨를 받들어 四書五經을 經典으로 하고, 文廟享祀를 받들어 儒教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儒教의 現代化 및 發展을 追求하고 儒教文化暢達에 寄與하며 儒林社會의 和合과 親睦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館은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1. 釋奠祭享과 文廟享祀
2. 儒教儀禮의 研究 및 傳播
3. 儒教思想의 普及과 教育事業

4. 儒教新聞의 發行 및 刊行物 出刊
5. 鄉校의 支援
6. 國民情緒 涵養과 靑少年 人性涵養 事業
7. 其他 위 目的事業 達成에 必要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第4條(構成) 本館의 構成은 全國 儒林(儒林이라 함은 孔夫子의 宗지에 따른 儒敎理念을 생활이념으로 존중하고 實踐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全國에 산재하는 234개의 鄉校(향후 성균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설립 될 경우 設립당초부터 構成員으로 추가한다) 및 市·道 鄉校財團을 構成員으로 한다.

第5條(所在地) 本館은 서울特別市 鍾路區 明倫洞 3街 53番地에 둔다. 필요에 따라 약간의 分사무소를 둘 수 있다.

第 2 章 總 會

第6條(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3월에 館長이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또는 在籍 代議員 3分の 1 以上の 召集 要求가 있을 때 館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위 代議員들의 召集要求는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書面으로 館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館長이 特別한 事由 없이 14日이 經過되어도 召集을 아니하였을 때는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한 代議員들의 代表者 또는 監事가 直接 總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代議員) 總會는 本館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다음 各 項의 本館 構成員들과 構成員들의 代表者(以下 ‘代議員’이라 稱한다)로 構成한다.

1. 館長, 副館長, 本館 任員(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
2. 本館 各 部處의 處長·部長級 以上 幹部 및 各 委員會 委員長
3. 財團法人 任員 및 部長級 以上の 幹部
4. 全國 鄉校 典校
5. 各 市道 鄉校財團 理事長

6. 儒教新聞社 社長 및 主幹
7. 儒道會 總本部會長團, 監察委員, 常任委員 및 中央委員, 市道本部會長 및 各 支部會長, 事務總長 및 局長級 以上 幹部
8. 成均館大學校 總長 및 同 學校法人 財團理事長
9. 同 學校 儒學大學 教授

第8條(決議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章程의 制定 및 改正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監事의 選出
4. 館長 및 中央常務委員會에서 附議한 事項

第9條(召集 通知) ① 總會는 會議 14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② 總會의 議案은 미리 通知된 事項을 案件으로 한다.

第10條(決議方法) ① 總會의 決議는 本 章程에 別途의 規程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參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단,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行使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代議員은 事전에 通知된 議案에 限하여 書面으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議決權을 다른 代議員에게 委任할 수는 없다.

第11條(議事錄) 總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議長이 會議 當日 指命한 者가 기재, 작성하고, 議長과 議長이 指命한 出席 代議員 3人은 議事錄에 記名捺印하여 本館에 보관한다.

第 3 章 中央常務委員會

第12條(設置) 本館은 重要하고 緊急한 案件을 審議·決議하기 위해 中央常務委員會를 둔다.

第13條(構成) ① 中央常務委員會는 委員長과 2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中央常務委員會 委員은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典校 중 10人 以下
2. 諮問委員(典仁) 5人 以下
3. 典儀 및 典學·司儀 중 5人 以下
4. 本館 業務에 精通한 重鎮儒林 중 5人 以下

③ 中央常務委員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2. 幹事長 1人, 幹事 1人

④ 委員長은 館長이 當然職으로 맡고, 副委員長과 幹事長, 幹事は 委員長이 指名한다.

第14條(任命 및 任期) ① 委員은 該當 組織·機構의 推薦을 받아 館長이 任命한다.

②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連任할 수 있으며, 委員이 該當 職의 任期가 滿了되었을 때는 委員資格을 喪失한다. 但, 章程 制定 次해 委員은 1年 任期를 保障한다.

第15條(會議 및 決議事項) ① 會議는 委員長의 主宰로 過半數 以上の 出席으로 開議하고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한다.

② 中央常務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또는 決議한다.

1. 總會에서 委任받은 章程 및 規則의 補完과 改正案 議決 確定
2. 本館과 鄉校의 運營에 관한 緊急事項 議決
3. 本館의 事業計劃 및 財政運用에 관한 事項 議決
4. 本館의 財産處分 및 豫決算案 審議
5. 館長이 推薦한 副館長에 대한 追認
6. 其他 本館 또는 儒教界와 關聯되는 關心事項

③ 審議案件은 總會의 委任에 따라 議決로 確定하거나, 다음 總會에 委員長이 附議 또는 報告한다.

第16條(會議召集) ① 中央常務委員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議員 1/3 以上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召集한다.

② 會議는 7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口頭 또는 書面으로 通知한다.

第17條(施行細則) 中央常務委員會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等に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4章 成均館長 및 執行機構

第18條(館長選出) ① 本館 館長은 ‘成均館長 推戴委員會’에서 推戴한다.

② 推戴方法은 別途로 定하는 規程에 依한다.

第19條(館長任期) 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0條(缺格事由) 本館 館長의 缺格事由는 다음과 같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者
3. 禁錮 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 免除 確定 後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禁錮 以上の 刑의 宣告 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喪失 또는 停止된 者
7. 本 章程에 의하여 解任 懲戒處分을 받고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21條(館長職務) ① 館長은 對外的으로 本館을 代表하고 本館의 모든 業務를 統轄·執行한다.

② 館長은 章程 改正案을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③ 館長은 副館長을 推薦하며, 本館 任職員 및 鄉校의 任員을 任免한다.

④ 館長은 構成員에 대한 褒賞 및 懲罰에 관한 事項을 執行한다.

第22條(館長 有故 時 職務代行 順序) ① 館長이 有故 時에는 首席副館長, 常任副館長, 副館長 中 年長者 順으로 그 職무를 代行한다. 但, 館長이 指命할 경우 指命 받은 者가 우선하여 職무를 代行한다.

② 館長, 副館長 모두 有故로 館務 遂行이 不可能할 때는 總무처장이 후임자 選출을 위하여 即時 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第23條(任員) ① 本館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館長 1人
2. 副館長 15人 以內(首席, 常任副館長 包含)

3. 典仁 250人 以內(諮問委員)
4. 典儀 150人 以內
5. 典學 200人 以內
6. 司儀 50人 以內
7. 司藝 50人 以內(50세 以下 者로 한정함)
8. 企劃處長 1人
9. 總務處長 1人
10. 典禮委員長 1人
11. 教育院長 1人
12. 儒教新聞社 社長 및 主幹 各 1人

② 任員은 각 집행기구에 소속하여 관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한다.

③ 任員의 業務와 執行機構 배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第24條(執行機構) ① 本館에 企劃處와 總務處, 教育院을 둔다. 但 館長은 필요에 따라 部署를 增設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② 企劃處에 企劃事業部, 出版弘報部를 둔다.

③ 總務處에 總務部, 儀禮部, 秘書室을 둔다.

④ 教育院에 선비學堂, 翰林院, 禮節學校를 둔다.

⑤ 各處에 處長 1人을 두고 各部에 部長 1人 및 職員 若干名을 둔다.

⑥ 教育院에 院長 1人을 두고 部署別로 職員 若干名을 둔다.

⑦ 위 各 집행기구의 組織, 職務範圍는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 5 章 教育院

第25條(設置) 本館의 教育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教育院을 둔다.

第26條(施行細則) 教育院의 構成과 施行에 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6章 監事

第27條(設置) 本館의 透明한 業務 및 會計를 위하여 監事를 둔다.

第28條(選出 및 任命) ① 監事는 2人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監事는 司正委員會의 當然職 委員이 된다.

第29條(任期) 監事의 任期는 2年이며, 重任할 수 있다.

第30條(職務) ① 監事는 다음 各項의 職務를 遂行한다.

1. 本館의 歲入歲出 및 財産事項 監査
2. 本館 業務의 運營狀況 監査

②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③ 監査結果 不正·不當한 事項의 認知時 是正을 要求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7章 名譽館長 및 元老會議, 顧問

第31條(名譽館長) 本館에 名譽를 對內, 對外的으로 선양하기 위해 名譽館長을 둔다.

第32條(職務 및 任期) ① 名譽館長은 直前 館長이 된다. 다만 直前 館長이 없을 때에는 前職 館長 중에서 館長이 推戴한다.

② 名譽館長은 元老會議의 當然職 議長이 된다. 단, 명예관장이 없을 때에는 元老委員 가운데 互選으로 選出한다.

③ 名譽館長의 任期는 館長의 任期와 같다.

第33條(元老會議) 本館의 主要 業務에 관한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元老會議를 둔다.

第34條(委員 推戴 및 任期) ① 元老會議는 中央常務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15인 以內에서 館長이 任命한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元老會議의 議長 職務는 名譽館長이 수행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第35條(任員) 元老會議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議長 1人
2. 副議長 1人

3. 幹 事 1人

第36條(施行細則) 元老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別途의 規程으로 定한다.

第37條(顧問) ① 本館에 약간명의 顧問을 둔다.

② 顧問은 館長이 推戴하며 任期는 館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 8 章 各 種 委 員 會

第38條(設置) 本館은 주요업무 諮問, 司正問題, 典禮問題에 관한 특정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諮問委員會, 司正委員會, 典禮委員會를 둔다.

第39條(諮問委員會) ① 諮問委員會는 本官의 주요 業務의 處理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應한다.

② 諮問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40條(司正委員會) ① 司正委員會는 本館과 鄉校 汎 儒敎界의 紀綱을 糾正하고 葛藤을 調整하는 館長의 업무를 補佐한다.

② 司正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41條(典禮委員會) ① 典禮委員會는 儒敎儀禮의 研究 및 保存, 傳播의 業務를 수행한다.

② 典禮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42條(特別委員會 設置) ① 館長은 本館의 특수 사안에 관한 業務處理를 위해 필요에 따라 中央常務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特別委員會의 構成, 組織範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 9 章 典 校 會 議

第43條(設置) 本館은 地方鄉校와의 緊密한 業務 協議를 위하여 典校會議를 둔다.

第44條(構成) 典校會議는 16個 市·道에 所在한 234個 鄉校의 現職 典校로 構成한다. 但, 구성 전교는 館長의 任命狀을 받은 典校에 限한다.

第45條(會議) ① 典校會議는 成均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구성 典校 전체의

過半數 以上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館長이 召集한다.

② 館長은 典校會議의 議長이 되며, 議長을 보좌할 副議長 3人을 任命한다.

③ 典校會議는 該當 鄉校의 現職 典校가 參席하되 不得已 한 境遇 首席掌議에게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46條(審議事項) ① 典校會議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中央常務委員會 委員 選出 및 推薦
2. 成均館과 鄉校의 運營에 關한 事項
3. 鄉校 發展과 相互 交流에 關한 事項
4. 其他 成均館과 鄉校의 固有 業務에 關한 事項

② 典校會議는 上記 審議事項을 審議한 뒤 그 執行을 中央常務委員會에 제안할 수 있다.

第47條(施行細則) 典校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등 기타 必要한 사항은 別도의 세칙으로 定한다.

第10章 鄉 校

第48條(設置) ① 本館 傘下에 지역별 儒林團體로 鄉校를 둔다.

② 現在까지 設置된 鄉校는 別添과 같다. 단, 정부의 행정구역 內에 유림들은 館長의 承認을 얻어 鄉校를 新設할 수 있다.

③ 各 鄉校는 成均館이 定한 規程, 細則과 館長의 指揮命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④ 典校는 成均館長이 任免한다.

第49條(任員) ① 典校는 鄉校를 代表한다. 다만 個別鄉校의 必要에 따라 副典校를 둘 수 있다.

② 鄉校에는 儀典, 總務, 財政, 教化, 連絡, 涉外의 部署를 두고 各 部에 首席掌議를 各 1人씩 둔다. 首席掌議는 典校가 任免한다.

③ 典校는 鄉校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事務局長 및 職員을 둘 수 있다.

第50條(職制規程) 鄉校의 構成, 組織, 運營 및 職務範圍에 關한 諸般 事項은 別途의 鄉校職制로 定한다.

第 11 章 財政 및 會計

第51條(會計年度 等) ① 成均館 및 鄉校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② 總務處, 敎育院은 歲入 歲出에 關하여 감사의 決算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52條(收入, 會費 등) ① 本館의 收入은 一般 및 特別分擔金, 獻誠金, 任員會費, 事業收益, 其他 收入에 依한다.

② 新任 典校 任命時 典校는 分擔金을 納付하고(鄉校에서 부담한다), 任員은 本館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分擔金 및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53條(施行細則) 財政은 공개를 原則으로 하되 그 施行에 관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 12 章 章程 改正

第54條 ① 章程 改正案은 成均館長 또는 在籍 代議員 3分の 1 以上の 發議로 提案한다.

② 發議된 章程 改正案은 總會 出席 代議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確定된 章程 改正案은 成均館長이 10日 以內에 公布하고 특별한 규정인 없는 한 公布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附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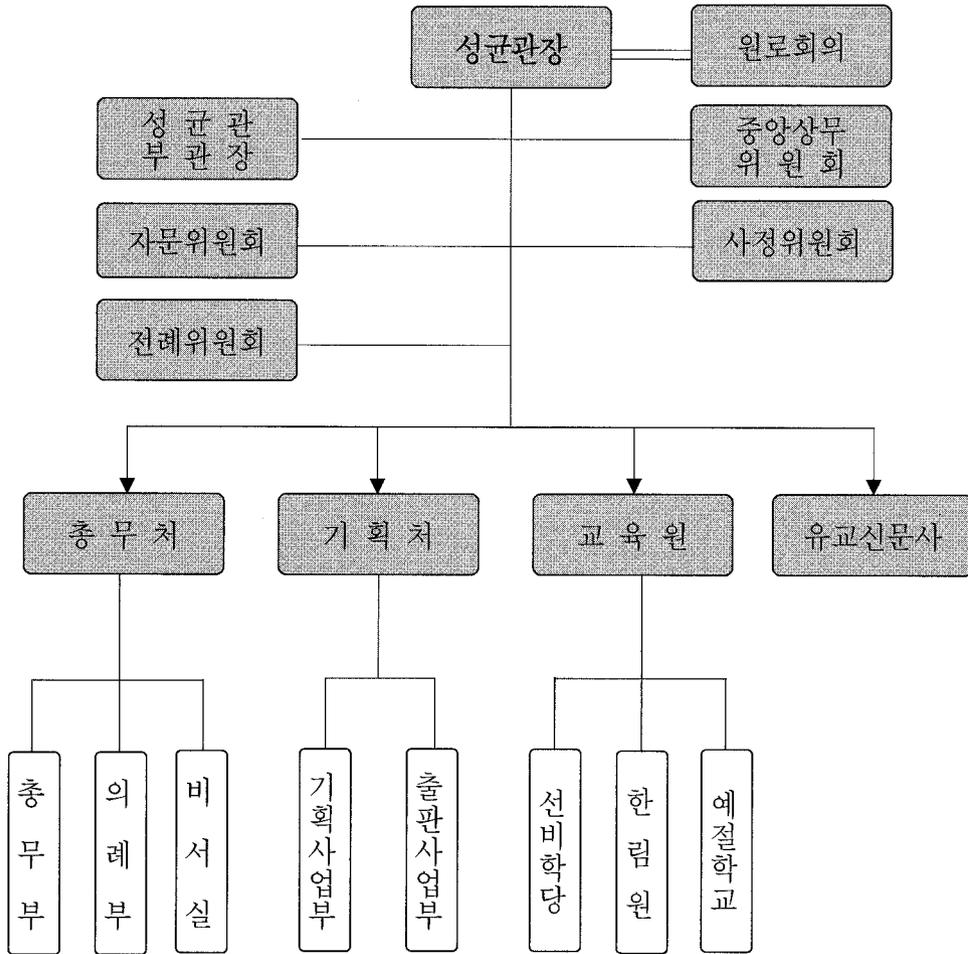
① 本 章程은 2006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本 章程 施行 後 最初 本館 館長 推戴는 中央常務委員會에서 制定한 規程에 依한다.

③ 本 章程 制定 以前에 在職 중인 本館 職員은 本 章程에 의해 任命된 것으로 한다.

④ 但, 本 章程은 發起總會의 決議에 의해 中央常務委員會를 構成한 後 總會에서 指摘한 修正事項을 完全議決한 後에 全面的으로 發效한다.

4. 성균관의 기구표(機構表)



여 백

제9장 석전대제(釋奠大祭)

1. 석전(釋奠)의 의의(意義)
2. 2·8 상정향일(二·八上丁享日)의 유래
3. 대성전(大成殿) 위패(位牌) 봉안(奉安) 위치도(位次圖)
4. 석전대제 진설도(陳設圖)
5. 석전대제 순서

여 백

1. 석전(釋奠)의 의의(意義)

석전은 산천(山川)과 사당에 올리던 제사 또는 학교에서 선성선사(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하여 올리던 제사 의식이다. 석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 유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보면 본래 석전은 산천에 지내기도 하고 혹은 사당 곧 묘사에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서 올리기도 했으나 산천 묘사는 이 밖에도 여러 제향(祭享)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오직 석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대를 내려오면서 학교의 의식(儀式)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석(釋)’은 ‘놓다(舍也)’ ‘두다(置也)’의 뜻이고, ‘전(奠)’은 ‘그치다(停也)’의 뜻으로서 제물을 올리기만 하는 것이지 시동(尸童)을 맞이하는 등의 제사 절차는 갖추지 않았다. 일설에는 소나 양 등 고기를 제물로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의식을 석전이라 하고, 오직 나물(菜·蘋藻類)만 드릴 뿐 일체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의식을 석채(釋菜)라 하는데, 이는 선사(先師)에게 채백(采帛)을 올려 폐백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석전은 석채(釋菜)·사전(舍奠)·정제(丁祭)라 하며 상정제(上丁祭) 등으로 일컫는다. 정제(丁祭)니 상정제(上丁祭)니 하는 것은 석전(釋奠)을 봄 2월(음력) 가을 8월(음력)의 상정일(上丁日; 첫 丁日)에 모시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상대(上代)에 이미 산천과 묘사에서 석전을 올렸으며 때로는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오면 학교에서 석전을 베풀어 선사(先師)에게 아뢰기도 하였는데 전자를 정기적인 석전이라 한다면 후자는 부정기적 석전이다. 학교에서는 봄에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가르치는 교관(敎官)이 선사에게 석전을 올렸고, 가을과 겨울에도 마찬가지라고 『예기(禮記)』 「문왕세자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사(先師)란 앞서간 전대의 훌륭한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다. 여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봄에 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周)나라 시대에는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자 공자(孔子)를 점차

선성(先聖) 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文廟)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리러 모시는 관례(慣例)가 정착되었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같은 제왕은周公(周公)을 선성(先聖), 공자를 선사(先師)로 삼아 공자의 고택(古宅)을 찾아가서 석전(釋奠)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수(隋)·당(唐)나라 이후로는 대체로 공자를 선성(先聖) 안회(顔回)를 선사(先師)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명(明)나라에 와서 태학의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祠堂)으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 유교(儒敎)가 전래한 기록은 없지만 최초로 태학(太學)을 설립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으로, 석전을 봉행(奉行)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백제에 태학 설립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오경박사(五經博士) 등의 명칭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일본에 『논어』 『천자문』을 전한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태학에서 석전의 의식을 봉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신라는 선덕여왕 2년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 그곳의 국학을 찾아 석전의식(釋奠儀式)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설립을 추진하였고 신문왕 2년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선덕왕 16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십철, 72제자의 초상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석전의식을 국학에서 봉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에서는 국자감(國子監)에 문묘(또는 先聖廟 文宣王廟라고도 일컬었다)를 모셔놓고 석전을 올렸고 왕이 직접 헌작(獻酌)하는 수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7년(1398) 숭교방(崇敎坊)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국립(國立) 최고학부의 기능을 다하게 하였으며 정전(正殿)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사성(四聖) 십철(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 등 21위(位)를 봉안(奉安)하고 동무(東廡), 서무(西廡)에 우리나라 명현(名賢) 18위와 중국 유현 94위 등 모두 112위를 봉안하고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석전을 올렸다. 지방에는 모두 330여의 향교(鄕校)가 있어 중앙의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차례씩 석전을 올렸다. 지금도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南韓에 있는 234개소)에서는 해마다 봄(음력

2월) 가을(음력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1949년 전국(全國) 대회에서 결정하여 과거 동, 서무(廡)에 봉안하였던 112위 중 우리나라 명현(明賢) 18위는 대성전에 종향(從享)하고 중국 유현(儒賢) 94위는 땅에 묻었다.

2. 2·8 상정향일(二·八上丁享日)의 유래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이르기를 “저 천도(天道)를 합하여 봄에는 체제(禘祭)를 지내고 가을에는 상제(嘗祭)를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춘추를 택(擇)한 것이며, 2월(二月) 8월(八月)로 정한 것은 이슬이 흙썩 젖는 계절과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계절을 택하여 중춘(仲春; 2월)과 중추(仲秋; 8월)로 한 것이다. 또 첫 번째 정일(丁日) 제례(祭禮)를 지내는 이유는 정(丁) 자가 든 날이 10간(十干)의 10일(十日) 중 가장 길(吉)하다는 유래에 근거하여 매년 춘추(春秋) 중월(仲月) 상정(上丁;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丁日)) 초일각(初一刻) 4경(更) 일점(一點)에 거행한다.

<변경하게 된 내력>

단기 4253년 경신(庚戌國恥후 10년, 1920)에 오전 10시로 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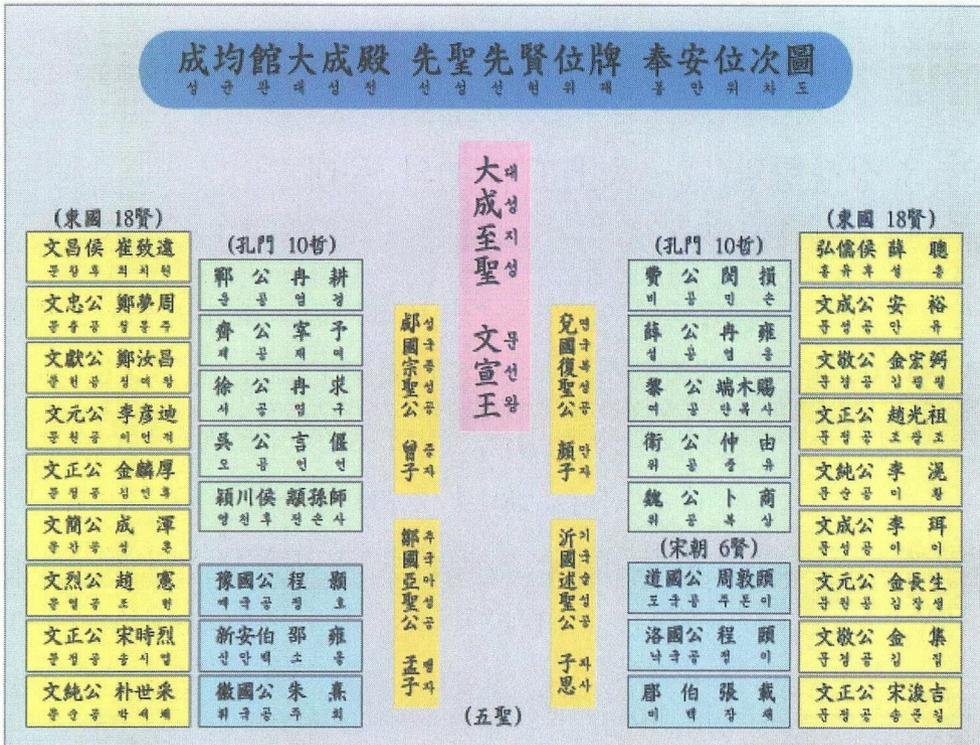
단기 4270년 정축(倭政 28년, 1937) 2월에 양력 4월 및 10월의 15일로 개정함.

단기 4282년 기축(1949) 6월에 전국 유럽대회에서 춘추(春秋) 석전제를 없애고, 공자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 석전(釋奠)을 기념하기로 함.

단기 4290년 정유(1957)에 춘추 2월과 8월 첫 번째 정일(上丁日)로 다시 돌아가 시행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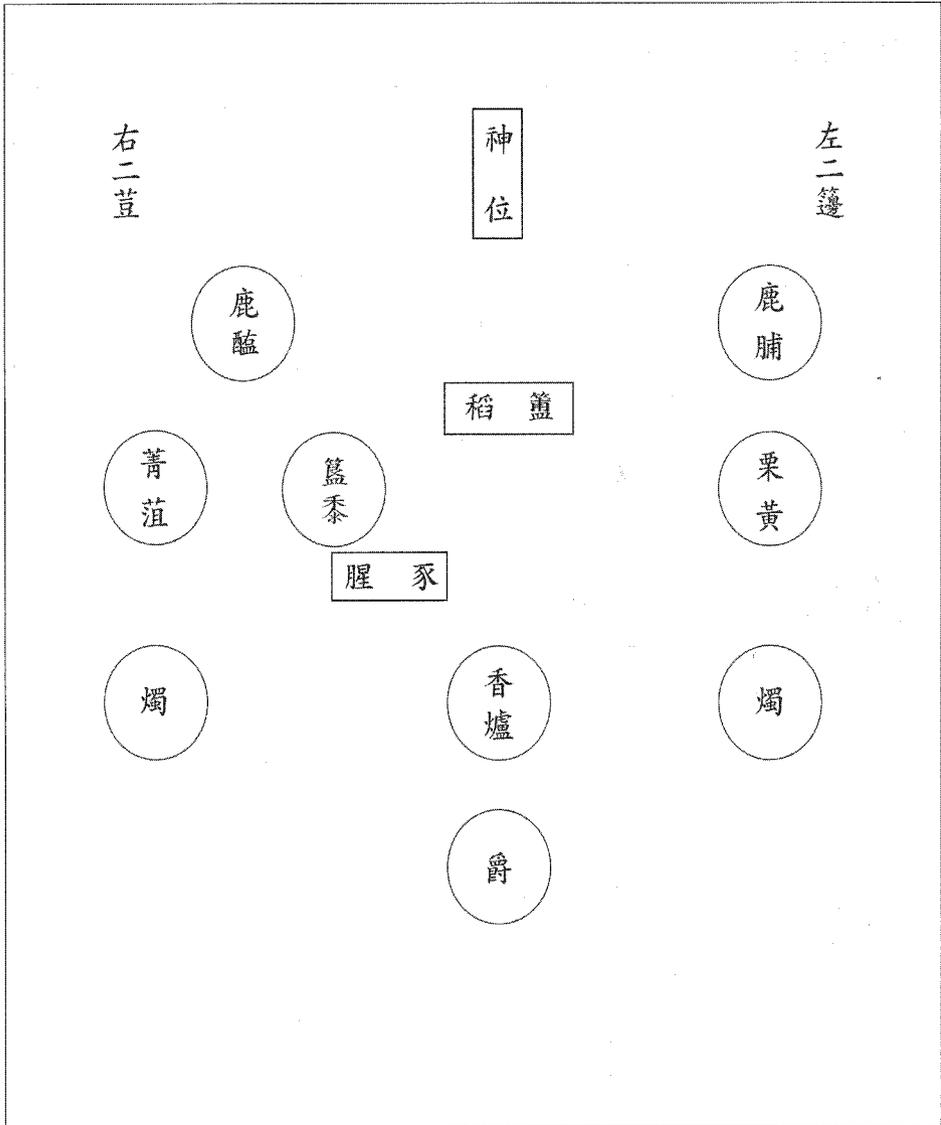
단기 4340년 정해(2007)부터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성균관에선 양력 5월 11일과 9월 28일에 지내기로 하였으나 교양향교에서는 전래대로 음력 8월 27일 공자 탄강일에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음.

3. 대성전 선성현(先聖賢) 위패(位牌) 봉안(奉安) 위치도(位次圖)



<성균관 대성전>

동서종향 진설도



5. 석전대제 순서

1) 성균관 석전대제 홀기(笏記)

大書 執禮 唱(雙書) 謁者口唱 小書不唱

대서 집례 창(쌍서) 알자구창 소서불창

대서에는 집례는 창을 한다. 알자는 창을 하고 소서는 창을 하지 않는다.

執禮 及廟司 先就階間拜位 北向西上 四拜訖盥水 各就位

집례 급묘사 선취계간배위 북향서상 사배흘관수 각취위

집례와 묘사는 먼저 계간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으로 올라가 4번 절하고 세수하고 제자리에 나간다.

謁者 贊引 俱就階間拜位 四拜訖 就位

알자 찬인 구취계간배위 사배흘 취위

알자와 찬인은 다같이 계단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제자리에 나간다.

창홀(唱笏) - 홀기를 부른다.

典樂 帥樂生二舞入就位

전악 술악생이무입취위

전악은 악생과 2무를 거느리고 제자리에 들어오시오.

贊引 引大祝及諸執事 入階間拜位 四拜 大祝以下 皆四拜

찬인 인대축급제집사 입계간배위 사배 대축이하 개사배

찬인은 대축과 여러집사를 인도하여 계간 배위로 들어오시오. 대축 이하는 네 번 절하시오.

大祝及諸執事 詣盥洗位 盥手各就位

대축급제집사 예관세위 관수각취위

대축과 제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고 각각 제자리에 나가시오.

廟司及奉香 奉爐升 開扉 開櫝 啓蓋降復位

묘사급봉향 봉노승 개비 개독 계개강복위

묘사와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문을 열고 주독을 열고 변두 뚜껑을 열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贊人引大祝 詣傳香門前 奉祝板香櫃引詣香所

찬인인대축 예전향문전 봉축관향계 인예향소

찬인은 대축을 인도하여 전향문에 나아가 축판과 향계를 받들고 향소로 나가시오.

降復位 謁者 贊引 各引獻官 入就位

강복위 알자 찬인 각인헌관 입취위

제자리로 가시오.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모시어 제자리에 나가도록 하시오.

謁者請行事 謁者 詣初獻官之左 有司 謹具請行事 軒架作凝安之樂 烈文之舞作 三成 舉麾

알자청행사 알자 예초헌관지좌 유사 근구청행사 헌가작응안지악 열문지무작 삼성거휘

알자는 행사를 청하시오.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아가고 유사는 삼가 행사를 거행할 것을 청하시오. 헌가에서는 응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四拜 獻官以下 儒生在位者 皆四拜 一般鞠躬 樂止偃麾

사배 헌관이하 유생재위자 개사배 일반국궁 악지언휘

4배하시오 헌관 이하 유생 여러분들은 모두 4배하시오. 일반인들은 국궁하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뉘시오.

행 전폐례(行 奠幣禮) - 폐백을 올리는 예를 합니다.

謁者 引初獻官 詣盥洗位 搯笏 盥手 洗手 執笏

알자 인초헌관 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관세위에 나아가 홀을 꿋고 세수하고 손 씻고 홀을 짚으시오.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跪

인예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북향궐

헌관을 모시고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登架作明安之樂 烈文之舞作 舉麾

등가작명안지악 열문지무작 거휘

등가에서는 명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大祝及奉香奉爐升 獻官跪而搯笏 三上香

대축급봉향봉노승 헌관궐이진홀 삼상향

대축과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헌관은 무릎 꿇고 홀을 꿋고 세 번 향을 올리시오.

大祝 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 執幣 獻幣 以幣 授大祝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平身

대축 이폐비수초헌관 초헌관 집폐 헌폐 이폐 수대축 전우신위전 집홀 부복 흥평신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궐에 드리시오. 초헌관은 폐비를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전에 올리시오. 홀을 잡고 부복하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次詣復聖公神位前 跪而搯笏 三上香

차예 복성공신위전 궐이진홀 삼상향

다음에 복성공신위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홀을 꿋은 뒤 세 번 향을 올리시오.

大祝 以幣篚授初獻官 如儀 執笏 俯伏 興平身

대축 이폐비수초헌관 여의 집홀 부복 흥평신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궐에 드리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初獻官 執幣 獻幣 以幣 授大祝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平身

초헌관 집폐 헌폐 이폐 수대축 전우신위전 집홀 부복 흥평신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리게 하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次詣 宗聖公神位前 跪而搢笏 三上香 大祝 以幣籠授初獻官 如儀 執笏 俯伏 興平身

차예 종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삼상향 대축 이폐비수초헌관 여의 집홀 부복 흥평신

다음은 종성공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홀을 꿇은 뒤 세 번 향을 올리시오.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次詣 述聖公神位前 跪而搢笏 三上香 大祝 以幣籠授初獻官 如儀 執笏 俯伏 興平身

차예 술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삼상향 대축 이폐비수초헌관 여의 집홀 부복 흥평신

다음은 술성공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홀을 꿇은 뒤 세 번 향을 올리시오.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次詣 亞聖公神位前 跪而搢笏 三上香 大祝 以幣籠授獻官 如儀 執笏 俯伏 興平身

차예 아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삼상향 대축 이폐비수헌관 여의 집홀 부복 흥평신

다음은 아성공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홀을 꿇은 뒤 세 번 향을 올리시오.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樂止 偃麾 獻官以下 降復位

악지언휘 헌관이하 강복위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누시오. 헌관 이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행초헌례(行初獻禮) - 초헌례를 행한다.

謁者 引初獻官 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 西向立

알자 인초헌관 예대성지성문선왕존소 서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대성지성문선왕존소에 나아가 서향해 서시오.

登架作成安之樂 烈文之舞作 舉麾

등가작성안지악 열문지무작 거휘

등가에서는 성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引詣 神位前 北向立 跪而搯笏 奉爵 奠爵升

인에 신위전 북향입 궤이진홀 봉작 전작승

모시고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서 서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꿋고, 봉작과 전작은 올라가
시오.

司尊 舉羴酌醴齊 以爵授奉爵 奉爵授初獻官

사준 거떡작례제 이작수봉작 봉작수초헌관

사준은 뚜껑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執爵獻爵 以爵授奠爵 奠酌 奠于神位前 執笏俯伏 興平身 小退跪搯笏

초헌관 집작헌작 이작수전작 전작 전우신위전 집홀부복 흥평신 소퇴궤진홀

초헌관은 잔을 들어 헌작을 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홀을 잡
고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무릎을 꿇고 홀을 꿋으시오.

樂止偃麾 大祝 升詣獻官之左 東向跪

악지언휘 대축 승예헌관지좌 동향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누시오. 대축은 올라가서 헌관 좌측에 나아가 동으로 향해 무릎
을 꿋으시오.

讀祝畢

독축필

축문을 읽으시오.

樂作 舉麾 大祝 降復位 謁者 引初獻官 詣復成公神位前 (跪而搯笏)

악작 거휘 대축 강복위 알자 인초헌관 예복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음악을 시작하시오. 기를 드시오.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복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끓어 앉아 홀을 꽃으시오)

司尊 舉冪酌醴齊 以爵授奉爵 如儀

사준 거떡자례제 이작수봉작 여의

사준은 뚜껑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 宗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 舉冪酌醴齊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 종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 거떡자례제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에 종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꽃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 述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 舉冪酌醴齊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 술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자례제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에 술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꽃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 亞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 舉冪酌醴齊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 아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자례제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에 아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꽃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樂止 偃麾 謁者 引初獻官 降復位

악지언휘 알자 인초헌관 강복위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눕시오.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시오.

文舞退 武舞進 軒架作舒安之樂二成 偃麾 樂止 偃麾

문무퇴 무무진 헌가작서안지악이성 언휘 악지 언휘

문무가 물러나고 무무가 나오시오. 헌가에서는 서안지악을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눕시오.

행아헌례(行亞獻禮) - 아헌례를 행한다.

謁者 引亞獻官 詣盥洗位 (搯笏) 盥水 帨手 執笏

알자 인아헌관 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알자는 아헌관을 모시고 관세위에 (홀을 꿇고) 나아가 세수하시오. 수건으로 씻고 홀을 잡으시오.

引詣 大成至聖文宣王尊所西向立 軒架作成安之樂 昭武之舞作 舉麾

인예 대성지성문선왕준소 서향립 헌가작성안지악 소무지무작 거휘

모시고 대성지성문선왕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헌가에서는 성안지악과 소무지무를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引詣 神位前 (跪而搯笏) 司尊舉冪酌盥齊 以爵授奉爵 奉爵授亞獻官

인예 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작양제 이작수봉작 봉작수아헌관

모시고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꿇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 執爵 以授奠爵 奠爵 奠于神位前

아헌관 집작 이수전작 전작 전우신위전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시오.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次詣 復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舉冪酌盥齊 以爵授奉爵 奉爵授亞獻官

차예 복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작양제 이작수봉작 봉작수아헌관

다음에 복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꿇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 執爵 以授奠爵 奠爵 奠于神位前

아헌관 집작 이수전작 전작전우신위전

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시오.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次詣 宗聖公神位前 (跪而搢笏)司尊舉冪酌盞齋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 종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작앙재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종성공신위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홀을 꿋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앙계를 따라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아헌관에게 주시오.

次詣 述聖公神位前 (跪而搢笏)司尊舉冪酌盞齋 以爵授奉爵如儀

차예 술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작앙재 이작수봉작여의

다음은 술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꿋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앙계를 따라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아헌관에게 주시오.

次詣 亞聖公神位前 (跪而搢笏)司尊舉冪酌盞齋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 아성공신위전 (궤이진홀) 사준거떡작앙재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아성공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꿋고) 사준은 뚜껑을 들고 앙계를 따라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아헌관에게 주시오.

謁者 引亞獻官 降復位 樂止 偃麾

알자 인아헌관 강복위 약지 언휘

알자는 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뉘시오.

행종헌례(行終獻禮) - 종헌례를 행한다.

謁者 引終獻官 詣盥洗位 (搢笏)盥水 帨手 執笏 引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

알자 인종헌관 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인예대성지성문선왕준소

알자는 종헌관을 모시고 관세위에 나아가 (홀을 꿋고) 세수하시오. 손을 닦고 홀을 잡고 모시고 대성지성문선왕준소로 나아가시오.

軒架 作成安之樂 昭武之舞 作偃麾 引詣神位前 (跪而搢笏)

헌가 작성안지악 소무지무 작언휘 인예신위전 (궤이진홀)

헌가에서는 성안지악과 소무지무를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모시고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홀을 꿋으시오.)

司尊舉冪酌酒 以爵授奉爵 奉爵授終獻官

사준거떡작주 이작수봉작 봉작수종헌관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은 종헌관에게 드리시오.

終獻官 執爵獻爵 以授奠爵 奠爵奠于神位前

종헌관 집작헌작 이수전작 전작전우신위전

종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次詣復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舉冪酌酒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복성공신위전 (괘이진흙) 사준거떡작주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복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흙을 깨끗이)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舉冪酌酒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종성공신위전 (괘이진흙) 사준거떡작주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종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흙을 깨끗이)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以爵授奉爵 如儀

차예술성공신위전 (괘이진흙) 사준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술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흙을 깨끗이)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 (跪而搯笏) 司尊舉冪酌酒 以爵授奉爵 如儀

차예아성공신위전 (괘이진흙) 사준거떡작주 이작수봉작 여의

다음은 아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흙을 깨끗이)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謁者 引終獻官 奉爵奠爵 降復位 樂止 偃麾

알자 인종헌관 봉작전작 강복위 악지 언휘

알자는 종헌관을 모시고 봉작과 전작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
를 누시오.

행 분헌례(行分獻禮) - 분헌례를 행하다.

謁者 贊引 各引分獻官 詣盥洗位 (搯笏)盥水 帨手 執笏

알자 찬인 각인분헌관 예관세위 (진흙)관수 세수 집흙

알자와 찬인은 각각 분헌관을 모시고 관세위에 나아가 (흙을 깨끗이) 세수하시오. 손을 닦
고 흙을 잡으시오.

引詣 從享位前 (跪而搯笏)奉香 奉爐升 三上香

인예 종향위전 (꿇이진흙)봉향 봉로승 삼상향

모시고 종향위전으로 나아가시오. (무릎 꿇고 흙을 깨끗이) 각 봉향과 봉로는 올라가시오.
세 번향을 올리시오.

奉爵奠爵升 司尊舉冪酌酒 以爵授奉爵 奉爵授分獻官

봉작전작승 사준거떡작주 이작수봉작 봉작수분헌관

봉작전작은 올라가시오. 각 사준은 뚜껑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드리시오.
봉작은 분헌관에게 주시오.

分獻官執爵獻爵 授奠爵 奠爵奠于神位前

분헌관집작헌작 수전작 전작전우신위전

분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전작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東西各十七位 如儀 (俯伏 興 平身)引降復位

동서각십칠위 여의 (부복 흥 평신)인강복위

동서 각 십칠위 (十七位)에게 이같이 한 다음 (옆드렸다 일어남) 모시고 제자리에 가시
오.

행 음복례(行飲福禮) - 음복례를 행한다.

謁者 引初獻官 詣飲福位 西向跪

알자 인초헌관 예음복위 서향궐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大祝 詣飲福位 獻官之左 北向跪

대축 예음복위 헌관지좌 북향궐

대축은 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에 좌측에서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奠爵升 爵以福酒 授大祝 大祝授初獻官

전작승 작이복주 수대축 대축수초헌관

전작은 올라와서 복주를 따라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 受爵飲訖 大祝 受虛爵 復於站

초헌관 수작음흘 대축 수허작 복어점

초헌관은 잔을 받아 다 마시시오. 대축은 빈잔을 받아 잔놓은 자리에 놓으시오.

大祝 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 以授奠爵 引降復位 奠爵 受俎 降自東階出 (執笏 俯伏 興平身)

대축 이조수초헌관 초헌관수조 이수전작 인강복위 전작 수조 감자동계출 (집홀 부복 흥평신)

대축은 도마의 고기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초헌관은 도마고기를 전작에게 주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전작은 도마의 고기를 받아서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시오. (홀을 잡고 엎드렸다 일어남)

引降復位 四拜 獻官四拜

인강복위 사배 헌관사배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4배하시오. 헌관은 4배하시오.

徹籩豆 登架 作娛安之樂 舉麾 大祝 升撤邊豆 樂止偃麾

철변두 등가 작오안지악 거휘 대축 승철변두 악지언휘

제물을 거두시오. 등가에서는 오안지악을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대축은 올라가 제물을 거두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누시오.

軒架作擬安之樂 舉麾 四拜 獻官以下 儒生在位者 皆四拜 (一般鞠躬) 樂止 偃麾

헌가작응안지악 거휘 사배 헌관이하 유생재위자 개사배 (일반국궁) 악지 언휘

헌가에서는 응안지악을 올리시오. 기를 드시오. 헌관이하 유생 여러분은 모두 4배하시오. 음악을 그치시오. 기를 누시오.

행 망료례(行望燎禮) - 망료례를 행한다.

謁者 引初獻官 詣望燎位 北向立 執禮 率贊者 詣 望燎位 西向立

알자 인초헌관 예망요위 북향입 집행 솔찬자 예망요위 서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망요 위에 나아가 북향해서 서시오. 집행은 찬자를 이끌고 망요 위에 서향하시오.

大祝 以篚取祝板 及幣降自西階 置於坎

대축 이비취축판 급폐강자서계 치어감

대축은 광주리에 축판과 폐백을 담아 서계로 내려가 구덩이 앞에 놓으시오.

可燎 置土半坎 謁者 進初獻官之左 白禮畢

가요 치토반감 알자 진초헌관지좌 백예필

불사르시고 흙으로 반쯤 메우시오. 알자는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예가 끝났음을 아뢰시오.

謁者 引初獻官復位 贊引引大祝復位

알자 인초헌관복위 찬인인대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찬인은 대축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가시오.

奉香 奉爐升閉櫃 閉扉 諸執事 俱復階間拜位 四拜

봉향 봉노승폐독 폐비 제집사 구복계간배위 사배

봉향과 봉로는 올라가서 주독을 덮고 문을 닫으시오. 모든 집사는 계간 배위에서 모두 같이 4배하시오.

獻官 執事 以次出 執禮 典樂 皆四拜出

헌관 집사 이차출 집행례 전악 개사배출

헌관과 집사는 차례로 나가시오. 집행례와 전악은 모두 4배하고 나가시오.

2) 석전대제 축문(祝文)

維 檀君 紀元 ○○○○年 歲次 干支 月干支朔 初日 干支官職 後學 姓名
 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伏以維王 道冠百王 萬世宗師 茲值上丁 精禋是宜 謹以牲
 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以先師 克國復聖公 郕國宗聖公 沂國述聖公
 鄒國亞聖公 配尚

饗

유 단군 기원 ○○○○년 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초일 간지 관직 후학 성명
 감소고우

대성지성문선왕 복이유왕 도관백왕 만세종사 자치상정 정인시의 근이생폐례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이선사 연국복성공 성국종성공 기국술성공 추국아성공 배상
 향

단군기원 ○○○○년 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초 일 간지 관직 (후학) 성명은
 감히 밝게 고합니다. 대성지성문선왕 엿드려 생각건대 왕께서는 도가 백왕의
 으뜸이요 만세의 스승에 마루이십니다. 이에 상정일(上丁日)을 만나서 정갈
 하고 정성껏,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로써 기장을 담고 여러 제수를 갖추어
 법도에 맞추어 밝게 드리오니 선사 연국복성공과 성국종성공과 기국술성공
 과 추국아성공께서도 함께 부디 흠향하소서.



여 백

제10장 성균관 중요 사적비(史蹟碑)

1. 공자 묘비문(孔子廟碑文)
2. 조선(朝鮮) 국학 묘정비문(國學廟庭碑文)

여 백

1. 공자 묘비문(孔子廟碑文) :

앞의 오성위(五聖位) 약사(略史)에 나와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2. 조선(朝鮮) 국학 묘정비문(國學廟庭碑文)

개국 십칠년 세재 기축추(開國拾七年歲在己丑秋) 구월(九月)에 국왕(태종(太宗)) 전하(殿下) 명신변계량(命臣卞季良)하니 약왈유아선고(若曰惟我先考) 태조수천명(太祖受天命)하사 조조가방(肇造家邦)하여 정도한양(定都漢陽)하시고 극건문묘(亟建文廟)는 소이존선성이중문교야(所以尊先聖而重文教也)라. 예승비서(豫承丕緒)하고 울준성헌(聿遵成憲)하여 중신묘궁(重新廟宮)하니 기성의(既成矣)라 학관최성(學官崔誠)이 청문지석(請文之石)하여 수시장래(垂示將來)라하니 여기필지(汝其筆之)하라.

신(臣) 계량은 승명운월(承命隕越)하여 퇴이징기시말(退而徵其始末)하니 세갑술(歲甲戌)에 태조기건도(太祖既建都)하시고 기종사(其宗社) 조시성곽(朝市城廓) 궁실지제(宮室之制)를 함저궤의(咸底闕宜)라. 즉모영묘학(卽謀營廟學)하사 탁지어도 지동북우산(度地於都之東北隅山)하니 지토연수환이류(止土衍水環以流)하여 궤위면양(厥位面陽)이라. 명여흥부원군민제(命驪興府院君閔霽)하여 치지(治之)할새 구공식재(鳩工飾材)하여 경시어정축지삼월(經始於丁丑之三月)하고 천사어무인지칠월(蒞事於戊寅之七月)하니 성철(聖哲)의 승우종사방서학(崇宇從祀旁序學)이 재묘후(在廟後)하고 중(中)에 명륜당(明倫堂)이오 좌우협(左右夾)에 유인수랑자(有仁修廊子)하고 우협지남(右夾之南)과 좌협지동(左夾之東)에 유청유랑(有廳有廊)하니 사생지위(師生之位)와 정록소처(正錄所處)가 무불완의(無不完矣)라. 규모광창(規模廣敞)하며 체축견진(締築堅纘)하니 범위옥(凡爲屋)이 대소이간계자구십육(大小以間計者九拾六)이라. 치전(置田)하여 이공자성(以供粢盛)하며 늬생도(廩生徒)하고

복호(復戶)하여 이응쇄소지사명(以應灑掃之使命)하니 묘학지사(廟學之事) 가위비의(可謂備矣)로다. 화우경진이월(火于庚辰二月)이러니 세을유(歲乙酉)에 환도(還都)하사 친전우선사(親奠于先師)하시고 월삼년정해정월(越三年丁亥正月)에 명낭묘지구기이신지(命廊廟之舊基而新之)할새 성산군(星山君) 신이직(臣李稷)이 조중군동지총제(肇中軍同知摠制) 신박자청(臣朴子靑)하여 동역(董役)을 신석독시(晨夕督視)하며 심계조수(心計措授)하여 공사용록(工師用勒) 사열월이묘성(四閱月而廟成)하니 숭심단대(崇深端大)가 비구유가(比舊有加)라 작신주우묘지서(作神廚于廟之西)하여 동서문우서서지하(東西門于西序之下)하고 가급전구(加給田口)하니 전지만여묘(田至萬畝)요 구이백계자삼(口以百計者三)이라. 용의정부좌정승(用議政府左政丞) 신하륜(臣河崙)하여 헌의(獻議)코 제성기이공어배위(躋廊沂貳公於配位)하며 승자장어십철(陞子張於拾哲)하니 묘궁지제(廟宮之制)가 익무감언(益無憾焉)이러다.

신(臣)은 절유성인지도(竊惟聖人之道) 대의(大矣)를 불가대이찬야(不可待而讚也)라. 수강유언(雖強有言)이나 기불류어회천지이화일월자기희(其不類於繪天地而畫日月者幾希)라. 오부자(吾夫子) 생어주말(生於周末)하사 집군성지대성이절충(集群聖之大成而折衷)하며 작백왕지대전이수교(作百王之大典而垂教)하여 공극어화초(功極於化初)하며 택류어무단(澤流於無段)하니 생민이래(生民以來)로 미유기성(未有其盛)이라. 재여소위현어요순자기유이부자(宰予所謂賢於堯舜者其有以夫子)인저 자당이래(自唐以來)로 제천번지(祭天幡地) 묘모상망(廟貌相望)하여 숭사불혹(崇祀不惑)이로다.

신오동방(矧吾東方)은 원자고석(爰自古昔)으로 속상예의(俗尙禮義)하며 복기자팔교지교(復箕子八教之教)하니 이룬지서(彝倫之叙)와 전장문물지비(典章文物之備)가 모의중국(侔擬中國)하니 오부자(吾夫子) 개상욕거지지의즉영건묘학(蓋嘗欲居之志矣則營建廟學)하며 흥숭문교(興崇文教)가 고비타망지비아(固非他邦之比也)로다. 공유태조(恭惟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은 응천순인(應天順人)하여 초창홍업(草創洪業)하사 임유동방(奄有東方)하실새 정도지초(定都之初)에 즉이숭성사(卽以崇聖祀)하며 흥유술위선(興儒術爲先)하니 개기존덕락도지성(蓋其尊德樂道之誠)이 출어

천성이탁연(出於天性而卓然)으로 유현어출치지본원(有見於出治之本源)과 당무지위급(當務之危急)이라. 소이(所以)로 이모수유(貽謀垂裕)하여 숙인심이수국맥자(淑人心而壽國脈者) 오호지의(嗚呼至矣)로다.

아금전하(我今殿下) 인효겸공(仁孝謙恭)하시며 강건예지(剛健睿智)하사 광소선업(光紹先業)하시며 임정지가(臨政之暇)에 낙관경사(樂觀經史)하사 매지야분(每至夜分)토록 수불석권(手不釋卷)하사 이극격치성정지학(以極格治誠正之學)하시며 이진지수영성지도연(以盡持守盈誠之道焉)하시니 구지전고(求之前古)에 개역절무이근유의(蓋亦絕無而僅有矣)러라. 세도방형(世道方亨)에 인문(人文)이 선량(宣朗)하여 일시훈친(一時勳親)과 대신백료서부(大臣百僚庶府)로 이지숙위지신(以至宿衛之臣)히 막불향학(莫不向學)하니 아태조우문흥화(我太祖右文興化)하시며 육양인재(育養人才)하야 이야전하홍대전렬(而我殿下弘大前烈)하시고 궁행어상(躬行於上)하사 이고무다사(以鼓舞多士)하시며 작신사민지치여(作新斯民之致歟)인저. 대월방책(對越方冊)에 관감개발(觀感開發)하사 면면순순(勉勉循循)히 유문이당(由門而堂)하여 이구기실(以求其室)케하시니 성덕달재(成德達才)와 치군택민자(致君澤民者) 접종이출(接踵而出)이라 침침우삼대작인지성(駸駸于三代作人之盛)을 가사야(可俟也)니라. 기유개관역청(豈有改觀易廳)하고 황요일시이이재(煒耀一時而以已哉)야. 실아조선종사(實我祖先宗社)가 만세지복야(萬世之福也)니라. 신계량(臣季良)은 근배수계수이헌명(謹拜手稽首而獻名)하노이다.

명왈오목선성(銘曰於穆宣聖)은 응시이생(應時而生)이로다. 포희홀주(包羲迄周)하여 집궐대성(集厥大成)이로다. 자생민래(自生民來)로 둔성흥경(敦盛興京)이로다. 혁재숭사(赫哉崇祀)여 주우보천(周于普天)이로다. 신왈기봉(矧曰箕封)은 예의유선(禮義唯先)이로다. 섭양조두(攝讓菹豆)는 종고즉연(從古則然)이로다. 천사태조(天賜太祖)에 신성문무(神聖文武)하고 소수제명(昭受帝命)하여 극집대훈(克集大勳)이로다. 익익신도(翼翼神都)는 유한지원(唯漢之源)이로다. 내경학궁(乃經學宮)에 성묘재중(聖廟在中)이로다. 전천강예(奠薦講隸)에 다사경종(多士景從)이로다. 명명아왕(明明我王)은 찬서증공(纘緒增功)이로다. 편희성학(編熙聖學)은 금고우동(今古穹同)이로다.

유탁신궁(有倬新宮)에 제사이공(躋祀二公)이로다. 원량비학(元良丕學)은 국본수용(國本修隆)이로다. 아작아구(我作我述)는 선성시숭(先聖是崇)이로다. 인재시육(人才是育)하니 풍화시의(風化是懿)로다. 숙무병의(孰無秉懿)리오 이자포기(而自暴棄)로다. 인왈진학(人曰進學)이오 세왈추치(世曰趨治)로다. 등삼등오(登三登五)는 각왈이모(刻曰以侔)로다. 화산인린(華山嶙嶙)이오 한수단단(漢水亶亶)이로다. 여국무강(與國無疆)은 유성지사(唯聖之祀)로다. 천석탁사(穿石琢詞)로 우영궐시(于永厥視)로다.

신(臣) 변계량(卞季良)은 봉교근찬(奉敎謹撰)하노이다. (『太學誌』)

조선 국학 묘정비문 번역

개국 17년 기축년(단기 3742, 서기 1409)가을 9월에 국왕(國王) 태종(太宗) 전하께서 신 변계량에게 명하며 말씀하시기를,

“아! 나의 아버님 태조께서 하늘의 명을 밝게 받드시어 처음으로 국가를 세워 한양에 도읍을 정하시고 서둘러 문묘를 세운 것은 옛 성인을 높이고 문교를 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나는 먼저 큰 뜻을 이어받고 마침내 옛 법을 지켜서 거듭 묘궁을 새롭게 지으니 이미 이룩된지라. 학관 최성(崔誠)이 돌에 새길 글을 청하며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겠다고 하니 네가 그 글을 지으라.”고 하시였다.

신 변계량은 분에 넘치는 어려운 명을 받고 물러 나와서 그 시말을 밝혀드리나이다.

갑술년에 태조께서 이미 도읍을 세우고 그 종묘와 사직과 조정과 저자와 성곽과 궁실을 다 마땅히 정하였다. 곧 묘학(廟學)을 짓고자 계획하여 도읍의 동북쪽 모퉁이 산에 땅을 헤아려 정하니 흙이 단단하고 넓은 물이 돌아서 흐르며 그 위치가 남향이라.

여흥부원군 민제(閔霽)에게 공사를 맡겼다. 재목을 깎고 다듬어서 정축년 3월에 시작하여 무인년 7월에 일을 마쳤다. 성인을 높이고 철인(哲人)을 따라 제사지내는 큰 서학(序學)이 묘 뒤에 있고 가운데 명륜당이며 좌우 옆에 곁집들을 지었

으니 우측 남쪽과 좌측 동쪽에 대청과 월랑이 있다. 스승과 제자의 자리와 관원이 사는 곳이 다 완비되어 규모가 넓고 시원하며 툭툭하고 단단하다. 무릇 집의 칸수가 크고 작은 것 합하여 96이니라.

밭을 두고 농사하여 그 곡식을 제사에 드리고 생도를 집에서 먹이게 하며, 손님 맞아 물 뿌리고 쓸고 청소하게 하니, 묘학(廟學)의 일이 갖추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가 경진년 2월이더라.

그해 11월에 전하께서 송경에서 즉위하시고 학교에 나와 옛 성인을 뵈고 자제들에게 명하여 배우게 하시었다. 을유년에 도읍에 돌아오시어 친히 옛 스승에게 절을 드리고 3년을 지난 정해년 정월에 낭묘의 옛 터를 새롭게 할 적에 성산군 신 이직(李稷)이 중군 동지총제 신 박자청(朴子靑)과 함께 공사 감독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독려하고 마음껏 계획하고 조치하여 공사의 마무리가 4월 지나서 묘(廟)가 이룩되었으니 높고 깊고 단아하고 큼이 그 전과 비교하여 더 좋았다.

부역을 묘의 서쪽에 지어서 동쪽 서쪽의 문을 두 학당 아래에 내었으며 밭과 사람을 더 주었으니 밭이 만여 묘(畝)에 이르고 사람이 103명이었다.

의정부 좌정승 하륜(河崙)에게 의논을 드리고 성(成)과 기(沂) 두 분을 올려서 배위(配位)하도록 하고 자장(子張)을 십철(十哲)의 자리로 올리니 묘궁이 더욱 유감없이 마련되었다.

신은 가만히 생각 하옵건대

아! 오직 성인의 길이 큰 짓임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지라. 비록 뻑뻑한 말이라 할지라도 가령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해와 달을 그리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도다.

우리 부자(夫子) 즉 공자는 주(周)나라 말기에 태어나시어 여러 성인(聖人)이 크게 이룩한 것을 집대성하여 절충하였으며, 여러 임금의 큰 법을 지어 가르쳐서 본을 보이었다. 화(化)하기 시작한 공이 지극하며 혜택은 흘러 조각이 없으니, 백성이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융성한 적이 없었으므로 재여(宰予)가 이른바 ‘요(堯)와 순(舜)보다 어질다’고 하는 것은 그 부자(夫子)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로부터 이래로 온 천지에 가득히 묘(廟)의 모양을 바라보고 높이여 제사 지내기

를 의심치 않았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옛적부터 풍속이 예의를 숭상하며 기자(箕子)의 여덟 조목의 가르침을 따랐으니, 떳떳한 윤리를 펴고 법과 글의 문물을 갖추어 중국과 흡사하여 우리 부자(夫子)가 대개 일찍이 여기에 살고자 한 뜻이 있었던 즉 묘(廟)를 영위해 세우며 문교(文教)를 높이 일으킨 것이 진실로 다른 나라에 비할 바 아니로다.

공손히 생각 하옵건대

아! 태조 강헌대왕께서는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게 순하여 넓고도 큰일을 이룩하시 문득 동방의 존재를 있게 하였다. 도읍을 정한 처음에 곧 큰 성인을 높여 제사 지내며 유술(儒術)을 먼저 일으키니 대개 그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는 정성이 천성에서 높이 우러나온 것이며,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므로 마땅히 힘써 급히 서둘렀음을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계획을 넉넉히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나라의 맥을 길게 함이 아! 지극하도다.

우리 전하께서는 어질고 효도하고 겸손하고 공손하며 굳세고 튼튼하고 밝고 슬기로우시어 먼지의 큰일을 빛나게 이어받고, 정사에 임하는 틈에 경서와 역사를 즐겨 보시되 매양 밤이 깊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함으로써 극진히 궁리하고 정성을 다스려 학문을 바로 잡으며 도를 정성스럽게 충분히 잘 가지고 지키셨으니, 이런 분을 지난 옛날에 찾아봐도 대개 역시 아주 없을까 말까 겨우 있었느니라.

세상의 도(道)가 바야흐로 형통하매 사람과 글이 분명히 베풀어져서 이 때의 공신과 종친과 대신과 여러 신하와 모든 관청으로부터 숙위하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학문에 향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우리 태조께서 문(文)을 높이고 교화를 일으키고 인재를 길러 키우셨으며, 우리 전하께서는 옛적 열렬함을 크게 넓히고 몸소 위에서 행함으로써 많은 선비들을 북돋우며 이 백성을 새롭게 지음이 극진하심이어!

바른 책을 대하매 보고 느끼고 열리고 피어나고 힘쓰며 순하게 따르고 따라서 문에서 당으로 그리고 그 집에서 구하게 되니 덕을 이룬 통달한 인재와 임금을

극진히 섬기고 백성을 널리 은혜롭게 하는 자가 계속 나오게 되었고도다. 말(馬)을
몰아 달리듯 삼대(三代)에 걸쳐 인재를 왕성하게 길렀으므로 기다려 볼만한 것이
다. 어찌 고쳐 보게 하고 듣기 쉽게 하여 마치 불이 이글이글 타서 환히 밝히듯
이 다만 한 때뿐이겠는가? 실로 우리 조선(祖先)과 종묘와 사직의 만세의 복이니라.

신 변계량은 삼가 절하고 손 모으고 머리 조아리며 이름을 드리나이다.

명(銘)에 말하기를

화하고 밝은 성인은 때에 맞추어 났도다.

북회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를 모아 크게 이룩하였도다.

백성이 스스로 나면서부터 돈독히 성하게 서울을 일으켰도다.

환하게 빛남이여! 제사를 숭상함은 넓은 하늘에 두루 빛나도다.

하물며 기자를 봉한 땅에는 예의가 오직 먼저로다.

물려준 제기는 옛날 법대로 그랬도다.

하늘이 주신 태조는 문과 무에 신성하고

천제의 명을 밝혀 받아 큰 공훈을 잘 모았도다.

나를 듯한 신령스런 도움은 아! 한수(漢水)의 근원이로다.

지금 지은 학궁(學宮)은 성묘(聖廟)가 가운데 있도다.

제사드리고 강론하고 검열함에 많은 선비가 사모하여 따르도다.

밝고 밝은 우리 임금은 줄줄이 이어서 공을 더하였도다.

밝혀 엮은 성인의 학문은 예나 이제나 창(窓)이 같도다.

크게 지은 새 궁에는 두 어른을 더 올려서 제사 지내도다.

크고 좋은 큰 태학은 나라의 근본을 높이 닦도다.

내가 짓고 내가 짝하는 것은 옛 성인을 숭상하는 일이로다.

인재를 이에 기르니 풍속을 화하여 이를 아름답게 하도다.

누가 아름다움을 잡지 않으리오마는 스스로 사납게 버리도다.

사람은 태학에 나아가야 하고 세상은 다스려져야 하다고 말하도다.

제기는 셋이요 다섯이지만 새기는 데는 비슷하도다.

화산(華山)은 불 일듯 일어나며 한수(漢水)는 미쁘고 믿음직하도다
나라와 더불어 끝이 없음은 오직 성인의 제사로다.

돌을 뚫고 글을 다듬어서 영원히 그를 본받게 하도다.

신 변계량은 교를 받들어 삼가 짓나이다.(『太學誌』에서)



제11장 향교(鄕校)의 연원(淵源)과 변천(變遷)

1. 향교의 기원(起源)
2. 향교의 설립(設立)과 기능(機能)
3. 향교의 변천
4. 향교의 건물 구성과 배치
5. 향교의 전통적 기능과 직제(職制)

여 백

1. 향교의 기원(起源)

성균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시대 교육의 중추를 맡아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한 곳이 바로 향교이다. 향교는 오늘날의 국립(國立) 중등교육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향학(鄉學)·학궁(學宮) 또는 교궁(校宮)으로도 불리웠다. 향(鄉)은 지방의 행정구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고, 교(校)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향교는 지방의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이 최초로 제도화(制度化)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전래되어온 이후의 일이며, 구체적으로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각 지역에 경당(肩堂)을 설립한 이후부터 비롯되었다. 경당(肩堂)에서는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궁술(弓術)도 가르쳐 문무(文武)를 겸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백제와 신라에도 유학이 흥성하여 백제에서는 오경박사(五經博士) 제도를 두었고, 신라는 국학(國學)을 두었지만 지방에 학교를 두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에 비해 영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았던 당시 백제와 신라의 여건상 중앙 이외의 지방에 별도로 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데에 기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 지방교육은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이고 완비된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2. 향교의 설립(設立)과 기능(機能)

설립 연혁에 의하면 고려 태조 13년 경인(930)에 평양에 학교를 설치하여 6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文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그 직접적인 시초가 된다. 이어서 성종 6년 정해(987)에는 전국 12목(牧)(楊州·光州·忠州·淸州·公州·羅州·昇州·海州·黃州 외)에 학교를 설립하고 경학박사(經學

博士)를 배치하였으며 주와 군에 건물을 세워 지방 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후 인종 5년 정미(1127)에는 각 주(州)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일으키라고 명하였으며, 충숙왕 원년 갑인(1314)에는 이곡(李穀)을 각 주에 파견하여 향교를 부흥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가 각 지방에 널리 설치되고 유교 교육의 진작과 지방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향교의 본격적인 발달과 체제의 완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이에 도움을 준 것은 고려 말기에 전해 들어와 조선왕조에 창업 이념(理念)으로 자리 잡게 된 성리학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유교는 국가이념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것은 아니었다. 유교보다 뒤늦게 전해들어온 불교가 이미 민중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교는 통치이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고려 말기 안향(安珦) 등의 학자에 의해 수입된 성리학은 유교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유교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하나는 불교에 대한 배척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교의 대중화였다. 이는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유교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선 태조는 즉위 원년 임신(1392)에 각 도(道)의 안찰사들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폐(興廢)로 그 지방 수령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향교 설치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태조 7년 무인(1398)에는 성균관의 준공과 더불어 성균관과 병행할 지방 교육기구로서 향교의 설치를 재차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현의 실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다. 태조의 교육정책을 이어받은 태종은 향교의 성과(成果)를 수령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13년 계사(1413)에 비로소 각 향교의 관리와 유지에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도록 논발을 지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전국의 행정단위마다 고루 1개소씩

향교가 설치되어 전국의 향교는 모두 360곳으로 늘어나 명실공히 지방 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와 규모 및 기능을 완비하게 되었다.

3. 향교의 변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졌고 정치적인 실패가 거듭되면서 국가 교육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향교도 역시 국립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 후반기로 접어들며 기능이 약화된 향교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이 각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숫자는 전국에 걸쳐서 378개나 되었다. 대부분이 10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에 걸쳐 설립된 서원은 부분적으로 향교의 기능을 보완하고 향촌사회 교화의 구심점이 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격화되기 시작한 당쟁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말기 대원군 때에 이르러 마침내 서원철폐정책(書院撤廢政策)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향교와 더불어 서원이 지방에서 유교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원의 쇠퇴에 이어서 향교 역시 커다란 시련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조선 왕조는 외세의 노골적인 침략을 당하게 되어 국운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유교교육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의 양성과 풍속의 교화 등으로 유교이념에 입각한 이상사회(理想社會) 건설에 굳건한 토대가 되어왔던 성균관과 향교는 일본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910년 경술 무력으로 한국을 합병한 일제는 우리의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합방 이후 성균관을 폐지하고 지방 향교도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강압정책에 따라 성균관은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경전(經典)

을 교육하는 사설 전문학원으로 전락하였으며, 향교도 또한 문묘(文廟)에 대해 제사(祭祀) 지내는 기능만이 허용(許容)되었다. 이와 같이 성균관과 향교의 기능이 박탈됨에 따라 유교 역시 크게 침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 유교를 부흥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 유림(儒林)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성균관이 지니고 있었던 교육기관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1946년에 유림(儒林)들의 뜻을 모아 성균관대학교가 설립되었다. 비록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치를 되찾지는 못하였으나, 전국 향교에서 기금을 모아 설립된 유교이념에 의한 대학이 다시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복 후 국토의 양단과 6·25동란의 혼란 속에서도 유교의 총본산으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성균관과 각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남한에 있는 234개 향교는 이미 체제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유교와 지역사회 교화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단기 4313년(1980) 이후부터는 향교의 역할이 더욱 현저해지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忠孝教室)을 개설하는 등 사회교화와 유교이념 보급에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가고 있다.

4. 향교의 건물 구성과 배치

향교에 속해 있는 부속건물의 배치는 배향(配享) 공간과 강학(講學) 공간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향교가 위치하는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에 대성전(大成殿)을 두고 후면(後面)에 명륜당(明倫堂)을 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룬다. 반면 위치가 언덕을 끼고 있는 경사진 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후면에 대성전을 두고 전면 낮은 대지에 명륜당이 나란히 배치될 때도 있다.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을 고찰해 보면 강당은 중앙에 대청(大廳)을 두고 좌우로 온돌방을 두며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온돌방과 대청으로, 또는 온돌

방만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향공간인 대성전과 동서무(東西廡)는 장방형(長方形)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이외에 향교의 살림을 맡아서 해주는 직사(直舍)는 방과 주방(廚房), 대청(大廳)과 고사(庫舍)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일반 민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편의상 명륜당과 가까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도서관(圖書館) 기능을 하는 존경각(尊經閣)은 조용히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서무의 적당한 곳을 이용할 때도 있으며, 이러할 때는 이곳을 경판고(經板庫)라 한다. 향교의 이 두 공간은 전체 건물의 핵심공간(核心空間)이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성전이 항상 명륜당보다 우위(優位)의 위치에 두는 것은 서원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평지라 하더라도 향교의 대성전에 해당되는 사우(祠宇)는 대지의 가장 후면에 두어 높낮이의 차이로 신성시(神聖視)하도록 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공간의 전체적인 배치는 중심 공간인 배향과 강학의 두 공간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어 공간에 위엄을 갖도록 한다. 또 향교 건물 입구에는 홍살문(紅箭門)을 세우고 그 아래에는 성군관과 같이 하마비(下馬碑;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향교 안에 들어올 때에는 말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세운 비석)를 설치하여 교육과 교화의 중심으로서의 엄숙성과 권위를 강조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5. 향교의 전통적 기능과 직제(職制)

전통시대 국립 지방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성(先聖) 선현(先賢)에 대한 향사(享祀)의 임무이다. 이것은 학문하는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유교의 창조조(創造祖)인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를 빛내고 발전시킨 선현(先賢)들의 거룩한 덕(德)을 기리고 그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각지의 유생들을 모아 강학하였던 향교의 교과목은 성균관과 동일하게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인 것이다. 또한 향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 1차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생은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란 칭호를 주고, 계속해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하며, 성균관에서 문과시(文科試)에 급제하면 고급 관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있었던 까닭에 국가 동량(棟樑)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끝으로 지역사회 교화의 중심체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유교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실천까지를 포함한다. 그런 까닭에 향교에서 선성(先聖) 선현(先賢)에 대한 향사(享祀)를 하는 것도 그의 덕행을 배우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교화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향교는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고 각종 의례의 보급과 전파 등을 통하여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역사회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다.

이같이 다양한 향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학전(學田)을 두어 향교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향교를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향교의 직제는 주(州)나 부(府) 등의 큰 행정단위에는 교수(教授; 종6품) 1인(一人)을 두고, 비교적 소규모 행정단위인 군(郡)이나 현(縣)에는 훈도(訓導; 종9품) 1인 씩을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관찰사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여 왔다. 당시의 각 도별 향교의 교수 및 훈도의 정원수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별 (道別)	교수 (教授)	훈도 (訓導)	도별 (道別)	교수 (教授)	훈도 (訓導)	도별 (道別)	교수 (教授)	훈도 (訓導)
경기도	11	26	강원도	7	18	충청도	4	50
함경도	13	9	경상도	12	55	평안도	11	21
전라도	8	49	황해도	6	19	총계(總計)	72	257

교생(校生)의 정원수도 행정단위별로 차이를 두어서 최대 행정단위에는 각 90명 씩, 중간급은 각 70명 씩, 하급(下級) 행정단위는 각 30명 내지 50명이었다. 수학 기간 중에는 대부분 향교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등의 기숙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동재에는 양반의 자제를, 서재에는 서민의 자제를 수용했다. 교과과목은 『소학』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중요(重要)한 학과(學課)였으며, 『근사록(近思錄)』 등의 성리학 교재와 『삼강행실(三綱行實)』 등도 포함되었다. 교수방법은 성균관이나 서원(書院) 등과 같이 개인별로 강(講)을 통하여 학습을 지도한다. 교생(校生)이 독서하는 하루의 일과는 매월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았다. 또한 관찰사는 수시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교관(敎官)의 근무태도를 검사하였는데 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생들에게는 호역(戶役)을 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었다.

또한 각 도 관찰사들은 도내(道內) 교생들을 골라서 매년 6월에 도회소(都會所)를 열고 문관(文官) 3명씩을 파견하여 강론(講論)과 저술(著述)로 시험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생원·진사 복시(進士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함께 주었는데 그 추천 인원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3도는 각 5명 씩이고 그 외의 도는 각 3명 씩이었다. 향교의 재원(財源)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하사(下賜)한 학전(學田) 수익(收益)에 의해 운영되고 지방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의 일부와 유림의 기부로 매입한 토지·어장(漁場) 및 산림(山林)의 수익도 제사(祭祀)를 포함한 향교의 유지관리비에 충당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향교는 향사(享祀)와 교육

이외에도 향촌 사회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향촌의 풍습을 순화하는 사회 교육적 임무를 띠고 있었다.

즉 『삼강실록(三綱實錄)』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부녀자와 아동에게 강술하는 특별강습회 같은 것을 개최한 일이든지, 향음례(鄉飲禮)·양로회(養老會) 같은 의식을 통하여 덕행을 찬양하고 경로정신을 고취하며 예의(禮儀)와 범절(凡節)을 가르치게 한 것은 모두가 향교를 향촌 사회의 교화기관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12장 성균관 유도회(儒道會)

1. 연혁(沿革)
2. 헌장(憲章)
3. 조직세칙(組織細則)
4. 유도회 총본부 기구표
5. 청년유도회지부(靑年儒道會支部) 회칙(會則)

여 백

1. 연혁(沿革)

1945년 8월 광복 이후 10월에 전국 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첫 회합 창립총회를 열어 유도회(儒道會) 총본부가 탄생되었고 위원장에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선출되었다. 유도회는 문선왕 공부자의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윤리도의 정신을 함양케 하고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대도(大道)를 천하에 선포하여 이를 실행케 하는 목적으로 전국 500만 유림의 뜻에 의하여 설립된 총림(叢林)이며 성균관과 지방 향교 및 성균관대학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과 기타 교육·교화·학술 등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성균관을 설립하여 종전의 명륜전문학교를 성균관대학으로 승격시켰다. 1950년 부산에서는 전국 유림 대표자대회를 열어 전국 유림의 재산을 각 도(道)별 기부를 통하여 본 재단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성균관의 이사(理事)는 유도회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이 선출한 평의원과 각도에서 선정된 평의원이 선출하기로 하였다.

1955년 이후 유림들의 분규(紛糾)가 발생하였고, 1963년 교육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성균관과 대학법인 성균관대학교의 분리를 보았다. 1964년에 전국유림 대표자대회에서 500만 유림의 총단결로 과거의 분규가 종식되는 동시에 유도회를 재건하자는 결의에 따라 유도회수습위원회가 발족한 후 종래의 분규가 종식되었다. 1947년 임병진(林秉鎭) 선생, 1977년 박성수(朴性洙) 선생, 1979년 이병주(李炳主) 선생, 1981년 이재서(李載瑞) 선생, 1985년 김경수(金敬洙) 선생, 1992년 김상구(金相九)에서 이해문 선생, 현재 변은섭 선생에 이르고 있다. 유도회는 본회의 설립이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경영한다.

- (1) 성균관대학교 및 지방 향교와 유림 기관의 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
- (2) 경전(經典) 및 학술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3) 정치 경제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4) 교화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6)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전국 각 시도에 각 시도 본부, 각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다.

가. ① 위원장	1인
②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
③ 중앙위원	90인 이내
④ 사무총장	1인
⑤ 사무차장	1인
⑥ 감찰위원	10인 이내
⑦ 상임위원	30인 이내
⑧ 각부 차장 5부 각	2인

나. 각 지방에는 읍,면,리,동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산하조직을 두고 있다.

총본부 — 시도본부 — 시군지부 — 읍면지회 — 이동분회

2. 헌장(憲章)

제1장 총 칙(1982년 8월 22일 개정)

제1조 본회는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儒道會)라 칭한다.

제2조 ①본회의 총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明倫洞) 3가 53번지에 두고 특별시 광역시 및 도본부(道本部)를, 구(區)·시(市)·군(郡)·향교(鄕校) 단위로 지부(支部)를, 동(洞; 特別市·廣域市)·읍(邑)·면(面)단위로 지회(支會)를, 통(統)·리(里)·동(洞) 단위로 분회(分會)를 둔다.

②본회 산하에 여성유도회(女性儒道會) 및 청년유도회(靑年儒道會) 학생유도회(學生儒道會)를 둔다.

제3조 본회는 유도정신(儒道精神)에 입각하여 도의(道義)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扶植)을 실천하여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대도(大道)를 선양하고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事業)을 경영한다.
단 재단법인(財團法人)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 및 지방향교(地方鄉校)와 일체(一體)가 되어 추진(推進)한다.

- (1) 성균관대학교 및 지방향교와 유림기관(儒林機關)의 발전육성에 관한 사항
- (2) 경전(經典) 및 학술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3) 정치·경제의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
- (4) 교화(教化) 및 사회복지사업(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會 員)

제5조 본회 회원(會員)은 본회의 취지(趣旨)에 찬동하여 등록한 자(者)로 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필(畢)하여야 한다.

단 등록서류는 지부의 심사를 거쳐 총본부에 제출하여 위원장(委員長)이 발급하는 회원증(會員證)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한(權限)을 가진다.

- (ㄱ) 의결권(議決權)
- (ㄴ) 피선거권(被選舉權)

단 본회 각급 정부위원장(正副委員長)의 피선거권(被選舉權)에 한(限)하여는 만 40세(四十歲) 이상의 회원이라야 한다.

제8조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정(定)한 제규정(諸規程)을 준수하며 소정(所定)의 회비(會費)를 납부할 의무(義務)를 진다.

제 3 장 기관(機關) 및 부서(部署)

제9조 본회에는 다음의 기관(機關)을 둔다.

- (1) 총회(總會)

- (2)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 (3)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 (4)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제10조 총회(總會)는 총본부 정부위원장 및 임원(任員), 여성유도회장(女性儒道會長), 청년유도회장(靑年儒道會長), 특별시광역시·도본부위원장(道本部委員長), 구(區) 시(市) 군(郡) 향교(鄕校) 단위 지부대표(支部代表), 재단법인성균관임원(財團法人成均館任員), 성균관임원(成均館任員), 향교전교(鄕校典校), 시(市)도(道) 향교재단이사장(鄕校財團理事長)으로 구성한다.

그 기능(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正副)위원장, 중앙위원(中央委員)의 선출(選出)
단 부위원장(副委員長) 1인(一人)은 위원장이 추천(推薦)한다.
- (2) 재산처리(財産處理)의 승인(承認)
- (3) 감찰위원(監察委員)의 선출(選出)
- (4)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에 대한 권한 위임(權限委任)에 관한 사항
- (5) 중앙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사항의 승인(承認)
- (6) 헌장(憲章)의 개정(改正)
- (7) 기타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의결(議決)

제11조 중앙위원회는 총본부 정,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의장(議長)은 총본부 위원장이 되며 그 직능(職能)은 다음과 같다.

- (1) 상임위원(常任委員) 선출
- (2) 총회(總會)로부터 수임(受任)한 사항의 집행
- (3)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 대한 권한위임(權限委任)에 관한 사항
- (4)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사항의 승인
- (5) 본회 헌장(憲章)을 제외한 제규정(諸規程)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
- (6)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 및 재단법인 성균관에 제출하는 사항의 승인
단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사항(承認事項)은 다음 총회(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총회를 소집치 못할 경우의 총회직능대행(總會職能代行)
단 대행사항(代行事項)은 차기총회(次期總會)의 승인을 요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는 총본부 정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의장(議長)은 총본부 위원장이 되며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위원회로부터 수입(受任)한 사항의 집행
- (2) 예·결산안(豫·決算案) 작성
- (3) 제규정안(諸規程案) 작성
- (4) 회비수납(會費受納) 기타 재무(財務)에 관한 사항
- (5) 본회 헌장(憲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제사업(諸事業)의 집행
- (6) 본회 헌장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저항(抵抗)되지 않는 긴급사항(緊急事項)의 의결 집행(議決執行)

제13조 상임위원회는 다음 부서(部署)를 두며 위원장은 상무위원으로 하여금 1개 부서의 사무(事務)를 협조(協助)토록 지명(指名)할 수 있다.

- (1) 총무부(總務部)
- (2) 조직부(組織部)
- (3) 재무부(財務部)
- (4) 사회부(社會部)
- (5) 교화문화부(教化文化部)

제14조 각 부(部)의 직능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의하여 사무직원(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 (1) 총무부(總務部)는 각 부의 종합적인 사업계획(事業計劃) 회의, 서무(庶務), 인장(印章) 보관(保管) 및 타부(他部)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장관(掌管)한다.
- (2) 조직부(組織部)는 본회의 조직에 관한 일체(一切)의 사무를 관장한다.
- (3) 재무부(財務部)는 재산관리, 회비징수(會費徵收), 예산·결산안(豫算·決算案)의 작성 및 회계(會計)에 관한 사무를 장관한다.
- (4) 사회부(社會部)는 정치·경제에 관한 지도(指導) 및 사무를 관장한다.
- (5) 교화문화부(教化文化部)는 도의양양(道義昂揚)을 목적으로 한 교화·문화운동 전개 및 이에 따르는 선전·출판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는 호선(互選)에 의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규율유지(規律維持)

(2) 회원 및 임원의 표창징계(表彰懲戒)·복권(復權)에 대한 사항

(3) 경리(經理) 및 사무감사(事務監査)

제15조의 2 여성유도회 및 청년유도회는 유도회 헌장을 준수하며 여성유도회 및 청년유도회, 학생유도회가 운영상(運營上)의 필요한 정관(定款) 및 규정(規定)은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制定)할 수 있다.

제15조의 3 여성유도회 및 청년유도회의 중앙회장(中央會長)은 유도회 총본부 중앙위원이 된다.

제16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

- (1) 위원장(委員長) 1인
- (2) 부(副)위원장 5인 이내(首席副委員長一人)
- (3) 중앙위원(中央委員) 60인 이상 90인 이내(中央 60%) (地方 40%)
- (4) 사무총장(事務總長) 1인, 차장(次長) 1인
- (5) 상무위원(常務委員) 20인 이상 30인 이내
- (6) 감찰위원(監察委員) 7인 이상 10인 이내
- (7) 각부차장(各部次長) 각 1인

제17조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무(總務)를 통할운영(統轄運營)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補佐)하여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首席) 부위원장 순(順)으로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단 수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指名)한다.

제18조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부(各部)를 지휘감독(指揮監督)하며 사무차장(事務次長)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각 부장(部長)은 부무(部務)를 관장하고 차장(次長)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사무총장(事務總長), 각부차장(各部次長)은 위원장이 임면(任免)하여 상임위원(常任委員)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사무직원(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임기(任期)는 2년으로 하고 보선(補選)된 자(者)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각 임원은 명예직(名譽職)으로 하되 상근임원(常勤任員)과 직원에 한(限)하여

예산범위내(豫算範圍內)에서 거마비(車馬費) 또는 수당(手當) 등을 지급(支給)할 수 있다.

제23조 ①본회 헌장 제10조의 총회(總會)에 참석대표자(參席代表者)와 제16조의 임원은 유도회 사업 수행에 위배(違背)되는 유림단체나 또는 이교단체(異敎團體)에 가입(加入)할 수 없으며 이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될 시(時)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며 총본부위원장은 해당 유도회 임원에 대하여 즉시 이를 해임(解任)하여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이교단체라 함은 유교 이외의 모든 종교단체를 말하며 과거 이교단체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탈퇴(脫退) 후 본조임원(本條任員)이 된 자(者)가 선출 또는 임용되었을 시(時)는 전 항을 적용치 않는다.

③전항의 탈퇴라 함은 본인이 이교단체에 가입했던 종적(宗籍)이 소감(消滅)되었거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탈퇴한 사항이 확연히 인정(認定)됨을 말한다.

제 4 장 회 의(會 議)

제24조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 4월 중에 소집(召集)한다.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지부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차(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議長)은 위원장(委員長)이 차(此)에 임(任)한다.

제25조 중앙위원회는 매년 4월에 소집(召集)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會議目的)을 명시(明示)하여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찰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議長)이 된다.

제27조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재단(財團) 이사회(理事會)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者)를 선임(選任)한다.

제28조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이 유고시에는 재단 이사회(理事會)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29조 본회의 각급회의(各級會議)는 재적(在籍) 과반수(過半數)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안(議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되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고문(顧問)

제30조 본회에 고문(顧問)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고문은 위원장이 추대(推戴)하며 그 임기(任期)는 추대한 위원장의 재임기간(在任期間)으로 한다.

제31조 고문은 위원장의 자문(諮問)에 응하며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意見)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제6장 재정(財政)

제32조 본회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末日)까지로 한다.

제33조 본회의 경비(經費)는 재단법인 성균관 예산(豫算)에 계상(計上)된 경비(經費)와 회비(會費), 찬조금(贊助金)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充當)한다.

제7장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제34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위하여 공적(功績)이 현저(顯著)한 자(者)는 감사위원회(監察委員會)의 결의에 의하여 총본부위원장이 이를 표창(表彰)한다.

제35조 1, 본회 헌장 제23조의 해당자나 또는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解任)·제명(除名)·정직(停職)·견책(譴責) 처분(處分)을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본회 헌장에 규정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총회 결의사항에 순응(順應)치 아니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오손(汚損)하였을 때

2. 위원장은 전항(前項)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限) 총회 재적인원(在籍人員)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부 칙(附則)

제37조 본회의 시행세칙(施行細則)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본회의 헌장을 개정(改正)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제의(提

議)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유도회 수습위원회(收拾委員會) 조직요강(組織要綱)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위원은 본회헌장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제40조 본회를 해산(解散)하고자 할 때는 총회 3분지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41조 본 헌장(憲章)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效力)을 발(發)한다.

1970년 월 일부터 시행(施行)한다.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3. 조직세칙(組織細則)

제1조 본 세칙은 유도회 헌장 제37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시도본부(市道本部) 이하의 조직체(組織體)에 대한 회의(會議) 운영(運營) 입회(入會) 및 임면절차(任免節次)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도본부 이하 각급 총회의 회의구성원(會議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 (1) 시도본부(市道本部)는 정부위원장 및 임원, 향교재단 이사장 및, 감사(監事)지부장(支部長), 향교전교(鄉校典校)
- (2) 지부(支部)는 정부지부장(正副支部長) 및 임원, 향교전교 및 장의(掌議), 지부(支部) 정부회장(正副會長)
- (3) 지회(支會)는 정부회장 및 해당 지구(該當地區) 장의(掌議), 분회(分會) 정부회장
- (4) 분회(分會)는 정부회장 및 임원, 회원전원

제3조 전조(前條)의 각급 총회의 의장(議長)은 당해 지구 회장(會長)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代理)하여 의장이 된다.

제4조 이동분회(里洞分會)는 분회 총회의 결의사항 및 임원명단을 지부(支部)에 보고한다. 지부장(支部長)은 이를 접수(接受)하여 도본부(道本部)에 보고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지회(支會)는 지회총회의 결의사항 및 임원명단을 지부에 보고한다. 지부장은 이를 접수하여 도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지부(支部)는 지부총회의 결의사항 및 임원명단을 시도본부(市道本部)에 보고

한다. 시도본부는 이를 접수하여 총본부에 보고하여 총본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시도본부는 시도총회의 결의사항 및 임원명단을 총본부에 보고하여 총본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부(支部)는 지회(支會)의 임원명단을 도본부(道本部) 및 총본부(總本部)에 보고한다.

제9조 본회 지회(支會)의 정부회장 및 각 임원과 회원은 시도본부위원장이 임면(任免)하고 지부의 정부회장(正副會長) 및 임원, 도본부 정부위원장 및 임원은 총본부위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 각급 조직체(組織體)에 사고(事故)가 있을 때 또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滿了)된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후임(後任) 임원의 임명추천(任命推薦)이 없을 때는 상급회장(上級會長)은 약간명(若干名)의 수습회원(收拾會員)을 위촉(委囑)하여 동(同) 수습위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수습이 안 될 때는 총본부에서 수습한다. 이 경우에 총본부위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시(市)·도(道)단위 지부장회의(支部長會議)를 소집하여 자문(諮問)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각급 조직체의 부서(部署)는 유도회 헌장 제16조 4항을 제외(除外)하고 총본부에 준한다.

분회장(分會長)은 지회를 거쳐 본부(本部)에 보고하고 지부장(支部長)은 동(同) 감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등록하고 회원증(會員證)을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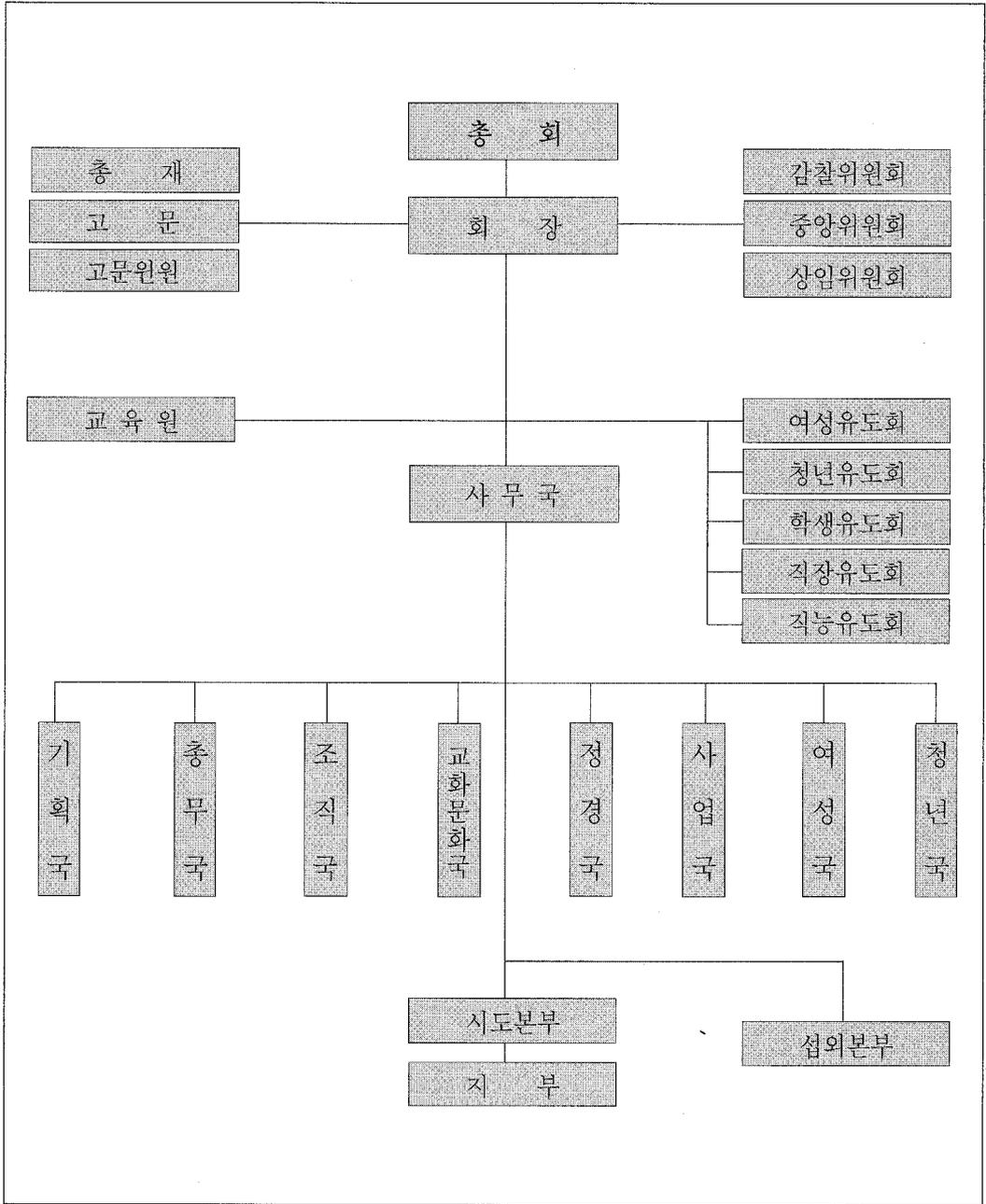
제12조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入會願書)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회장(分會長)은 지회(支會)를 거쳐 지부(支部)에 보고하고 지부장(支部長)은 동 심사(審査)를 거쳐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3조 지부장은 등록상황을 월 1회(一回) 도본부를 거쳐 총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조직세칙(組織細則)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단기 4321년(1988) 무진(戊辰) 4월 31일 개정(改正)시행(施行)한다.

4. 유도회 총본부 기구표



5. 청년유도회지부(青年儒道會支部) 회칙(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本會)는(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청년(青年) 유도회(儒道會)라 한다.

제2조 본회는 유도회 헌장(憲章)을 준수하고, 유도정신에 입각한 청년운동을 전개하여 안으로 윤리회복을 구현하며 나아가 인류문화(人類文化)의 조화(造化)를 지향(指向)함으로써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대도(大道)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事業)을 전개한다.

1. 교화(教化)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社會福祉)에 관한 사항
3. 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4. 경전(經典)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본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별도(別途) 규정(規程)에 의하여 각시(各市)·도본부(道本部), 지부(支部) 지회(支會) 및 분회(分會)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본회 회원은 유교(儒敎)에 뜻을 둔 청년으로 본회의 취지(趣旨)에 찬동(贊同)하여 등록(登錄)한 자(者)로 한다.

자격(資格) 및 절차(節次)는 별도규정에 의거한다.

제6조 본회는 별도규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본회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會員)은 선거권(選舉權), 피선거권(被選舉權) 및 의결권(議決權)을 가지며 본회의 제(諸) 규정(規程)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명예회원(名譽會員)은 총회에 참석(參席)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제3장 기구(機構) 및 부속

제8조 본회는 다음의 기구(機構)를 둔다.

1. 총회(總會)
2.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3.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4.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5.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
6. 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
7. 사무소(事務所)

제9조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代議員)은 다음과 같다.

의장(議長)은 회장(會長)이 겸(兼)한다.

1. 총본부 정부회장 및 임원전원(任員全員)
2. 시(市)·도본부(都本部) 정부회장(正副會長) 및 상임위원(常任委員)
3. 지부대표(支部代表)

제10조 총회(總會)의 직능(職能)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선출(選出)
2. 회장이 부회장 지명(指名)에 대한 승인(承認)
3. 중앙위원의 선출
4. 사정위원의 선출
5. 재산(財産) 처리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안(決算案)의 승인
7.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에 대한 권한(權限) 위임(委任)에 관한 사항
8. 중앙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항의 승인(承認)
9. 회칙(會則)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의 결의(決議)

제11조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兼)한다.

1. 정부회장
2. 사무총장(事務總長) 및 차장(次長)
3. 운영위원
4. 시·도본부장
5. 총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

제12조 중앙위원회의 직능(職能)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事務總長)에 대한 승인(承認)
2. 운영위원 추천(推薦)에 대한 승인
3. 본회회칙을 제외한 제규정(諸規程)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
4. 총회로부터 수임(受任)한 사항의 집행(執行)
5.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위임(權限委任)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항의 승인
7.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총회직능의 대행(代行). 단(但), 대행 사항은 차기(次期) 총회의 승인을 요(要)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는 본회 정부회장, 사무총장 및 차장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의 직능(職能)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중앙위원회로부터 수임(受任)한 사항의 집행
2. 지도(指導)위원 및 전문(專門)위원의 위촉(委囑)
3. 본회의 중요방침(重要方針)의 결의(決議)
4. 긴급을 요하거나 중앙위원회를 소집(召集)하지 못할 경우 중앙위원회 직능의 대행(代行). 단(但) 대행사항은 차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요(要)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는 회장단(會長團)과 위원장급(委員長級) 및 사무국(事務局), 부차장(部次長)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상임위원회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수립(樹立)과 예산안(豫算案) 편성(編成)

3.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집행
4. 주요(主要) 인사문제(人事問題)의 결정(決定)

제17조 사무국(事務局)은 사무총장(事務總長)이 관장(管掌)하며 그 임원(任員)은 중앙위원을 겸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의 부서(部署)를 둔다.

1. 기획부(企劃部)
2. 총무부(總務部)
3. 재정부(財政部)
4. 사업부(事業部)
5. 조직부(組織部)
6. 홍보부(弘報部)
7. 학생지도부(學生指導部)

제18조 각부(各部)의 직능은 업무분장(業務分掌) 별도규정에 의하며 전결규정(專決規程)도 별도로 둔다.

제19조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으로 구성하며 유도 이념과 본회 사업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한다. 위원장은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0조 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一人) 부위원장 1인(一人)을 선출하고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규율유지(規律維持)
2. 회원 및 임원의 감사(監査) 및 징계(懲戒),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
3. 경리(經理) 및 사무감사(事務監査)의 실시(實施)

제 4 장 임 원(任 員)

제21조 본회의 본부(本部)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상임부회장 1인)
3. 중앙위원 50인~120인
4. 운영위원 30인 이내(以內)

5. 사무총장 1인
6. 사무차장 1인
7. 사무국 각부(各部) 부·차장 각 1인
8. 지도위원 10인 이내
9. 전문위원 20인 이내
10. 사정위원회 5인~7인

제22조 회장(會長)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한다.

부회장(副會長)은 회장을 보좌(補佐)하며 회장의 유고시(有故時)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순(順)으로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은 회장이 지명(指名)한다.

제23조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의 지시(指示)를 받아 일반(一般) 회무(會務)를 관장(管掌)하고 사무국을 통솔(統率)한다.

사무차장(事務次長)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제24조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承認)을 얻어 회장이 임명(任命)한다.

제25조 사무차장 및 각부 부(部)·차장(次長)은 사무총장의 추천(推薦)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任命)한다.

제26조 사무국(事務局)의 각 부장(部長)은 그 부무(部務)를 관장하며 각부(各部) 차장(次長)은 부장(部長)을 보좌하고 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제27조 본회 총본부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년으로 하며 보선(補選)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하고 재선임(再選任)할 수 있다.

제28조 본회 임원은 명예직(名譽職)으로 하되 상근(常勤) 임원(任員)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거마비(車馬費) 또는 수당(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會 議)

제29조 본회의 총회(總會)는 다음과 같이 개최(開催)한다.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 5월 중에 소집(召集)한다 .
2.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필요시 본회회장이 소집하며 중앙위원회의 2/3 이상 또는

지부(支部) 대표자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30조 중앙위원회는 연2회(年二回) 이상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必要時) 소집한다.

제32조 사정위원회는 본회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사정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委員長)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33조 회장은 부득이(不得已)한 사정으로 회기(會期)내에 정기총회를 구성하지 못할 시 2개월의 기간으로 회의소집을 연기(延期)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회의 소집권(召集權)을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며 최단시일내(最短時日內)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但) 임원의 대의원(代議員) 자격은 변함이 없다. 수(數)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 의장(議長)이 이를 결정한다.

제34조 본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在籍人員) 과반수의 출석(出席)으로 개의(改議)하고, 의안(議案)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決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고문(顧問) 및 지도위원(指導委員)

제35조 본회는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명(若干名)을 둔다. 고문과 지도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고문 및 지도위원은 회장의 자문(諮問)에 응(應)하며 본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意見)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財 政)

제37조 본회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의 헌사(憲查)를 거쳐 본회 회장은 이를 해임(解任), 정권(停權), 견책(譴責)처분할 수 있다. 제명(除名)은 중앙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본회 회칙(會則)을 위배(違背)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毀損)하였을 때

제41조 정부회장(正副會長)의 불신임 결의시(決議時) 총회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요(要)한다.

제42조 사무총장(事務總長)의 해임(解任)은 중앙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부 칙(附 則)

제1조 본회의 시행세칙(細則)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개정(會則改正)은 중앙위원회의 제의(提議)에 의하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3조 회칙은 통과(通過)한 날로부터 실시(實施)한다.

4309년 10월 13일 제정(制定)

4310년 1월 29일 개정실행(改正實行)

4315년 7월 17일 개정(改正)

4317년 10월 27일 개수정(改修正)

4318년 8월 24일 개정확정실행(改正確定實行)

4320년 6월 개수정(改修正)

청소년유도헌장(靑少年儒道憲章) 및 목적문(目的文)

헌 장(憲 章)

우리는 여명(黎明)의 세계(世界)를 본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기필코 우리는 평화(平和)와 공영(共榮)의 세계를 이룩할 것이다. 인류를 문명의 위기(危機)로부터 구하고 우리들의 세계에 항구적(恒久的)인 번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정(中正)의 대도(大道)와 총화(總和)의 주체(主體)를 추구하는 인도적(人道的) 문화(文化)의 건설이 선

행(先行)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이며 참된 문명(文明)의 건설이다.

진리는 불멸(不滅)하며 불변하는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바는 하늘이 우리를 통하여 구하는 것이니 인도(人道)는 진리의 근거이며 이성(理性)과 양심(良心)은 인류의 통성이다. 진실로 선(善)함을 알 수 있고 이 참된 존재에 대한 신앙(信仰)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 오상(五常)의 덕(德)을 천하에 밝히어 영원토록 우리의 길은 그 평화(平和)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사회와 국가는 정의(正義)의 실현이 그 기본과제(基本課題)임을 믿고 있다.

민주(民主)·인본(人本)의 이상은 인륜(人倫)의 정립(定立)과 도덕(道德)의 확립(確立)으로 보장(保障)되는 것이며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평화와 후생(厚生)의 목적을 지향하는 인도적(人道的) 정의(正義)를 원칙(原則)으로 운용(運用)되어야 한다.

우리는 폭력(暴力)과 편견(偏見)을 배제(排除)한다. 평화는 그 자체의 선(善)한 목적으로 선(善)의 실천(實踐)으로써만 이룩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을 향유(享有)하고 생존과 진실을 충족(充足)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선(善)은 완전한 것이며 모든 문화와 전통이 자유롭게 그 명예(名譽)와 긍지(矜持)를 지키고 모든 민족과 국가는 대동의 건설을 위하여 결속(結束)함으로써 진실로 우리들의 평화는 영원토록 지켜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스스로 시민(市民)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형제(兄弟)와 함께 영원히 화평(和平)할 것이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참되게 봉사(奉仕)할 것이다.

목적문(目的文)

청년(青年) 유도인(儒道人)은 유교(儒敎)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立脚)하여 바른 덕성과 절조(節操)있는 행동으로 사회정의를 선도(先導)하며 공동(共同)의 선(善)을 위해 인권보호(人權保護)와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사업(繼承事業)에 적극(積極) 동참(同參)하며 함께 모여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 땅에 위대한 선현(先賢)들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령(綱領) 및 구호(口號)]

기본강령(基本綱領)

1. 참된 얼
2. 이웃사랑
3. 한 누리

실천강령(實踐綱領)

1. 민족화합(民族和合)과 통일(統一)을 위한 대동화평(大同和平)의 실천(實踐)에 힘쓴다
2. 진리(眞理)와 함께하는 선비정신을 구현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調和)를 지향하는 교육(教育)에 힘쓴다.
4.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사회정의(社會正義)의 구현(具顯)에 힘쓴다.
5. 사랑과 봉사(奉仕)의 정신(精神)으로 이웃을 위하여 힘쓴다.
6. 부모(父母)에게 효성(孝誠)을 다하며 어른을 공경(恭敬)한다.
7. 벗에게 믿음이 있으며 어린이를 보호(保護) 육성(育成)한다.
8. 조국(祖國)의 번영(繁榮)과 민족(民族)의 무궁한 발전(發展)에 힘쓴다.

실천구호(實踐口號)

1. 우리는 스스로 떳떳이 행동(行動)하자!
2. 우리는 형제(兄弟)와 같이 사랑하자!
3. 우리는 사회정의의 파수꾼이 되자!
4. 우리는 민족문화(民族文化) 창달(暢達)의 주체(主體)가 되자!
5. 우리는 평화(平和)의 선구(先驅)자가 되자!

